# I. 사회구조

- 1. 신분제도
- 2. 사회제도
- 3. 사회정책과 사회시설
- 4. 형률제도

# I. 사회구조

# 1. 신분제도

### 1) 신분제도의 형성과 구조

### (1) 신분과 신분제도

사회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사회구성 원들은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 주로 경제적인 지위의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집단을 나눌 때는 흔히 나누는 단위로서 「계급」이란 용어를 쓴다. 노동자계급이니 무산자계급이니 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한편 사회 적 지위의 높낮이를 가지고 집단을 나눌 때는 구분의 단위로서 「계층」이란 용어를 사용하곤 한다. 지식(계)층이라든지 학생(계)층이라든지 하는 따위가 그것이다. 계급이나 계층의 용어를 가지고 사회구성원을 몇 개의 집단으로 나 눌 수 있기는 현대사회이건 전근대사회이건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전근대사회 는 신분사회로서 근대사회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다.

전근대사회에 있어서의 신분도 계급이나 계층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을 집단으로 구분하는 단위였다. 구분의 기준은 신분상의 지위의 차이였다. 그리고 서로 다른 신분상의 지위는 각기 혈통에 따라서 세습되는 사회적 권리(특권)와 의무(제약)에 의하여 규정되었다. 여기서의 사회적 권리나 의무는 법률이나 관습으로서 또는 불문률로서 정하여졌다. 신분은 계급과는 일단 구분되며 계층에 포괄될 수 있는 개념이다. 신분은 계층의 일종으로 이해되어도좋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을 좀더 포괄적인 계층의 관점에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믿는다. 가령 良人 신분을 양인신분(계)층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신분계층의 세습적인 사회적 특권이나 제약이 법률·관습·불문률 따위로

써 규정되어 있고, 그러한 규정들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그 체계가 일정한 사회적 기능을 하게 되었을 때, 신분제(도)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어느 특정한 신분계층 하나만 놓고서도 신분제도를 이야기할 수 있다. 또 몇 개의 신분층을, 나아가 한 사회의 모든 신분층을 가지고도 그럴 수가 있다. 그것들이 하나의 체계로 묶일 수 있는 한에서는 그러하다. 전통사회에 있어서 신분제도는 하나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신라사회에서 예를 들면, 진골제도도 신분제도였고, 6·5·4두품제도도 역시 신분제도였다. 두품과 진골을 아우른 骨品制度도 신분제도였다. 良賤制度가 전체로서 독립된 신분제도였듯이, 양인제도나 천인제도도 마찬가지로 각기 독자적인 신분제도였다.

이와 같이 여러 신분제도들이 저마다 체계를 가지고 사회에서 나름대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되었다. 단 하나의 신분제도만이 있었던 신분 사회는 없었다. 오늘날 전통사회에 있었던 여러 복잡한 신분제도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까닭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여러 신분제도의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 적용이 엄격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전체의 모습을 계통을 세워 설명하기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역시 쉽지가 않다.

신라의 골품제도가 마치 그 사회의 신분제도를 전부 설명하여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노비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일반 양인들의 신분문제도 골품제도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골품제도는 기본적으로 귀족신분제도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명백한 규정과 엄격한 적용으로 널리 알려진 골품제도라고 하여도 신라의 신분제도의 전모를 밝혀주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고려의 여러 신분제도들은 신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규정이나 적용에 있어서 느슨한 편이다. 신분제도 전체의 모습이나 특성에 관한 명료한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고려의 신분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작업은 더욱 어렵다고 하겠다.

# (2) 신분구조의 구성

여러 신분계층들은 각기 다른 신분상 지위의 높낮이로 말미암아 위 아래로 서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신분구조를 이루었다. 이 신분구조의 구성을 어

떻게 파악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먼저 제기된다. 신분구조를 이루는 여러 신분층들을 몇 개의 큰 단위로 이해하여 보는 일이 유용할 것이다. 여기서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를 벌일 여유는 없다. 다만 崔承老의 上書를 검토하여 당시 사람들이 고려의 신분조직의 구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가하는 점을 알아보겠다.

- ① 신라 때에는 公卿・百僚・庶人의 의복・신발・버선에 각기 品色이 있어서, 공경・백료는 朝會하면 公襴을 입고 穿執을 갖추고 조회에서 물러나오면 편리한 대로 옷을 입었으며, 서인・백성은 文彩를 입지 못했으니 귀천을 분별하고 존비를 가르기 위한 때문입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太祖 이래로 귀천을 물론하고 마음대로 옷을 입어서 관직이 비록 높더라도 집이 가난하면 능히 公襴을 갖추지 못하고, 비록 관직이 없어도 집이 부유하면 綾羅와 錦繡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토산물은 좋은 것이 적고 거친 것이 많은데 문채있는 물건은 모두 토산물이 아닌데도 사람마다 입게 되면 다른 나라 사신을 영접할 때에 百官의 예복이 법과 같이 되지 않아 수치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원하건대 백료로 하여금조회에서는…공란과 천집을 갖추도록 하고…, 庶人은 문채・紗穀을 입지 못하게하고 다만 紬絹만 쓰도록 하소서(《高麗史》권 93, 列傳 6, 崔承老).
- ② 佛法을 崇信하는 것이 비록 좋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帝王·士·庶가 공 덕을 행차는 것은 사실이 같지 않습니다. 庶民과 같은 경우에는 수고롭게 하는 것은 자신의 힘이요, 허비하는 것은 자신의 재산이므로 피해가 남에게 미치지 않 습니다. (그런데) 제왕의 경우에는 民의 힘을 수고롭게 하고 민의 재산을 허비하 는 것입니다. …제왕은…폐단이 臣民에게 미치지 않게 하였습니다(위와 같음).
- ③ 本朝의 良賤의 법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聖祖께서 창업한 초기에 그 群臣들이 본래 노비를 가졌던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본래 없던 자들은 혹은 종군하여 포로를 얻기도 하고 혹은 돈으로 사서 노비로 삼았던 것입니다. 성조께서는 일찍이 포로를 석방하여 良人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공신들의 뜻을 동요시킬까 염려하여 편의에 따르도록 허용하였는데 60여 년에 이르도록 控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광종에 이르러서 비로소 노비를 按驗하여 그 시비를 분별하니 이에 공신 등이 원망하지 않는 자가 없었는데도 諫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賤隷들이 뜻을 얻어 존귀한 이를 능멸하여 깔아뭉개고 거짓을 다투어 얽어서 본 주인을 모함하는 자를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원컨대 성상께서는…賤한 자로서 貴한 이를 업신여기지 말게 하십시오… 대개 관직이 높은 자는 이치를 알아서 非法 행위가 적으며, 관직이 낮은 자는 만일 지혜가 비행을 분식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어찌 능히 良을 賤으로 만들겠습니까(위와 같음).

①에서는 의복의 착용에 관한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고 있다. 사람

들을 계층(신분)으로 일컫고 있거니와, 公卿·百僚·庶人·百姓 따위가 그것이다. 여러 계층을 다시 정리하여 ①의 맨 끝부분에 보이는 대로 백료(百官)와 서인의 둘로 나누었다. 사회구성원 전부를 이 두 계층으로 양분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구성원은 누구나 의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럴 경우에누구라도 입을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을 가려야 했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어떤 옷을 입을 수 있는 사회적 권리거나 반대로 그것을 입어서는 안되는 사회적 의무 따위가 각기 다른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여 주는 것이고, 그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 따라서 한쪽은 백관층으로, 다른 한쪽은 서인층으로 규정되었다는 이야기도 된다. 그런데 특정한 옷을 입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한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관련계층이 관직이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그러니까 백관은 관직을 가진 계층인데 비하여 서인은 관직이 없는 계층이라는 뜻이 된다.

그런데 ①에서 백관(僚)은 ②에서의 士와 다름이 없다. 사는 帝王과 庶(民)와 나란히 있는데, 제왕은 당연히 예외로 돌려질 수 있는 것이고 보면, 여기서도 사회구성원 전부를 사와 서의 두 계층으로 양분하고 있다. 사회구성원을 두 계층으로 양분하여서 파악하는 것으로는 ③에 보이는 良賤法이 또 있다. 土庶制이거나 良賤制이거나 모든 사람들이 사 아니면 서인, 또는 양인아니면 천인의 계층에 속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리나 원칙에 있어서 그러하였을 뿐이다. 그러한 제도의 실제 운용에서 나타난 현실은 제한된 의미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았다.

①에서 서인은 文彩·紗縠을 입지 못하지만 紬絹 옷은 입을 수 있다고 하였다. 비단으로 만들어질 주견옷이 노비들에게 어울릴 리도 없거니와 최승로가 노비들까지 포함시켜 서인을 말하였을 까닭도 없다. ②에서의 서민은 그의노력과 재산이 자신이나 제왕이 공덕을 행하는 데 쓰일 수도 있는 신민으로이해되고 있는데, 역시 노비와는 거리가 먼 존재였다. 서인이 사와 함께 사회구성원 모두를 두 계층으로 나누는 것인 한, 모든 계층이 둘 가운데 하나에소속되어야 마땅한 이치이다. 노비는 응당 서인에 포함되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서인에 노비가 빠져 있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③ 에 보이는슷하였다. 양천은 양인과 천인을 뜻하는데 천인은 노비를 가

리키는 것이었다. ③에서 양천법의 오래됨을 상기시킨 최승로는 천인과 관련하여서는 노비만을 되풀이하여 언급하고 있다. 양인이 아닌 자가 천인이듯이천인이 아니면 양인이어야 이치에 맞다. 백관이나 사는 당연히 양인이었을터이다. ③에서 언급된 群臣・功臣・官高者・官卑者는 모두 ①에서의 백관이나 ②에서의 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③의 어디에도 그들이양인과 동일하게 파악되어야 할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다. 오히려 실제는 그반대였다. 그들은 노비를 소유한 자로 보이고 있거니와 실체는 양인으로서가아니고 貴(族)로서 표현되었다 천예들이 뜻을 얻어 존귀한 이를 능멸하였다던가, 천한 자로서 귀한 이를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던가 하는 것이 그러한예이다.

더욱이 관직이 낮은 자가 양인을 가지고 천인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관직자가 양인과 구분되고 있었다는 점을 크게 뒷받침한다. ③에서 최승로가 일컬은 양인은 전쟁 포로였거나 가난하여 몸을 팔 수도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그는 이러한 양인에 관직자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는 관직자들을 천인은 물론 양인과도 구별하여 귀한 사람, 존귀한 이들로 묘사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신분적으로 귀족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서제의 실제에 있어서는 노비가 빠지고, 양천제의 경우에서는 관직자가 제외되어 있었다. 전자의 입장에서 고려의 신분구조를 재구성한다면 士一庶人一奴婢, 즉 귀족—서인—양인이 될 것이다. 한편 후자의 입장에 서면 관직자 —양인—노비, 즉 귀족—양인—천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서인과양인은 서로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귀족과 천인의 중간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유일한 계층이었다는 점에서 같다. 이 둘은 동일한 계층을 일컫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원리나 원칙보다 실제와 현실을 더중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고려의 신분구조의 구성을 귀족・양인(서인)・천인의 세 신분계층이 상하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 세 계층은 그 구성 단위로서는 가장 큰 것이었다. 각 계층은

<sup>1)</sup> 이러한 이해는 이미 학계에서 널리 알려져 온 바다. 그러나 고려의 모든 신분 층을 양인 아니면 천인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許興植,〈身分制와 職役〉,《韓國史研究入門》,知識産業社,1981,215쪽 및〈高麗時代의 身分構造〉,《高麗社會史研究》, 亞細亞文化社,1981,347~355쪽 참조).

저마다 여러 작은 단위의 신분계층을 포함하고 있었다. 귀족은 가장 많은 사회적 특권과 가장 적은 사회적 제약을 지니고 있었는데, 특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보다도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컸다는 점이다. 관인층이 귀족의 대표적 계층이었다. 관인층은 土族으로 바꾸어 불러도 좋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나아갈 수 있는 仕路의 차이에 따라서 文班・武班・南班으로 나뉘어 상하로 연결되어 있었다. 천인은 곧 노비를 뜻하였다. 노비는 사족과는 반대로 가장 적은 사회적 특권과 가장 많은 사회적 제약을 안고 있었다. 그 제약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그들이 대대로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에 소유되어 있어서 매매・증여・상속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그 소유주의 다름에 따라서 私奴婢・公奴婢・寺院奴婢의 세 계층으로 나누어진다.

귀족도 못되고 그렇다고 천인도 아니면서 그 중간에 위치한 것이 양인이었다. 양인에는 많은 신분층이 포함되어 있었다. 양인의 압도적인 다수는 일반 郡縣에 살면서 대대로 농사를 짓고 사는 농민들이 차지하였다. 이들은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서도 양인 안에서 중간 정도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양인의 표준이 될 수 있다. 양인농민이라는 점에서 같으면서도 군현인보다도 낮은 사회적인 지위에 있던 鄉·所·部曲人이 있었고, 이에 준하는 津尺・驛民이 있었다. 양인 가운데에는 쟁이일이나 장사일을 世業으로 삼는 工匠이나 商人도 있었는데 이들의 사회적인 지위는 부곡인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양인으로서 가장 낮은 위치에는 禾尺과 才人이 있었다. 한편 같은 양인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의 관아에서 일반 양인들에 대한 국가의 지배에 참여하여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하는 鄕東가 있었다. 중앙의 관료기구의 말단에서 吏職을 세습하는 雜類도 양인으로서 일반 군현인보다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었다. 軍人을 대표하는 것은 京軍이었는데이들도 양인이지만 일반 농민보다는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 향리·잡류·군인은 上位良人層에 해당하였던 셈이다.2)

지금까지의 고려 신분구조의 구성에 관한 설명을 표로 만들어 정리해 보 면 다음 〈표 1〉과 같다.

<sup>2)</sup> 종래에는 이 신분충들을—특히 향리와 군인, 그 가운데에서도 향리—중간계층 으로 보아온 것이 일반적이었다. 군현의 양인농민과의 차이를 강조하고, 그들 이 양인의 상위계층이었다고 보는 입장이라면 그러한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 〈丑 1〉

#### 고려 신분구조의 구성

貴 族 (士族・官人階層)	文 班 武 班 南 班
良 人 (庶 人)	郷吏・軍人・雑類 郡縣의 農民 郷・所・部曲人 및 津尺・驛民 ユ리고 工匠・商人 楊水尺(禾尺・才人)
賤 人 (賤隷・奴婢)	私奴婢・公奴婢・寺院奴婢

#### (3) 신분계층의 편성 단위와 기준

신분계층은 저마다 사회적 지위가 달랐다. 사회적 지위는 사회적 권리나의무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신분계층은 서로 다른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었다. 사회적 권리를 행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사회적 기능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사회적 기능은 국가의 체제 유지를 위하여 기대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에서는 役으로 표현하였다.3) 향리의 鄉役, 군인의 軍役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4)

兩班奴婢는 그 주인의 役이 각별하여 예로부터 公役・雜斂을 지지 않았다. 이제 良民이 모두 세력있는 집안으로 들어가 官役을 지지 않게 되니 반대로 양반 노비들로 하여금 대신하여 양민의 역을 지게 하고 있으니 이후에는 모두 금하도록 하라(《高麗史》권 85. 志 39. 刑法 2. 奴婢 충렬왕 24년 정월 敎).

私奴婢에게는 公役이 없었지만, 일반 양인들에게는 官役이 있었고, 양반에게도 각별한 역이 있었다. 사노비 정도를 예외로 하였을 뿐, 대부분의 신분계층은 역을 통하여 일정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되었다.

역을 담당하는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氏族이었다. 그 씨족의 범위는 그리

<sup>3)</sup> 李基白,〈高麗時代 身分의 世襲과 變動—韓國傳統社會에 있어서의 身分—〉(《民族과 歷史》, 一潮閣, 1971), 94~96쪽.

<sup>4)</sup> 役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은 李基白, 위의 책, 94~95쪽 참조.

넓은 것은 아니었다.5) 씨족의 파악은 戶籍의 작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호적을 통하여 씨족을 파악하는 일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기록들이 참고가 된다.

① 明經·製述의 두 大業으로 登科한 사람과 三韓功臣의 자손으로서 四祖 안에 工匠・商人・樂工에 이름이 있어서 계류되어 시행이 안되고 있는 사람들은 관할 관청에서 예에 준하여 신속하게 보고하여 결정해 주도록 하라(《高麗史》권 12, 世家 12, 예종 3년 2월 신묘).

② 우리 나라 法으로는, 그 八世戶籍에 賤類에 간여됨이 없는 연후에나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高麗史》권 85, 志 39, 刑法 2, 奴婢 충렬왕 26년 10월 表).

앞의 ①은 四祖戶口式에 따른 호적의 시행을 말하여 주고 있고, ②는 八祖戶口式에 입각한 호적이 있었음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이로써 적게는 부계로는 증조, 모계로는 외조의 범위까지가, 많게는 內外八世까지의 세계가 파악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호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 두 원칙은 모두 고려시대에 통용되었지만, 보다 일반적인 것은 4조호구식이었다.6) 이렇게 보면 씨족의 범위도 짐작이 간다. 씨족을 단위로 하여 지워진 役의 부담은 물론 세습되는 것이 원칙이었다.7)

역의 부담을 세습적으로 짊어지는 각기 다른 씨족들을 묶어서 신분계층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편성의 단위가 된 것이 斑이었다. 문반・무반・남반・군반의 예가 그러한 것들이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일찍이 고려의 신분체제를 班體制로 이해한 연구가 있다.8) 다만 반으로 구분된 신분계층이 대체로 지배계층이었다는 점이 불안감을 준다. 그러나 고려의 전반적인 신분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중심이 된 것은 귀족제도였다는 점, 그리고 시행의 주체가 귀족들이었다는 점에서 신분체제를 반체제로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9)

골품체제가 혈족의 유대를 더 중시하였다면 반체제는 사회적 기능을 더

<sup>5)</sup> 李基白, 위의 책, 95쪽.

<sup>6)</sup> 盧明鎬,〈高麗時의 承蔭血族과 貴族層의 蔭敍機會〉(《金哲埈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知識産業社,1983),262等.

<sup>7)</sup> 李基白, 앞의 책, 96쪽.

<sup>8)</sup> 李基白, 위의 책, 94쪽.

<sup>9)</sup> 신라의 골품제도도 사실은 주로 지배계층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신라의 신분제도 전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는 점도 참고가 된다.

내세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그러하다고 믿어지는데, 반을 내세우기 시작한 것은 신라말 지방의 豪族들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 는 것은 신라말 호족으로 등장한 村主들이 중앙의 관제를 모방하여 官班을 칭 하였다는 점이다.10) 그들은 재래의 骨品制를 부정하고 새로운 지배층으로서의 신분적 표징으로 관반을 내세웠다. 신분적 기능을 중시하는 반을 내세운 이유는 타도의 대상이 된 골품이 혈족의 유대를 토대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11)

호족들은 마침내 골품체제사회를 해체시켰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고려의 중앙귀족이 되었다. 중앙의 귀족이 된 사람들에게 이제「官」은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 독립적인 정부를 연상케 하는 이 표현을 지방의 세력가로 남아 있는 향리들에게 씌워줄 생각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의 중앙귀족은 신분편제의 단위로서「班」만은 여전히 존중하여 이에 토대를 두고 고려의 신분체제를 편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그들이 반으로 모든 신분계층을 전부 묶지는 않았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문반・무반・남반의 관인계층을 핵심으로 하는 귀족들이 다른 신분층에 대하여 우월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혈족의 유대라고 하는 동일한 원리에 기초를 둔 것이 신라의 골품이지만, 骨은 문과 구별되었다는 점이 참고가된다. 다른 하나는 지방에 대한 중앙의 우월(경계)의식이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향리와 군인은 사회적인 지위가 비슷하였다고 보이는데, 군인은 군반이라고 불리웠지만 향리는 그러하지 못하였다. 군반으로 칭하여진 군인은 경군즉 중앙군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 2) 관인계층

# (1) 관인층의 특성

관인층은 文班·武班·南班의 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이 고려의 귀족을 대표하였다. 각 반은 저마다 나아가는 독자적인 사로가 있었다. 그에 따라 수행하는 역도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즉 문반층은 문관직을, 무반층은 무관직을, 그리고 남반층은 宮中職을 세습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

<sup>10)</sup> 金光洙,〈羅末麗初의 豪族과 官班〉(《韓國史研究》23, 1979), 125~132\.

<sup>11)</sup> 金光洙, 위의 글, 135쪽.

러나 그들이 중앙(開京)에서 관직에 나아가고 그 자식들이 역시 중앙의 관직에 나아가는 일을 세습적인 직업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반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그들은 모두가 중앙 귀족이었다는 점에서 같았던 것이다.12)

관인층의 중앙귀족으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歸鄕罪였다. 중앙의 귀족이 관직에서 쫓겨나고 아울러 職田을 몰수당하여 本貫으로 유배되는 것이 그러한 죄였다. 이 죄를 짓는 것은 관인층에게 귀족신분의 박탈을 뜻하는 것이었다.[13] 관인층에게 있어서 과거의 고향은 귀족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한 뒤에나 돌아가는 곳이었다. 고려의 관인층은 이 점에서 고향으로 자진하여 낙향하기도 한 조선의 양반들의 경우와는 달랐다.

고려의 관인층이 지니는 또 다른 특성은 그들이 본관을 칭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고려는 지방에서 성장한 호족들이 주류를 이룬 관인층에 의하여 주도된 사회였다. 그 관인층은 서로 姓을 달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말하자면 그들은 이성귀족이었다. 이들 여러 이성귀족들은 그들의 본래 출신지를 본관이라고 하여 자기들의 가문을 다른 가문과 구별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본관을 칭하면서 그것을 내세우게 된 것은 관인층이 귀족으로서 가지고 있던 특권의식의 발로였다. 이 점에서 고려 귀족은 본관을 내세우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던 신라의 귀족들과는 달랐다.14)

#### (2) 음서제와 과거제

관인층은 대대로 관직에 나아가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 원칙이 늘 지켜지지는 않았다. 관인층의 자손이라고 해서 언제나 반드시 자동적으로 관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관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은 蔭補되거나 과거에 합격하는 일이었다.

<sup>12)</sup> 李基白, 〈高麗 貴族社會의 形成〉(《한국사》4, 국사편찬위원회, 1974; 《高麗貴族社會의 形成》, 一潮閣, 1990, 67쪽).

<sup>13)</sup> 중앙귀족과 歸鄉罪와의 관계에 관한 설명은 다음 논문들을 참고하였다. 李佑成,〈閑人・白丁의 新解釋〉(《歷史學報》19, 1962;《韓國中世社會研究》, 一潮閣, 1991, 72쪽).

文炯萬,〈麗代'歸鄉'考〉(《歷史學報》23, 1964), 38쪽.

李基白. 위의 책(1990). 67~68쪽.

朴龍雲,《高麗時代史》(一志社, 1988), 255쪽.

<sup>14)</sup> 중앙귀족과 本貫과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李基白,《韓國史新論》(一潮閣, 1967), 131쪽 및 위의 책, 68~69쪽 참조.

이 가운데 과거는 관인층의 독점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蔭敍는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에게 한하여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었다는 점에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음서에는 門蔭과 功蔭이 있었다. 전자는 문반·무반의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에게 항례적으로 베풀어진 혜택이었다. 후자는 공신 자손이나 특별한 공 훈이 있는 관리의 자손을 대상으로 非定例的으로 시행된 것이다.15) 이 가운 데에서는 후자에 비하여 전자가 보편적이었다. 그런 만큼 전자가 지니는 중 요성도 후자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러면 5품 이상 관리의 자식은 누구나 이 문음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관리의 길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러한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자식들의 범위에 관하여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중래에 는 5품 이상의 관리의 경우에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식은 전 생애를 통하여 한 명에 국한한다는 설이 일반적이었다.16) 그런데 최근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식의 수를 더 많게 보는 견해들이 보다 유력하게 대 두되고 있다. 즉 한 명의 관리가 거듭되는 음서의 실시에 따라서 여러 자손 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거나.17) 관리 한 명이 주는 혜택은 한 자식에 국한되지만, 托蔭者나 음서의 성격을 다르게 한다면 그 관리의 자손은 몇 명 이라도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하였다.18) 전자의 설은 「一人一子說」에 대립 되는「一人多子說」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1인1자설」을 인정하면서도. 탁음자를 바꾸면 여러 자손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므로「多人多子 說」이라고 할 수 있다. 수혜자의 수만 놓고 보면 어느 견해도 여러 명의 자 손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같다.19)

<sup>15)</sup> 고려시대 음서제에 관한 이해는 金龍善, 〈음서제〉(《한국사》13, 국사편찬위원회, 1993), 441~459쪽 참조.

<sup>16)</sup> 蔭敍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처음으로 한 金穀圭는 5품 이상 관리의 자손 1 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음서였다고 보았다(金穀圭,〈高麗朝蔭職小考〉,《柳洪 烈博士華甲紀念論叢》, 1971;《高麗社會의 貴族制說과 官僚制論》, 知識産業社, 1985, 24~33쪽 참조).

<sup>17)</sup> 朴龍雲, 앞의 책, 37쪽,

<sup>———,〈</sup>高麗時代의 蔭敍制에 관한 몇가지 問題〉(《高麗史의 諸問題》, 三 英社, 1986), 134~144쪽.

<sup>18)</sup> 金龍善, 《高麗蔭敍制度研究》(一潮閣, 1991), 80쪽 참조.

<sup>19)</sup> 여러 자손이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는 廬明鎬(앞의 글, 263~272쪽)도 견해가 같다.

요컨대 5품 이상 관리가 되면 그 자손에게 門蔭의 혜택을 베풀어서 몇 명인가는 관직자가 될 수 있었다. 그 자손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조건 관리가 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 자손들의 많은 수가 현실적으로 그러한 혜택을입게 되었다는 뜻이 된다. 이 점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사회적 특권은 대단히 큰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5품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은 있었지만, 문·무관이 5품에 오르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이 점을 고려하면, 관인계층의 자손들은 - 남반은 예외라고 해야 하겠지만 - 많은 수가 대대로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말이 된다.

음서가 혈연에 기초하였다면, 과거는 능력에 바탕을 둔 관리채용 방식이었다. 전자가 관인층의 귀족적 특권을 상징하였다면, 후자는 그들의 귀족적 특권을 파탄시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었다. 음서가 관직자를 위로 좁혀서 5품 이상의 관리로 한정하였다면, 과거는 관직자의 아래를 넓혀서 하급 관직자는 물론이고 향리의 자식도 과거에 응시하게 하였다. 과거에서는 일반 양인 농민에게조차도 그 길을 열어 놓았다. 20) 그러나 아래로도 과거의 문을 열어 놓기는 했지만, 그 제도의 운용이 관인계층에 유리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가 없다. 광종대의 과거급제자가 모두 지배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자제였다고 하며 21) 또 성종대의 과거급제자들로서 출신을 알 수 있는 한 모두가 중앙 관리거나 지방 향리의 자제였다고 한다. 22) 이렇게 보면시험을 통하여 능력이 있고 없고를 따져서 급제 · 낙방을 결정하는 것이 과거라고 하지만, 그렇게 따지는 것이 대체로 관인층이나 이에 버금가는 향리와 같은 계층 사람들 사이에서의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23)

현실에 있어서 과거제도의 시행은 특히 관인계층에 유리하게 이루어졌다.

<sup>20)</sup> 다만 일반 양인농민의 경우 가장 중요한 製述業에의 응시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 점에서 제술업으로도 진출할 수 있었던 향리에 비하여 일반 양인은 불리하였다(李基白, 앞의 책, 1990, 57쪽 및 朴龍雲, 《高麗時代 蔭敍制와 科擧制研究》, 一志社, 1990, 239~243·571~572쪽 참조).

<sup>21)</sup> 姜喜雄、〈高麗初 科學制度의 導入에 관한 小考〉(《韓國의 傳統과 變遷》, 高麗 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73), 267·275\.

<sup>22)</sup> 李基白, 앞의 책(1990), 59~60쪽.

<sup>23)</sup> 李基白은 일찍이 과거가 여러 면에서 특권적인 지위에 있던 중앙관리와 지방 향리계층이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독점하는 방향에서 시행되었다고 언급하였다(李基白, 위의 책, 61쪽).

이 점은 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기관에의 입학자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관학으로서 고려에는 國子監이 있었고, 여기에는 6학이 있었다. 그 가운데 律學·書學·算學의 3학은 雜學으로, 더 중요하였던 것은 그 나머지 3학 즉 國子學·太學·四門學이었다. 그런데 이 3학에는 관리 가운데에서도 문·무 7품 이상의 자제만이 입학할 수 있었다.<sup>24)</sup> 이것은 그들로 대표되는 귀족들이 고급의 교육을 받은 수 있는 기회를 독점하였음을 말하여 준다. 이 3학을 거쳐야만 꼭 과거합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과거응시에 있어서 교육이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관인계층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리라는 점은 다투어 볼 일이 못된다. 중앙 귀족들에 의하여 사학도 크게 발전하였거니와 이 점에서도 과거가 그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였으리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sup>25)</sup> 과거제도는 신분제도의 규정 안에서 운용되었다. 그시행은 귀족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과 거제도가 귀족들의 신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3) 공음전과 한인전

5품 이상 관리의 자식에게 음서로 관직에 나아가게 한 것에 짝하여서 5품이상 관리에게 세습이 허용된 功蔭田柴가 주어졌다는 것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26) 전자가 관인계층에게 주어진 정치적 특권이었다고 한다면 후자는 그들에게 주어진 경제적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음서제도와 함께 공음전제도가 역시 관인층의 귀족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된 혜택이었음

<sup>24)《</sup>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仁宗朝式目都監詳定學式.

<sup>25)</sup> 金光洙, 〈中間階層〉(《한국사》5, 국사편찬위원회, 1975), 234쪽 참조.

<sup>26)</sup> 이 功蔭田柴에 관해서는 두 개의 상반된 견해가 있다. 하나는 그것을 받는 관리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즉 末松保和로 대표되는 견해는 모든 관리가 해당된다고 본 데 비하여, 李佑成으로 대표되는 또 다른 견해는 5품 이상 관리에 국한되었다고 하였다. 다른 하나는 受給관리의 성격에 관한 것으로, 李佑成은일반 관리였다고 본 데 반하여 朴菖熙는 공훈 관리였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그 범위와 성격에 관하여서 李佑成의 견해를 좇는다.

末松保和, 〈高麗初期の兩班について〉(《東洋學報》36-2, 1953; 《靑丘史草》, 1965). 李佑成, 앞의 글.

<sup>----, 〈</sup>高麗의 永業田〉(《歷史學報》28, 1965 ; 앞의 책).

朴菖熙、〈高麗의「兩班功蔭田柴法」의 해석에 대한 再檢討〉(《韓國文化研究院 論叢》22、梨花女大、1973).

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음전에 비교될 수는 없지만, 6품 이하의 관리의 자식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토지가 지급되었음을 기억해 둘필요가 있다. 閑人田의 지급이 그것이다.

한인전은 6품 이하의 관리 자녀 가운데 閑人에게 급여된 토지였다. 한인은 6품 이하의 관리의 아들로서 아직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데,이들과 함께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에게도 한인전이 주어졌다.<sup>27)</sup> 한인전은 물론 지급받은 사람이 벼슬길에 나아가거나 결혼을 하면 반납되었다. 그러나 벼슬길에 나아가거나 결혼할 때까지만으로도 그 중요성은 큰 것이다. 가령 6품 이하의 아들로서 한인전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그가 관직을 받게되어 한인전을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다시 科田이 주어질 것이고, 5품 이상으로 승진하게 되면 공음전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비록 6품 이하의하위 관직자라고 해도 그 자식은 거의 지속적으로 국가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셈이다. 물론 여기서 6품 이하 관리의 자식들이 모두 한인전의 혜택을 받았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이 공음전과 위 아래로 이어져서모든 관직자에 대한 경제적 대우의 체계를 이루면서 그들이 귀족으로서의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 (4) 문반·무반과 남반

관인계층이 귀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음서제도와 공음전제도가 각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요긴하였다. 이 둘에 미치지는 않았지만 과거제 도와 한인전제도도 여기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이 가운데 음서제와 공음 전제는 말할 것도 없었고 한인전제도 아예 관인층의 독점물이었다. 그런데

<sup>27)</sup> 閑人과 閑人田에 대한 여기서의 논의는 李佑成의 견해를 좇는다(李佑成, 위의 글, 1962 참조), 이외에도 閑人에 관하여는 여러 해석이 있는데, 예컨대 白南 雲은 한인을 武士的 小地主群이나 토호 출신의 무리라고 보았고(白南雲,《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 東京;改造社, 1937, 69・288쪽), 千寬字는 그것을 보조 적・예비역적 군사요원으로 보았다(千寬字,〈閑人考-高麗初期 地方統制에 관한 一考察-〉,《社會科學》2, 서울大, 1958, 52~54쪽). 한편 文喆永은 閑人은 同正職을 제수받아 散職體系 속에 대기하여 있는 관인을 범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閑人田은 한인에 未仕未嫁의 자손이 있을 경우에 連立하게한 토지였다고 보았다(文喆永,〈高麗時代의 閑人과 閑人田〉,《韓國史論》18, 서울대 國史學科, 1988, 150~151쪽).

이 셋 가운데 음서제와 공음제는 5품 이상 관리에게 국한되었고, 한인전제는 6품 이하의 관리에게만 해당되었다. 이것은 5품 이상의 관리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특권적인 집단에 해당하였음을 말하여 준다.<sup>28)</sup>

그런데 5품 이상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문반과 무반뿐이었다. 남반도 고려 초에는 4품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만 대체로 문종대에는 7품에 상한선이 그어져 고정되었다.<sup>29)</sup> 반면에 문반은 1품까지 나아갈 수 있었고 무반은 3품까지는 오를 수가 있었다.<sup>30)</sup> 그러나 무반은 문반과 달리 3품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문무양반의 관직은 3품까지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2품 이상의 관직은 문반직일 따름이었다. 그리고 이 2품 이상의 문반직은 흔히 宰臣이나 宰樞로 표현되었다. 재추는 재신과 추신의 합칭으로이들을 宰相이라고도 하였다.<sup>31)</sup> 재상이야말로 최고급정책을 최후로 결정하는 사람들이었다. 무반을 3품에 묶어두었다는 것은 결국 문반만이 재상이 되어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을 가질 수 있었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특권이 재상에게는 정치적인 특권에 해당하였다. 재상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문반계층에게 사회적인 특권을 뜻하였다. 대대로

<sup>28)</sup>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朴龍雲은 5품 위에 貴族線을 설정하고 그 이하와 구분하여 그 이상의 관리들을 귀족으로 볼 것을 제의하였다. 또 그러한 관직상의 지위가 3세대 이상 지속되면 귀족가문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朴龍雲, 〈高麗家産官僚制說과 貴族制說에 대한 檢討〉, 《史叢》 21·22, 1977; 《高麗時代 臺萊制度研究》, 1981, 311~314쪽). 이것은 경청할 만한 의견이지만 官品을 가지고 어느 신분층의 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차라리 그 출신 인물들이 오를 수 있는 관품상의 상한선이 어디인가에 주목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文班은 1품, 武班은 3품, 南班은 7품이 각기 그 상한선에 해당하는데, 그러한 차이에 주목하는 것이 차라리그들 사이의 신분상 지위의 높고 낮음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관품이 규정하는 관직들이 따로 있어서 관직을 접어두고 관품만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는 것이 여전히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sup>29)</sup> 曺佐鎬、〈麗代南班考〉(《東國史學》5, 1957).李丙燾、〈高麗 南班考〉(《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12, 서울大, 1966).

<sup>30)</sup> 무반이라고 해서 2품의 벽을 허물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어디까지나 武官이 文官職을 兼帶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고, 더욱이 武班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邊太燮,〈高麗時 代의 文班과 武班〉(《史學研究》11, 1961;《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湖閣, 1974, 294~304쪽) 참조.

<sup>31)</sup> 邊太燮, 〈高麗宰相考-3省의 權力關係를 중심으로-〉(《歷史學報》35·36, 1967; 위의 책, 58~59쪽).

재상직에 나아갈 수 있는 사로에 오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문반신분 계층에게 신분적인 특권을 의미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신분적 특권이 배타적 · 독점적이었다는 점에서 문반은 최고의 신분계층이었다. 무반은 그 다음의 지위에 있었다. 무반은 재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점이 문반과 무반의 신분상 지위의 차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무반은 문반과 음서와 공음전의 혜택을 나누는 유일한 신분층이었다.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도 무반은 문반과 함께 국자감의 국자학에 입학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신분층이었다 이것은 과거시험에 있어서도 그들이 문반과 함께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남반은 처음에 4품까지 오를 수 있어서 무반과의 차이가 별로 없었지만, 문종대 이후 7품 이하에 한정됨으로써 문무양반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게 되었다. 그들은 음서와 공음전의 혜택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자식이 한인전을 받을 수 있었다. 자손에게 대물림되는 공음전과 비길 수는 없지만, 한인전의 혜택만으로도 그들이 신분상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었다고 보아도 좋다. 남반은 국자감의 입학에 있어서 문・무반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사문학에는 입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32) 문무양반과는 구별되었지만, 그들은 일정한 사회적・신분적 혜택이 기대되는 계층이었다. 그들은 그 말단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귀족으로서의 신분을 누릴 수는 있었다.

# (5) 귀족의 계층구성

과거에는 귀족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없는 속에서 그것을 관리(특히 문·무관) 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짙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점차 연구가 깊어지면서 귀족 의 범위를 좁혀보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sup>33)</sup> 그럴 경우 범위를 설정하는

<sup>32) 《</sup>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仁宗朝式目都監詳定學式의 조항에서 국자감의 四門學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文武官 7품 이상의 아들」이라고 하였고 雜學의 경우는「8품 이상(하)의 아들 및 庶人」이라고 하였다. 잡학에 서인도 입학이 허용되었으므로 그와 나란히 있는 8품 이하의 관리에는 南班이 포함되어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8품 이하의 관리는 四門學의 경우로 미루어 보아서 文・武官을 뜻한다. 결국 남반은 文官 안에 포함시켜 표현되었음을 집작하게 한다. 그러므로 四門學의 경우에도 남반은 문관 안에 넣어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sup>33)</sup> 고려 귀족에 관한 최근의 학설사적 검토는 金龍善,〈高麗貴族社會成立論〉(《韓 韓社會發展史論》,一潮閣, 1992) 참고.

기준이 문제가 된다. 종래에는 이와 관련하여 관직을 중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최근에는 그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관품을 더 내세우는 일도 있고, 문벌의식이라든지 통혼권 나아가 경제적 특권들까지를 폭 넓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연구의 토대 위에서 귀족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그범위의 설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사회에 있어서 사회구성원 가운데 누구는 사회적으로 권위가 인 정되어 존경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여 천시되거나 멸시받 는 수가 있었다. 또 누구는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는데 다른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 수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누구는 관리가 되는 일이 당인하였지만. 반대 로 다른 사람은 관리가 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였다. 여기서 사회적 ㆍ 경제 적・정치적 권리(특권)나 의무(제약)는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권리(특권)나 의 무(제약)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권이나 제약은 사실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었다. 다만 사람마다 정도에 차이가 있었 을 뿐이다. 가령 門下侍中은 그러한 특권을 가장 많이 가졌지만 그가 안고 있던 제약은 가장 적었다. 그런가 하면 노비의 경우는 그 반대였다. 여기서 말하는 특권과 제약은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결정하 였으며, 그 차이는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을 뜻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특권 과 제약이 대를 이어 세습되고 이러한 사실이 법이나 관습 또는 불문률로서 정해져 있을 때 그것이 규정하는 사회적 지위는 신분적 지위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신분적 지위가 제일 높은 사람들이 귀족인 것이었다. 신분적 지위가 제일 높은 사람들이 소속된 신분계층이 귀족신분계층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가 여기에 포함되는가 하는 점이다. 누구를 넣고 빼고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은 당연히 신분적특권(권리)이나 제약(의무)의 많고 적음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당연히 많고 적음을 재는 준거가 필요하다. 이 준거의 마련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질수 있다면 특권과 의무의 다소를 재는 일은 그만큼 정교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측면의 특성(특권과 제약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을 함께 고려하여 귀족의 범위를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연구는 말보다 훨씬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주로 지금까지의

연구는 관직에 주목하여 귀족의 범위를 생각하였을 뿐이므로 이런 점에서 만족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종래의 연구 방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관직은 기본적으로 그것에 나아가는 사람의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여 주는 것이었다. 또 관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정치적 권리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관직자가 되면 사회적 위엄이나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었다. 관직자라고하는 정치적 지위가 관련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까지를 결정하는 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관직에 주목하여 관련된 사람들의 신분적 지위의 높낮이를 재는 일은 가장 유력한 연구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또 관직자가 됨으로써 얻어지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특권이 매우큰 것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관직을 대대로 가질 수 있는 신분층을 그렇지 못한 신분층과 구분하여 귀족으로 이해한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고려사회에서 신분적 특권과 제약의 정도 차이를 재는 준거로서 가장 큰 것은 대대로 남에게 소유되어 매매·증여·상속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가 아닌가 하는 점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대대로 관리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준거가 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문무 양반은 물론 남반까지도 귀족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같은 귀족이지만 남한은 문반과 무반에 비하여 신분적 지위가 낮은 신분층이었을 따름이다. 그러면 같은 귀족이고 동일한 관인층이며, 단일한 관품체계에 똑같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신분상 지위가 문반・무반의 그것에 비하여 낮아야 했는가. 이것은 왜 그들이 신분적 특권은더 적고 신분적 제약은더 많아야 했는가 하는 물음과 같다. 그 이유는 그들의 役, 즉 사회적 기능이 문・무반의 그것과 다르고,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기대된 역의 수행은 관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지만 궁중직에 한정되었던 것이다. 똑같은 논리로 문반은 문반직에, 무반은 무반적에 한정되었다. 각기 성격이 다른 세 班의 관직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仕路를 이루었는데, 이 사로는 관품의 규정을 받는 관직의 상하체계였다. 똑같이 종9품에 설정된 관직에서 제각기 출발하지만, 문반은 1품인 문하시중, 무반은 3품인 上將軍, 남반은 7품인 內殿崇班까지 올라가 벼슬길이 끝났다.

이와 같이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귀족의 신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단순히 관직과 관품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따지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관품은 관직을 규정하여 주는 일정한 체계이지만, 관직을 규정하지 않는 관품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발령을 대기할 때처럼 혹 이 둘이 떨어질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각기 성격이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되었고, 관품에 의하여 그 지위가 규정된 관직들의 상하연결로 이루어진 사로의 다름이 귀족의 계층구성을 이해하는 데 보다 적절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벼슬길의 차이에 따라서 고려는 독자적인 신분층을 설정하였거니와, 그 설정의 단위로서 제시한 것이 반이었던 것이다.

사로의 다름 즉 반의 차이에 따라서 고려 귀족의 범위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연구가 있다.<sup>34)</sup>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문반과 무반과의 신분상 차이가 컸음을 지적하고 문반만을 귀족으로 볼 것을 제의하였다. 이 연구는 이 점에서 문・무・남반의 세 반을 모두 귀족으로 보는 입장과는 차이가 난다. 문반은 최고의 귀족일 뿐 유일한 귀족은 아니다. 이 견해의 차이는 서로가 제시한 기준이 엄격한 것인가 아닌가, 또한 귀족의 범위를 크게 볼 것인가 좀 좁혀서 볼 것인가 하는 입장의 차이에서 말미암은 것인데, 어느 쪽이 옳은가를 판단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가령 문하시중과 같은 최고의 관직까지 대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기대되는 문반이 귀족이 되는 조건이었다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 그렇지 못한 반은 귀족이 못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미관 말직이라도 대대로 관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여 이 점이 귀족의 조건으로서 충분하다면 이에 해당하는 남반이 기준이 되어 그렇지 못한 신분층은 귀족이 못 되는 것도 역시 당연하다.

세 반은 각기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달라서 저마다 독자적인 벼슬길을 지니고 있었지만 모두가 관직에 있었다는 점에서 같다. 그런데 여기서의 관직은 9관품체계에 포함되어 그 규정 속에 있었다. 그러므로 관직도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관직이라도 서리직이나 향리직이 이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散職들이 또한 이와 혼동될 수 없다는 것

<sup>34)</sup> 邊太燮, 앞의 글(1961).

도 다시 말할 나위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관직체계는 국왕을 정점으로 정연하게 짜여진 관료조직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 관료조직은 안으로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밖으로 나라를 보위하기 위하여 관직자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국민에 대한 지배와 국가의 보위에 있어서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였지만 또 가장 큰 책임도 직접 져야 하는 것이 이관료조직이었다. 35) 관리가 되어 이 관료조직에 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자손들이 또한 그럴 수 있었다는 점에서 관리들은 관인신분층을 이루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관인신분층은 귀족신분층이나 지배신분층으로 보아도좋을 것이다. 이 귀족층에 문반・무반・남반의 세 신분층이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이 귀족층 안에 더 세분된 계층이나 신분층을 설정할 수도 있다. 세분하는 기준이 정당하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더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근한 예를 들면 관리들의 충성의 정도가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같은 관리라고 하더라도 공신의 자손과 반대의 경우가 똑같은 신분상 지위에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그 밖에도 국왕과 인척관계에 있는 관리의 자손과 반대로 낮은 신분에 혈연이 닿는 경우가 역시 같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 입각한 귀족신분의 연구는 이미 학계에서 시도되어 왔거니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다.

# 3) 향 리

# (1) 임 무

신라말 지방에 산재하여 웅거하고 있던 호족들은 신라를 멸망으로 이끈 주역이었다. 고려가 건국된 뒤에 그들 가운데 일부는 중앙의 귀족이 되어 지배계층으로 발돋움하였다. 한편 그 일부는 각 지방에 그대로 남아 지방행정을 맡게 되었다. 고려 향리는 바로 이들 호족에 연원을 둔 것이다. 호족들이지방의 유력자로서 지방행정에 참여하였을 때에는 掌大等—大等을 중심으로

<sup>35)</sup> 관료조직의 대내적인 기능을 중시하는 입장에 서면, 관료조직에 끼는 관리들 이 이루는 사회계층은 지배계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이 원칙적으로 대대로 관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그 사회계 층은 지배신분계층이라고도 불리워질 수 있다.

한 관직체계가 이들의 임무 수행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다가 광종 무렵부터 점차로 戶長一副戶長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향리의 관직체계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여 대체로 성종 2년(983)에 지방에 중앙관이 파견되는 것에 짝하여 보다 체계화되고 또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36) 새로이 정비되어 모습을 드러낸 향리의 관직체계를 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다.37)

개정되기 이전에 있었던 직책의 이름은 대부분이 신라시대 중앙의 고급 관료들이 지니고 있던 직명이었다.38) 그러한 것들을 호장·부호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직책명으로 바꾼 것은 지방행정의 담당자들에게 남아 있는 독립적·독자적 색채를 지워버리고 그들을 중앙집권체제의 틀 속에 편입시키고자 한 국가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들은 이제 호족으로서의 풍모를 떨쳐버리고 鄕吏로서의 새로운 면모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렇다고 그들의 사회적인지위가 무한정 낮아진 것은 아니었다. 국가의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강요할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그들의 협조가 없이는 중앙의 지방지배가 이루어질수 없었던 것이 고려 전기의 사정이었다. 外官이 파견되었다고 하지만 그렇지못한 지방행정의 단위가 더 많았다. 뿐만 아니라 외관이 있다고 하여도 짧은임기에 관할하여야 할 지역은 큰 것이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향리들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하였다. 향리들에 대한 회유도 절실할 수밖에 없었던 상

<sup>36)</sup> 성종 2년 戸長・副戸長 중심의 새로운 향리의 관직체계는 일찍이 주목되었다 (金鍾國,〈高麗時代の郷吏について〉,《朝鮮學報》25, 1962, 88쪽 및 朴敬子,〈高 麗郷吏制度의 成立〉,《歷史學報》63, 1974, 70쪽 참조). 그런데 중래에는 성종 2년에 처음으로 호장・부호장 중심의 관직체계가 성립되었다고 이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러한 향리직체계가 慶州지역에서 광종대 무렵에 보이고 있었 다는 점을 들어서 이의를 제기한 이도 있다(李純根,〈高麗初 郷吏制의 成立과 實施〉,《金哲埈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1983, 216~218쪽).

<sup>37)</sup> 朴敬子, 위의 글, 73쪽의 주 31)에 있는 표를 전재하여 둔다.

<sup>38)</sup> 金鍾國, 앞의 글, 87쪽.

황이었다. 향리들은 비록 과거와 같을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의 유력한 세력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향리의 임무 가운데 기본적인 것은 대부분이 농민인 지방민으로부터 조세·공납·역역·군역 따위를 거두어 들이는 일이었다.39) 또한 州縣軍 가운데 一品軍 장교의 직도 향리가 맡았다. 한편 향리 가운데 어떤 이의 자제는 其人이 되어 개경의 중앙정부에 가서 출신 지방에 관련된 여러 사무를 처리하거나 그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의견을 내는 일을 하였다.40)

### (2) 향역의 세습과 종사

향리들이 향리직에 나아가 수행하는 임무들은 자식들에 의하여 세습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렇다고 향리의 자식은 누구나 그 아버지를 이어 반드시 향리직에 나가야 했던 것은 아니었다. 여기시 잠시 다음 사료를 보도록 하자.

嚴守安은 寧越郡의 吏였는데 키가 크고 담력이 있었다. 나라의 제도에 吏에 세 아들이 있으면 한 아들이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엄수안이 例에 따라서 重房의 書吏에 補하여졌다. (그는) 원종 때에 등제하여 都兵馬錄事가되었다(《高麗史》권 106, 列傳 19, 嚴守安).

향리의 세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벼슬길에 나아감을 허락하는 것이 나라의 제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제도는 향리의 자제로서 其人이 되어 중앙정부에 입역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인다.41) 기인은 중앙에서 일정기간의 역을 마치면 吏職에 나아갔다.42) 엄수안은 기인으로서 입역하고 중방의 서리에 임명되었던 것이다.

<sup>39)</sup> 金鍾國, 위의 글, 94~102쪽.

<sup>40)</sup> 金鍾國, 위의 글, 98~100쪽.

金成俊,〈其人의 性格에 관한 考察〉(下)《歷史學報》11, 1959;《韓國中世政治法制研究》,一潮閣, 1985, 65~74쪽).

韓活劢,〈麗初의 其人選上規制〉(《歷史學報》14,1961;《其人制研究》,一志社,1992.78~93等).

<sup>41)</sup> 韓祐劤도 嚴守安이 例에 따라서 補하여졌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其人의 選上 立役의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韓祐劤, 위의 글, 88쪽).

<sup>42) 《</sup>高麗史》 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其人 문종 31년 判 및 권 83, 志 37, 兵 3, 工役軍 충선왕 원년 3월.

李佑成, 〈高麗朝의 '吏'에 對하여〉(《歷史學報》23, 1964; 앞의 책, 1991, 93~ 95쪽) 참조.

향리의 세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은 기인이 되어 중앙의 이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나라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두 아들은 아버지를 이어 향리직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세워진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에 있어서도 기인이 못 되는 나머지 두 아들은 꼭 향리직에 나아가야 하였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본국의 鄕吏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는 (鄕)役을 면하고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다(《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鄕職 충숙왕 12년 敎).

이 사료를 보면, 향리도 과거에 합격하면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었음을 알수 있다. 앞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향리가 벼슬길에 나아가는 방법으로 기인이 되는 길이 있었고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세 아들 가운데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벼슬길에 나아가는 방법으로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 시사되어 있다. 기인이 되는 것에 짝하여서 과거에 합격하는 것도 향리의아들들이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는 방도였다. 기인이 되어 選上立役의 길을떠나야 할 사람이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 응시는 또 다른 아들의 몫일 것이다.

향리의 세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기인이 되어 떠나면 나머지 두 아들은 향리직에 나가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과거의 응시가 허락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서 다음 사료를 참고하여 보자.

樂工에게 3, 4명의 아들이 있으면 한 아들로 하여금 업을 잇게 하고 그 나머지는 注膳·幕士·驅史에 소속시켰다가 陪戎副尉·校尉에 옮기되 耀武校尉에 이르는 데 그치게 하라(《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限職 문종 7년 10월 判).

악공의 경우 3, 4명의 아들 가운데 父業을 이어 악공이 되는 것은 한 아들뿐이고, 나머지는 잡류의 직에 나아가게 하고 그 임무가 끝나면 요무교위에 한정시켜 武散階로 승진시키게 하였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향리의 아들로서 한 아들은 반드시 부업을 이어야 했겠지만, 나머지 두 아들은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짐작된다. 둘 가운데 하나는 기인으로 선상입역되는 방법으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과거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각기 중앙의 벼슬길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 (3) 향리의 신분

鄕役을 세습하는 향리들은 일정한 지역에서 일반 백성들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다. 정치적으로도 그러하였지만, 향리가 주현군의 一品軍 장교가 되었다는 점에서 군사적으로도 백성들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었다.(43) 이 점에서 보아도 향리들이 일반 농민보다 신분상 높은 지위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향리들이 향역을 세습한다는 것이 귀족의 입장에서는 향리들이 짊어져야하는 의무나 제약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일반 농민들의 견지에서는 권리나 특권으로 생각되었다.

향역의 세습은 향리에게 -그것이 제약이든 특권이든 상관없이-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일이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방에서의 향리가 주도하는 행정에 지장이 없는 한, 향리가 향역을 벗어나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아울러주어졌다. 그 하나가 其人이 되어 중앙의 胥吏職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과거를 통하여 品官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기인이 되는 것은 향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거에 응시하는 것은 그러하지못하였다. 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농민에게도 그 문이 열려 있는 것이과거였다. 그러나 일반 농민들은 과거에서 가장 중요한 製述業에 나아갈 수는 없었다.44) 반면에 향리에게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것이다. 적어도 일반 군현의 향리는 그러하였다.45) 향리는 제술업을 포함하여 과거의 전 분야에서 응시하는 데 제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벼슬길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지 않았다.

일반 농민과의 차별은 저절로 드러나는 바이지만, 이 점에서라면 오히려 관 인계층과 사정이 같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에의 응시에 있어서 향리가 관인계층과 비교하여 모든 면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위에서 본 대로 향리의 아들 가운데 최소한 한 명은 향역의 세습이

<sup>43)</sup> 旗田巍도 향리에게 武散階가 주어지기도 하였음을 지적하고 그 배경을 향리 들의 현실적인 위치에서 찾은 바 있다(旗田巍,〈高麗の「武散階」―郷吏・耽羅の王族・老兵・工匠・樂人の位階―〉,《朝鮮學報》21・22, 1961;《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 法政大出版局, 1972, 408~411쪽).

<sup>44)</sup> 李基白, 앞의 책(1990), 57쪽. 차龍雲, 앞의 책(1990), 239~243쪽.

<sup>45)</sup> 일반 군현이 못되는 행정 단위의 吏는 그러하지 못하였다. 部曲吏에게는 5품 의 관직이 그가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였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반 군현의 향리이다.

먼저였으므로 과거에 응시할 수가 없었다. 또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술업이나 명경업에 나아가는 경우에도 그 아들은 부호정 이상의 향리자제에 한하였다.<sup>46)</sup> 자세히 보면 이와 같이 향리는 관인계층에 비하여 불리한 처지에 있었다. 그리고 이 점은 나아가 향리들의 신분상 지위를 관인계층의 그것과 견줄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여 준다.

과거에 나아갈 수 있었고 또 실제로 과거급제자 가운데 많은 이들이 향리출신이었다는 점도 지적되어 왔다.47) 그러나 과거급제는 관인계층에게도 어려운 것이었다. 향리에게는 더욱 그러하였다. 한편 기인이 되어 중앙에 진출하는 것은 이에 비하면 용이한 것이었다. 과거처럼 어려운 시험을 거치는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서처럼 다른 신분층과 경쟁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기인으로 중앙의 이서직에 나아가는 것은 향리의 자식들만이늘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향리의 신분상 제약이라기 보다는 특권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5품이상의 관리 자제들이 蔭補될 때 실질적으로건 同正職으로건 중앙의 서리직이 初職인 경우가 흔히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48) 사실 향리의 아들로서기인이 되어 뒤에 서리직을 맡는 것은 5품 이상의 관리의 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같은 성격의 서리직을 맡을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향리의 신분을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목받을 만하다.49) 어느 쪽도 기본적으로 능력보다는 먼저 혈연이 고려된 결과였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사실에 매달려 향리의 신분상 지위를 관인계층의 그것 과 혼동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기인으로 서리직에 나아갈 경우에는 그것을 벗어나 품관이 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50) 이와 관련하

<sup>46)</sup> 李基白, 앞의 책(1990), 58쪽. 사龍雲, 앞의 책(1990), 237~238쪽.

<sup>47)</sup> 金鍾國, 앞의 글, 112~115쪽. 李基白, 위의 책, 58~61쪽.

<sup>48)</sup> 李佑成, 앞의 책, 92쪽. 朴龍雲, 앞의 책(1990), 652쪽.

<sup>49)</sup> 李佑成, 위의 책, 95쪽.

<sup>50)</sup> 필자는 기인이 궁극적으로 서리직에의 入仕를 통하여 주로 문반으로 진출하였다

여 다음의 사료를 보도록 하자.

州縣에서 進奉한 長吏에게는 同正職을 한 등급 더하여 주고 職이 찬 사람에 게는 武散階를 더하라. 承天府에서 進奉한 (사람으로서) 戶長 이상에게는 武散階를 가하고, 副戶長 이하에게는 직을 한 등급 더하여 주고, 職이 없는 이에게는 初職을 허락하라(《高麗史》권 12, 世家 12, 예종 3년 2일 신묘).

주현에서 진봉한 長吏는 아마도 기인일 것이다.51) 그들로서 직이 찬 사람은 武散階를 받도록 하였다. 여기서의 직은 초직은 아니라고 본다. 부호장이하의 향리는 직을 한 등급 더하여 주고 직이 없는 이에게는 초직을 주었다고 하였듯이 한 등급 더하여 받게 된 직이 초직이었음을 말하여 준다. 즉중앙 정부에 진봉한 부호장 이하의 향리 가운데 초직이 있으면 그 안에서등급을 하나 높여주고 초직이 없으면 그것을 주라는 뜻이다. 문제의 부분도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옳다고 본다. 따라서 위에서 직이 차서 무산계를받게 된 長吏의 직은 바로 초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초직은, 胥吏職에서의 그것을 뜻하며 入仕職이었다.52) 초직은 人吏라고도 불리웠는데 그 내부에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는 몇 개의 등급이 있었다. 기인은 마침내 서리직의 초직을 받아 입사직에 진출하여 그 내부의 등급에 따라 승진하였다. 그러나 그가 오르는 입사직은 품관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다시 말하여 기인은 蔭補者와는 달리 서리직 내부에서만 승진이 허용되었을 따름이다. 혹 운이 좋으면 그는 무산계를 받을 수 있었다. 일종의 포상으로 진봉장리가 직이 차서 무산계를 받게 되었음을 일러주는 위의 기록이 바로 이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老兵・工匠・樂人 등과 나란히 받을 수 있는 무산계의 비중이 品官들이 받는 문산계와비교될 수는 없다.53) 향리에게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관대하게 주어지고 중앙 정부의 서리직에 나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이족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크게 기대되는 신분층이었다.

고 본 적이 있으나 여기서 종래의 견해를 바꾸어 둔다(洪承基, 〈高麗 초기 中央 軍의 組織과 役割一京軍의 性格一〉, 《高麗軍制史》, 陸軍本部, 1983, 51~52쪽).

<sup>51)</sup> 旗田巍, 앞의 책, 390쪽.

<sup>52)</sup> 金光洙, 〈高麗時代의 胥吏職〉(《韓國史研究》4, 1969), 10~12\,

<sup>53)</sup> 旗田巍, 앞의 책 참조.

### 4) 군 인

### (1) 군 역

문관을 문반으로, 무관을 무반으로 하였듯이 군인은 軍班으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향리가 鄕役을 담당하였듯이 군인은 軍役을 부담하였다. 이 역은 세습되었다. 군역이 세습적으로 지워졌다는 점에서 군인은 전문적 군인이었으며, 군인 신분층을 이루었다. 일정한 씨족을 단위로 軍戶가 형성되었으며 이 군호들이 군반으로 편성되었다. 군인신분층은 이 점에서 軍班氏族이었다고도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의 군인들이 중앙군의 핵심을 이루었다.54)

평상시에 군인들은 국왕의 시위나 개경의 수비를 맡았다. 국경 지대에서의 방수도 그들의 임무였다. 유사시에 그들은 전투에 참여하였다. 군인들이 해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들의 군역의 내용을 이루었다.55) 군역에 대한 대가로 군인은 군인전을 지급받았다. 문종 30년(1076)의 규정으로는 馬軍・役軍・步軍・監門軍 등 병종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군인전이 지급되었는데 그 크기는 20결에서 25결 사이에서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 토지는 전호에 의하여 경작되었다. 군인은 수조권자로서 租를 거두어 소요 경비와 생계 유지를 위하여 썼다.56)

### (2) 군역의 세습

아버지가 지고 있는 군역은 아들에 의하여 세습되었다. 군역의 세습은 군인 신분의 세습을 말하는 것이다. 군역이 사회적인 권리로 이해되건 의무로 생각 되건, 그들은 원칙적으로 군역에서 해방될 수 없었다. 그 자손들도 역시 그러 하였다. 이 점은 군역의 이행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군인전의 세습의 모

<sup>54)</sup> 李基白,〈高麗軍人考〉(《震檀學報》21, 1960;《高麗兵制史研究》,一潮閣,1968, 101~110零).

<sup>——, 〈</sup>高麗 軍班制 下의 軍人〉(위의 책), 284~286쪽.

고려 병제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軍班制說과 府兵制說 및 이 두 견해를 절충한 이원적 구성론이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鄭景鉉,〈경군〉(《한국사》13, 국사편찬위원회, 1993), 293~313쪽 참조. 그런데 여기서의 서술은 주로 군반제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기왕의 학설을 정리·참고하여 서술하였다.

<sup>55)</sup> 李基白, 위의 책, 132~141쪽.

<sup>56)</sup> 李基白, 위의 책, 144~152쪽.

습을 보면 잘 이해가 될 것이다.

田丁의 連立은 嫡子가 없으면 嫡孫이, 적손이 없으면 同母弟가, 동모제가 없으면 庶孫이, 친손이 없으면 외손이 하게 하라(《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戶婚 정종 12년 判).

여기서 전정에 軍人田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과 그 상속의 원칙이 적장자 상속이었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 군인전의 상속은 군역의 세습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적장자원칙에 의하여 군인전을 상속시키자면 어느 정도까지의 친족의 범위가 파악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군인전의 상속이 여러 아들 가운데 적장자에 한하여 상속되었다는 것은 군역의 세습도 그러하였다는 뜻이 된다. 군인의 아들이라고 해서 꼭 아버지처럼 군인이 되어야만 했던 것은 아니다. 사실 이 점은 향리나 악공의경우도 비슷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른 아들들이 반드시 아버지의 뒤를이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해야하는 것은 군인전의 상속에 있어서 적장자상속의 원칙을 내세웠다거나 더욱이 그 원칙에 따라 몇 차례인가의 상속 순번까지 일일이 밝혀놓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결국 군역의 세습이 대대로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이어져야 한다는 국가의 절실한 기대를 반영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적장자 하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은 물론이고 그 자손들까지도 군역의 세습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가의 바람이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장자에게 지워지는 군역은 그만이 져야 한다는 뜻이기 보다는 다른아들들보다 그가 먼저 져야 한다는 의미가 더 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 군인의 신분

군인에게는 군역에 대한 대가로 군인전이 지급되었다. 그런데 그 지급의 내용은 수조권이었다. 그리고 그 지급의 규정을 담은 것이 田柴科였다. 전시과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정한 크기의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계층은 문반·무반·남반의 관인계층이었다. 군인들도 군역을 이루면서 관인층과 나란히 전시과의 규정을 받고 있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그렇다고 군인들의 신분상 지위를 관인계층과 견주자는 것은 아니다. 군인들이 전시과의 규정 속

에 있었지만, 그들은 품관이 아니고 東屬들과 거의 비슷하게 말단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다.57)

그런데 이속은 胥吏職과 雜類職으로 대별되었다. 전자는 사무직이었고 후자는 기능직이었다. 전자와 관련이 있는 주된 계층은 관인층이나 향리였지만, 후자의 경우는 잡류였다.58) 군인이 무예로써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유의하면 이속 가운데에서 서리직보다는 잡류직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잡류직에 나아가는 잡류는 이직인 잡류직을 세습하는 이족이었다. 품관과 구별되는 잡류와 무반과 구분되는 군인과는 이런 점에서도 어느 정도 통하는일면이 있다. 군인이나 잡류는 대체로 그 자손들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믿어지는데, 과거를 통하여 관리가 되는 일에 있어서도 그 조건이나 한계가 둘 사이에 혹 비슷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電東・杖首・所由・門僕・注膳・幕士・驅史・大丈 등의 자손은 군인의 자손에게 諸業의 選路에 許通하는 예에 따라서 赴擧하게 하라. 製述・明經의 두 大業에 登第한 사람은 5품으로 한정하라. 醫・卜・地理・律・算業에 등제한 사람은 7품으로 한정하라…(중략) … 과거에 급제하지 않고 入仕한 사람도 또한 7품에 한정시키되 玄孫에 이르르면 許通하게 하라(《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限職 인종 3년 정월 判).

전리 등의 자손이란 잡류의 자손을 말하거니와 그들에게 제술·명경·잡업의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이 위 기록의 내용이다. 그런데 그 허락의 조치를 "군인의 자손에게 그렇게 했던 예에 따라서 하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과거에 급제하거나 아니거나 입사한 뒤에 잡류 자손이 감수해야 할 제약들이 상세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군인의 경우에 준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잡류의 자손이나 군인의 자손에 대한 과거응시의 허용여부는 그들의 신분상의 지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성질의 것이었다. 요컨대 잡류의 자손에게 과거응시를 허락하면서 그 시행을 굳이 군인의 자손의 예에 따르게 한 것은 그들의 신분상 지위를 같게 보았기 때문일 것이

<sup>57)</sup> 李基白, 위의 책, 288~289쪽. 洪承基, 앞의 글(1983), 48~49쪽.

<sup>58)</sup> 金光洙, 앞의 글(1969), 21쪽. 洪承基, 〈高麗時代의 雜類〉(《歷史學報》57, 1973), 69~77쪽 참조.

다. 그렇다면 과거급제 뒤에 나아갈 수 있는 한계도 이 둘이 비슷해야 하고 설사 과거를 통하지 않고 나아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다만 과거응시나 관직진출만이 신분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나 또 원칙과 실제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 에서는 여기서의 이야기가 단정적일 수가 없기는 하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과거용시나 관직진출에 있어서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군인과 잡류 사이에 큰 차이를 두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점에서 이둘 사이에 신분상 차이도 크게 두고 싶지 않았던 것이 국가의 입장이었다는 점도 대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군인의 품관진출이 잡류의 경우보다 훨씬 더 용이하였을 것이다. 잡류와는 달리 군인에게는 무반에 나아감으로써 품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흔히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가령戰功이 있으면 물론이고 무예가 출중하거나 勞功을 쌓거나 해서도 군인에게는 무관이 되는 기회가 많았다.59) 그래서 무반은 군인으로 보충되는 것이 보통의일이었다고 보는 견해조차 있다.60) 물론 이 견해는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한다.무반의 보충에 있어서 더 많은 경우는 음서 등에 의하여 임명되었을 것이다.61)또 군인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무관이 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도 소홀하게 볼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잡류의 경우와 비교해서는 군인이 좀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은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크게 보면 군인의 신분상 지위를 잡류의 그것과 비슷하게 보아야 하겠지만, 엄격하게는 군인들이 잡류에비하여 다소나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여도 무방하다.

한편 군인의 신분상 지위는 향리의 그것과도 견주어 볼 소지가 있다. 물론 하는 일의 성격상 군인은 잡류 쪽에 더 가까운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향리도 잡류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吏族이었으며 따라서 품관과는 동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군인은 吏屬과 나란히 전시과를 받고 있었는데 이속 가운데에서도 향리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其人이 군인과 나란히 취급되는 경우도 있었다.62)

<sup>59)</sup> 洪承基, 앞의 글(1983), 50~51쪽.

<sup>60)</sup> 邊太燮, 앞의 글(1961), 51~53쪽.

<sup>61)</sup> 李基白, 앞의 책(1968), 291쪽.

<sup>62) 《</sup>高麗史》권 79, 志 33, 食貨 2, 農桑 예종 3년 2월 制의 조항에 보면 其人田과 軍人田을 나란히 하여 언급한 예가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보면 군인을 향리와 견주어 그 신분상의 지위를 헤아려 보는 것이 결코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다만 향리들이 과거를 통하여 품관이 되는 것이 더 유리하였고 또 실제로도 그런 예는 많았다. 더욱이 그럴 경우에 향리는 무반이 아니라 문반으로 나아가게 마련이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군인들의 처지는 향리들의 그것에 비하여 다소 열세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sup>(63)</sup>

### 5) 잡 류

### (1) 이직으로서의 잡류

중앙의 여러 관청에서는 품관과 상하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구별되어 있는 많은 更屬職들이 있었다. 이 吏職들은 관료기구의 말단에 위치하여 있으면서 일정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러한 역할의 수행을 통하여 이직자들은 국가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직자들이 하는 일은 크게 사무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와 관련이 있는 이직은 흔히 胥吏職으로 불리워지고 있고 후자의 경우는 雜類職으로 이해되고 있다. 64) 이점에서 이직의 주요 구성을 서리직과 잡류직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 둘사이에는 그 직임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말고도 다른 차이점들이 있었다. 가령 잡류직에서는 관청 이외에 고위 관리들에게 지급되어 일을 하는 경우도 중요했지만 서리직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이직으로서 공통되는 점들이 더 많았고 또 이 점들이 더 중요하였다. 예컨대 서리직이건 잡류직이건 그 나름대로 위 아래로 연결되는 진급체계가 있었는데, 이 진급체계는 모두가 기본적으로 단일한 원리와 기준에 기초한 것이었다. 서리직이나 잡류직은 크게 入仕職(初職)과 未入仕職으로 나누어지고, 입사직은 다시 그 안에 몇 개의 상하 등급으로 세분되었다.65)

<sup>63)</sup> 향리와 군인의 신분상 지위를 견주면서 전자가 文班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비하여 후자는 武班과 연결되어 있었음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李基白, 앞의 책, 1968, 290~292쪽).

<sup>64)</sup> 여기서의 설명은 다음의 연구를 주로 참고하였다. 金光洙, 앞의 글(1969). 洪承基, 앞의 글(1973),

<sup>65)</sup> 吏職은 入仕職과 未入仕職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다시 세분된 등급을 찾은

입사직 안에서 세분된 등급은 서리적인 경우에 권무적을 포함하여 5등급이었다.66) 正職만을 보면 그것은 3등급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仕路의 성격을 보면 잡류직과는 달리 서리직에는 문반과 남반의 斑行이 있었다. 이것은 서리직의 사로가 班路를 따라서 品官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뜻이 된다. 이것은 서리직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품관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는 점을 뜻하는 일이기도 하다. 반대로 사로가 반로를 통하여 품관과 이어질 수없었던 잡류직에 나아가는 이는 품관으로 진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품관과 연관시키지 않고 이직 사로를 보면 서리직과 잡류직은 서로 대응하면서도 함께 하나의 체계에 포함되어 있었다.

兩京의 文武兩班 및 南班·正·雜路로서 職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각기 同正職을 가하라(《高麗史》권 12, 世家 12, 예종 3년 2월 신묘).

文·武·正·雜으로서 職을 가진 이에게 다음 차례의 同正(職)을 가하라(《高麗史》권 29, 世家 29, 충렬왕 8년 5월 경신 敎).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문반·무반·남반은 품관들이 분명하다. 따라서 품관과 구분되어 있는 정로와 잡로는 이직이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잡로는 잡류직의 사로였다.67) 정로는 서리직의 그것일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68) 요컨대 잡류직의 사로는 잡로였고, 서리직의 그것은 정로였다. 이 둘은 별개의 것으로 서로 대응하였다. 대응하면서 동시에 이 둘은 하나의 이직사로의 체계를 이루었다.

### (2) 이족으로서의 잡류

잡류는 잡로의 사로에 있는 이직이었지만, 그것은 그 이직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였다. 또 잡류직이 세습적으로 그 자손들에게 이어졌다는 점에서 잡류는 그들의 신분계층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신분계층으로서의

연구는 金光洙, 위의 글에 의하여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sup>66)</sup> 잡류직에서 權務職에 해당하는 실례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서리직에서와 마 차가지로 권무직이 있는 경우도 상정하여 볼 수 있겠다.

<sup>67)</sup> 洪承基, 앞의 글(1973), 74~75쪽.

<sup>68)</sup> 한편 正路에 대하여 다른 해석을 내린 이들도 있다. 曺佐鎬는 正統의 仕路라는 의미로 이해하였으며(曺佐鎬, 앞의 글, 13쪽), 李丙燾는 과거로 출신할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하였다(李丙燾, 앞의 글, 163쪽).

잡류는 이직이었다. 그들이 대대로 이직인 잡류직에 나아가야 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면 이족으로서는 잡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서리직에서의 경우이다. 서리직은 같은 이직이라도 잡류직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였다. 그 직에는 5품 이상의 고위 관직자들의 자제가 음보되기도 하였다. 기인들 또한 그 직에 나아갔다. 기인은 향리의 자제이므로 여기서는 잠시 접어두기로 하자. 그 밖에 또 누가서리직에 나아갔을까.

吏職의 服色은 庶官의 그것과 다름이 없었는데 다만 綠色의 옷에 짙고 옅은 차이가 있었다. (중략) 省府에 吏를 임명하는 것은 流品에 한정시키지 않고 貴家의 자제도 때로는 그것에 임명하였다. 이제 이 靑服을 입은 사람은 이것이 바로 吏를 세습한 자일 따름이다(徐兢、《高麗圖經》권 21. 卓隸 吏職).

省府는 三省과 일반 관청을 뜻하는 것이겠는데, 여기에 관리들이나 귀가의 자제들이 東로 임명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음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이직을 세습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였다. 관리나 귀가의 자제로서 나아가는 東는 물론 서리직이었다. 이직의 세습자는 靑服을 입고 있던 유일한 신분층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관리나 귀가의 자제와 나란히 같은 서리직에 있었을 것 같지 않다. 그들은 이직이라도 잡류직에 나아가는 잡류였다고 생각된다. 관련 사료도 없거니와 구체적인 사례도 없어서 서리직을 세습하는 신분층의 존재를 더 이상 확인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다.69) 다만 기인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도이다.

기인은 일정한 입역기간이 지나면 서리직의 동정직과 그 실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해서 받게 된 서리직을 자식들이 세습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또 그럴 경우 서리직에서만 승진할 수 있었는지 하는 점도 중요하다. 요컨대 기인들이 서리직을 세습하는 이족으로서 자리를 굳혔는지가 궁금한 문제이다. 그러나 짐작은 가지만 실제가 어떠하였는지를

<sup>69)</sup> 李佑成은 위의 인용 사료에 보이는 東職세습자와 관련하여 主事・令事 등 서리직과 堂從 등 잡류직을 언급하였는데, 이 점에서 보면, 그는 서리직과 잡류직에 東職을 세습하는 吏族이 나아가기도 했다고 본 듯하다. 그러나 상세한설명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李佑成,〈高麗朝의'吏'에 대하여〉,《歷史學報》 23. 1964;〈高麗 官人禮制下의'吏'〉, 앞의 책, 94쪽).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70) 어떻든 서리직을 세습하는 이족을 결국 발견하지 못한 셈이다. 현재 확실한 이족으로서는 잡류만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 물론 실제로 잡류가 이족으로서 유일한 신분층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잡류가 대표적인 이족이었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족으로서 잡류는 기능직에 해당하는 잡류직에 나아가야 하였다. 그 자손들도 그러하였다. 잡류직이 있는 사로는 雜路였다. 그것은 서리직의 正路의 경우와는 달리 품관과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잡로에 있는 이직만을 세습적으로 맡아야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점에서 잡류는 이족이었던 것이다. 이족이었다는 점에서 중앙의 잡류는 지방의 향리와 통하였다. 그러나 하는일의 성격에 차이가 있어서, 잡류가 기능직의 일을 한 데 비하여 향리는 사무직의 일을 하였다. 향리의 자제가 기인이 되어 이직을 맡게 되어도 서리직에 나아갔다. 이 점은 이 둘 사이의 신분상 지위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을 시사한다.

잡류의 자손은 처음에는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 뒤 인종 때부터는 잡류가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일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다만 잡류가 製述業과 明經業에 합격되어도 5품을 넘어서 진급하지는 못하게 하였다. 잡류가 雜業을 통하여 과거에 급제하면 7품에 한정시켜 진급을 허용하였다.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진급하는 데 限職의 제약을 받지 않았던 향리와 비교하면, 잡류의 경우는 커다란 차별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또 잡류가 과거에 합격하는 일도 드문 것이었지만, 설혹 그렇다고 해도 미관말직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과거로 현달한 사람들이 많았던 향리의 경우를 떠올리면, 이 점에서도 잡류의 신분상 지위는 향리의 경우와 비교하여 열세를 면할 수 없다.71)

<sup>70)</sup> 지금의 집작으로는 좀 부정적이다. 만일 기인이 其人으로서 끝나지 않고 서리 직에 나아가게 되었다면, 그가 서리직에서 물러난 뒤 자연히 開京에 머물게 되었으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아들들 가운데 누군가가 서리직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기인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용되었다 는 점에 유의하면, 서리직에 보충되는 것은 또 다른 기인이지 其人의 아들은 아니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sup>71)</sup> 雜類의 신분상 지위에 대해서는 洪承基, 앞의 글(1973), 78~90쪽 참조.

### 6) 양인농민

### (1) 공과 · 공역의 부담

농민은 토지를 갈아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가운데에는 자기 소유의토지를 가진 이도 있었고, 그러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대체로 말하면 전자는 自營農이었고 후자는 佃作農이었다. 자영농은 국가에 國稅를 물었지만, 전작농은 그러하지 않았다. 전작농은 그가 빌려서 농사짓는 토지의 소유주에게 田租를 냈을 뿐이다. 자영농이 전세를 문 것은 그가 농민이어서가 아니고 경작 토지의 소유자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신분층의 사람들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국가에 전세를 물어야 했으므로 자영농이 부담하는 전세는 그만의 것일 수가 없었다.72)

자영농이든 전작농이든 그가 양인신분이었다면 모두 국가에 대하여 貢賦 와 徭役・軍役의 부담을 지고 있었다. 공부는 공물을 바치는 것이었는데, 공물은 특정한 지역에서 나는 토산물이었다. 그 종류는 여러 가지였다. 그 가운데에는 광산물・직물류・동식물 및 그 가공품 그리고 해산물이나 약재 따위가 포함되어 있었다. 73) 공물은 모두 현물이었다. 때로는 현물 대신 그 값을 따져서 平布로써 내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현물로 바치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현물은 농민들이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여 채취・제조・운송하였다. 따라서 공물을 바친다는 것은 결국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을 뜻하였다. 여기서의 노동력을 특히 責役이라고도 불렀다.74)

공역이 특정한 공물을 채취·제조·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력의 수취를 뜻하는 데 비하여, 요역은 궁궐·사찰·관아의 축조, 성곽·도로의 구축, 하천·제방의 수축 등 토목공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정된 세의 한 항목이었다.75) 용도는 다르지만, 노동력의 수취였다는 점에서 요역

<sup>72)</sup> 洪承基,〈高麗時代의 農民과 國家〉(《韓國史市民講座》6,一潮閣, 1990), 33~35等.

<sup>73)</sup> 姜晋哲.《高麗土地制度史研究》(高麗大 出版部. 1980). 269쪽.

<sup>74)</sup> 洪承基, 앞의 글(1990), 35~36쪽.

<sup>75)</sup> 姜晋哲, 앞의 책, 284쪽. 洪承基, 위의 글, 36쪽.

과 공역 사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다.

요역과 공역 이외에도 양인농민들은 군역의 부담을 피할 수 없었다. 중앙군은 전문적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일반 양인농민들과는 무관하였다. 양인농민들이 지는 군역은 주로 州縣軍과 같은 지방군과 관련이 있었다. 그런데 주현군은 保勝・精勇・一品의 3軍으로 이루어져 있었다.76) 二品・三品軍도 그 체제 아래 있었다. 이 가운데 보승군과 정용군은 중앙군과 직결되어 있는 전투부대였다. 반면에 일품・이품・삼품의 3군은 노동부대였다.77 보승군・정용군・일품군은 중앙에서 파악하여 그 지휘 아래 놓여 있었다. 그수는 약 5만 명 가량 되었다.78) 일반 농민 가운데에서도 자영농이 주요 구성원이었다. 그런데 약 5만 명의 숫자는 농민의 전체 수에서 보면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농민의 압도적인 다수는 이품군・삼품군에 편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군사적인 일에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군역의 의무를 이행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역·요역·군역이 모두 본질에 있어서 농민들의 노동력 수취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다시 말하여 국가에서는 공역·요역·군역의 행태로 농민들로부터 노동력을 거두어 들였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부담을 대략 公役으로 이해하여도 좋겠는데, 관리들로 대표되는 귀족들은 공역의 부담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귀족들도 원칙은 공역을 부담해야 하였지만 실제로 그러한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공노비를 제외하고 노비를 대표하는 사노비들은 아예 그러한 부담의 원칙도 없었다. 결국 공역을 현실적으로 거의 전담하고 있던 것은 일반 양인농민들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역은 경제적으로 국가의 존립 여부를 가늠해 줄 정도로 중요하였다. 그러므로 양인 농민들은 국가의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계층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양인농민이 무는 전세가 국가의 재정에 기초가 되었음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전세는 田主가 국가에 무는 세금이었다. 전주 가운데에는 다른 계층도 해당이 되었다. 특히 귀족층이 그러하였다. 따라서 양인농민의 전주만이 문제가 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영세한 대로나마 전주의 수에 있어서

<sup>76)</sup> 주현군에 관한 설명은 李基白, 앞의 책(1968), 202~229쪽 참조.

<sup>77)</sup> 李基白, 위의 책, 204~205쪽.

<sup>78)</sup> 洪承基, 앞의 글(1990), 37쪽.

나 그 소유 면적에 있어서나 양인농민의 비중은 큰 것이었다. 따라서 양인농민들이 — 주로 자영농 중심이었지만—전세의 부담을 통하여 국가의 재정에 기여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였다. 여러 세목 가운데에서도 전세가 국가 재정에서 가장 중요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 (2) 생산계층

농민의 중요성은 그들이 무는 전세·공부·요역·군역의 公課·公役이 국가의 財政과 軍政에 긴요하였다는 점에서 우선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민의 중요성은 그 이상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주요 담세층이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층이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헤아려져야 할 것이다. 그들은 생산을 통하여 사회구성원 전부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었다. 농민이인구의 상당부분이 되었거니와, 자영농이건 전작농이건 생산을 통하여 자신들의 생존부터 스스로 해결하였다. 또 자영농이 내는 전세는 국가에 의하여관리들을 비롯한 여러 계층 사람들에게 재분배되어 그들의 생계가 이어지도록 하였다. 전작농이 무는 전조는 지주들의 생계를 도왔으며 또 그들로 하여금 국가에 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하였다. 농민이 생산을 중단한다면 그 결과는 단순히 국가 재정이 파탄을 맞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아예 국민 모두가죽을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토지를 떠나서 생산을 중단하게 되는 사태는 국가가 가장 경계하여 마지 않았던 일이었다. 태조가 즉위한 직후에 弓裔의 실정을 비난하였는데, 그가 지적한 가장 큰 궁예의 허물은 농민들에 대한 지나친 수취로 流亡하게 하였다는 점이었다.<sup>(9)</sup> 성종이 지방관에게 내린 다음 교서의 내용을 보아서도 그가 토지 경작을 통한 농민들의 생산을 얼마나 중요한 일로 인식하였는지를 아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나라는 백성으로서 근본을 삼고,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 만약 모든 백성의 마음을 회유하고자 한다면, 오직 三農(봄 밭갈이·여름 김매기·가을 추수)의 일할 시기를 빼앗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 너희 12牧과 여러 州·鎭의 使는 이제부터 가을까지 모두 잡다한 업무를 정지하고 오로지 勸農을 일삼을 것이다. 내가 장차 사신을 보내어 조사하여 田野의 황폐하고 개간된 것과 牧守의

<sup>79) 《</sup>高麗史節要》 권 1, 태조 원년 7월 詔.

부지런하고 태만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포상하기도 하고 폄출하기도 하겠다 (《高麗史》권 79, 志 33, 食貨 2, 農桑 성종 5년 5월 敎).

권농정책의 추진은 비단 태조나 경종의 일만이 아니었다. 역대 군주들은 거의 예외없이 권농을 강조하였다. 그와 관련된 정책은 여러 가지였지만, 공 통적으로 중요한 그 방향은 농민들을 토지에 묶어두고 그들로 하여금 생산 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 (3) 세업으로서의 농업생산

양인농민은 토지를 떠나 유망해서는 안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경작을 통한 농업생산에 여념이 없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대대로 물려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다. 그들이 노비가 되어 公役을 물지 않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과 노비 사이의 결혼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것은 불법이었다. 농민들은 대대로 양인 신분으로남아 있어야 하였다. 국가에서는 양인농민의 신분을 양인으로 고정시켜 둠으로써 공역·공과를 부담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더욱 본질적으로는 그들을 토지에 묶어둠으로써 대대로 생산자로 남아 있게 하자는 데에 국가의 더큰 뜻이 있었다. 광종에 의하여 추진된 노비의 안검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80) 그에 앞서 태조도 가난해서 남의 집 노비가 된 양인을 1천여 명이나內庫의 布帛으로써 몸값을 물어준 바가 있었다.81) 태조는 즉위한 지 2개월뒤에 농민들에게 3년간의 조세와 부역을 면제시켜 주고 유망 농민들을 田里로 돌아가게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러 조치들은 농민들이대대로 양인의 신분에서 농업생산에 전념하게 되기를 바랐던 국가의 입장과관련지어 이해되어야 할 줄로 안다.

그러해야 하였으므로 양인농민들이 관리가 되어 생산자의 지위를 벗어나는 일도 바람직한 일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과거에 응시하는 일을 국가에서 굳이 막았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제술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명경업이나 잡업으로 과거에 나아갈 수 있었다.<sup>82)</sup> 그러나 그것은 거의 대다수 양인농민과

<sup>80) 《</sup>高麗史》 권 85, 志 39, 刑法 2, 奴婢 성종 원년 6월 崔承老上書.

<sup>81) 《</sup>高麗史節要》권 1, 태조 원년 8월 詔.

<sup>82)</sup> 李基白, 앞의 책(1990), 57~58쪽.

는 무관한 일이었다. 일정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경쟁이 심한 과거시험에서 성공하기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던 농민들로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물론 과거에 이르는 문이 열려져 있었다는 점이 농민들의 신분상 지위를 헤아리는 데 중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그것이 현실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는 점도 이와 관련하여 간과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전 분야의 과거에 많은 이들이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향리들의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양인농민들의 신분 변동이나 이와 관련한 그들의 신분상의 지위를 이해하는 데에는 그들이 군인이 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 유의하는 일이 더 유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성공하기 보다는 군인이 되어 그들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가 더 현실적이었기 때문이다. 고려는 군인을 배출하는 軍班氏族이 따로 있어서 이들이 중앙군의 핵심을 이루었지만, 보충이 필요할 때는 選軍하여 뽑았다. 그런데 이 선군의 주요 대상자들이 양인농민이었던 것이다.83) 군인이 되면 무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흔히 있었다. 이 길이라고 쉬울 수야 없었지만, 과거를 통하여 문반으로 나아가는 길에 비교하면 좀더 수월한 길이었음은 분명하다.

## 7) 공 장84)

## (1) 공장의 유형

농민이 농업생산자였듯이 工匠은 수공업생산자였다. 농산물이든 수공업제품이든 그것의 생산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은 같았다. 하지만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보다 우선적이었다. 농업과 농민이 더 중요하였음은 이를나위가 없다. 수에 있어서도 공장은 제한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기는 하지만 수공업제품은 국가나 사회에서는 불가결한 것이었다. 그 생산에 종사하는 공장들에 대한 대책의 마련을 국가에서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러한

朴龍雲. 앞의 책(1990). 239~243·571~572쪽 참조.

<sup>83)</sup> 李基白, 앞의 책(1968), 110~123쪽.

<sup>----,</sup> 위의 책, 289~294쪽.

<sup>84)</sup> 洪承基, 〈高麗時代의 工匠〉(《震檀學報》 40, 1975).

때문이었다.

국가에서는 공장을 工匠案이라고 하는 별도의 호적에 付籍하여 파악하였다. 공장안에는 국가의 여러 관청—예컨대 軍器監·掌治署 등과 같은—에 전속되어 있는 官屬工匠이 편적되어 있었다. 또 그렇지 않은 非官屬工匠들까지도여기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 전자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수공업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액수의 현물급료와 토지를 지급받았다. 후자는 상당한 기간 국가에 요역을 바쳐야 했지만 전속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들에게는 국가에서 고려한 별도의 경제적처우가 없었다. 그들은 독자적으로 수공업제품을 생산하여 그것을 수요자에게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였다.85)

### (2) 공장의 신분

공장이 수공업제품을 생산하는 일은 흔히 천한 기술로 여겨졌다. 그것에 종사하는 공장도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파악되곤 하였다. 물론 여기서 공장과 그의 일이 천시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양천제에서의 천인이었다는 뜻은 아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노비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양인이었다. 여기서 문제삼고 있는 것도 이들 양인공장이다. 그들은 양인이었지만 일반 농민들에비하여 신분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기록을 보기로 하자.

令典을 상고하여 보면 工匠家와 商人家는 기술을 가지고 주상을 섬기는데 그 業을 전문으로 하여 벼슬에 나아가서 사족과 더불어 나란히 할 수 없습니다 (《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限職 문종 27년 정월 有司奏).

工匠家는 工技 이외의 일로써 생업을 삼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대대로 세습되어야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벼슬길에 나아가 사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없었던 것은 당연하였다.

工人·商人·樂人의 아들은 비록 功이 있다 하더라도 단지 물건을 내릴 뿐이고 벼슬길은 금하게 하라(《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限職 인종 18년 6월 判).

<sup>85)</sup> 이러한 설명은 洪承基, 위의 글, 64~70쪽 참조.

공장의 자식들도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게 하였다. 같은 양인이라고 하더라도 농민들에게는 벼슬길이 막혀 있지 않았다. 또 농민들의 생산활동이 그렇게 친한 것으로 이해되지도 않았다. 이 점에서 공장은 농민보다는 낮은 신분상의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공장은 농민보다는 오히려 상인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그들은 특수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樂人과비슷한 처지에 있었다고 생각된다.86)

공장에게 仕路가 차단되어 있었다는 점은 특히 농민의 경우와 비교하여 신분상의 제약으로는 큰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무산계로 진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물론 공장 가운데에서 중앙의 관청에 전속되어 있는 관속공장들에 한한 이야기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점이 공장 전체의 신분상 지위를 다소 높여주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중앙의 관속공장에게는 경제적 처우로서 쌀이나 벼로써 적임에 따라 급료가지급되었는데, 이에 짝하여서 무산계의 최하 지급액인 전 17결이 아울러 주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산계에 나아가는 일과, 무산계에서 다시 위계상 진급하는 일이 거의 통상적이었다는 사실이다. 다만 그들에게는 요무교위를 넘어 승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것은 공장들이통상적으로 무산계로 승진할 때 校尉群 무산계까지는 허용이 되었지만, 將軍・大將軍 등의 명칭을 지니는 무산계에는 나아갈 수 없었음을 뜻한다.87)

한편 요무교위는 전 22결을 받았는데, 이것을 전시과의 경우에 견주어서 보면, 그것이 정로·잡로의 이직인 수史·書史·主事·監膳·典食·典設 등에 상응하는 위계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여러 이직은 상위의 입사직이었다.88) 입사가 허용되지는 않았지만, 공장에게 무산계를 통한 진급에 제한을 두어 허용함으로써 이직의 입사직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우까지를 받게 하였던 셈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직의 입사직에 준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 준하는 내용이 경제적 처우에 한하는 것이었다. 또 공장 가운데 일부만이 해당되

<sup>86)</sup> 위의 기록에서 공장·상인과 나란히 벼슬길이 막혀 있는 樂人은 歌人·舞人·樂工 등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데, 樂工은 樂器를 연주하는 사람이었다고 믿어진다.

<sup>87)</sup> 이러한 설명은 洪承基, 앞의 글(1975), 72~74쪽 참조.

<sup>88)</sup> 金光洙, 앞의 글(1969), 10쪽. 洪承基, 앞의 글(1973), 77쪽.

었다. 그러므로 이 점만 가지고 이직들과 신분상 지위를 같게 볼 수는 없다. 농민들과의 신분상 지위를 견주는 일에 있어서도 주의가 따르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입사 여부만을 가지고 그 지위를 비교할 때보다는 농민과 공장사이의 신분상 지위의 격차를 더 좁혀서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 이 점에서 똑같이 입사가 허용되지 않았던 상인보다는 좀 나은 지위에 있었다고도말할 수 있을 것이다.

### 8) 향·소·부곡인

### (1) 사회 · 경제적 지위

鄉·所·部曲은 州·府·郡·縣과 같은 행정단위였다. 같은 행정단위였지만, 그것들은 저마다 높고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군·현은 주·부보다는 낮지만 향·소·부곡보다는 높았다. 그렇지만 군·현이 주·부보다 낮은 행정단위였다고 해서 군·현인이 주·부인 보다 신분상의 지위마저 낮았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향·소·부곡인은 군·현인에 비하여 낮은 신분을 누리고 있었다. 이 어색한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하여튼 이 신분상의 차이에 주목하여 향·소·부곡인은 오랫동안 천인으로 간주되어 왔다.89) 그러나 최근에는 그들의 신분이 양인이었다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90) 요즈음의 학계에서는 오히려 양인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91)

<sup>89)</sup> 旗田巍, 〈高麗時代の賤民制度「部曲」について〉(《和田博士還曆記念 東洋史論叢》, 1951; 앞의 책, 1972, 65~69쪽).

<sup>1951;</sup> 앞의 적, 1972, 65~69等). 金龍德、〈郷・所・部曲巧〉(《白樂濬環曆紀念國學論叢》, 1955), 187~189等.

村上四男、〈高麗時代の「所」について〉(《和歌山大學藝學部紀要》7, 1957;《朝 鮮古代史研究》, 1978), 457等.

洪承基, 〈賤民〉(《한국사》5, 국사편찬위원회, 1975).

<sup>90)</sup> 李佑成, 〈高麗末期 羅州牧 居平部曲에 대하여〉(《震檀學報》29·30, 1966; 앞의 책, 1991, 114~130쪽).

金龍德,〈部曲의 規模 및 部曲人의 身分에 대하여〉(上)(《歷史學報》 88, 1980), 53~69쪽.

武田幸男,〈朝鮮の律令制〉(《岩波講座 世界歴史》6, 岩波書店, 1971), 77~78쪽. 朴宗基,〈高麗 部曲制의 構造와 性格 一收取體系의 運營을 中心으로一〉(《韓國史論》10, 서울大 國史學科, 1984), 121쪽.

<sup>91)</sup> 朴宗基는 종래의 賤人說을 매우 심도있게 비판하고 良人說을 체계적으로 주 장하였다(朴宗基, 《高麗時代 部曲制研究》, 서울大 出版部, 1990). 그의 설명이

천인설에는 부곡인에게 주어진 사회적 제약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양인설을 내세우는 이들은 그 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가령 전자에서는 부곡인이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가 하면 후자에서는 부곡인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내세운다.

설사 천인이 반드시 노비였다고 못박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노비가 대표적인 천인임은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노비는 남에게 소유되어 재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서 그들은 매매·상속·증여의 대상이 되기도 한 신분층이었다. 부곡인과 군현인 사이에 신분상 격차가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또 부곡인이 안고 있는 신분상 제약이 아무리 심각한 것이라고하더라도 부곡인을 노비의 경우와 견줄 수는 도저히 없다. 노비가 천인인 한부곡인은 천인일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천인이 良賤制에서의 그것을 의미하는 한, 부곡인은 양인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향·소·부곡인의 생활의 실제를 알아볼 차례이다. 일반 군현인과 마찬가지로 향·소·부곡인들도 기본적으로는 농민이었다.92) 그들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작노동을 통한 농업생산에 의지하지 않고는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었다. 그들은 또한 일반 군현인과 다름없이 공부·요역·군역 등의 의무를 국가에 지고 있었다. 물론 그들 가운데 토지를 소유한 자는 국가 에 전세를 물었다. 다만 여기서 所民만은 향·부곡인과 다른 점을 가지고 있 었다. 향·부곡인에게는 그들이 조세와 요역의 부담을 지고 있었음을 보여주 는 관련사료들이 전하고 있는데, 소민의 경우는 그러하지가 않다.93)

소민은 원칙적으로 조세와 요역의 부담이 면제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들에게 는 금·은·철·자기·먹·소금 등 특정한 물품을 생산하여 국가에 바치는 부담이 있었다. 국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특별한 물품의 생산을 맡은 그들로서는 아무래도 더 많은 노동력을 제공하여야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그들에게 부곡인들과 같이 徭役을 지울 수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더 좋을 물품

다 옳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의 연구성과에 힘입어 이제 양인설은 더욱 유력한 견해가 되었다.

<sup>92)</sup> 이와 관련된 설명은 洪承基, 앞의 글(1975), 340~343쪽 참조.

<sup>93) 《</sup>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賑恤 災免之制 정종 2년 6월·숙종 7년 3월 및 恩免之制 숙종 3년 10월.

을 더 많이 수취하기 위해서는 소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따로 토지나 녹봉을 지급하여 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전세가 면제된 것은 이러한 사정이 고려된 결과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소민이 전세와 요역을 면제받았다고 해서 향·부곡인과 비교하여 국가에 대한 전체적인 부담이 덜하였다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보아서 향·소·부곡인의 국가에 대한 부담은 그형태가 서로 달랐다고는 해도 거의 비슷한 것이었다. 일반 군현에 사는 양인 농민들과 견주어서도 향·소·부곡인의 국가에 대한 부담은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적어도 근본적으로는 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94)

### (2) 신분상 지위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국가에 일정한 부담을 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향·소·부곡인은 일반 군현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그들은 일반 군현인과의 결혼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지 않았다.95)

郡·縣人과 津·驛·部曲人이 交嫁하여 낳은 자는 모두 진·역·부곡에 속하게 하고 진·역·부곡인과 雜尺이 교가하여 낳은 자는 똑같이 나누고 남는 수는 母에 따른다(《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戶婚).

부곡인이 군현인과 교혼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향·소민도역시 그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교가하여 낳은 소생들의 귀속에 있어서는 부곡인이 군현인에 비하여 불리한 처지에 있었다. 이 사실에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부곡인의 신분상 지위가 군현인의 그것과 똑같지 않았음을 말하여 준다. 부곡인은 군현인이 아니라 진·역·잡척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

洪承基, 위의 글, 335쪽. 朴宗基, 위의 책, 61쪽.

<sup>94)</sup> 특히 이 점에 관해서는 洪承基, 앞의 글(1975), 341~343쪽 참조. 이와 다른 견해도 있다. 朴宗基는 부곡인이 일반 주현인과 마찬가지로 조세나 力役 같은 부담을 졌지만, 주현인과는 달리 부가적으로 국가직속지의 경작과 같은 특정의 역에 집단적으로 동원되었다고 하였다(朴宗基, 앞의 책, 142~151·159~160쪽 참조).

<sup>95)</sup> 武田幸男, 앞의 글, 78쪽.

부곡인은 교육을 받을 기회에 있어서도 군현인에 비하여 불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료를 검토하여 보기로 하자.

인종조에 式目都監에서 學式을 詳定하였다. 國子學生은 文武官 3품 이상의 아들과 손자, 勳官 2품으로 縣公 이상을 띤 사람과 아울러 京官 4품으로 3품이상을 띤 사람으로서 勳封된 사람의 아들로써 이를 삼는다. 大學生은 문무관5품 이상의 아들과 손자, 정3품·종3품 같으면 그 증손, 그리고 훈관 3품 이상으로 훈봉된 사람의 아들로써 이를 삼는다. 四門學生은 훈관 3품 이상으로 훈봉되지 않은 사람과 훈관 4품이지만 훈봉된 사람 및 문무관 7품 이상인 사람의 아들로써 이를 삼는다. 三學의 학생은 각기 300명씩인데 在學은 연령의 많고적음을 기준으로 해서 순서를 정한다. 雜路와 工·商·樂에 이름이 올라 있는 따위의 賤事者, 大小功親 사이에서 혼인을 범한 자, 家道가 올바르지 못한 자, 惡逆을 범하여 歸鄉된 자, 賤人·鄉人·部曲人 등의 아들과 손자 및 자신이 私罪를범한 자, 이런 경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入學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 律學·書學·算學은 國子學에서 학습한다. 律學·書學·算學 및 州縣의 學校의 학생은 모두 8품 이상(이하의 잘못)의 아들과 庶人으로서 이를 삼는다. 7품 이상의 아들로서 情願하는 사람은 들어준다(《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이 사료는 국자감에의 입학 자격을 알아보는 일과 관련하여 흔히 인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런데도 이 자료는 제대로 해석되는 일이 오히려 드물었다. 특히 입학이 안되는 사람들에 관한 기사의 해석이 그러하였다. 3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위에 보이듯이 최소한 7품 이상의 관리거나 훈관의 자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도 이러 저러한 사람들은 안된다는 것이고 그 내용이 위의 관련 기사에 실려 있다. 그러므로 관련 기사는 어디까지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단서조항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안되는 조건들은 모두 다섯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 하나하나는 별개로 독립된 조건을 이루고 있다. 부곡인의 자손의 경우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는 7품 이상의 관리의 아들이면 3학에 나아가지만 그들 가운데 부곡인의 자손이면 7품 이상의 관리의 아들이라고 해도 안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아무리 고급관리의 아들·손자·증손이라도 또 勳官의 자식이라도 부곡인의 피가 흐르면 3학에는 입학할 수 없다는 것이 위의 해당되는 글의 취지이다. 하물며 고급관리나 훈관은 커녕 그들과 전혀 무관한 보통 부곡인이라면 그는 아예 3학을 쳐다볼 수도 없었다고 보아야 실정에 맞는 이해라고 할 것이다.

혹은 부곡인이 律・書・算의 3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서인이면 이 3학과 주현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경우도 서인은 8품 이하의 자식과 함께 허용이 되었을 따름이었다. 기술학의 3학은 이 가운데 8품 이하 관리의 자식이 입학에 있어서 우선권이 있었다고 믿어진다. 한편 서인은 주현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기대되었을 것이다. 관리의 자식이 주나 현에 내려가 학교에 입학하려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3학은 말할 것도 없고 기술학조차도 관인계층이 독점하고 싶어하였던 것이 당시 법을 만든 위정자들의 입장이었다. 굳이 기술학의 입학에 있어서 단서를 달아 7품 이상 관리의 자식도 원하면 허용한다는 것도 그러한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서인은 주로 주나 현에 있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을 터이지만, 여기서도 향리가 우선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주나 현에 사는 주현민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향·소·부곡인은 마지막으로나 입학이 고려되었음직한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드문 일이었다고 보아야 온당할 줄 안다.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법조문을 중시하는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부곡인이 기술학이나 주현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이 지니는 현실적인 의미는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아무리 높은 관리나 훈관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그 몸에 부곡인의 피가 흐르는 한 3학에 입학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둘 필요가 있다. 당시 최고의 관직자나 훈관의 가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서조차 사정이 그러하였다면, 그런 배경이 전혀 없는 보통 부곡인들은 3학의 입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갔을 것이다. 물론 잡학의 경우에는 그러한 단서가 없었다. 오히려 입학자격이 인정된 서인 속에 부곡인이 포함될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서도 위에서 본대로 부곡인의 교육 가능성에 대한 국가의 냉정하고도 편협한 태도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 군현인이라고 하여도 국학에서 환영받는 계층은 아니었다. 그들은 3학에 접근할 수 없었다. 그러나 3학 입학의 자격에 관한 단서조항에 그들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것은 그들도 고급관리거나 훈관의 가문을 배경으로 할 수 있었다면 3학에 입학이 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런 조건을

구비하는 일이란 현실에 있어서 별반 의미가 없다. 다만 여기서 부곡인에 대한 국가의 부정적인 태도와 같은 것이 일반 군현인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가벼히 볼 수 없다. 이 점이 이 둘 사이의 신분상 지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현인에게도 주나 현의 학교에 입학하기는 어려웠다. 잡학에의 입학은 더욱이 그러하였다. 그렇더라도 주현인은 부곡인의 경우와 비교해서 말하면 유리한 여건 속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부곡인은 이처럼 군현인에 비하여 교육받을 기회에 있어서 불리하였다. 군현인은 국자감의 잡학에 간혹 입학할 수 있었겠지만, 부곡인은 3학은 물론잡학에 이르는 길도 설사 원칙은 아니었다고 해도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봉쇄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6)

부곡인은 군현인에 비하여 과거에 응시하는 일에 있어서도 불리하였다. 일반 군현인은 제술업을 제외하고는 과거응시에 제한이 없었다. 그런데 부곡인은 靖 宗 때에 그들에게 과거응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국왕의 判文이 있었다.

5逆·5賊·不忠·不孝·鄕·部曲·樂·工·雜類의 자손은 과거에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高麗史》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정종 11년 4월 判).

그러나 외조가 부곡인이었지만 國子監試를 통하여 관리가 된 문종 때의 鄭文의 예가 있었다. 그리고 위의 기록에서 정종 때 부곡인과 나란히 과거에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지 않은 잡류의 경우 고려 초기부터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부곡인도 고려초부터 과거응시가 허 용되었다고 보인다.<sup>97)</sup> 다만 정종 때의 예처럼 간간이 일시적으로 과거응시가 금지되는 적이 있었다. 하지만 때때로 일시적으로나마 부곡인이 과거에 응시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점은 역시 그들의 신분상 지위가 군현인과는 구별되었음 을 의미한다. 군현인에게는 그러한 금지조치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관직에 나아가 승진하는 데 있어서도 군현인과 달리 제약이 뒤따랐다. 정문은 부곡인 신분으로 마침내 刑部尚書·政堂文學(종2품)에까지 올랐

<sup>96)</sup> 국법이나 윤리적인 규범 따위를 위반하지 않았던 부곡인 자손들은 원칙적으로 국학에 입학이 가능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朴宗基, 위의 책, 51~52쪽).

<sup>97)</sup> 洪承基, 앞의 글(1975), 336~337쪽. 朴宗基, 위의 책, 49~52쪽.

지만, 부곡인 신분이라는 이유 때문에 淸要職인 右拾遺에 취임할 수 없었다. 98) 원칙적으로 말하면 부곡인은 승진 품계에 제한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部曲吏의 경우 그가 오를 수 있는 관계상의 상한은 5품이었다. 99) 부곡리가 그러하였다면 일반 부곡인은 그보다도 낮은 품계에서 승진을 멈추어야 하였을 것이다. 100) 그렇다면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부곡인에게는 7품에서 限職 제한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6품과 7품 사이에는 參上과 參下로 갈리는 큰경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실제로 7품을 상한선으로 해서 한직의 규제를 받는 신분층도 많았다. 101)

부곡인은 형사처벌을 받는 일에 있어서도 군현인에 비하여 어느 정도 불리한 입장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기록이 참고가 될것이다.

部曲人 및 奴가 주인 및 주인의 극히 가까운 친척의 尊長을 奸하면 和奸은 絞하고 强奸은 斬한다(《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奸非).

부곡인이 奴와 나란히 처벌의 대상이 되어 있다. 그렇다고 부곡인을 노비와 같은 신분상 지위로 해석할 수는 없다. 노비는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에 소유되어 있었지만 부곡인은 그러하지 않았던 것이다. 위 기록에서의 주인은 노에게는 소유주이지만 부곡인에게는 그러한 것일 수가 없다. 부곡인에게 주인이란 佃戶에 대한 田主와 같은 일종의 계약관계에서 생겨난 주인의 뜻으로 해석되어야 합리적일 것으로 믿는다.102) 그렇기는 하지만 군현인에게는 없고 부곡인에게만 보이는 이 처벌조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곡인의 신분상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잘 알 수는 없지만

<sup>98) 《</sup>高麗史》 권 95, 列傳 8, 鄭文.

<sup>99)《</sup>高麗史》권 125, 列傳 38, 姦臣 1, 柳淸臣傳에 보면 부곡의 東는 비록 공이 있어도 5품을 넘지 못하는 것이 나라의 제도였다는 설명이 보인다. 그런데 柳 淸臣은 高伊部曲의 東의 자손으로 3품에까지 나아갔다. 이 파격적인 승진은 그가 원나라에 사신으로 여러번 다니면서 고려를 위하여 세운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도 유청신 당대에 한하여 3품에 나아갈 수 있 게 하였을 따름이다.

<sup>100)</sup> 위에서 鄭文은 종2품까지 올랐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sup>101)</sup> 朴宗基, 앞의 책, 36~38쪽 참조.

<sup>102)</sup> 洪承基, 앞의 글(1975), 338~339쪽.

이로 미루어서 그 밖의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부곡인들이 더 불리하지 않았 을까 하는 추측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설명이 주로 부곡인에 한정되다시피 하였으나, 향이나 소에 사는 사람들의 신분상 지위도 부곡인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부곡인과 군현인은 모두 크게 보아서 양인이었고 기본적으로 농민이었으며 국가에 대한 부담도 형태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었다는점에서 같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상의 지위는 아무리 관대하게 보아도 서로동일하게 여길 수 없는 대목들이 있었다.

#### (3) 신분상 제약의 의미

부곡인의 신분상 지위는 군현인보다 낮았다. 그러나 그들의 경제적 지위까지 그러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들이 신분상으로 더 제약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도 경제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 그것들은 대체로 정치적인 것에 관계가 있었다. 국자감에의 입학, 과거에의 응시, 관직상의 승진 따위에 보이는 제약들이 모두 부곡인의 정치적 진출을 불리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었다. 형사처벌에서의 불리함도 크게 보면 정치적인 성격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사실은 부곡인이 안고 있던 신분상의 불이익이 경제적인 고려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배려의 소산이었으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다음 사료들을 검토하여 보기로 하자.

- ① 永州의 利旨銀所는 옛날에 縣이었는데 중간에 邑人이 나라의 명령을 어져서 縣이 폐하여지고 籍民되어 白金을 稅로 물면서 銀所라고 칭하여진 지가오래되었다. 이제 그 지방 사람 那壽也先不花가 어려서부터 궁중에서 宦寺가되어 수고로운 일을 많이 하여 그 공으로 鄕貫을 승격시켜 다시 縣으로 삼았다(崔瀣,《拙藁千百》권 2, 永州利旨銀所陞爲縣).
- ② 縣人 子和 등이 鄭叙의 처를 무고하고 縣吏 仁梁과 더불어 임금과 大臣을 저주하매 子和를 강에 던지고 縣을 내려 部曲으로 삼았다(《高麗史》권 57, 志 11, 地理 2, 陝州 感陰縣 의종 15년).

利旨銀所는 본래 현이었는데 현인 가운데 누군가가 나라의 명령을 어기는 바람에 所가 되었다고 한다. 한편 感陰縣은 縣人 子和 등이 국왕과 대신을 저주한 죄로 부곡이 되었다고 한다. 이지은소는 그 뒤 소민 가운데 환관으로

서 수고로운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서 그 공으로 다시 현이 되었다. 한두 사람의 범죄나 공훈이 계기가 되어 현이 소나 부곡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소나 부곡이 현이 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주·부·군·현 내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찾아진다. 예를 들면, 長湍縣은 단지 侍中 韓彦恭의 內鄕이라고 해서 목종 때 湍州가 되었다.103) 또 豊山縣은 태조 6년(923)에 縣人 元逢이 귀순한 공으로 順州가 되었다가 태조 13년에 견훤의 군대에 패배하였다고 해서 下枝縣이 되었다.104)

일부 주민이나 그 지역 출신 사람들이 국가에 대하여 죄를 짓거나 공을 세우면 연대책임이나 집단포상으로 이어지면서 지방행정단위의 격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죄를 짓거나 공을 세우거나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령 나라의 명령을 어겼다던가 국왕과 대신을 저주하였다던가 적군에 패배하였다던가 하는 범죄행위가 모두 그러하다. 또한 환관으로서 공이 있었다거나 侍中의 공훈을 인정하였다거나 귀순하였다거나 하는 것들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문제의 범죄는 국가나 국왕에 대한 불충으로, 그리고 문제의 立功은 그에 대한 충성으로 간주되었다. 처벌 또는 포상으로 관련자의 연고지를 昇降시켰다는 점에서 국가나 국왕에 대한 범죄자의 불충이나 입공자의 충성은 다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민의 불충이나 충성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그러한 승강조치가 범죄의 연대책임과 입공의 집단포상을 전제로 하였다는 점에서 지방민의 중앙정부에 대한 충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의 지방민 통제가 절실히 요구되었지만 실제는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고려는 지방관을 파견하기는 했지만 고을마다 그러하지는 못하였다. 향·소·부곡은 말할 것도 없고 당당한 현이라고 해도 지방관이 없는 屬縣이 전국에 광범위하게 널려 있었던 것이 당시 고려의 실정이었다. 이 점은 조선의 경우와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한두 지방민의 충성이나 불충의 결과를 전 지역민에게 나누어 지역의

<sup>103) 《</sup>高麗史》 권 56, 志 10, 地理 1, 長湍縣.

<sup>104) 《</sup>高麗史》 권 57, 志 11, 地理 2, 豊山縣.

격을 올리거나 떨어뜨린 조치는 고려의 지방민 지배에 보이는 이러한 취약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주・부・군・현 내부에서 일어나는 승강의 조치는 사실상 그렇게 큰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주민들의 국가에 대한경제적인 부담에 차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사회적으로 그들의 지위에 이렇다할 변화가 오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승강의 조치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은 향・소 부곡과 그 위에 있는 행정단위 사이에서였다. 이 경우승강의 기준이 된 것은 향・소・부곡이었다. 이 점에서 중앙정부의 지방민지배와 관련하여 부곡제의 운용이 주목되어야 하는 것이다. 향・소・부곡과 일반 군현 사이에서 행정단위의 지위의 변화는 보아온대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신분상의 변화를 의미하였다. 한두 사람이 중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전 주민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점만으로도 가혹한 처사일 것이다. 그런데그 처벌은 전 주민에 끝나지 않고 대대로 그 자손들 모두에게까지도 미쳤던 것이다. 게다가 처벌의 일환으로 그들은 대대로 정치적·사회적 제약을 안고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감수해야만 하였다. 또한 주민 한두 사람의 공훈으로 빚어지는 결과에 대하여는 반대의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건 납득이 잘 안될 정도로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럼에 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로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곡제를 운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민의 충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또 이 제도가 실제로 운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것이 중앙의 지방민지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일이기도 하다.

## 9) 진척·역민105)

고려는 驛站制를 실시하여 거의 전국을 망라하는 도로망을 가지고 있었다.106)

<sup>105)</sup> 津尺・驛民에 관하여서는 驛站制의 관점에서 쓰여진 內藤雋輔、〈高麗驛站考〉 (《歷史と地理》34-4・5, 1934;《朝鮮史研究》, 東洋史研究會, 1961)에 언급이 있고, 身分制의 관점에서 접근한 洪承基, 앞의 글(1975)에 설명이 보인다. 여 기서의 논의는 주로 후자의 글을 참고하였다.

<sup>106)</sup> 이 驛站制의 실제에 관해서는 內藤雋輔, 위의 글 참조.

도로 가운데 정치적·군사적·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요로에는 驛이 두어졌고, 교량으로 이어지지 않는 하천에는 津이 설치되었다. 그러므로 전국적인 도로망은 진에 의하여 보완되는 驛路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다. 한편 역이나 진은 일반 군현이나 부곡처럼 행정단위이기도 하였다. 역에 사는 주민은 驛民이라고 일컬어졌고, 진에 사는 사람들은 흔히 津尺으로 불리었다. 그리고 이 둘의 신분상 지위는 거의 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郡·縣人과 津·驛·部曲人이 交嫁하여 낳은 자는 모두 진·역·부곡에 속하게 하고 진·역·부곡인과 雜尺이 교가하여 낳은 자는 똑같이 나누고 남는 수는 母에 따른다(《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戶婚).

교가소생의 귀속을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진척과 역민은 부곡인과 나란히 언급되고 있다. 이것은 이 셋의 신분상 지위가 동일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 지위는 잡척과도 비슷하게 견주어졌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지위가 군현인의 경우와는 일단 구별되었다. 그들과 군현인 사이에 혼인이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그 혼인에서 얻어지는 자식들의 귀속처리를 보면 진척과 역민의 신분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역민은 법제적으로는 驛戶로 파악되기도 하였다.

申靑은 ··· 多仁縣 伐里驛의 吏였다. (중략) '靑은 본레 驛戶였는데 이름을 고치고 役에서 도피하여 함부로 큰 벼슬을 받았습니다'(《高麗史》권 124, 列傳 37, 嬖幸 2, 申靑).

역호에는 역리도 포함되었는데 역호가 국가에 지고 있던 역이 站役이었다. 물론 역은 대대로 세습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참역은 요역의 한 형태였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국가의 중대사를 보고하는 따위의 일이 그 주요 내용을 이루었다. 그리고 생산물의 운반도 역호의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참역은 역리와 그 밖의 일반 역민이 함께 져야 하는 것이었지만 이들이 지는 참역은 형태가 각기 달랐다. 역민은 직접 노역을 담당하였고, 역리는 그것을 지휘・감독하면서 驛務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군・현의 吏와는 구별되었지만 그래도 진의 吏와 함께 공식적으로는 長이라고 불리었다.107) 그들은 역민의 장으로서 공관에서 역무를 처리하

<sup>107) 《</sup>高麗史》 권 94, 列傳 7, 崔士威.

는 사람들이었다. 한 역에 배치된 역리의 수는 역의 크기에 따라서 2~3명 정도 였는데,<sup>108)</sup> 그들은 일반 역민과는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역리에게는 外役田이 주어졌고, 역에는 公須田과 紙田이 지급되었다. 일반역민들에게는 아무런 경제적인 처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경작하여 생계를 꾸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역리에게 주어진 외역전과역에 지급된 공수전과 지전의 경작은 그들이 맡았을 것이다.

'여러 道의 館·驛의 公須田租는 大路가 100石, 中路 50石, 小路가 30石으로 하여 儲積하여 두고 廩給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組는 각각 州倉에 수송하도록하라'(《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租稅 문종 2년 12월 判).

공수전의 조는 역민들이 경작하고 냈을 것이다. 공수전은 국유지였다고 보여진다. 전호가 무는 租는 대체로 생산량의 1/2에 해당되었으므로 역민들은 조액을 빼고 남는 1/2로써 생계를 꾸려갔을 것이다 이것은 佃作하는 경우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역민 가운데에는 자신의 토지를 자작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믿어진다.

'管內의 龍泉驛이 지난번 수해를 입어 公館과 民家가 모두 漂沒하여 이제 바야흐로 옮겨서 館宇를 새로 짓는데 民力을 다 소모하고 있사오니 청컨대 올해와 내년 두 해의 租稅를 감면하여 주소서'(《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賑恤 災免之制 문종 15년 정월 韓丁翊奏).

龍泉驛民들에게 2년간 조세를 감면하여 주자는 의견이 보이고 있다. 이로써 역민들이 국가에 조세를 내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국가에 조세를 내는 토지는 역민들의 소유경작지였을 것이다. 일반 역민들은 自作을 하건 佃作을 하건 경작을 통하여 자신의 생계를 꾸려갔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농민이었다. 그들이 貢賦를 포함하여 그 밖의 부담도 지고 있었는지는 알수가 없다. 하여튼 站役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임무였음에는 틀림없다. 참역은 대대로 세습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申靑은 일명 松이니 多仁縣 伐里驛의 吏였다. 일찍이 元에 들어가 瀋王 톰의 從者 가 되어 사랑을 받았다. 충숙왕이 원에 행차함에 미쳐서 瀋王邸로 行宮을 삼으심에

<sup>108) 《</sup>高麗史》 권 82, 志 36, 兵 2, 站驛 성종 2년 判.

靑이 왕을 만나뵙고 前散員에서 護軍에 제수되고 累遷하여 上護軍이 되었다. (중략) 충혜왕이 즉위하자 權省 洪彬을 시켜 청을 理問所에 가두고 耆老府院君權溥 등에게 명하여 청의 죄를 들어 行省에 고하게 하였다. (중략) '청은 본래驛戶였는데 이름을 고치고 役에서 도피하여 함부로 큰 관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첫번째 죄입니다. 청은 멀고 가까운 親屬들을 거두어 站役을 면제하게 하였습니다.…이것이 두번째 죄입니다'(《高麗史》권 124, 列傳 37, 嬖幸 2, 申靑).

申靑은 驛吏 출신의 驛戶였다. 그가 도피하여 죄를 짓게 된 역은 그가 그와 친족들로 하여금 벗어나게 한 참역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었다. 참역을 벗어나거나 남에게 벗어나게 하거나 모두 범죄가 되었다. 그런데 참역은 한사람에게 부과된 것이 아니고 군역이 그러하였듯이 멀고 가까운 친족들이모두 그 부담을 지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멀고 가까운 친족이 역호의 구성의 범위를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참역이 당사자에 그치지 않고 대대로 세습되었음을 말하여 준다. 세습의 원칙을 깨는 것이 범죄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나 그런 원칙이 지켜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신청은 끝내 치죄의 대상이 되기는 하였지만, 참역을 벗어나는 데 일단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는 벼슬길에 나아가 上護軍에 오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출세는 당시가 원의 간섭기로서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 있었다는 점, 그가 국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 또 그가 일반 역민이 아닌 역리였다는 점 따위를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가 참역을 피하고 벼슬길에 나아간 것이 죄를 짓는 일이라고 탄핵을 받았다. 고려 전기에 역민들은 참역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관리가 되는 일도 금지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에 맞을 듯하다.

# 10) 양수척 (화척·재인)

楊水尺에 관한 기록은 고려 후기에 나타나지만, 그 기록을 통하여 고려 전기 이래로 그것이 실재하여 왔었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 李至榮이 朔州分道將軍이 되었는데 楊水尺이 興化 雲中道에 많이 살았다. 지영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본래 賦役이 없으니 가히 나의 妓生 紫雲仙에게 소속시 키겠다'고 하였다. 드디어 그 이름을 編籍하고 頁物을 징수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지영이 죽으니 忠獻이 또 자운선을 妾으로 삼고 人口를 계산하여 공물을 징수함이 더욱 심하므로 양수척 등이 크게 원망하였다. 거란병이 침구해 오자 맞아 항복하고 향도하였기 때문에 산천의 요해와 도로의 원근을 모두 알게 되었다. 양수척은 태조가 백제를 칠 때에 제어하기 어려웠던 遺種으로 본래 貫籍과 부역이 없었다. 즐겨 水草를 따라 옮겨사는 것이 無常하여 오직 사냥을 일삼고 柳器를 엮어 파는 것을 業으로 삼았다. 대개 妓의 種族은 본래 柳器匠의집에서 나왔다(《高麗史》권 129, 列傳 42, 叛逆 3, 崔忠獻).

위의 사료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첫째, 양수척은 태조 때 제어하기 어려웠던 후백제계의 후손이었다. 둘째, 양수척은 定處・貫籍・賦役이 없었다. 셋째, 양수척은 사냥・유기제조 및 기생의 일로써 생업을 삼았다.109) 그런데 양수척의 계보에 관하여 위의 사료에 보이는 설명은 오늘날 거의인정되고 있지 않다. 관련 기사가 양수척이 고려초에도 있었으리라는 사실은말하여 주고 있지만, 양수척이 후백제계의 후손이라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양수척은 반수렵민족인 여진계나 유목민족인 거란계의 자손으로 밝혀졌으며110) 이 사실은 그 뒤 재확인되었다.111) 양수척이 본래 여진족이나 거란족의 遺種이었다는 견해가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112)

양수척은 고려초부터 있어 왔는데 여진족이나 거란족의 후손이었다. 그들은 사냥과 유기제조 및 창우의 일로써 생업을 삼았다. 고려 말기가 되어서는 창우의 일을 전업으로 하는 재인이 떨어져나가 독자적인 계층을 이루었으며, 나머지 양수척은 화척으로 바뀌어 사냥과 유기제조와 도살의 일로써 생업을 삼아가게 되었다.

그들의 생업 가운데 유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일은 공장이나 상인의 그것

<sup>110)</sup> 李丙燾,《韓國史》中世篇(震檀學會, 1961), 346쪽.

<sup>111)</sup> 姜萬吉,〈鮮初白丁考〉(《史學研究》18, 1964), 493~494\.

<sup>112)</sup> 조선초의 기록에서도 양수척에 계보가 닿는 白丁·禾尺·才人 따위를 우리와 다른 인종으로 보거나 胡種으로 이해하고 있거니와 양수척의 기원을 여진족 이나 거란족에서 찾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인다(《世祖實錄》권 3, 세조 2년 3월 정유 梁誠之上疏;《成宗實錄》권 69, 성종 7년 7월 기미 下書 및 권 252, 성종 22년 4월 무진 金永濡上疏 참조).

을 연상케 한다. 또 墨尺에서와 같이 공장도 尺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었고, 雜尺이라고 했을 때 공장과 양수척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다. 양수척의 사회적 지위를 공장이나 상인과 견주어 보는 일이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수척에게는 공장이나 상인과는 다르게 정처가 없었고, 그에 따라 관적도 없었으며 부역마저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양수척이 정처가 없어서 이주가 자유로우며 부역이 없어서 특권적인 계층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한 사실들은 모두가 나라에서 그들을 국민 외의 존재로 파악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국민으로서의 지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간혹 그들이 공장이나 상인과 비견되는 경우가 있었다고는 해도,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었다. 그들이 남에게 소유되어 팔리기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으므로 노비와는 구별되었고, 이 점에서 천인은 아니었다. 요컨대 그들은 양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양인 가운데 가장 천시된 존재였다.113)

### 11) 노 비114)

### (1) 신분상 특성115)

고려의 노비가 남에게 소유되어 매매・증여・상속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今石二三雄、〈高麗朝に於ける奴婢について〉(《桑原記念東洋史論叢》, 1930).

龜田敬二、〈高麗の奴婢に就て〉(《靑丘學叢》26・28, 1936・1937).

<sup>113) 《</sup>世宗實錄》권 22, 세종 5년 10월 기묘 兵曹의 啓에서도 양수척에 계보가 이어지는 才人·禾尺을 언급하면서, "才人과 禾尺은 본시 良人이었지만 하는 일이 賤하여 부르기를 특수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들이 천시된 것은 하는 일이 청하였기 때문이었다. 신분적으로 그들은 본래 양인이었다.

<sup>114)</sup> 고려 노비에 관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周藤吉之, 〈高麗末期より朝鮮初期に至る奴婢の研究〉(《歷史學研究》9-1・2・3 ・4. 1939).

李相佰,〈'賤者隨母'考一良賤交婚出生者의 身分歸屬問題—〉(《震檀學報》25· 26·27, 1964).

洪承基. 앞의 글(1975).

林英正、〈麗末 農莊人口에 대한 一考察〉(《東國史學》13, 1976).

金世潤、〈高麗後期의 外居奴婢―所謂'李太祖戶籍'을 중심으로―〉(《韓國學報》 18, 1980).

洪承基. 앞의 책(1983).

李載昌、〈寺院奴婢考〉(《黄義敦先生古稀記念 史學論叢》, 1960).

여기서는 노비를 대표할 수 있는 공노비와 사노비를 중심으로 설명하겠는데 주로 위의 필자의 글에 의거하고자 한다.

<sup>115)</sup> 洪承基, 위의 책 참조.

일찍이 밝혀진 바 있다.116) 그것은 노비의 법제상 지위가 재물로 간주되었음을 뜻한다. 재물로 간주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노비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 그것은 또한 노비만이 가지는 특성이었고, 그 가운데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바로 노비는 천인이었다. 그러나 노비가 반드시 재물로 간주되기만 하였던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으로서 그리고국민으로서의 지위도 동시에 노비에게 인정되었다. 이 점에 유의하면서 노비의 신분상 특성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런데 노비는 소유주에 따라서 사노비・공노비・사원노비로 나누어졌다. 이들 각자의 신분상 특성은 달랐다. 이셋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사노비와 공노비였다. 여기서는 이 둘을 나누어서검토하는 일이 유익할 것이다.

사노비는 주인의 호적에 부적되어 종파 및 그 소생의 이름과 나이, 전래의 변별, 그리고 奴妻・婢夫의 양천이 파악되었다.117)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사 노비가 주인소유의 노비 신분임이 확인되었다. 솔거노비의 경우는, 부적되어 있는 주인의 호적이 그의 현거주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 나 외거노비는 그의 현거주지를 확인시켜 주는 별도의 호적이 현거주지에도 있었다.118) 한편 사노비는 이름만이 있었을 뿐이고 姓은 없었다. 그리고 사 노비에게는 국가에 대한 公役의 의무가 없었다.

사노비의 신분 귀속은「一賤則賤」의 원칙에 따라서 부모 가운데 한 쪽이라도 노비이면 그 소생은 노비가 되었다. 사노비에 대한 소유권은 賤者隨母法에 따라서 어머니의 소유주에 귀속되었다. 다만 어머니가 양인이면 아버지의 소유주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다. 한편 사노비에게는 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다. 그리고 사노비는 주인이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기도되는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법의 보호도 받았다.

<sup>116)</sup> 龜田敬二, 앞의 글, 100~124쪽.

<sup>117)</sup> 외거노비가 주인의 호적에 부적됨이 없이 독립해서 호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金世潤, 앞의 글, 65쪽).

<sup>118)</sup> 金錫亨、《朝鮮封建時代 農民의 階級構成》(과학원출판사, 1957), 86쪽. 武田幸男、〈朝鮮の律令制〉(《岩波講座 世界歴史》6, 岩波書店, 1971), 74쪽. 洪承基、앞의 책, 21쪽.

사노비의 주인에 대한 배반은 용납되지 않았다. 사노비의 도망·訴良, 주인에 대한 경멸·모욕·반항·모함·무고 따위가 주인에 대한 배반으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사노비의 주인에 대한 복종이 거의 절대적이었음을 말해준다. 주인의 범죄조차도 사노비는 고발할 수 없는 정도였다. 그러나 주인이 반역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모의하였을 때에는 반대로 그것을 고발하는 것이 사노비의 의무였다. 이것은 국왕의 통치를 받는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사노비들에게 최소한도나마 인정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공노비는 전쟁 포로에서 얻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반역·적진투항·이적행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그의 가속 및 사노비가 관몰됨으로 해서 발생하였다. 범죄행위가 계기가 되어 귀족층에서 공노비가 되는 일이 흔히 있었다는 점은 주목이 된다. 이것은 사노비가 대체로경제적 빈곤으로 말미암아 양인계층에서 주로 보충되었다는 점과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공노비는 누구나 독자적인 경리를 가지고 독립된 가계를 꾸려 나갈 수가 있었다. 사노비의 대표적인 존재인 솔거노비에게는 자신의독자적인 경리가 없었다. 이 점에서 공노비는 전반적으로 보아서 더 나은 처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노비는 값이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실제로 매매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다. 이 사실은 사노비의 경우와 크게 다른 점이다. 이 점에서 말한다면 공노비는 같은 노비이기는 했지만 사노비에 비하여 보다 높은 신분상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의 그러한 차이가 본질적인 것일수는 없다. 사노비가 적물되어 공노비가 되거나 공노비가 사급되어 사노비가되는 예가 드물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공노비는 10여 세 정도의 연령층에서 실질적 부담을 지기 시작하였다. 이 점에서 일반 양인농민보다 그 부담의 기간이 길었다. 공노비는 丁의 연령층이 끝나는 59세까지 부담을 졌다가 60세의 연령층에 이르면 거기서 벗어났다.119)이 점에서는 무기한 부담을 져야 했던 사노비와 비교하여 공노비가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신분상의 특성을 가지고 사노비와 공노비의 신분상 지위를 비교하여 보면 전반적으로 공노비의 경우가 보다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그 둘

<sup>119)</sup> 이 점은 일찍이 今石二三雄, 앞의 글에서 주목된 바 있다.

사이에 본질적인 격차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또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들 사이에서도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고, 그에 따라 그 각자가 누리는 신분적 지위가 다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몇 가지 특성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그들의 신분상 지위를 견주어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지는 대목들도 있다.

#### (2) 사회·경제적 지위<sup>120)</sup>

사노비 가운데에는 주인과 같이 살면서 주인의 사역에 대비하는 사람들과 주인과 떨어져서 살면서 주로 주인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전자는 솔거노비였고 후자는 외거노비였다. 솔거노비는 주인의 경리 속에서 주인에 의하여 최소한의 의식주가 해결되었을 뿐이며, 독자적인 경리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들은 국가에 대한 공과·공역의 의무는 없었지만, 주인에 의한 노동력의 수취는 거의 기한이 없고 무제한적이었다. 또 그들에게는 자신의 의지에 따른 행동도 거의 없었다. 그들은 노비 전체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었다.

한편 외거노비는 그 대부분이 농경에 참여하였다. 경작토지는 대개의 경우주인의 소유 토지였다. 이 토지를 경작하고 그 주인에게 租를 바쳐야 했지만, 그 나머지 소출은 토지를 경작한 외거노비의 몫이었다. 이 때 그들이 무는 조의 크기는 양인 전호가 무는 크기와 비슷하여 소출액의 1/2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외거노비는 그 나머지 1/2의 몫을 가지고 독자적인 경리를 세워서 스스로의 생계를 꾸려갔다는 이야기가 된다. 조 이외에 주인에게 현물이나 노동력을 어떤 형태로든 별도로 냈음직하지만 잘 알 수가 없다.121) 다만 외거노비가 주인에게 지는 부담의 전체가 양인 전호가 국가에 대하여 지는 공과・공역의 부담 전체와 비교하여 커다란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들은 주인의 간섭이나 사역을 받을 기회가 적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재화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는 어느 정도

<sup>120)</sup> 이에 관한 설명은 주로 洪承基, 앞의 책 참조.

<sup>121)</sup> 姜晋哲은 공노비 가운데 외거노비도 徭役과 身貢의 부담을 국가에 지고 있었다고 보았다(姜晋哲、〈農民의 負擔〉, 앞의 책, 302~303쪽).

확보할 수 있었다고 믿어진다.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노비 가운데에서 가장 높았다. 그것은 일반 양인 전호와 견주어도 큰 손색이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공노비 가운데에도 주로 국유지를 경작하는 외거노비가 있었는데, 그들은 사노비의 외거노비와 처지가 대체로 비슷하였을 것이다.

공노비 가운데 외거노비 이외의 나머지는 대체로 관아에서 주로 사령에 대비하였다. 이러한 일을 주임무로 삼았던 공노비를 供役奴婢로 부를 수 있다. 공역노비는 10여 세부터 노동력을 제공하여야 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공역노비는 일정한 급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들은 그 급료를 가지고 자신의 경리를 세워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공역노비가 받는 급료의 액수는 양인 신분으로 같은 직책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낮은 것이었다. 이것은 공역노비가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더 적은 급료를 받았음을 말하여 준다. 그들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솔거노비보다는 높았고, 외거노비에 비해서는 낮았다. 솔거노비와 외거노비의 중간쯤에 공역노비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마련되어 있었다.

## 12) 신분제도의 성격

고려의 사회구성원은 누구나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이행하도록 기대되었다. 그 역할은 흔히 從으로도 일컬어졌는데 씨족을 기본 단위로 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역할은 대대로 세습되었다. 동일한 사회적 역할을 세습적으로 수행하는 무수한 씨족들을 묶어서 편성한 것이 신분계층이었다. 이 때 편성의 단위가 된 것이 班이었다. 그렇다고 모든 신분계층이 다 반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편성된 신분계층은 대개가 지배계층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신분제도가 지배계층 위주로 그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고려 신분제도를 班體制로 이해하여 큰 무리는 없다. 여하튼 신분계층이 저마다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러한 역할에는 귀함과 천함이 기준이 되어 높고 낮은 차이가 있었다. 어느 것은 귀하고 어느 것은 천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차이가 두어졌다는 뜻이다. 그 차이에 따라서 어떤 역할은 사회적 특권(권리)으로서의 의미가 제약(의문)으로서의 그것보다 크기도 하고 어떤 역할은 그 반대가 되기 도

하였다. 이 사회적 특권이나 제약의 크기에 따라서 신분계층의 사이에 차등이 두어졌다. 신분계층마다 신분상 지위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뜻이다. 신분계층 사이에는 장벽이 놓여서 서로 넘나들 수 없게 되었다. 신분계층은 제각기 서로 다른 신분상 지위에서 그것이 사회적 권리를 뜻하건 반대로 의무를의미하건 저마다 나름대로 부과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분사회의 안정과 유지에 기여한다고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려의 신분제도가 시행되는 데 있어서 위정자들이 각별히 유의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신분계층 사이에 장벽을 세우고 이를 지키는 일이었다. 위정자들은 신분계층 사이의 이동을 억제하고 각별히 낮은 신분 계층이 높은 신분계층으로 상승하는 것을 막는 일에 신경을 썼다. 신분이동의 억제 특히 신분상승의 방지는 하나의 원칙이었다. 이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철저하기로 유명한 것은 신라였다. 골품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진골에서 6두품으로 내려오는 예는 더러 있었지만 6두품이 진골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었다. 고려라고 해서 그 원칙이 가볍게 다루어진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원칙에 반대되는 현상들이 고려의 경우에는 많았다. 다음에 드는 것은 그에 관한 비근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樂工으로서 3, 4명의 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한 아들로서 業을 잇게 하고 그나머지는 注膳·幕士·驅史에 속하게 하였다가 陪戎副尉·校尉에 옮기되 耀武校尉에 이르러 한정시켜라(《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限職 문종 7년 10월 判).

신분이동의 억제나 신분상승의 방지라고 하는 원칙대로라면 악공의 3, 4명이나 되는 아들들은 모두 父業을이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위의 사료 는 오직 한 아들만을 위의 원칙에 맞게 조치하였을 따름이다. 나머지 2~3명 의아들들은 雜類가 되고 더 나아가 요무교위로 한정하여 武散階로 나아가게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高麗史》의 위와 같은 限職條만 보아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한직의 규제를 받는 대부분의 신분계층은 실제에 있어서 品官이 되어 관인계층으로 나아가서는 안되는 사람들이었다. 예컨대 잡류는 그저 吏族으로 있으면서 吏職을 세습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공장·승려·군인·부곡리 등의 예가 역시 모두 그러하였다. 신분이동의 억제나 신분상승의 방지라고 하는 원칙

에서 말하면 그들은 한직이라는 것부터가 무의미한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원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직제도가 시행된 것은 바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였다. 사실 과거제도나 選軍制度도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122) 결국 신분이동의 억제나 신분상승의 방지가 중요하였듯이 그 허용도 역시 그러하였으며, 전자가 원칙으로서 중시되었듯이 후자도 또한 그러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원칙이 신분제도의 운용에 동시에 적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고려의 신분제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번째로 중요한 사실이다. 그런데 고려의 위정자들은 서로 모순되는 두 원칙을 충돌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들은 이 둘이 균형과 타협과 조화의 관계에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신분이동을 억제하고 신분상승을 방지하는 원칙을 우선으로 삼았으며 그것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이 원칙에 훨씬 더 기운 상태에서 신분이 둘 사이에 조화의 관계가 성립되었던 것이다. 이 점이 고려신분제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번째로 중요한 사실이다.

한직제도를 운용해서 잡류·승려·군인·공장·부곡리의 자손들에게 어느 선까지는 관직에 나아가게 하였지만, 각각의 신분계층을 떠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또 그렇다고 간직에 나아간 그들로부터 관인계층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도 아니었다. 과거제도나 선군제도의 운용 에 있어서도 비슷한 설명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요컨대 고려의 신분제도는 신분상승을 방지하는 원칙과 그것을 허용하는 원칙이 동시에 적응되어 시행된 제도였다. 두 원칙은 본래 서로 모순되는 것 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조화와 균형의 관계에 있었다 이 조화와 균형은 신분 상승을 억제하는 원칙에 압도적인 비중을 두면서 이루어졌다. 신분상승을 억 제하는 원칙에 훨씬 더 무게가 두어진 속에서 이루어진 균형이었고 조화였던

<sup>122)</sup> 李基白은 고려의 신분제도가 세습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비교적 유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身分의 변동이 부단히 행해지고 있었음도 설명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주로 과거제도와 관련지어 鄕吏와 그리고 選軍制度와 관련지어 軍人의 경우를 설명하였다(李基白,〈高麗時代 身分의 世襲과 變動〉, 앞의 책, 971, 96~99쪽 참조).

것이다. 이러한 균형과 조화의 관계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고려의 신분제도였다. 무신란의 발생은 바로 이러한 균형과 조화의 관계에 틈이 생겨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러한 관계에 기초한 사회적 평형에 동요가 생겨났음을 뜻한다.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班體制의 이완이었다.

〈洪承基〉

### 2. 가족제도

### 1) 가족과 혼인

#### (1) 가 족

고려시대의 가족에 대한 자료로는 소수의 단편적인 사례나 고려 중·후기의 戶籍, 가족과 관련된 법제, 그리고 혼인제도 및 친족제도 관련 자료 등이 있다. 또한 신라말의 촌락문서나 몇몇 사례자료 등도 바로 고려시대로 연결되는 시대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고려시대 가족의 검토에 참고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단편적인 것이고, 그 자료 자체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아서 쉽사리 당시의 현상을 드러내주지 않았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기왕의 연구서에서는 고려시대의 일반적인 가족구성을 소가족적인 것으로 보기도 했고, 그와는 달리 대가족적인 것으로 보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가족구성 및 그 가족이 존재하게 되는 배경으로서의 친족제도에 대한 해석에서는 더욱 여러 가지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단편적인 자료는 하나의 현상을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는다. 고려시대의 가족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들로부터 정리된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 당시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역사적 현상의 완성된 모습에 보다 가까이 접근해 가는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제도나 친족제도도 사회의 다른 부분들에서 흔히 그렇듯이 규격화되어 있는 단일성을 갖기보다는 종종 변이적인 요소들이나 이질적인 요소들이 일부 혼재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당시 역사적 흐름

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가족의 구성 형태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 가족범위를 넘는 친족들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당시의 일반적인 가족이 소가족이라 해도 촌락내에서 다른 친척들과 긴밀한 연고관계 속에서 생활한다고할 때, 그것은 현대의 소가족과도 다른 존재양태를 갖는 것이다.

그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고려시대의 가족은 單婚的인 부부와 미혼 자녀들로 이루어진 부부가족이 기본적인 단위가 되어 때로는 夫妻의 노부모나 생활 능력이 없는 가까운 미성년 친척 등을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 대체로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확대 가족적인 구성도 일부 소수의 경우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의 가족을 대가족으로 파악하는 이해에는 고대 이후에도 부계 친족 집단과 함께 대가족의 존재가 조선시대까지도 계속되었다는 가설적 이해가 전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실증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보면 고려시대로 들어오기 직전 신라말에도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중앙귀족들의 경우 신라 하대에 오면 왕위를 둘러싼 정쟁의 격화와 함께 친족집단이 분열되고, 4촌간에도 서로 다른 세력으로 나뉘어지는 양상이 나타난다.1)

소가족 단위로 친족집단이 분해되는 현상은 하층민들과 지방사회에서도 진행되었다. 신라 중대와 하대 이후에는 부모와 미혼 자녀 또는 기혼 자녀의 하나가 노부모를 모시고 그 안에서 家 단위를 이루고 있는 농민들의 사례가 발견된다.<sup>2)</sup> 특히 이들의 경우는 도움을 받을 만한 친족공동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고단하고 한미한 처지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존재는 친족공동체의 분해가 진행됨에 따라 부부와 미혼 자녀 그리고 때로는 노부모나 미혼 형제자매가 포함되는 소규모 가족들이 출현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친족공동체가 소규모 가족단위 이하로 분해되고 있었던 현상은 중대말~하 대 전반 무렵 西原京 부근 촌락의 상황을 전하는 신라촌락문서에서도 나타난

<sup>1)</sup>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盧泰敦,〈羅代의 門客〉(《韓國史研究》31·32, 1978).

崔柄憲. 〈新羅下代社會의 動搖〉(《한국사》3. 국사편찬위원회. 1976).

 <sup>《</sup>三國遺事》 권 5, 孝善 9, 真定師孝善雙美・大城孝二世父母・孫順埋兒.
《三國史記》 권 48, 列傳 8, 向徳・聖覺・孝女知恩.

다. 신라촌락문서에서는 본래 그 기원이 대가족적인 단위에 기초하여 성립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孔烟의 편제가 그 내부에 8~14인에 달하는 평균 인수를 포함하며 남아 있다. 하지만 이미 실질적인 가족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거주의 기본 단위를 보여주는 移住의 단위는 소가족적인 것으로 되어 있었다. 3) 촌락 문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소가족적인 단위로의 분해현상은 《三國史記》나《三國遺事》등에서 나타나는 친족공동체 및 그 내부의 확대가족의 분해 그리고 소가족 단위의 대두라는 사실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고려시대의 가족에 대한 자료로서 주목되는 것으로는 우선 족보 등에 전 재되어 온 고려시대의 戶口單子나 准戶口 및 國寶戶籍 등의 37개 호적 자료 가 있다. 여기서 먼저 유의해야 할 것은 고려시대의 「戶」와 「가족」의 관계 이다. 호와 가족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바로 일치시켜서는 안되는 면 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호로 지칭된 대상에는 자연호와 編戶가 있었고, 편 호로서의 호는 가족과는 다른 것이었다. 편호는 행정적으로 편성된 호로서. 가족은 보통 그것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존재하였다. 예컨대 우왕 원년(1375) 2월에 외방 각처의 民戶를 京中에서 행해지는 법과 같이 대・중・소의 3등 급으로 나누고, 중호는 둘로써 1(戶)로 삼고, 소호는 셋으로써 1(戶)를 삼는 다4)고 하였는데 이는 편호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공민왕 5년(1356)의 敎 에 3家로써 1戶로 삼아 無事하면 3家가 돌아가며 番上하고, 유사시에는 3家에 서 1丁씩을 내며, 위급할 때는 家의 丁 모두를 징발한다는5) 것에서의 戶는 바 로 그러한 편호이다. 편호의 방식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고려 전기에는 문종대에 州鎭入居軍人에게 예에 따라 본관의 養戶 2인씩을 주도록 한 것에서6) 그 예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편호들은 가족으로서의 「家」와는 분 명히 다른 것이니, 이 편호로서의 호를 가족과 구분하지 않는 해석은 큰 잘못 이다. 편호의 대표적인 것은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은 軍戶였는데, 고려시대의 軍籍 등은 그러한 군호로서의 편호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통 戶口籍 또는 戶籍으로 불리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家」로서도

<sup>3)</sup> 盧明鎬、〈羅末麗初 親族組織의 변동〉(《又仁金龍德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1988).

<sup>4)《</sup>高麗史》 권84, 志38, 刑法1, 戶婚.

<sup>5) 《</sup>高麗史》 권 81, 志 35, 兵 1, 兵制 신우 9년 8월.

<sup>6) 《</sup>高麗史》 권 81, 志 35, 兵 1, 兵制 문종 27년 3월.

지칭된 가족을 단위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법제와 실제는 시기에 따라 불일 치의 정도가 심할 수 있듯이 호적의 호도 항상 실제의 가족과 일치하는 정 도가 같지는 않았던 것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남아 전하는 고려시대의 호적자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군은 하나의 부부가족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子와 女의 부부가족들 중의 어느 하나가 노부모를 모시는 단위로 되어 있는 戶이며, 이들은 소가족적인 단위로 볼 수 있다. 제2군은 외형은 단일 부부가족 단위이나 고령인 자녀들이 미혼인 상태로 기록된 것은 기록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로 보인다. 제3군은 2개 이상의 부부가족 단위를 포함한 호이다. 그런데 고령의 자녀나 형제자매의 경우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가 기록되지 않아 미혼인 것처럼 되어 있는 기록상의 문제는 제3군에서도 존재한다.7)

제2군·제3군의 호들은 1333년 이후 모두 여말의 호적자료들로, 이들은 여말의 통치질서의 문란에 따른 호적기재상의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의 호들에도 누락은 있었겠지만,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심히부실한 기록은 여말의 상태로 이해된다. 제2군과 제3군의 호적기록에 누락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우선 고령의 자녀들의 경우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들 중의 상당수는 배우자와 그들 자녀들의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러한 누락은 다른 자녀들을 통해 확인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제2군의 호들의 대부분도 2개 이상의 부부가족 단위를 내포하고 있는 셈이고, 제3군의 경우는 내포하는 부부가족 단위가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두 개 이상의 부부가족 단위를 포함하는 제2·3군의 호들과 같은 경우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들을 하나의 대가족단위로 이해하기도 하였다.8)

<sup>7)</sup> 고려시대의 가족제도와 관련한 호적자료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盧明鎬, <高麗時 代 鄕村社會의 親族關係網과 家族〉(《韓國史論》19, 서울大 國史學科, 1988) 참조.

<sup>8)</sup> 許興植、《高麗社會史研究》(亞細亞文化社, 1981), 229・241・294쪽 및 崔在錫、《韓國家族制度研究》(一志社, 1983)에서도 '雙系的 傍系家族'이라 하여 역시 하나의 가족단위로 파악하였다. 이처럼 戶籍 작성에서 대상으로 하는 戶의 실체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자연호로서의 가족 내지 家口(House Hold)로 이해되어 왔으나, 조선시대 戶의 실체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를 한 韓榮國、〈朝鮮王朝 戶籍의 基礎的 研究〉(《韓國史學》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에서는 조선시대 호적의 戶는 그실체가 家屋(烟戶)이었다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의 가족단위로 이해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우선 두 개 이상의 부부가족단위를 내포한 호적들인 제2·3군은 모두 고려 말기의 것들인 반면에 1200년대 호적들만 해도 모두 소가족적인 단위로되어 있다는 점이다. 驪州李氏 족보에 수록된 일련의 호적자료에서도 1237년과 1270년의 것은 제1군에 속하는 한편, 1333년과 1372년의 것은 제 2군에속한다. 의 신라촌락문서를 비롯한 통일신라 후반 이후의 자료에서 이미 소가족단위의 기능이 강화되었음을 고려한다면, 1200년대 호적자료들은 소가족적인 단위가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상황과도 연결된다. 그렇다면 제 2·3군의호적자료를 대가족적인 단위의 반영으로 보는 것은 고려말에 갑자기 대가족적인 단위가 발달했다는 부자연스러운 이해를 낳게 한다.

이들 호적자료에서 보면 1300년 이후의 총 34호 중에서 약 3/4 정도가 두 개 이상의 부부가족 단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려말의 호적자료가 갖는 기록상태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제2·3군의 호적들 중에는 실제의 대가족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도 일부 있겠으나, 그 대다수는 실제로는 소가족 단위로 분가되어 여러 개의 별도의 호들을 이루는 것을 하나의 호로 파악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여러 개의 호로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 하나의 호로서만 파악됨으로써 호구 파악에서 「□」만이 아니라「戶」 단위가 누락된 것이었으니, 실제로 그러한 호의 누락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소가족적인 단위가 거주상의 기본 단위가 됨은 제2·3군의 호의 구성상태에서도 추정된다. 제2·3군의 호들에는 아들과 딸 및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내외손들이 내포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모든 호들이 戶主의 자녀 및 그배우자들을 자체내에 함께 유지할 수는 없다. 어느 한 호에 다른 호로부터 며느리와 사위가 들어 오면 상대편 호들에서는 女나 子가 나가야만 한다. 결국 모든 자녀의 부부가족 단위를 기록한 것은 그들 중에서 어떤 것과 동일호를 이루도록 하는 규정, 예컨대 아들의 부부가족이 호주와 동일한 호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sup>9)</sup> 李佑成, 〈高麗時代의 家族—친족집단·사회편제 문제와의 관련에서—〉(《東洋 學報》5, 檀國大, 1975).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女 및 女壻와의 동거도 결혼 초기에만 국한된 것이아니었다. 제1·2·3군의 호적 자료에서도 40대, 50대 연령의 여서도 처부모와 동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여럿 나타난다.10) 소가족단위의 이주빈도가 비교적 높은 속에서 부모나 처부모와의 동거는 혼초부터 계속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분가 후 중간에 변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노년에나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동거는 자녀의 이동에 의해서만이아니라, 부모쪽의 이동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11)

결혼한 자녀들의 부부가족의 거주가 일반적으로 유동적이라는 사실은 이들의 독자적 단위로서의 기능이 그만큼 컸음을 반영해 준다. 이러한 사실에 유의할 때 《高麗史》刑法志의 分家規定의 의미가 드러난다.

(A) 조부모나 부모가 살아 있는데, 子孫이 戶籍을 나누고 財産을 나누어 [別籍異財] 供養에 궐함이 있으면 [供養有闕], 徒 2년에 처하고, 服을 입는 기간 내에 戶籍을 나누면 徒 1년에 처한다(《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戶婚).

이 규정에 대해서 3세대 친족내「同籍異財」가 무너져 가는 것을 금지한 법 령이라는 해석도 있었고,<sup>12)</sup> 唐律의 규정과 달리「供養有闕」의 단서가 들어간 것은 공양에만 문제가 없으면 조부모·부모의 생존시에도 분가를 허용한 규정

<sup>10)</sup> 호주가 고령의 딸(실제로는 이 경우 딸의 부부가족)과 함께 기록되고 있는 것은 논외로 하고, 호주가 처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사례들만을 보아도 상당한 비중이 된다. 그 호들의 본관과 호주 성명 및 연대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군; 총 13개호 중 6개호—咸昌 金鏡高戶(1280), 光州 金璉戶(1301)・咸昌金克孫戶(1336)・金州金永祿戶(1392)・(국보호적 7폭 2호, 부분 파손) (1392)・三陟金徳原戶(1392).

제2군;총 12개호 중 1개호--旌善 李天祿戶(1392).

제3군; 총 12개호 중 2개호一安東 金得雨戸(1391)·升平 金代介戸(1392). 제2·3군에서는 처부모와의 동거가 극히 적게 포함되고 있는데, 이는 이들 호의 절대다수가 고령의 딸을 호에 포함하고 있어 실제로는 딸의 부부가족과 동거하는 경우가 더 있었을 것이다.

<sup>11)</sup> 그 예로서 〈橫川郡大夫人趙氏墓誌銘〉(李蘭暎 編,《韓國金石文追補》, 亞細亞文 化社, 1968, 289쪽)에서 보면 조씨부인은 어려서는 외조 文公元에게서 자랐고, 남편 柳英材가 죽은 후 '門戶가 장차 떨어지려는' 상태에 이르렀으나 同母弟 의 돌봄으로써 모면하였고, 노후에는 아들과 사위의 봉양을 받았다고 한다. 李奎報 모친의 경우 둘째 사위 집에서 기거한 것은 이규보가 29세 되던 1196 년부터 시작하여 1201년까지로 나타난다(李奎報,《東國李相國集》年譜).

<sup>12)</sup> 姜晋哲,《高麗土地制度史研究》(高麗大 出版部, 1980), 184쪽.

이라는 해석도 있었다.<sup>13)</sup> 그 후 다시 이 규정을 당률과 세부적으로 비교 검 토한 연구에서는 「공양유궐」과 관련된 규정은 당률의 조항 중에도 있었음을 지적하고, 다시 이 규정을 「別籍異財」를 금지한 규정이라고 하였다.<sup>14)</sup> 이에 대한 해석은 고려시대의 가족제도의 이해에 기초적인 중요성을 갖는 사항이 니 관련된 당률의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BI) (十惡 중) 7번째는 불효이다. [다음과 같은 죄들을 말하는 것이다. 告言 詛罵祖父母父母, 祖父母父母別籍異財 若供養有闕, 居父母喪身自嫁娶 若作樂釋服從吉(하략)](《唐律疏議》권 1, 名例 十惡).

(B2) ① 조부모와 부모가 있는데 자손이 別籍異財하는 자는 徒 3년에 처한다. [別籍과 異財는 동반되지 않아도 해당한다. 이하의 조문도 이에 준한다.] ② 만약 조부모나 부모가 別籍을 시키거나 자손으로 망녕되이 다른 사람의 後를 잇게 한者는 徒 2년에 처하되, 子孫은 不坐한다(《唐律疏議》권 12, 戶籍 子孫不得別籍).

(B3) 부모상 중에 아이를 낳거나 형제가 別籍異財한 者는 徒 1년에 처한다(《唐 律疏議》권 12, 戶婚 居父母喪生子).

(B4) 자손이 (父祖의) 敎令을 어기고 범하거나 供養에 궐함이 있으면 徒 2년에 처한다. [이는 가히 따를 수 있는데 어기고, 공양을 감당할 만한데 궐한 자를 말한다. 모름지기 조부모나 부모가 告해야 坐한다] (《唐律疏議》권 24、鬪訟 子孫違犯敎令).

위의 당률에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공양유궐」과 관련된 조항이 별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A) 하나의 조항 속에 들어가 있는 고려율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B1)은 이른바 10악의 하나인 「불효」에 해당하는 죄목들을 열거한 것이었다.

(A)가 (B2)·(B3)·(B4)를 함께 묶어놓은 규정이라고 보는 해석은 (A)가 戶婚條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질적인 鬪訟律의 (B4)조항과 함께 묶어 놓은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A)가 당률의 (B2)·(B3)을 함께 참조하여 성립되었다 해도 (B3)의「諸居父母喪生子」부분은 제외하고「별적이재」부분만을 발췌한 것도 (A)의 규정의 초점이 戶籍律의「별적이재」에 대한 문제에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렇다면 당률의 투송률의 조항인「공양유궐」이 별도의 독립된 죄목으로서 (A)에 묶여졌다고 볼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며, 그만큼 이귀 절이「별적이재」에 결부된 단서일 가능성이 커진다.

<sup>13)</sup> 李佑成, 앞의 글.

<sup>14)</sup> 金壽泰, 〈高麗初 別籍異財에 관한 法律의 制定〉(《東亞研究》17, 西江大, 1989).

(A)에 수용된 것이 (B2)중에서도 (B2)-①이며, (B2)-②는 제외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B2)-②는 조부모나 부모의 지시로 별적을 할 경우도 부모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니, 별적에 강경한 대응을 보여 주는 규정이다. 그런데 당률의 이러한 규정이 제외된 것은 당률과 달리 고려에서는 적어도 조부모나 부모의 허락이 있는 경우 別籍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중국에서도 (B2)의 규정이 明律에서는 (B2)-②의 귀절은 빠지고 조부모나 부모가 별적이재 문제에 관해 親告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바뀌어지고 있었다.15)《元典章》至元 12년(1271) 기사에 의하면 그 이전부터 漢人들에게는 (B2)-②와 같은 질서가 무너져「別無定制」인 상태에서 쟁송이 빈발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진인은 그 전부터도 조부모나・부모가 허락하면 별적이 재가되고 있어, 지원 12년 법령 후로는 한인들도 조부모나 부모가 허락하면 별적이 재가되고 있어, 지원 12년 법령 후로는 한인들도 조부모나 부모가 허락하면 별적이재를 들어주도록 하고 있다.16) 중국 한족들에서도 (B2)-②와 같은 규정에 의한 질서는 당대를 지난 언제부터인가는 흔들리고 있었고, 그것의 붕괴는 명률에서처럼 그 규정의 삭제를 수반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A)의 고려율에 (B2)-②가 제외되고 있는 것은 당률에서와 달리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분가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려의 婚俗이나 상속제에서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자녀가 분가하는 것은 일반적이라 할 만큼 흔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관련하여 한인과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여진인 사회에서는 당률과 다른 질서가 시행되고 있었음이 참고된다. 고려사회의 혼속이나 재산상속제 등은 중국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이니, 고려사회의 경우 당률과 보다 많은 차이를 가질 소지가 있었다. 중국의 혼속은 父處制인 親迎制였고, 상속제도 아들을 위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딸과 아들에 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는 상속제와 결합되어 거주가 父處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率壻婚이 행하여지고 있었다. 부모로서는 결혼한 딸・아들 어느 쪽과도 동거할 수 있고, 자녀로서는 夫家나 妻家 모두로부터 상속기회가 주어져 있었으며 동시에 양쪽 어디에도 거주할 수 있었다.

<sup>15)《</sup>大明律直解》 권 4. 戶律 別籍異財.

<sup>16)《</sup>元典章》 권 17. 戶部 3. 分析 父母在許令支析.

따라서「3세대 친족」단위를 묶어 놓는 것은 어렵고, 제도적으로도 모순되는 것이다.

3세대 부계친족단위를 묶어 놓은 당률에서는 養子制가 중요한 기능을 하였으니, 당에서와 같은 부계 가족구조에서는 양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無子女만이 아니라 딸만 있고 아들이 없는 경우가 빈발하는 것이다. 고려에서는 양자제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갖지 못하였고,17) 양자제에서도 양자만이 아니라 양녀가 행해지고 있었다.18) 고려의 양자제가 이렇게된 요인의 하나는 딸 및 女壻가 노부모의 봉양이나 가족 생활의 여러 방면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혼속이나 상속제 등에 의해 딸·아들 중의 어느 누구도 부모와의 동거가 고 정되어 있지 않은 고려에서는 당에서와 달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별적이재 가 문제 없는 속에서 실제의 중요한 문제는 「供養」의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고려시대의 실례에서도 별적이재하여 공양을 궐함으로써 처벌된 사례가나타난다.19) 父의 생존시에 子가 호주가 된 사례도 있고,20) 이미 결혼 후 오랜 시일이 경과되었는데도 처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호의 사례도 여럿 나타난다. 이상으로 보면, 고려에서는 형제·자매가 분가하는 소가족이 기본적가족형태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뒤에서 사례 자료와 관련하여 보듯이결혼한 형제·자매가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러한 경우는 희소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고려시대의 소가족단위가 일반적인 거주의 기초단위가 된 것은 기혼 자녀와 기혼 형제·자매의 분가에 의한 것이나, 그 소가족단위에는 종종 노부모나

<sup>17)</sup> 許興植, 앞의 책, 74~75쪽.

<sup>18) 〈</sup>喬桐縣君高氏墓誌銘〉(《韓國金石文追補》, 156쪽)에는 인종대에 高氏가 養女가 되어 그 남편이 妻 養父의 田丁을 遞立한 사례가 보인다.〈李公遂墓誌〉(《朝鮮金石總覽》上, 朝鮮總督府, 1919, 674쪽)에도 아들이 없는 이공수가「養族女」한 것 외에도 이러한 사례는 적지 않게 발견된다.

<sup>19) 《</sup>高麗史》권 11, 世家 11, 숙종 6년 정월 을유조에는 趙俊明이라는 자가 아버지가 사망한 지 4년이 되도록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고 동생들을 돌보지 않음으로써 처벌된 예가 보인다.

<sup>20) 1390</sup>년 義城 金海의 호구단자에는 그 父가 56세로 생존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李基白,《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一志社, 1987, 252쪽). 그리고 조선초 이지만 1462년 登州 朴師顏의 호구단자에도 그 父가 61세로 기록되어 있다(許興植, 앞의 책, 183쪽).

생활능력이 없는 가까운 친속의 부양·동거가 수반되었다. 그리고 소가족 단위는 무연고지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연고에 의해 가까운 친속들과 인접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한 거주의 양태는 사례 자료와함께 결합시켜 검토하면 보다 잘 드러난다.

거주의 단위가 대가족적인 것이었는지 소가족적인 것이었는지는 방계 친속과의 동거상태에서 나타나게 된다. 고려시대에도 결혼한 형제·자매가 동거하는 대가족적인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아래에서 보듯이 그러한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黄守는 대대로 平壤府에 살았는데 충숙왕 때 本府의 雜材署丞의 되었다. 부모의 나이가 모두 70세였는데, 賢・仲連・季連이라는 아우와 자매 2명이 있어함께 밥을 지어먹으며, 날마다 때에 맛나는 음식을 갖추어 먼저 부모에게 드리고 물러나 함께 먹은 지 20여 년이었다. 자손들도 따라 익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成 姜融, 判密直 金資가 친히 그 집을 방문하니, 백발인 부모가 뜰에나와 맞이하므로 만류하여 앉게 하였다. 강융이 눈물을 흘리며 감탄해 말하기를 '오늘날 士大夫간에도 듣기 어려운 바인데 어찌 이 城 중에 이런 효자의 가문이 있을 줄 뜻하였으리오'라 하였다(《高麗史》권 121, 列傳 34, 黃守).

위에서 보면 부모의 나이나 20여 년의 세월로 볼 때 모두 기혼자들로 보이는 세 형제와 두 자매가 그 자녀들과 함께 노부모를 봉양한 경우이다. 이에서 주목되는 것은 분가한 형제·자매간의 노부모 봉양에서도 단계적인(unilineal) 편향성이 없듯이 여기서도 기혼의 형제만이나 자매들만으로 동거·부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설명한 고려시대의 호적문서에서도 제2 군과 제3군의 호들에서 형제와 자매가 차별됨이 없이 포함되고 있는 호의 사례들을 볼 수 있다. 단 이들 호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대가족이라기보다는 몇개의 소가족들을 하나의 호로 기록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황수의 가족에 대해 "사대부간에도 듣기 어려운 바"라는 강융의 말을 참조한다면 황수의 가족과 같은 대가족적인 거주는 역시 일반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혼한 동기간에는 분가하여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이니, 방계 친속과의 동거·부양관계는 대개 생활능력이 없는 가까운 친속을 부양하기 위한 경우들로 보인다. 그러한 동거는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일단 분가한 후에도 사정이 발생하면 부양을 위해 동거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선 동기간의

동거·부양 사례로 李公遂의 경우 父祖 쪽 인물들이 증조대 이래로 현달하고 있었으나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게 되자 매부인 全公義의 집에서 자랐으며, 현달해지자 전공의를 아버지같이, 누이를 어머니같이 섬겼다고 한다.21)이처럼 동생이 누이집에서 양육된 경우는 고종 때 孫抃이 재판한 남매 사이에서도 발견된다.22)

동거와 부양은 형제·자매의 자녀(조카 및 생질)와 부모의 형제·자매(친삼촌·외삼촌·고모·이모) 사이에서도 흔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종대에 태어나 예종대까지 생존한 인물인 閔暎은 숨묘인 起居注 閔修가 일찍 죽고 형제·자매 5~6인이 차례로 죽음으로써 형제·자매의 자식을 자기의 자식처럼 길렀다고 한다.<sup>23)</sup> 민영의 경우는 질과 생질에 대한 친삼촌 또는 외삼촌으로서의 부양·동거 사례이다.

숙종~명종 년간에 살았던 咸有一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舅(외삼촌)에게서 자랐다.<sup>24)</sup> 이 경우는 생질과 외삼촌 사이의 부양·동거 사실을 보여준다. 또고려 후기의 인물인 李奪庇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그 외삼촌인 白文節에게 배웠다고 하였다.<sup>25)</sup> 여기서 이존비는 외삼촌에게서 교육도 받았겠으나 양육되기도 했다고 보인다.

姑母(夫)의 집에서 양육된 사례도 나타나는데, 고려 후기의 康悌臣은 어려서 고아가 되어 고모부인 元의 平章 末吉의 집에서 자랐다고 한다.26) 역시 尹澤은 3세에 고아가 되어 고모부인 尹宣佐에게 글을 배웠다고 하는데,27) 고

<sup>21)《</sup>高麗史》 권 112, 列傳 25, 李公遂. 〈李公遂墓誌〉(《朝鮮金石總覽》上), 671 즉.

<sup>22)</sup> 孫抃이 慶尙道按察副使로 있을 때 父가 전재산을 출가한 딸에게 상속하도록 하고 어린 아들에게는 衣·冠·鞋 1습과 종이 1권만을 주도록 유언함으로써 소송이 있게 된 남매의 경우도 누이에 의해 남동생이 길러진 사례이다(《高 麗史》권 102, 列傳 15, 孫抃).

<sup>23) 〈</sup>閔瑛墓誌〉(《朝鮮金石總覽》上), 365\.

<sup>24) 《</sup>高麗史》권 99, 列傳 12, 咸有一. 본인 묘지에는 '舅'가 '母兄'즉 외삼촌으로 되어 있다(〈咸有一墓誌〉, 《朝鮮 金石總覽》上, 412쪽).

<sup>25)《</sup>高麗史》권 111, 列傳 24, 李嵒. 李仁成(李尊庇의 초명) 墓誌에 이존비가 죽고나서도 그 母는 생존해 있었음을 보면, 父가 죽고나서 이인성과 그 母는 함께 백문절의 보살핌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韓國金石文追補》, 209쪽).

<sup>26) 《</sup>高麗史》 권 111. 列傳 24. 廉悌臣.

<sup>27) 《</sup>高麗史》 권 106, 列傳 19, 尹諧傳 附 澤.

모의 집에서 양육된 것으로 보인다. 姨母(夫)의 집에서 자라난 경우도 있는데, 閔頔은 이모부인 前宰相 金額의 집에서 양육되었고,<sup>28)</sup> 許珙은 처제의 딸을 양육하였다.<sup>29)</sup>

호적자료에서는 〈국보호적 5폭 1호〉의 경우만 생질 남·여 2명을 포함하고 있지만, 형제나 자매가 대등하게 포함되고 있음을 보면, 많은 인원이 누락된 당시의 호적 기록과는 달리 실제로는 많지는 않아도 생·질이 대등하게 포함되었을 것이다.

위의 사례들에서는 방계혈족에 의한 부양·동거관계에 친삼촌·외삼촌· 고모(부)·이모(부)가 나타나, 3촌 범위의 모든 계보의 친속들이 대등하게 관 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례들에서 한 가지 더 주목되는 사항은 실제의 가족과의 차이가 문제되는 호적자료들에서와 달리 실제의 동일 거주관계를 보여주는 사례 자료에서는 모두 고아가 된 질 및 생질과의 부양·동거관계 라는 사실이다. 동기간의 동거 사례도 부모를 여읜 어린 동생이 누이에 의해 양육된 경우이다. 이는 양측적 친속관계에 따른 상호간의 유대·보호 관계가 작용하는 속에서도 당시의 실제 생활 단위는 일반적으로 형제·자매간의 분 가에 의한 소가족적인 단위로 되어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황수의 가족처럼 일부 소수의 대가족적인 단위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해도, 앞에서 본 사례들이나 호적자료에서처럼 친삼촌·외삼촌·고모·이모 등이 대등한 관계를 갖는 것은 그것이 부계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고려시대의 가족은 일반적으로 소가족단위였다. 그리고 간혹 보다 확대된범위의 친속간에 부양·동거관계가 이루어질 때는 부계적인 대가족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측적 친속관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한 것은 혼인과관련하여 다음에서 보게 될 결혼한 자녀와 부모의 거주관계에서도 확인된다.

## (2) 혼 인

가족은 혼인과 출생에 의해 구성되므로 당시의 婚俗은 가족구성에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혼속에 대해서는 일찍이 민속상의 「데릴사위」와 문헌사

<sup>28) 《</sup>高麗史》 권 108, 列傳 21, 閔宗儒 附 頔.

<sup>29) 《</sup>高麗史》 권 105, 列傳 18, 許珙.

료에 보이는「男歸女家」·「壻留婦家」등을「率壻制」라는 하나의 계통으로 묶어 검토한 연구가 있었다.30) 이 연구는 사회사 연구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연구이었음에도 한국사 전공자들에게 주목되지 못했고, 타분야 전공자들에 의해 보다 세부적 연구가 발표되었다.31)

그 간의 연구에서는 용어의 사용에서 서로 다른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어 먼저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②데릴사위·남귀여가를 기본적으로 같은 혼속의 계통으로 보고 솔서혼으로 이들을 묶어서 이해하는 견해이다.32) 다른 하나의 견해는 ④데릴사위는 딸만 있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 동족에서 별도로 양자를 입적시키는 한편 사위를 맞이하여 그 노동력으로 家事를 협조케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과거 거의 누구나 다 거치게 되는 결혼 형식인 서류부가(남귀여가)와는 다른 것이며, 데릴사위만을 솔서라고 보는 견해이다.33) 또 다른 견해로는 ⑤데릴사위와 남귀여가를 ⑥에서처럼 구분하면서 남귀여가만을 솔서라고 보는 견해이다.34) 여기서 솔서란 '본가로 돌아오기 이전까지만 한정적으로 처가살이를 하는 사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의 세 가지 견해들에서 보면, 솔서라는 용어는 데릴사위나 남귀여가를 이해하기 위해 각기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솔서」에 대한 정의 자체만으로는 어느 한 견해의 타당성을 논할 수 없다. 문제는 각 견해에서 데릴사위와 남귀여가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한 점에서 ④ 가

<sup>30)</sup> 孫晋泰、〈朝鮮の率壻婚俗に就いて〉(《史觀》3, 1933).

<sup>———,〈</sup>朝鮮婚姻의 主要形態인 率壻婚俗考〉(《朝鮮民族文化의 研究》, 乙酉 文化社, 1948).

<sup>31)</sup> 朴秉濠,〈率壻婚俗에 由來하는 親族과 禁婚範圍〉(《法學》4-2, 1962;《韓國法制 史攷-近世의 法과 社會-》, 法文社, 1974).

李光奎,〈韓國家族의 史的 研究》(一志社, 1978).

崔在錫.〈韓鷗家族制度史〉(《韓國文化史大系》IV. 高麗大出版部, 1970).

朴惠仁,〈壻留婦家婚俗의 變遷과 ユ 性格-朝鮮時代 家族制度變化를 중심으로-〉 (《民族文化研究》14, 1979).

<sup>-----,《</sup>韓國의 傳統婚禮研究-壻留婦家婚俗을 중심으로-》(高大 民族文化研究所, 1988).

<sup>32)</sup> 孫晋泰, 앞의 글(1948). 朴秉濠, 위의 글.

<sup>33)</sup> 崔在錫, 앞의 글(1970). 사惠仁. 앞의 글(1979).

<sup>34)</sup> 李光奎, 앞의 글.

입각하고 있는 데릴사위에 대한 민속상의 자료는 남부지역의 혼속에 국한된 것이어서 ઋ를 비판하기에는 불충분하다.

⑦의 연구는 용어에서도 데릴사위를 북부지역의 방언에 따라「대리사위」라 할 정도로 북부지역의 혼속에 실증적 검토의 비중을 두고 있다.35) 그에서 조사된 북부지역의 혼속에서 대리사위는 아들이 있어도 행하여졌으며, 몇 명의 자녀를 낳은 후 처가에서 분가를 하거나 일생을 처가에서 살기도 하였다.36) 이러한 북부지역의 혼속은 無産 농민이나 화전민 등 하층민에서 조사되었으며, 조선 중기까지는 일반적이었던 남귀여가의 혼속이 그 후 지배층에 서부터 半親迎制로 바뀌어 가서 당시에는 북부지방의 하층민에게만 남은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⑦에 의하면 이 북부지역의「대리사위」는 조선중기 이전의 혼속의 원형에 보다 가까운 것이며, 남부 지역의 그것은 본원은 같지만 이미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①의 견해를 비판하려면「데릴사위」에 대한 남부지역의 민속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북부지역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각 지역 혼속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 역사적 연계성에 대해서도 검토했어야 했다. 그런데이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② 의 연구에서만 선구적으로 다루어졌다. 앞으로보다 확대된 시각과 폭넓은 자료조사를 토대고 한 데릴사위 혼속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과제가 남아 있는「데릴사위」・「대리사위」라는 혼속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정의를 유보해 둔다면, ④가 근거한 혼속의 사례가 제한적인 것이어서 ② 에서 제시된「솔서」・「남귀여가」・「서류부가」등의 용어 사용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고려시대와 솔서혼은 그 전통이 조선 전기에까지 강하게 영향을 주었으니 다음에 보는 조선초 실록의 기사에서도 그것을 前朝 이래의 혼인 예법이라 하였다.

<sup>35) &#</sup>x27;대리사위'는 명천·경원·종성의 방언으로 조사되었고, 청진·부령·회령에 서는 '대릿사위'라는 방언이 조사되었다(金泰均,《咸北方言辭典》1986). 한편 평안도 방언으로도 '대릿사우'가 조사되었다(金履狹,《平北方言辭典》1981).

<sup>36)</sup> 이 북부지역의 혼속은 혼인 후 처가에서 상당 기간을 경과한 후 일부는 그대로 처가와 함께 살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머무는 기간이 때로는 몇명의 자녀를 낳을 정도로 길었다는 점에서, 1960년대까지도 경상도 지역에 남아 있었다는 처가에서 1년 정도를 머문 후 夫家로 오는 '해묵이' 관습(朴惠仁, 앞의 책, 1988)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후자는 서류부가의 혼속이 '반친영제'의 영향을 받아 이미 크게 변형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다.

前朝의 舊俗에 혼인의 예법은 남자가 女家에 가서「男歸女家」 자손을 낳으면 외가에서 자라므로, 외친의 은혜가 무거워서 외조부모와 처부모의 服은 모두 30일의 暇를 주었다(《太宗實錄》권 29. 태종 15년 정월 갑인).

위에 의하면「남귀여가」의 풍습으로 말미암아 고려시대에는 喪禮에서도 외조부모복과 처부모복이 중시되었다고 한다. 그러한 복제는 이미 고려 성종 4년(985)에 성립되었으며, 외조부모복은 친조부모복과 같은 齊衰 周年으로 되 고 처부모복도 중국제도보다 높여 小功服으로 되었다.37)

이러한 솔서혼은 고려 당시의 기록들에서도 확인된다. 예컨대 고려 중기 이 규보의 祭文에는 솔서혼에 의한 처가와 사위의 관계가 보다 생생하게 나 타나 있다.

- ① 옛날에는 親迎에 부인이 남편의 집으로 시집오므로 妻家에 의뢰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장가듦에 남자가 처가로 가니「男歸于女」, 무릇 자기의 필요한 것을 다 처가에 의거하여 장인·장모의 은혜가 자기 부모와 같습니다(李奎報,《東國李相國集》권 37, 祭外舅大府卿晉公文).
- ② 불초한 제가 외람되게도 일찍 사위가 되어 밥 한 술과 물 한 모금까지도 모두 장인에게 의지했습니다. 조금도 보답을 못했는데 벌써 돌아가시다니요(李 奎報,《東國李相國集》권 37, 祭李紫微諒文).

위의 자료들에서는 「남귀여가」의 풍속과 그로 인해 사위가 처가에 의지해 살게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위의 제문 중에서는 '옛날에는' 남귀여가의 풍 속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 귀절은 고려의 풍습에 대한 사료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유교경전에 나오는 親迎의 예법을 비교한 것이다.

남귀여가 혼속의 기원에 대해서는 고구려의 壻屋制에 연결시켜 이해하는 한편 그 거주형태도 母處一父處(妻處—夫妻)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38) 종래의 연구에서는 솔서혼과 서옥제 모두를 婚初에는 母處이나 일정 기간 후에는 父處로 거주를 옮겨 확정하는 母處—父處的인 거주규칙으로 이해한 것이다.

<sup>37)</sup> 盧明鎬, 〈高麗의 五服親과 親族關係 法制〉(《韓國史研究》33, 1981).

<sup>38)</sup> 孫晋泰, 앞의 글.

金斗憲,《韓國家族制度研究》(서울大出版部, 1969), 384쪽. 李光奎, 앞의 책, 148~150쪽.

그러나 이는 기존 연구들의 친족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계 아니면 모계라는 제한된 틀 속에서 부계제도에 한정되어 제약을 받은 결과이니, 기존연구에서 조사된 자료와도 부합되지 않는다.

「남귀여가」에 대한 실증적인 작업은 초기의 연구에서 이미 치밀하게 이루어져, 이미 솔서혼의 중요한 사실들을 조사해 놓았다.39) 즉 북부지역의 혼속에서 사위가 일생을 처가에서 살기도 하고 혹은 그의 손자까지 생긴 뒤에도처가의 가족으로 살지만 누구나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조선시대의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에서 남귀여가의 혼속에 의해 처가(자식으로서는 외가)에서 영구적인 가족으로서 생활하여 내외족의 차이가 없음을 말한 사료들을 들고 있다. 이러한 사료의 의미에 대해 초기의 연구에서도「남귀여가」의 의미는 일시적으로 처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女家의 가족으로 되는 것 같이도 해석된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당시의 친족조직을 부계 아니면 모계일 것으로 생각하고, 모계제도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자료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40)

근래의 연구에서도 처가 지역에서 살고 뒤에 그곳에 묘소까지 남긴 개인의 사례들을 조사하는 등 보다 세밀한 자료조사를 하였으나, 역시 남귀여가 혼속의 거주를 모처-부처제로 보는 데서 그쳤다. 41) 이는 초기 연구의 경우에서도 보이듯이 당시의 친족조직을 부계적인 개념에만 한정하여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실증적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고려 및 조선 전기「남귀여가」혼속에서의 거주는 모처-부처 또는 다른 어떤 하나의 형태로 고정시켜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당시의 사례들에서는 혼인 후 처가에서의 생활이 얼마간 지난 후에 처가에서 처의 노부모를 봉양하며 계속 살게 되는 경우도 있고, 夫家로 옮겨 남편의 노부모를 봉양하며 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분가하여 처가나 부가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외가 지역 등 가까운 친속과의 연고지로 거주지를 정하는 경우, 그리고 그러한 연고가 없는 새로운 지역에 거주하는

<sup>39)</sup> 孫晋泰, 앞의 글(1948).

<sup>40)</sup> 孫晋泰, 위의 글, 95쪽.

<sup>41)</sup> 朴惠仁, 앞의 책, 177~187쪽.

경우도 있었다. 그것은 당시의 사료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잘 드러나며, 그와 관련된 사료는 비교적 많이 발견된다. 그러한 거주형태는 당시의 재산상속의 형태와도 연결되는 것이니, 아들쪽만이 아니라 딸쪽으로도 대등한 상속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연히 경제적 토대가 있는 쪽으로 다양한 거주가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서옥제와 솔서혼 사이에 역사적 연계성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양자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서옥제에서는 혼인 초기를 지나서는 남편쪽으로 가족의 거주가 정해지는 夫處(父處)制였다. 앞에서 본 제문들의 내용에서 보듯이 남귀여가혼에서는, 혼초에는 모든 생활을 처가에서 하며 "밥 한술, 물 한 모금까지도" 모두 처가에서 해결하였지만, 혼초가 지난 후의 거주는 부처제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앞에서 보았듯이 고려시대에는 40~50대의 사위들이 처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솔서혼 연구에 의하면 18세기경 이후 솔서제(남귀여가)가 붕괴되기시작하고, 半迎親制가 확대되고 나서도 북부지역의 가난한 농민들 사이에는 솔서제가 일반적으로 행해졌고, 때로는 사위와 종신토록 동거하는 경우도 있었다42) 한다.

솔서혼의 풍습은 고려시대나 조선 전기에는 지배층과 하층을 막론하고 일 반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43) 고려시대 하층민의 率壻戶의 실례 로는 딸의 부부를 포함한 국보호적의「韓祐 戶」를 볼 수 있다. 한우 호의 경 우 호주의 직역이「軍」으로 되어 있고44) 다른 호들과 달리 호주와 戶妻의 4 祖의 직역이 기록되지 않았으며, 호처의 4조가 파악되지 않는 것 등으로 보 아 평민층 이하로 추정된다.

이러한 딸 부부와의 동거는 의외로 고려시대의 전사회층에 걸쳐 광범위했 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의 자료는 그러한 면을 엿보게 해준다.

典儀副令 李穀이 원에 있을 때, 원의 御史臺에 말해 童女 구함을 파할 것을 청하였다. 그 일을 위해 고려조정을 대신하여 疏를 올리기를…고려의 풍속을 생각컨대 아들과는 함께 살지 않을지언정 딸은 집에서 내보내지 않으니, 秦 나라 때의 贅

<sup>42)</sup> 孫晋泰, 앞의 글(1948).

<sup>43)</sup> 孫晋泰, 위의 글.

<sup>44)</sup> 韓祐의 직역에 대해 李基白, 앞의 책에서는 판독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나 許興植, 앞의 책, 44쪽에서는 '軍'으로 판독하였다.

壻 제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릇 부모 봉양하는 것은 딸이 맡아서 주관하는 일입니다(《高麗史節要》권 25, 충숙왕 후 4년 윤 12월).

위에서는 노후의 봉양이 아들에 의한 것보다 딸 즉, 여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으로 진술되고 있다. 원나라의 동녀 요구를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의 진술이므로 과장된 면이 개입될 수 있겠으나, 딸과 사위에 의한 봉양이 큰 비중을 가졌던 실정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곡의 진술처럼 아들보다 딸쪽에 편중된 동거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 해도, 아들과 딸에 대한 재산의 균분상속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 적어도 양쪽의 비중은 대등한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런 때문에 고려에서는 사위와 처부모와의 관계 및 외손과 외조부와의 관계가 대단히 친밀하여 그것이 복제에까지 반영되고 있었다.

처부모가 빈번히 노후를 딸 부부와 지내기도 하는 긴밀한 관계가 있는 한 편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預壻」의 혼속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원종 12년 2월) 이 달에 脫朶兒가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반드시 재상가문 출신이라야 된다 하니, 무릇 딸이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여 다투어 먼저 사위를 들였다. 국가에서 재상 두・세 집을 기록하여 탈타아에게 택하게 하니, 麥色이 있는 金鍊의 딸을 며느리로 삼으려 하였다. 김련의 집에서는 이미 預壻를 들여놓고 있었는데, 그 사위가 두려워하여 (처가에서) 나갔다. 당시 김련은 원에 가 있었기때문에 그 집에서는 돌아오기를 기다려 혼례를 올릴 것을 청했으나 듣지 않았다. 나라의 풍속이 나이가 어린 자를 (사위로) 들여서 집에서 양육하여 성년이 되기를 기다리니 그것을 예서라 한다(《高麗史》권 27, 世家 27, 원종 12년 2일).

이 예서혼속의 기원을 후대의 민며느리 혼속에 견주어 남자의 집이 가난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위 자료에 의하면 고려시대의 예서가 반드시 그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의 자료에서는 예서혼속이 하층민들 사이에서 행해졌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유수한 상층 가문들에서도 행해졌던 것이 언급되고 있다. 당시의 계급내혼적 경향을 본다면 재상가문인 김련의 예서가 된 인물도 하층출신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預壻婚이 흔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나, 당시의 혼속의 바탕인 솔서혼

이 행해지는 속에서 조혼이 이루어지면 바로 예서가 되는 것이다. 조혼의 계기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으나 고려 후기에는 원의 동녀 요구를 피하기 위한 동기가 큰 비중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솔서혼에서는 혼초에 처가에서의 생활이 끝난 후에는 일단 분가가 이루어지는데, 이 때에는 처부모와의 동거는 아니라도 계속 처가쪽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고, 시댁쪽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나, 새로운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고려시대의 호적자료에는 부모나 처부모가 호주가 아닌 동거가족인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대부분 자녀의 가족이 분가한 후에 부양을 위한 동거가 이루어진 경우로 보인다.

부모와의 동거·부양에서 결혼한 자녀가 대등한 비중을 가졌으므로 내외 손이나 내외조부모 사이의 동거·부양에서도 같은 관계가 나타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현전하는 호적자료에서는 호주의 친조부모나 외조부모가 동거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호주의 부모나 처부모와의 동거는 호주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보면 친조부모나 외조부모와의 거주가 된다. 45)

고려시대 혼인형태에 대해서는 일부일처제와 일부다처제가 병존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와 일부일처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있다.46)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사회적 계층별 차이, 妻妾制의 문제, 고려시대 중에서도 시기별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왕의 경우는 여러 명의 后妃를 두고 있어 다처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국왕의 後嗣확보와 관련된 특수한 것이며, 당시의 일반적인 혼인양태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지배층의 경우에서도 여러 명의 처를 두는 이른바「多妻竝畜」이 행해지게 되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고려 후기의 일이었다. 이러한 풍조는 충렬왕대에 다처제를 공식화하는 법제화가 시도되다가

<sup>45)</sup> 외조부모와의 동거도 흔히 있었던 때문에 외조부모와 한가족을 이루는 것도 당시에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한 예로《高麗史》권 110. 列傳 23. 金倫 참조.

<sup>46)</sup> 전자에 해당하는 이해는 今村●、〈朝鮮に於ける一夫多妻の存在について〉(《稻葉博士還曆記念滿鮮史論叢》, 1938) 및 金斗憲、〈朝鮮妄制史小考〉(《震檀學報》11, 1940;《朝鮮家族制度研究》,乙酉文化社, 1949)를 비롯하여 그 후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제기되었다. 그리고 후자에 해당하는 이해로는 張炳仁、〈高麗時代 婚姻制에 대한 재검토〉(《韓國史研究》71, 1990)에서 제기된 바 있다.

중지되기도47) 하면서 국가적으로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묵인되는 형태로 계속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되어 공민왕 3년(1391)에는 왕비를 비롯한 왕실 및 문무 5·6품 이상의 처에 대한 봉작을 正妻를 원칙으로 하여 제정하면서 次妻는 그 아들이 봉작제의 해당 관인이 된 경우에「縣君」이상에 봉하도록 하였다.48)

일부에서「다처병축」이 행해진 고려 후기에는 고려 지배층들이 元의 다처 제적인 습속을 깊이 접하고 있었고, 고려의 전통적 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아래서 충렬왕대에 다처제 논의가 성사되지 못한 것은 고려사회 전래의 일부일처제 혼속에 따른 반발이 컸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려 전기의 다처제 사례라고 알려진 것은 전란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빚어진 것이거나, 재혼의 경우를 다처제로 오해하는 등 사료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49) 고려시대에는 남녀 모두의 재혼이 별문제없이 행하여졌는데, 사별 등으로 재혼함에 따라 한 인물의 처가 둘 이상이 된것은 동시에 여러 명의 처를 두는 '多妻' 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다만 인종 원년(1123)의 고려사회에 대한 견문을 담은《高麗圖經》雜俗條에는 "富家에서는 3~4인에 달하는 처를 둔다"고 하여 처제의 습속을 언급한 자료로서 주목되기도 한다.50) 그러나 지배층의 일각에서 다처를 거느리는경우가 있었다 해도, 그것이 법제화된 것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며, 그만큼 제한된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하겠다. 묘지명 등을 통해 나타나는 실례들에서도전기의 경우는 일부일처제가 원칙이었음이 확인된다.

고려 전기에는 일부일처가 법제화된 일반적 혼인이었다 해도, 고려시대 전체에 걸쳐 부유한 지배층을 중심으로 사회 일각에서 蓄妾이 종종 행해지고 있었다. 첩에게는 正妻와는 달리 정식 혼인에 의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고 있었으나 擅去・改家의 경우, 처보다 등급을 낮추어 처벌하는 법금이51) 唐律을 참고하여 만들어져 있었다. 축첩제는 고려에서 법으로도 인정되었고, 고

<sup>47) 《</sup>高麗史》 권 106, 列傳 19, 朴褕.

<sup>48) 《</sup>高麗史》 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封贈.

<sup>49)</sup> 張炳仁, 앞의 글.

<sup>50)</sup> 崔在錫,〈家族制度〉(《한국사》5, 국사편찬위원회, 1975), 361쪽에서도 이 자료를 "다처 혹은 축첩의 습속을 더욱 분명히 말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sup>51) 《</sup>高麗史》 권84, 志38, 刑法1, 戶婚.

려 전시기에 걸쳐 지배층 경우 처와는 별도로 婢妾이나 妓妾 등의 첩을 둔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첩의 경우도 그와 관련된 서자의 문제가 법제적으로까지 문제되는 것은 여말선초 이후의 일이었다. 다처병축의 사회적 풍조가 역시 여말선초의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서자의 문제가 이 때에 대두된 것은 그러한 다처와 축첩 풍조의 확산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혼인은 사회계층적 측면에서는 강한 계급내혼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노비의 경우 노비간의 혼인이 원칙이었으며, 양친간의 교혼이 이루어질 경우 그 자식도 노비신분으로 하는 「一賤則賤」의 규정이52) 적용되는 제약을 감수해야 했다. 일반 군현민과 차별되고 있었던 진·역·부곡 등 특수구역 주민과 군현민과의 혼인도 그와 유사하게 그 자식이 모두 특수구역 민으로 귀속되는 제약이 수반되었다.53)

지배층에서도 고려 전·중기에는 대대로 호장이나 부호장을 배출하는 고 위 향리층은 지방에서 상층의 계급내혼적 단위를 이루는 한편, 하위의 중앙 품관층과도 통혼하는 하나의 계급내혼적 단위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대대로 중앙의 고관을 배출하고 있었던 문벌층도 왕실을 포함하여 하나 의 계급내혼적 단위를 형성하여 하위계층과의 혼인은 대개 회피하고 있었다.

계급내혼을 벗어난 상하층간의 혼인이 법적 인정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계급내혼은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중요성을 갖는 혼인의 경향이었다. 하위 계층과의 혼인은 일반적으로 혼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비롯한 가까운 친속들에게 재산의 상속이나 제반 신분적 권리·의무면에서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 2) 재산의 상속

고려시대의 상속 대상인 전토·노비 그 밖의 가산들 중에서 노비의 경우는 자녀간의 균분상속이었다는 것이 정설이고,<sup>54)</sup> 그 밖의 다른 가산들도 균

<sup>52)</sup> 洪承基, 《高麗貴族社會와 奴婢》(一潮閣, 1983), 22\.

<sup>53) 《</sup>高麗史》 권84. 志38. 刑法1. 戸婚.

<sup>54)</sup> 이에 대해서는 旗田巍、〈高麗時代の土地の嫡長子相續と奴婢の子女均分相續〉(《東洋文化》22,1957;《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 法政大 出版局,1972)에 제시된 이후 통설화되었다.

분상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전토의 상속에 대해서는 고려후기 이후에도 조선초처럼 자녀간의 균분상속이 행해졌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나, 고려 전·중기의 상황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설이 제기된 바 있다.

그 중 비교적 이른 시기의 연구에서 제기된 것은 적장자 단독상속설이었다.55) 이에서는 우선 토지 사유권의 발달이 고려 후기에나 있게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토지상속의 연구를 田丁連立에만 국한시켰다. 그리고 전정연립을 이해함에서도 부계친족집단의 존재를 전제로 하였다. 근래의 여러 연구들에서는 자녀균분상속설56)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그간의 토지제도에대한 연구의 진전에 힘입은 것이다. 그러나 전정연립을 상속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民田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당시의 토지상속의 한 면만을 검토하였고, 그와 관련된 법제의 해석 등에는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도 있다.

고려시대의 토지상속은 사유지인 민전의 상속과 수조지인 전정의 상속, 두 가지로 구성되고 있었다. 전정연립은 직역과 연계된 수조권의 승계로서 소유권에 입각한 토지상속과는 다르지만, 그 속에 내포된 친족관계를 토대로 한권리·의무의 승계는 당연히 상속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고, 당시에 그 상속이 갖는 사회경제적 의미는 소유권의 상속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었다.57)

고려시대에 사유지를 비롯한 재산의 상속은 아들과 딸들에게 균분상속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고려시대의 상속 사례들에서는「財産」・「財」・「家業」・「全家産」등을 자녀간에 균분상속한 것이 나타난다. 이러한 가의 재산을 포괄

<sup>55)</sup> 旗田巍, 위의 글.

姜晋哲, 앞의 책, 426 · 428쪽.

이 嫡長子單獨相續說은 토지상속을 직접 다루지 않은 경우라도 고려시대의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sup>56)</sup> 구체적인 논증을 통해 고려시대 사유지상속을 다루지는 않았으나, 李成茂, 《朝鮮初期兩班研究》(一潮閣, 1980), 360~361·369쪽에서는 적장자단독상속설은 국가의 수취 단위인 田丁의 상속을 사유지의 상속으로 잘못본 데서 오는 오해라고 하고, 토지(사유지)와 노비의 상속에 있어서 고려시대는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자녀균분상속제였다고 하였다. 그 후 토지의 자녀균분상속설은 여러 연구들에서 주장되었다.

李樹健,〈古文書를 통해 본 시대적 연변〉(《慶北地方古文書集成》, 嶺南大 出版部, 1981).

崔在錫,〈高麗朝에 있어서의 土地의 子女均分相續(《韓國史硏究》35, 1981).

<sup>——,〈</sup>高麗時代 父母田의 子女均分相續再論〉(《韓國史研究》44, 1984).

李羲權、〈高麗의 財産相續形態에 관한 一考察〉(《韓國史研究》41,1983).

<sup>57)</sup> 盧明鎬, 〈高麗時代의 土地相續〉(《中央史論》6, 中央大 1989).

하는「재산」・「가산」 등에는 당연히 토지(사유지)가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는 기존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58) 그것은 뒤에서 보게 될 예종 17년 (1122) 判文에 언급되고 있는「文契」에 의해 상속되는 전토를 보면 알 수 있다. 가산이 자녀들간에 균분된 실례로 다음의 사료를 보자.

충혜왕 4년에 尹宣佐는 微疾에 걸리자 자녀를 불러 앞에 나오게 하고 이르기를 '요즈음 형제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은 다툴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라 하고 아들 윷에게 명하여 文契를 써서 家業을 균분하였다. 또 훈계하여 이르기를 '和하여 다투지 않는 것으로써 너희의 자손을 가르치라'고 하였다(《高麗史》권 109, 列傳 22, 尹宣佐).

위에서 보면 윤선좌는 자녀를 불러 놓고 상속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문서인 문계를 써서 가업을 균분하도록 하고 있다.

균분상속의 대상으로 자녀 중 딸이 실제로 상속받은 다른 예로는 孫抃이 판결해준 남매의 경우를 볼 수 있다.59) 이들 남매간의 사건은 당시의 일반적인 상속관례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우선 남동생이 누이에게 「全家産」을 상속시키도록 한 선친의 문계에 따르지 않고 항변한 것이 官에 받아들여져 여러 해 송사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남동생이 자녀간 균분상속의관례에 입각하여 권리를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속관례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균등한 것'이라는 손변의 말이나 가산을 中分하도록 한 판결 결과에서도 나타난다.60)

딸쪽에 토지가 상속된 실례로는 이승휴의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는 외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로 생업의 토대를 삼았다. 한 가지 더 주목되는 사실은 그 상속된 토지가 있는 외가쪽의 지방으로 이승휴가 거주지를 결정하였다는 점이다. 전토를 보유하는 층의 절대 다수였던 중소규모의 전토 보유자들의 경우, 전토가 있는 곳에서 거주하게 됨이 일반적이었을 것이고, 자녀균분상속으로

<sup>58)</sup> 有井智德,〈高麗朝における民田の所有關係について〉(《朝鮮史研究會論文集》8, 1971).

<sup>59) 《</sup>高麗史》 권 102, 列傳 15, 孫抃.

<sup>60)</sup> 旗田巍는 이 사례를 자녀간의 균분상속의 관습을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그는 田土의 적장자 단독상속을 주장하면서 자녀간의 균분상속대상인 家産에는 전토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旗田巍, 앞의 글, 1957). 崔在錫은 전토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崔在錫, 앞의 글, 1984).

처가나 외가로부터의 전토의 상속이 큰 비중을 가졌기 때문에 거주지의 결 정에도 이러한 상속은 큰 영향을 미쳤다.

고려시대의 사유지의 자녀간 균분상속은 다음과 같은 고려시대의 규정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종 17년(1122)에 判하기를 무릇 父祖田으로서 文契가 없는 것은 嫡長을 爲 先하여 決給하라고 하였다(《高麗史》권 85. 志 39. 刑法 2. 訴訟).

위의 예문은 정종 12년(1046)의 전정연립에 대한 판문과 연결되는 전정연립에 대한 규정으로서 완화된 적장자상속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61) 이 판문은 그 내용이 전정연립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그러한 해석이 이루어진 것은 고려시대의 토지사유제의 발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전제로 하여 사유지 상속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때문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의 토지사유제의 발달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된 바로, 그 사유지의 상속이 하층민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회계층들 속에서 행하여졌음이 알려지게 되었다.

위 판문은 바로 이러한 사유지의 상속에 관한 규정이다. 그 상속은 일차적으로 피상속자와 상속자 사이의 사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이 판문은 그러한 사적 결정이 피상속자의 생전에 미처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상속에 대한 국가의 판결원칙이다.

전정연립은 전정 상속만이 아니라 직역과 연계된 것임에 비하여, 이 판문에서의 상속은 직역과 관계없는 전토 자체의 상속이며, 그 때문에 일차적으로 국가적 제반 규제를 받는 전정연립과 달리 사적 결정이 일차적이고 우선적인 것이다. 여기서의 문계는 그러한 상속상의 사적 결정을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 만든 分財記類이며, 위의 판문은 분재기류인 문계가 없는 경우의 상속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보충적 규정이다. 위 규정의 그러한 보충적성격은 당시에 사적 결정을 기록한 문계에 의한 토지의 상속이 그만큼 광범위했음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문계에 의한 토지 상속의 기원은 사적 토지소유 관계나 토지에 대한

<sup>61)</sup> 旗田巍, 위의 글.

武田幸男、〈高麗田丁の再檢討〉(《朝鮮史研究會論文集》8,1971).

권리들이 문서화되기 시작한 시기로까지 소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신라 말기에는 토지의 매매와 소유관계를 문서화한 田券이 작성되었는 데,622 토지상속 문계의 출현도 전권의 출현에 수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 규정에 대해서는「父祖田」을「田丁」을 포함하는 토지로 보고, 문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장이 아니더라도 상속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적장우선주의 상속원칙에서 나온 것으로서 문계가 없으면 적장에게만 전토를 상속시키라는 의미라는 해석도 있었다.<sup>63)</sup> 그러나 만일 그 내용이 그런 것이라면「爲先」이라는 부분은 불필요한 구절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잘 파악되지 않는다.

위 규정에 대해 비교적 본래의 의미에 가까운 해석에 의하면, 「부조전」은 민전이며 부조로부터 자손에게 전급된 토지였다. 그리고 "적장자에게만 전급 하고 다른 자손에게는 전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적장자손에게 유 리하게 전급하지만 다른 자손에게도 전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64) 그런데 「적장에게 보다 유리하게 전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는 설명되지 않았다.

위의 '적장을 위선하여 결급한다'는 의미는 전토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상태와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토 등의 부동산은 대개 상속할 몫을 배분할 때 아무리 균분하려 해도 화폐나 곡식처럼 완전히 균등한분할은 불가능한 것이다. 한 곳의 전토를 분할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차이가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몇 필지의 다양한 크기의 전토들을 상속자들에게 할당하게 되므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65) 그리고 때로는 전토가너무 소규모이어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게 된다.

따라서 전토의 상속에는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균분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부모의 생존시에 구체적인 몫을 할당하여 문계로 분명하게 해 둘 필

<sup>62)</sup> 旗田巍,〈新羅・高麗の田券〉(《史學雜誌》, 1970; 앞의 책, 1972).

<sup>63)</sup> 旗田巍, 앞의 글(1957).武田幸男,〈高麗時代の口分田と永業田〉(《社會經濟史學》33-5, 1967).

<sup>64)</sup> 有井智德, 앞의 글, 56~59쪽.

<sup>65)</sup> 고려시대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아쉬우나, 여러 곳의 田土들이 상속자들에게 할당되는 실례는 전토의 균분상속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조선 전기의 分財記類에서 볼 수 있다. 당시의 분재기류에서는 형제·자매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는 크고 작은 田畓들을 각 필지를 단위로 할당받는 식으로 되어 있다. 한 예로 중종 5년〈李繼陽妻金氏許與文記〉(李樹健, 앞의 책, 137~138쪽) 참조.

요가 있는 것이다. 앞에 나온 윤선좌의 경우 형제간에 다툼이 많은 당시의세태를 말하면서 다툴 거리를 없애기 위해 자녀를 불러 놓고「문계」로서 가업의 균분을 문서화한 것은 바로 그 때문임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문계가없으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균분의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몫을 할당할때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니, 이러한 분쟁에 대한 판결의 원칙이 규정될 필요가 있게 된다. 위의 판문은 바로 그 원칙에 대한 규정으로서의내용을 보여주니, 위 판문이 刑法志 訴訟條의 한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자료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려시대의 위 판문에 해당하는 조선시대의 규정도 소송관계의 규정들이 많은 《經國大典》 刑典에 들어 있고, 그 자체가 상속상의 분쟁이 있을 경우의 판결 원칙이었다. 위 판문은 앞에서 본 토지를 포함한 재산의 상속에서 자녀간의 균분원칙과 상충·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실행을 위한 보충적인 규정이다.

위 규정에서「嫡長」을「嫡長子」로 해석하는 것은 자료를 있는 그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구를 임의로 첨가함으로써 본래의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것이다. 「적장」을 자구 그대로 해석하면, 嫡은 庶와 衆에 대한 적통 즉, 庶子 또는 衆子 등에 대한 嫡子 등을 의미하는 것이나, 長은 年長 즉 幼에 대한 長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嫡長爲先決給」이란 (여러 자손들 중에서) "적통과 연장을 先으로 하여 (먼저) 결정하여 주도록 하라"로 해석된다. 이는 적장자에게만 단독 상속시킨다거나 또는 그만을 우대한다는 의미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균분의 원칙에 의해 분할되었을지라도 구체적인 몫의 할당에서는 嫡子로부터 衆子 또는 庶子 등의 순서로 그리고 연장자로부터 연하자의 순서로 그 몫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따라서 이는 적장자 단독상속과 연결되는 규정이 아니라, 부조전의 균분상속 원칙과 연결되어 그를 보충해 주는 규정이다.66)

위의 규정과 같은 원칙은 고려시대의 친족관습을 크게 물려받고 있었고, 전지의 자녀 균분상속이 행하여지고 있었던 조선 전기의 《경국대전》에서도 발견된다.

<sup>66)</sup> 盧明鎬, 앞의 글(1989).

부모의 생전에 나누지 않은 노비는 자녀의 생몰과 관계없이 나누어 준다. [자녀가 죽은 경우, 그 자손이 없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누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嫡子女에게 우선 균급하고, 남는 경우에는 承重子에게 우선 주며, 또 남는 경우에는 長幼의 次序로 준다. 嫡妻에게 자녀가 없으면 良妾子女에게, 양첩자녀도 없으면 賤妾子女에게 그와 같이 한다 [田地도 위와 같다] (《經國大典》권 5, 刑典 私賤).

위는 끝 부분의 세주([]로 표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토의 상속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앞에 나온 고려 예종대의 판문과 서로 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양자는 모두 부모의 생존시에 배분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되는 전토의 상속을 국가가 판결해 주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둘째, 양자모두는 嫡과 長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으로 배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위의 《경국대전》 규정 중에서도 균분을 원칙으로 하지만 배분에서의 차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종대의 판문에서와 마찬가지로 庶子女에 대한 嫡子女, 衆子에 대한 承重子를 우선으로 하는 「嫡」 우선의 원칙과「幼」에 대한「長」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 즉 적・장 우선의 원칙에 의해 균분되지 않는 부분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시대 사유지(민전)의 상속은 전정의 상속과 달리 피상속자나 상속자간의 사적 결정에 의해 문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상속은 자녀간의 균분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그러나 토지의 상속은 균분의 원칙에 의해 분할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에 따른 분쟁을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종 17년에는 균분을 원칙으로 하되 균분되지 않는 부분은 중자녀・서자녀에 대한 적자녀 우선과 「유」에 대한 「장」 우선의 원칙에 의해 배분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유지 상속에 대한 보조적 기능을 갖는 법제는 그 후 《경국대전》에도 그 원칙이 계승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의 관습을 반영하는 사료들이나 개별적 사례자료들, 그리고 국가의 규정들을 통해 확인되는 균분상속은 소가족적인 단위에 의한 토지소유가 일반화되어 있었던 사회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하다. 이는 뒤에서 보게 될 전정이 기본적으로 소가족단위에 의해 보유・상속되고 있었던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토지의 자녀간 균분상속은 토지가혈족집단에 의해 보유・상속되고 있었다는 것의 전제가 된 토지의 적장자 단

독상속설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민전의 상속과는 구별되지만, 부의 연구들에서 고려시대의 토지 상속의 주된 것으로 파악하기도 했던 것은 田丁의 상속이다. 그 대표적인 것은 전정연립이었는데, 그와 같은 계열로서는 功蔭田 상속, 收租地로서의 功臣田 상속등이 있다. 이들 세 부류의 상속은 ① 원초적으로 국가제도에 의해 지급·보유된 토지에 대한 권리의 상속이라는 점, ② 그 상속자의 결정과 분할상속 또는 단독상속 등의 방식에 국가가 깊이 개입·규정하고 있다는 점, ③ 직역 봉사 또는 공로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대가 또는 포상적 은전으로 지급되어 특수한 신분적 부류들에게만 보유 및 상속되었다는 점, ④ 그 대상토지가 국가에의해 수취단위로 편성된 전정이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고, 민전의 상속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러나 세 부류의 전정상속은 서로 다른 점도 있어, 그 중에서 가장 광범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전정연립부터 보기로 하겠다.

전정의 지급은 수조권의 지급으로 해석되므로, 전정연립은 토지소유권의 상속과는 다른 것이었다. 당시의 토지사유가 근대적인 토지사유처럼 철저히 전면적이지 못하여, 전정을 지급받은 자가 田主로 이해되고 그 전토의 실제소유자는 佃客으로 간주된 사실에서 보면,67 지급된 전정의 보유는 전근대적인 소유권에 입각한 토지보유와 병존한 또 다른 토지보유의 한 형태였음이 잘 부각된다. 또한 전정연립의 대상토지는 연립할 친속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대를 거듭하여 배타적인 상속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었다. 그 결과 연립 대상 토지인 軍人田・外役田・兩班科田 등은 연립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승되는 공음전과 함께 世傳되며 永業田으로 불리기도 하였다.68)

口分田의 지급규정 등에서 보듯이 전정연립에서는 직역과 연계된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권리의 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경우 처

<sup>67)</sup> 金容燮、〈高麗時期의 量田制〉(《東方學志》16, 1975). 李成茂、앞의 책(1980).

<sup>68)</sup> 李佑成,〈高麗의 永業田〉(《歷史學報》28, 1965).

武田幸男, 앞의 글(1967).

李成茂. 위의 책.

영업전에 해당하는 지목으로 李佑成은 양반공음전·군인전·외역전을 들었으나 여기에 양반전도 포함시키는 武田幸男·李成茂의 해석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 출가하지 않은 딸의 경제적 대책을 위해 구분전이 수여된 것이다. 즉 전 정연립은 민전과는 달리 직역과 연계된 토지에 대한 권리의 상속이고, 그에 따른 몇 가지 세부적 성격이 존재하였다.<sup>(99)</sup> 따라서 종래의 적장자 단독상속설 등에서 전정연립만을 토지상속의 전부인 것으로 간주한 것은 중대한 오류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성격이 있다고 해서 전정연립을 상속의 범주에서 제외하려는 이해도 타당하지 않다. 친족관계를 토대로 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라는 점에서 전정연립도 당연히 상속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대적 토지소유 상황과 다른 당시의 토지보유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정연립을 토지상속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당시의 토지보유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결함을 갖는 것이다. 이제 그러한 전정연립의 상속권자에 대한 주요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정종 12년에 判하기를 諸田丁의 연립은 嫡子가 없으면 嫡孫으로, 적손이 없으면 同母弟로, 동모제가 없으면 庶孫으로, 男孫이 없으면 女孫으로 한다(《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戶婚).

위에서는 연립의 대상으로 적자-적손-(적자)동모제-庶孫-女孫(외손)의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직계(lineal)후손 범위는 그 후 언제부터인가 女壻도 첨가된 보다 넓은 범위의 내외친속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예종 4년 (1109)의 판문에서는 포괄적인 범위인 '內外族親'의 전지를 神步班에 속한 백정이 승계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700 인종대 자료에서는 妻의 養父의 전정을 「遞(立?)」또는「遞(受?)」한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710 養女壻에 의한 전정체립은 당연히 사위도 체립대상에 들어감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전정연립에서 주목되는 한 가지는 공통적으로 非單系的 상속이 나타 난다는 점이다.「외손」,「內外族親의 田地」,「女壻」,「養女壻」등이 그것이다.

<sup>69)</sup> 전시과의 전정 분급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나, 전정연립이 분급된 전정에 대한 직역과 연계된 권리·의무의 승계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sup>70) 《</sup>高麗史》 권 81, 志 35, 兵 1, 兵制 예종 4년 判.

<sup>71) 〈</sup>喬桐縣君高氏墓誌銘〉(《韓國金石文追補》, 156쪽)에서 '遊'라고 판독된 것은 '遞'의 異字로 보인다.

이러한 위 자료들의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하더라도, 정종 12년 판문에 입각한 이른바 적장자 단독상속설은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

적장자 단독상속설에서는 사유권이 미발달된 상태에서 부계 혈족집단에 의한 집단적 또는 공동체적 토지소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소유 관계를 국가에서 파악하기 위한 법제적 수단으로 적장자 단독 명의에 의한 승계로써 토지소유 관계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의 중심적인 자료가 된 위의 전정연립 규정에 대한 이해부터도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전정연립 규정에서 우선 주목되어야 할 사항은 전정의 연립이 내·외족을 포함한 직계혈족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정연립이 직역과 관계되어 있으므로 딸이 그 대상에서 빠진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 구성은 적자—적손—(적자)동모제—서손—여손(외손)의 순서로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72)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직계자손 중에 여손 즉 외손이 승계권자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다. 만일 부계혈족집단이 존재하여 그에 의한 집단적 소유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전정의 보유자에게 아들이나 男孫이 없을 경우 전정은 그 보유자의 형제나 姪 또는 從孫(형제의 손) 등 방계의(collateral) 부계혈족에게 승계되어야 한다. 그와 달리 외손에게 승계된다는 것은 부계로는 다른 혈통으로 넘어가는 것이니, 결혼한 형제간으로 이루어지는 최소의 집단 일지라도 부계집단에 의해 집단적으로 전정이 보유되고 있었다면 그와 양립될 수 없는 일이다.73)

전정의 보유가 혈족공동체에 의한 보유가 아니었음은 앞에서 언급한 예종 4년의 신보반 소속 백정에 대한 조치에서도 확인된다. 여기서 군인전으로 보이는 내외족친의 전지는 그 전토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단내에서가 아니라 그 전토의 보유와는 분리되어 있는 백정에 의해 승계되고 있다. 이는 전정의 보유가 집단적인 소유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소가족단위의 개별적 보유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외족과 마찬가지로

盧明鎬, 앞의 글(1989).

<sup>72)</sup> 정종 12년 判文의 田丁連立 대상 친속들에게는 누락이 추정되기도 하였다(旗 田巍, 앞의 글, 1957 및 武田幸男, 앞의 글, 1971).

<sup>73)</sup> 李佑成, 앞의 글(1975).

사위에 의한 전정연립 역시 부계혈족집단에 의한 집단적 소유가 존재했다면 다른 부계집단으로 넘어가는 것이니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문종 34년(1080)의 판문에서 적에게 항복한 軍・將들의 田은 친자의 연립 자격을 박탈하고 역을 감당할 만한 친척에게 주도록 한처벌조치도 주목된다.74) 이러한 처벌이 성립되는 것은 전정을 보유하는 경제적 생활단위가 일반적으로 부모와 친자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친자 대신 일차적으로 연립의 연고권을 부여하고 있는 친척의 경우는 국가에서 영업전적 속성을 존중하는 관계로 연립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들은 소가족적인 단위가 일반적인 당시에 별도의 가족단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전정을 연립함으로써 항복한 군장의 소가족적인 단위에 대한경제적 처벌이 이루어졌던 것이라 이해된다.

이상으로 볼 때, 전정은 혈족집단에 의해 소유된 것이 아니라 직역을 승계한 자 개인에게 상속 및 보유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종 12년 판문에 열거된 것은 어떤 집단적 소유의 대표적 존재들이 아니라 개인적 상속권자들의 우선 순위를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별 승계권의 순서를 규정해 놓는 것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직역수행자를 확보하기 위해,<sup>75)</sup> 상속자의 입장에서는 개인별 상속권의 순위 질서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전정연립은 개인에 의한 상속이었고, 이를 토대로 경제적 생활단위를 이루는 것도 소가족적인 가족범위가 중심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분전 제도에서는 전정의 보유자가 연립할 직계자손이 없이 죽음으로써 전정이 회수될경우 생계보호를 위해 구분전을 지급하는 대상으로 처를, 처가 없는 경우는출가하지 않은 딸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정을 보유하여 경제적 생활단위를 이루는 가족범위가 전정보유자 본인과 처 그리고 미혼인 딸과 아들을기본 단위로 고려된 것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정연립이 이루어질경우 구분전의 지급이 없음은 노부모나 미혼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으로 고려된 것이다.

아들 이외의 친속에게 전정연립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구분전의 지급은 없

<sup>74)《</sup>高麗史》 권 78, 志 32, 食貨 1, 田柴科.

<sup>75)</sup> 정종 12년 판문과 동일한 승계 순서를 보이는 《高麗史節要》권 4, 정종 12년 2월 制의 立嗣 규정의 내용도 개인별 승계권의 순서를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고려되는 범위들이 있게 된다. 예컨대 여서에 의해 전정연립이 이루어질 경우는 처부모나 처의 미혼 형제자매가 당연한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친손자나 외손자에 의해 전정연립이 이루어질 경우는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그에 해당된다. 전정연립과 관련하여 경제적 생활단위로 나타나는 이러한 가족범위는 앞 절에서 살펴본 고려시대의 가족구성과 부합되는 것이다. 즉 夫·妻와 미혼 자녀를 기본 단위로 하고, 부·처의 노부모나 미혼 형제자매, 내외조부모 등이 부양가족으로 포함되기도 하는 가족구성을 볼 수 있다.

전정이 소가족 단위의 경제를 바탕으로 개인별로 상속되고 있었듯이 공음 전이나 공신전의 상속도 마찬가지였다. 공음전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이설들 이 있으나 여기서는 상속과 관련된 면에 국한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현종 12년(1021) 판문의 "공음전은 直子가 죄를 범하면 그 孫에게 移給한다"고 한 것에서76) 공음전의 우선적인 승계자가 직자와 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종 27년(1073)의 판문에서는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女壻・親姪・養子・義子를 상속권자로 규정하였다.77) 이 친속들의 열거된 순서는 공음전 상속의 우선순위일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속순위의 존재는 다음에서 보는 공음전의 지급 규모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종 3년 5월에 兩班功蔭田柴法을 정하였다. 1품 門下侍郎平章事 이상은 田 25結과 柴 15결, 2품 參政 이상은 전 22결과 시 10결, 3품은 전 20결과 시 10 결, 4품은 전 17결과 시 8결, 5품은 전 15결과 시 5결을 자손에게 전하게 하되, 散官은 5결씩을 감하고, 樂·工·賤口로서 放良된 員吏에게는 모두 줄 수 없게 하였다. 功蔭田을 받은 자의 자손이 사직을 위태롭게 하거나 모반·대역에 연좌된 경우 및 공사의 여러 가지 죄를 범하여 除名되는 외에는 비록 아들이 죄가 있어도 그 손자가 죄가 없다면 공음전시의 1/3을 주게 하였다(《高麗史》권78, 志 32, 食貨 1, 功蔭田柴).

위에서 공음전의 지급규모를 보면 품에 따라 田 25~15결·柴地 15~5결이고, 散官은 이에서 다시 5결을 감하였다. 이러한 액수는 대체로 당시의 토지편제 단위인 1足丁·半丁 단위들을 크게 초과하지 않은 것이니, 그 편제단위

<sup>76) 《</sup>高麗史》 권 78, 志 32, 食貨 1, 功蔭田柴.

<sup>77)</sup> 위와 같음.

를 깰 수 없게 한 당시의 토지정책의 원칙에 의하면 1인의 친속에게 상속될 정도의 규모이었다.

문종 27년의 판문에서 사위는 아들이 없을 경우 다음 순위로 되어 있지만, 친조카·양자·의자보다 앞서고 있다. 양자의 경우는 순위가 사위와 친조카 다음이니, 특히 사위보다도 양자가 중요시되지 않은 것은 역시 부계친족집단 단위의 토지보유와는 합치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공음전의 상속자는 앞에서 본 전정연립의 직계혈족 중심의 상속자설정과 다른 점이 나타난다. 즉 전정연립에서 볼 수 없었던 친조카·양자·의자 등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주로 6품 이하를 위한 구분전제와 연계되어 공음전이 구분전을 지급하지 않는 5품 이상 고위 관인의 처 등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목적도 가진 때문이 아닌가 한다.<sup>78)</sup>

문종년간의 규정에서 보면 전정 보유자가 연립할 자손이 없는 경우 구분전의 지급은 6품 이하의 처나 퇴역한 군인 본인에게 국한되었다. 구분전 액수의 배 이상이었던 공음전은 일차적으로 직계자손에게도 경제적 기반이 되는 것이겠으나, 5품 이상의 처나 그 가족은 부양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직계자손이 없어도 사위나 친조카·양자·의자 등 봉양을 수행할 수 있는 자들에게 공음전을 주게 되어 있었다. 아들도, 사위도 없는 경우는 드물었을 것이나 친조카·양자·의자에까지 범위를 확대시켰으므로 공음전의 상속자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구분전의 지급대상에 5품 이상고위관인의 처가 포함되지 않은 문제가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5품 이상에서도 夫妻가 아들 없이 모두 죽은 경우, 미혼의 딸에게 구분전이 지급된 것은 父의 친조카·양자·의자 등의 부양을 받게 하는 것보다는 본인에게 구분전을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배려된 때문이 아닌가 한다.

공음전과 유사한 종목의 토지이나 공신에게 하사되었다는 특별한 동기와 내용을 갖는 공신전의 경우는 공음전과도 달리 균분의 원칙에 따라 자손에게 傳給되는 경우가 있었다.<sup>79)</sup> 공신전은 「山川爲表」로 언급될 정도의 대규모도 있었던 만큼 그 규모가 공음전시에 비해 대규모였으니, 균분의 원칙이 적용될 수

<sup>78)</sup> 문종 3년의 兩班功蔭田柴法의「品」을 관품이 아닌 공훈의 등급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다.

<sup>79) 《</sup>高麗史》 권 78, 志 32, 食貨 1, 功蔭田柴 충숙왕 5년 5월.

있었다. 그러나 공신전의 경우도 족정·반정의 토지편제 단위를 지키는 한에서만 균급하라는 단서가 있었다.

충선왕이 즉위하여 下数하기를 '功臣의 田으로 ⑦ 자손이 微劣하여 孫外의 사람이 占取한 것은 연한에 관계없이 그 孫에게 환급할 것이며, ④ 同宗 중에 1戶가 合執한 것은 그 足丁 및 半丁을 가려 均給하도록 하라'고 하였다(《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功蔭田柴 충렬왕 24년 정월).

공신전의 상속자로 「자손」이나「同宗」이 언급되고 있어, 부계자손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여겨질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동종」의 의미는 그같은 중국식의 의미와는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에서는 한 선조로부터 계보의 중간에 남녀가 다양하게 개재되는 계보들로 연결되는 직계의 후손들을 「宗」으로 지칭하기도 했으며, 공신의「자손」에 대한 음서도 실제로 내외 후손에 대한 음서를 의미한 경우들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앞에서 사유지인 민전의 경우 자녀균분상속이 나타나고, 전정의 연립에도 외손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음전의 상속에도 사위가 들어가므로, 공신전의 상속만이 부계후손만에 국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충선왕 즉위년에 내린 왕명에서 공신전의 상속도 자녀간의 균분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의 민전을 비롯한 사유재산의 상속은 자녀간의 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민전과 달리 수조권을 갖는 전정의 상속은 국가적 제도와 결합된 의무나 규제들이 수반됨으로써 민전 상속과는 달랐으나, 그 기초가된 친족관계는 공통적인 것이었다.

# 3) 친족조직

## (1) 성씨와 계보관념

고려시대에 대한 이른 시기의 연구들에서는 당시의 사회편성을 이해함에 성씨집단과 같은 부계 친족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를 밑받침해 줄 고려시대 친족조직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없으며, 단지 조선 후기에 보이는 門中組織이나 同族村 등을 "신라 이래 천여 년을 경과한 고래의 잔해"라는 식으로 이해하였다.80)

한 예로서 고려시대 촌락의 구성이나 토지소유의 주체 등이 성씨집단 내지 부계친족집단을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가정에서 출발하여 고려 전기를 혈연공동체가 존재하는 고대적인 사회로까지 이해하기도 하였다.81) 이 경우 혈연공동체적인 개념이 고려 전기를 이해하는 토대가 되었으나, 당시의 친족제도나 촌락내의 혈연관계망은 구체적으로 조사·검토된바 없었다.

고려말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자료에 의한 촌락 사례연구에서는 이성잡거와 상태가 나타나 성씨단위의 혈연공동체의 존재가 부인된 바 있다.82) 고려시대의 친족제도가 남아 있었던 17세기 초의 촌락의 혈연관계망이 동성집단, 동족촌과는 전혀 다른 양태임도 참고가 될 것이다.83) 이는 조선 후기의 상황을 고려 전기에까지 연결시키는 이해가 오류임을 잘 보여 준다. 또한 여말이래 고려시대의 가족과 거주율 및 촌락의 혈연관계망에 대한 직접적인 검토를 한 연구에서도 부계 친족집단에 의한 구성을 부정하고 양측적 친속관계에 의한 구성이 제시된 바 있다.84)

고려시대의 성씨집단을 가정한 연구의 또 다른 예로는 이른바「姓氏別 貴族家門」연구들을 볼 수 있다. 이 계통의 연구들은 1930년대의 연구에서 고려 전기의 인주 이씨를 대표적인 귀족가문으로 논증하려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85) 그 논증방법은 고려 전기에 활약한 인주 이씨의 인물들을 추적하여, 인주 이씨의 부계적인 계보의 인물들이 대대로 고관이 된 것을 밝히고, 왕실이나 당대의 세도가들과의 통혼관계를 밝히는 것이었다.

그 후 이러한 연구 방법은 거의 아무런 재검토나 비판없이 근래의 연구들에 그대로 수용되었으며, 이러한 방법은 다른 성씨들을 대상으로 적용되기도 하

<sup>80)</sup> 藤田亮策、〈新羅九州五京考〉(《朝鮮學報》5, 1953).

<sup>81)</sup> 旗田巍,〈高麗王朝成立期の'府'と豪族〉(《朝鮮中世社會の研究》, 1960).武田幸男,〈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の研究〉(《朝鮮學報》25, 1962).姜晋哲、〈農民과 村落〉(《한국사》5, 국사편찬위원회, 1975; 앞의 책), 304・433쪽.

<sup>82)</sup> 李佑成、〈高麗末期 羅州牧 居平部曲에 對하여〉(《震槽學報》29・30, 1966).

<sup>83)</sup> 盧明鎬, 〈山陰帳籍을 통해 본 17世紀初 村落의 血緣樣相〉(《韓國史論》5, 서울 大 國史學科, 1979).

<sup>84)</sup> 盧明鎬, 앞의 글(1988b).

<sup>85)</sup> 藤田亮策、〈李資淵と其の家系〉(上)・(下)(《青丘學叢》13·14, 1933·1934).

였다. 이른바 성씨별 귀족가문 연구들이 그러한 계통이고, 토성연구 등에서 도 그와 같은 연구·해석 방법이 종종 그대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성씨별 계보를 추적한 연구들은 귀족층에서 누대에 걸쳐 고관을 배출한 현상을 밝혀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부계 친족집단의 존재를 대전제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계보만을 추려 모은 것이므로, 그것이 귀족들의 부계 친족집단을 논증한 것이 될 수는 없었다. 8高祖圖나 조선 전기 족보와 같은 계보관계들 속에서 부계적인 계보선은 한 부분에 불과한 셈이고, 다양한 형태의 계보들이 대등한 비중을 가졌기 때문이다. 당시에 귀족층에서는 계급내혼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8고조도와 같은 직계의 다양한 계보들에는 대부분 누대에 걸쳐 고관이 나타나는 것이니, 부계적인 계보선만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부계친족집단을 논증하려면 그들이 단위집단으로 기능하였음을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하나, 고려시대에는 그러한 현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막연한 가정밖에는 제시된 것이 없다.

고려시대에 중국식의 성씨제도를 받아들여 성씨가 부계적인 계보로 전승되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점에서 곧 부계적인 성씨집단이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성씨는 고려의 성립 전에도 지배층을 중심으로 정치적 권위 및 질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사용되었고, 고려 초기의 이른바「토성 분정」으로 불리는86)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된 성씨 사용도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성씨를 사용하지 않은 인명표기들이 상당수 나타나는 것에서도 보듯이 고려 초기에는 지배층에서조차도 성씨를 아직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성씨가 일반 평민층에까지 확산되는 것은 더 오랜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태조대의 성씨 수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려초에는 광범한 성씨 수여가 있었고, 고려의 정비된 제도들에서는 공식적인 개인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 반드시 성씨를 표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국가적 시책은 성씨 사용의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고려의 성씨제도는 실제의 사회적기반이 친족제도에 뿌리를 두고 성립되어 중앙정부에 의해 정치적으로 수용・

<sup>86)</sup> 李樹健、《韓國中世史研究》(一潮閣, 1984), 13~23\,

蔡雄錫、〈高麗前期 社會構造外 本貫制〉(《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986). 朴宗基、〈高麗 太祖 23년 郡縣改編에 관한 研究〉(《韓國史論》19, 1988).

정리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친족제도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정치적 필요 내지는 통치질서상의 필요에 의해 도입·확대된 면이 강하였다.

성씨제도가 갖는 기능은 그를 통해 개략적이나마 출신 혈연을 가장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려초에 확립된 본관제도와 결합된 성씨는한 두 글자만으로도 그 성씨를 칭하는 어느 개인이 어떤 출신인가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부계 친족집단이 나타나지 않는 속에서도 성씨가 그러한 기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계급내혼과 결합되어 신분적ㆍ계층적 질서가 누대에 걸쳐 지속되는 경향이 강하였던 사회적 상황에 의해서였다. 계층적으로 같은 격을 갖는 것으로 묶어 볼 수 있는 여러 성 사이에서혼인이 거듭 되었기 때문에, 그 성씨를 갖는 개인들은 계속 같은 출신 계층에 속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성씨만이 개인들의 출신 혈연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은 아니며, 개인의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출신 계보는 四祖戶口式이나 八祖戶口式 등과 같은 공적 파악방식에 의해 나타나고 확인되었다. 부ㆍ조ㆍ증조ㆍ모ㆍ외조를 기재하는 4조호구식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8조호구식에 비해서도 성씨는 대단히 간략하게 그러면서도 유용하게 개략적인 출신 혈연을 나타낼 수 있었다.

성씨보다 상세하게 출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8조호구식이나 4조호구식 등과 같이 부계적인 계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다양한 계보들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은 고려의 친족조직이 중국의 경우처럼 부계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잘 보여준다. 성씨의 전승에서 모(외조)의 성, 조모의 성 등 다양한 경우의계보를 따른 예외가 적지 않게 나타난 이유도 고려사회의 바탕에 존재한 친족제도와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고려의 호적 기재양식은 중국 당·송의 제도를 참고한 것이었으나, 8조호구식은 물론 4조호구식도 중국 역대의 호적기재양식과도 다른 고려의 독특한 제도였다.

고려시대에 「~氏의 族」・「~氏의 宗」으로 지칭되는 실체가 무엇이었는가를 보면, 성씨와 결합된 계보관념이 부계씨족이나 리니지(lineage) 집단과 부합될 수 없다는 사실이 잘 드러난다. 한 예로 여말선초에 만들어진〈海州吳氏族圖〉라고 명명된 계보도를 보면, 그에 수록된 212명의 인물들 중에서 해주오씨는 2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양한 계보들의「외손」인 여러 他姓들이었

다.87) 잘 알려진《安東權氏成化譜》나《文化柳氏嘉靖譜》등을 비롯한 조선 전 기의「~씨」족보들에서도 절대다수의 수록인물은 성별로 계보를 한정하 지 않은 다양한 계보들의「외손」들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후기에는 「~씨의 족」으로 지칭되는 범위가 남성으로 이어지는 부계적인 계보에 한정되었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계보관념을 보여 준다. 이러한 「~씨의 족」으로 지칭되는 계보관념이 성별로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주자학적인 가족규범의 영향이 고조되고 있는 여말 이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것이 여말 이후에 새로이 성립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씨의 족」에 대한 그같은 계보관념은 고려 전기 이래의 전통에서 유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현종 10년(1019)에 죽은 劉晉의 열전에서 그 출신을 언급하면서 "后妃의 姓이 劉씨인 사람은 모두 그 宗에서 나온 까닭에 대대로 戚里가 되었다"는 기록에서<sup>88)</sup>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유씨 성의 후비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89)</sup>

- 太祖妃 神明順成王太后(父 忠州人 劉兢達)
- 景宗妃 獻懿王后(父 宗室 貞, 祖母 위 つ)
- © 成宗妃 文德王后(父 光宗, 祖母 위 <sup>(1)</sup>)
- ② 穆宗妃 宣正王后(父 宗室 圭)
- 回 德宗妃 劉氏(父 忠州人 劉寵居)

유진전에서 '후비의 성이 유씨인 사람은 모두'라고 한 것이나, '대대로 척리가 되었다'고 함은 위와 같은 여러 후비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그 중 부의 성을 따른 것은 ①과 ②뿐이며, 유진이 생존했던 현종대 이전에 서는 ①뿐이다. ②과 ⑤은 조모를 통해 연결되는 諱稱姓이고, ②의 경우는 구체적인 계보는 전하지 않으나 부의 성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들 을 포괄하여「忠州劉氏의 宗」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sup>87) 〈</sup>海州吳氏族圖〉의 수록 인원의 집계는 鄭在勳, 〈海州吳氏族圖考〉(《東亞研究》17, 1989)에 정리된 것을 참조하였다.

<sup>88) 《</sup>高麗史》 권 94, 列傳 7, 劉瑨.

<sup>89) 《</sup>高麗史》 권88, 列傳1, 后妃.

고려시대에는 성별로 한정하지 않은 모든 내외의 계보를 포괄하여 「~씨의 족」・「~씨의 종」으로 지칭하고 있었고,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조선 전기까지도 뿌리 깊이 남아 있었다. 이러한 내외손을 포괄하는 계보형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고려시대의 공신자손의 음서 사례들에서도(〈그림 3〉참조)나타난다. 이같은 어느 한 인물이나 부부로부터의 성별로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계보의 내외후손들이 단위집단을 구성하고 기능을 했다면 그것은 總系的(cognatic) 리니지나 씨족이 되겠지만, 고려시대에는 어떠한 형태로도 씨족이나 리니지 같은 친족집단의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 속에 그러한 「~씨의족」도 단위집단으로 기능하지 않았다. 「~씨의 족」으로 지칭되는 범위는 단위집단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않고 단지 그러한 계보 인식만을 나타냈는데,이러한 것은 총계적 리니지 등과 구분하여 스톡(stock)이라 불리기도 한다.

「~씨의 족」으로 지칭된 계보범위가 단위집단으로서의 기능을 갖기 어려웠던 것은 성씨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해주오씨족도〉나 《안동권씨성화보》 등의 속에 들어간 다양한 계보의 인물들은 각기 본래의 성씨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또다른 「~씨의 족」의 기록들 여럿에 겹쳐지게 수록되고 있었다. 실제로 〈해주오씨족도〉・《안동권씨성화보》・《문화유씨가정보》를 비롯한 조선 전기의 족보들에 수록된 인물들은 많은 수가 서로 중복되어 있다. 이는 동일 성씨를 갖는 인물들의 범위 자체도 단위집단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또한 당시에 「~씨의 족」으로 지칭된 범위도 그러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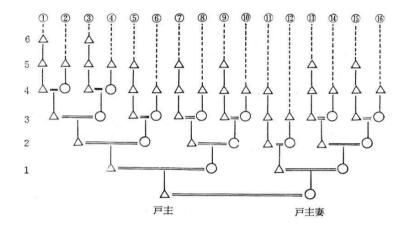
### (2) 부변・모변과 양측적 계보관계

고려시대 친족관계의 중요한 특성의 한 가지는 남성을 통한 계보관계로만 구성되는 부계의 계보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씨의 족」으로 지칭된 계보에서 보듯이 계보관계에서 구성되는 남과 여의 성별로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것은 부모-자녀관계로만 이어지는 직계의 계보관계에서 든 방계의 계보관계에서든 마찬가지였는데, 남성에서 남성으로만 연결되는 계보나 여성에서 여성으로만 연결되는 계보를 포함하여 중간에 남성과 여성이 다양한 형태로 개재되는 모든 계보가 친족관계의 토대가 되고 있었다.

고려시대 친족조직에서 계보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의 하나는 우선 다음 〈그림 1〉과 같은 8組戶口式을 들 수 있다.90)

〈그림 1〉

8조호구식의 世系推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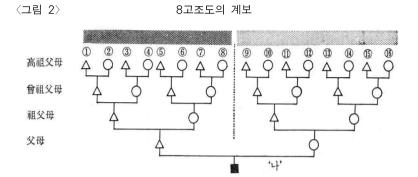
이는 호주를 중심으로 3세대를 소급하는 증조대까지는 남녀의 성에 관계 없이 모든 계보관계를 보여주며, 한 세대를 더 소급하여서는 증조와 증조모 각각의 부측과 모측의 계보를 보여준다. 8조호구식과 같은 유의 계보관계로는 고려시대의 전통과 연결되는 조선시대 계보도의 한 형태인 다음의 〈그림 2〉와 같은 8高祖圖를 볼 수 있다.91〉〈그림 2〉에서는 한 개인의 고조부모대까지 소급되는 모든 직계의 계보가 표현되고 있다. 여말의 음서관계 자료에서는 「外高祖」의 문음을 받은 사례가 발견되기도 한다.92)「외고조」란 중국

<sup>90) 〈</sup>그림 1〉은 이른바 국보 131호 호적(許興植,《韓國中世社會史資料集》,一潮閣, 1976)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러한 여말선초의 8조호구식의 예는 족보에 인용된 戶口單子나 准戶口들에서 몇 가지가 더 발견된 바 있다(이에 대해서는 許興植, 앞의 책 및 李基白, 앞의 책 참조). 본고의 논지와 큰 관계는 없으나, 8조호구식의 기재 내용은 世系推尋의 자료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다.

<sup>91)</sup> 宋俊浩, 〈韓國에 있어서의 家系記錄의 歷史와 그 解釋〉(《歷史學報》 87, 1980)에 는 〈그림 2〉와 같은 8고조도뿐만 아니라 16祖圖 등에 대해서도 소개되고 있다.

<sup>92)</sup> 盧明鎬、〈高麗時의 承蔭血族과 貴族層의 蔭敍機會〉(《金哲埈博土華甲紀念史學 論叢》, 1983).

에서와는 다른 고려에 특유한 계보관념에 의해 만들어진 호칭인데,〈그림 2〉의 ③·⑤·⑦·⑨·⑪·⑬·⑮가「외고조」로 불리웠다. 그리고 때로는 내외의 구별없이 ①~⑯ 모두가 高祖父母로 지칭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림 2〉에서는 계보상의 남(△)·여(○)의 구성이 균등한 반면, 〈그림 1〉에서는 16개의 계보 중 반에 해당하는 8개 계보의 위 부분에서 남성으로 만 연결되는 것이 나타난다. 이러한 계보형태는 8조호구식이 4조호구식을 단위로 하여 그것들을 모아서 이루어진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그림 1〉보다는 〈그림 2〉가 실제의 친족관계에서의 계보형태를 보다 잘반영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 특징은 계보상에 남성이나 여성만으로 구성되는 것도 포함하여, 중간에 남과 여가 다양한 순서로 개재되는 여러 가지계보들이 친족관계에서 대등한 비중을 갖는다는 점이다. 고려시대의 재산상속에서 자녀간의 균분상속이 계속될 때의 재산의 전승도 그러한 계보를 따라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예는 뒤에서 언급될 고려시대 음서관련 기사들에서도 나타난다.

8고조부모·외고조부모 등의 친족호칭도 중국에 없는 고려 고유의 친족호 칭이었고, 그러한 계보들 자체가 중국의 부계 친족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친족제도를 반영해 준다. 위의〈그림 2〉는 5세대 범위에 한정해 나타낸 계보도이지만 그보다 더 확대된 범위의 계보들도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그것은 功臣子孫蔭敍 등에서도 실제의 그러한 친족관계들을 보여주는 여러 자료들을 볼 수 있다.

고려에서 〈그림 2〉와 같은 계보들을 지칭한 고유의 용어를 본다면 우선「父邊」・「母邊」이라는 용어가 주목된다. 부변이라 함은 〈그림 2〉의 범위에서 16계의 계보들 중 ①~⑧에 해당하는 아버지쪽으로 연결되는 모든 계보들을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개념은 인류학쪽의 용어와 개념을 참고한다면 〈그림 2〉에서 ①의 계보만인「부계의(patrilineal)」계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며,「부측의(patrilateral)」계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마찬 가지로 모변이라 함은 〈그림 2〉의 범위에서 ⑨~⑥에 해당하는 어머니쪽으로 연결되는 모든 계보들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그림 2〉에서 ⑥의 계보만인「모계의(matrilineal)」계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며,「모측의 (matrilateral)」계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재산의 상속유래를 말할 때 '母邊傳來'라 함은 ⑨~⑥의 계보들 중 어느 것으로부터 어머니를 통해 전해진 것을 의미한다.

〈그림 2〉의 ①~⑥의 계보들 모두, 즉 부변(부측)과 모변(모측)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은 양측적(bilateral)이라는 용어가 그에 해당한다. 8고조부모의 범위의 부변과 모변의 계보들 모두를 포괄하는 양측적 계보는 대단히 다양한계보들을 포괄하고 있지만, 그 원리는 간단하다. 즉 친족관계를 성립시키는계보를 부계나 모계에서와는 달리 성별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를 더 확대한 범위에서도 동일한 양태가 나타난다. 이를테면 32祖圖니 64조도니 하는 것도 그 예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림 2〉와 같은계보는 이러한 양측적 계보가 세대를 소급하여 위로 올라가는 경우의 양태이지만,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경우에도 친족관계를 성립시키는 계보를 성별로 한정하지 않는 원리는 동일하였다.

그러한 실례를 보여주는 것은 음서관계 기록에도 여러 자료들이 있지만 그 중의 하나만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고종 40년 6월에 詔하여 ①-a 祖代六功臣 三韓功臣 內玄孫之玄孫之孫 ①-b 外玄孫之玄孫之子 挟七女 未蒙戶一名 許初入仕 ②-a 三韓後壁上功臣 內玄孫之玄孫之玄孫之子 ②-b 外玄孫之玄孫之玄孫 挾六女 未蒙戶一名 許初入仕 ③-a 代代配享功臣 內玄孫之玄孫 ③-b 外玄孫之曾孫 挾五女 未蒙戶一名初入仕(《高麗史》 권 75, 志 29, 選舉 3, 凡敍功臣子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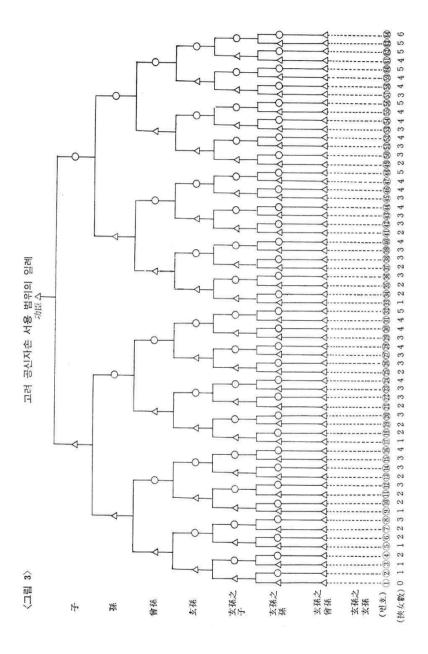
이는 ①・②・③의 세 등급의 공신 자손들에 대해 음서의 혜택을 주는 범 위를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①-a. ②-a. ③-a의「內玄孫之…」라 함은 子에서 구로 이어지는 계보의 자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①-b. ②-b. ③-b의「外玄孫之…」라 함은 전자와 달리 중간에 女가 들어가는 계보의 자 손들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①-b의「挾七女」, ②-b의「挾六女」, ③-b의 「挾五女」라는 기사로. 이는 곧 그 계보의 중간에 들어가는 여의 수를 뜻하 는 것이다. 단 여기서 주의할 것은「外玄孫之曾孫 挾五女」라고 한 것에서 「挾5 女」는 8세손에 이르는 범위의 계보 중 반드시「여」가 5명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 5명까지 들어가는 것을 상한으로 한다는 것을 뜻한 다는 점이다. 즉 女가 1명부터 5명까지 들어가도 된다는 것으로 충렬왕 8 년의 聖祖苗裔에 대한 음서에서의 「雖挾()()女」라 함과 같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①・②・③은 子에서 자로 이어지는 계보상의 자 손 들만이 아니라. 비록 약간의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나 계보의 중간에 女도 들어 가는 자손들에게도 음서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①·②·③중 에서 그림으로 표시하기 편한 가장 작은 범위를 갖는 ③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3〉과 같은 64가지 경우의 계보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94) 이 중 64번째 의 경우 하나만이 女가 6명이 들어가므로 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림 3〉에서 6월까지를 포함하는 8세손까지의 범위는 祖先인 공신에서부터 비롯되는 子와 女 모두를 통한 모든 후예들과의 혈연관계가 된다. 〈그림 3〉에 나타나는 계보는 〈그림 1〉이나 〈그림 2〉와 비교할 때, 한 개인으로부터 아래로 자손들에 이르는 계보인 것에 비해 위로 조선들에 이르는 계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에서 나타나는 선대에서 후손에 이르는 직계의 계보 각각에 주목하면 동질성이 나타난다. 즉 그 계보관계의 특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다양한 형태의 계보들을 포괄하는 양측적인 것이다.

 $\langle$ 그림  $3\rangle$ 에는 계보의 시점과 종점들을 모두 남성( $\Delta$ )에 한정했는데 이는 당시의 공신이 되는 주체와 음서의 대상이 되는 주체가 모두 남성이었기 때문이

<sup>93) 《</sup>高麗史》 권 75, 志 29, 選擧 3, 凡敍祖宗苗裔 충렬왕 8년 5월 敎.

<sup>94)</sup> 盧明鎬, 앞의 글(1979), 312~315쪽.



다. 또 〈그림 3〉은 내손으로는 현손의 현손인 9세손, 외손으로는 挾女數가 5이하인 범위내에서 현손의 증손인 8세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인데, 이는 음 직수여 범위의 한계선상에 위치하는 자손들로서 실제로는 9세손 또는 8세손 이내의 전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남・녀에 대등한 계보관계는 방계의(collateral) 계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한 예를 전・현직 고관의 혈족에 대한 정규적인 음서의 시행에서 보면, 그 우선적인 대상은 대체로 直子, 內孫과 外孫, 姪과 甥, 壻와 收養子의 순서였으니, 방계혈족으로서 형제의 子인 질과 자매의 자인 생이 대등하게 포함되고 있었다. 고아가 된 방계친족 아이에 대한 부양에 있어서도 형제의 자녀(질 및 절녀)와 자매의 자녀(생질 및 생절녀)가 대등하게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을 아이들의 입장에서 파악하면 친삼촌・외삼촌・고모(부)・이모(부)에 의한 부양의 경우들이 되고 있었다. 또 다른 예로, 고려의 相避制는 중국 송제를 참고한 것이지만, 중국에서 부계적인 친족들에 치중되어 있었던 것과는 달리, 남・여를 통한 계보상의 대칭적 위치의 친속들이 대등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95) 그것을 방계친속에서 보면 친삼촌과 외삼촌, 고모부와 이모부, 질과 생질, 친사촌・고종사촌・외사촌・이종사촌 등이 대등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보다 먼 방계의 친속으로서 동성인 친속과 마찬가지로 이성인 친속도 '族人'으로 호칭되며 대등한 유대관계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있거니와,96) 방계의 계보관계도 양측적인 형태를 잘 보여준다.

# (3) 촌수와 「나」를 기준으로 한 친속

고려시대 친족제도의 중요한 특성의 또 하나는 寸數제도에서 나타난다. 촌수 제도는 우리 나라에 특유한 고유의 제도로서 중국이나 일본 등에도 없는 제도이다.97)「촌수」란「나」를 기준으로「나」와 어떤 친속 사이의 친족관계의

<sup>95)</sup> 盧明鎬, 〈高麗의 五服親과 親族關係 法制〉(《韓國史研究》33, 1981).

<sup>96)</sup> 그 한 예로서 崔忠獻 일파의 핵심적 인물에 속했던 盧碩崇과 金躍珍이 '族人'으로 지칭되고 있다(《高麗史》권 129, 列傳 42, 叛逆 3, 崔忠獻). 이러한 예는 많이 나타나거니와, '족인'만이 아니라 부계적인 친속을 지칭하는 다른 漢字式 호칭들도 외족 등에게 그대로 쓰이고 있는 사례들이 자주 나타난다. 이는 고려의 친족 호칭이 부측의 친속과 모측의 친속에 같이 쓰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sup>97)</sup> 金斗憲, 앞의 책 (1949), 214~216쪽.

仁井田陞.〈高麗の親等制と中國法〉(《中國法制史研究》, 1959).

천소 정도를 나타내는 방식이고, 또한 계보의 중간에 형제자매관계가 들어가 갈리어진 방계의 친속간에는 「촌수」가 친족호칭에 쓰이기도 한다. 촌수는 계보관계에서 부모와 자녀관계의 계보를 1촌의 단위로 삼아 그러한 단위의 수를 누산하여 3촌·4촌 등과 같이 「~촌」이라 하게 되며, 방계혈족과의 촌수는 「나」와 그 친속의 선대의 직계 계보가 만나는 데까지의 촌수를 합하여 얻는다. 이러한 촌수제도는 「나」를 기준으로 「나」와 여러 친속들과의 친족관계의 원근을 정확히 생물학적 혈통관계의 원근에 따라 파악하고 분류하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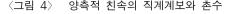
「나」를 기준으로 성립되는 친족관계(ego oriented kinship)는「親屬(kindred)」이라 불리는 친족관계이다. 이「나」를 기준으로 한 친족관계는 조상을 기준으로 한 친족관계(ancestor oriented kinship)와 구성이나 기능방식이 근본적으로다르다. 조상을 기준으로 한 친족관계는 씨족이나 리니지 등과 같이 어느 한조상을 기준으로 일정한 규칙에 의해 정해지는 그 후손의 집단을 토대로 한다. 이에서는 개인은 집단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며, 그 성원개인들이 속하는 친족집단은 한 성원으로서의「나」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일정한 범주를 가지며 지속적으로 집단적 기능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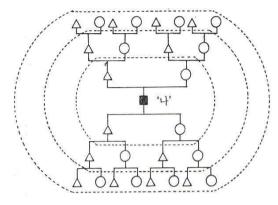
한편 親屬으로도 불리우는 「나」를 기준으로 한 친족관계는 「나」와 일정한 계보관계에 있는 개인과의 개인적 관계를 토대로 한다. 「나」와 그러한 개인들 사이에는 개인적인 쌍방관계로서의 권리·의무가 존재하며, 「나」와 그러한 관계를 갖는 개인들의 범주는 각 개인마다 달리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범주들은 「나」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되며, 지속적인 집단적 기능을 갖기가 어렵다.

〈그림 1〉·〈그림 2〉에서는 한 개인의 직계선조들을 나타내는 계보들을 볼 수 있고, 〈그림 3〉에서는 한 개인의 후손들을 나타내는 계보들을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여 한 개인「나」의 직계선조들과 후손들로 인지되는 계보 형태들을 동시에 나타내는 계보도를 작성하면, 〈그림 4〉와 같이 상하로 퍼

고려시대의 촌수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

<sup>&</sup>quot;憲司請禁 外家四寸通婚"(《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奸非 충렬왕 34년 윤 11월).





지나가는 방사선 형태가 된다. 그 계보들은 촌수 와 함께 고려하면 「나」 를 중심으로 한 동심원 들이 그려지게 된다. 「나」로부터 멀리 확 대된 동심원의 범위일수 록「나」와의 관계는 멀 어진다. 이는 한 개인을 중심으로 한 직계의 혈

족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여기에 표시된 남·여 선조들의 일정 범위의 형제·자매와 그의 후손들도 그 개인과 방계의 혈연관계를 갖는다.

고려시대의 계보관계를 나타낸 〈그림 4〉의 계보형태는 그 자체가 「나」를 기준으로 성립되고 있는 친족관계임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친족관계는 각 개인을 기준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그 친족관계의 범주들은 개인마다 달라진다. 이를테면 〈그림 4〉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부나 모의 친속이라 하더라도 「나」의 친속들과 다르게 된다.

씨족이나 리니지같은 조상을 기준으로 한 친족관계와 「나」를 기준으로 한 친족관계인 친속은 한 사회내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며 공존하는 경우 도 있다. 가까운 예로 중국과 같은 경우의 친속은 부계의 성씨별 씨족 내지 는 리니지조직과 공존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계의 계보관념에 의한 친족조직과 공존한 중국의 친속체계는 양측적 계보관념이 존재한 고려 에서의 친속체계와 대단히 큰 차이를 가졌다.

중국의 친속은 우선 부계 위주의 편향성이 대단히 컸다. 또한 친속을 구분하는 체계도 조상을 기준으로 방계별로 구분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從-」・「再從-」・「三從-」등의 접두어를 형제・자매・질 등의 기본 친족호칭에 붙여 구분하였다. 이는 중국의 친속이「나」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성씨집단과 같은 부계의 조상을 기준으로 한 친족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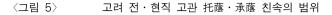
고려에서는 친속관계가 부변·모변의 양측적 계보들에 대등한 비중으로 존재하였다. 고려 고유의 제도인「촌수」는 철저히「나」를 기준으로 원근관계가 정해지는 친속관계였다.「宗」・「族」・「孫」・「孫」・「姪」등 중국에서는 부계의 친족들에게만 쓰이는 한자어 친족용어들이 고려시대에 작성된 문장에서는 종종 외족 등 성별로 한정하지 않는 양측적 계보의 친속들에 그대로 쓰이는 사례들이 나타난다. 이는 양측적 계보관념에 따라 성별로 계보를 한정하지 않은 당시의 고유어 친족용어들을 우리말이 아닌 한문으로 기록할 때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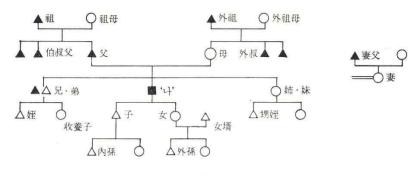
고려의 친속이 이처럼 양측적 계보에 입각하여 철저히 「나」를 기준으로 성립됨으로써 중국의 친속과 현저히 달랐던 것은 정치·사회적 제반 중국제도가 고려에 도입되면서 철저히 재구성되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당시에 「나」를 기준으로 성립되는 친속관계의 작용상태를 실례를 통해서 보면, 한자식 친족 호칭을 사용한 제도에서도 중국과 달리 성별로 한정하지 않는 계보에 촌수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로써 우선《고려사》의 凡蔭敍條에서 보면 전·현직 고관인「나」를 중심으로「나」에 의해 음서를 받게 되는 承蔭親屬들이 열거되고 있다. 이 승음친속관계를 기초로「나」에게 음서를 받게 해 줄 수 있는 托蔭친속을 파악해 볼 수도 있는데, 이들두 범위를 나타내 보면 다음의〈그림 5〉와 같다.

범음서조의 자료들에서 성별로 한정하지 않는 계보에 혼수의 원리가 작용하는 면은, 우선 가장 일차적인 음서의 대상이 子(直子)였다는 사실에서 잘나타난다. 여기서의 음서 대상은—친족호칭으로서의 1촌, 2촌 등의 표현은 쓰지 않으나—촌수의 계산에서 1촌간에 해당하는 子를 최우선으로 출발하여확대될 경우 대체적인 경향은 2촌간에 해당하는 內孫과 外孫, 3촌간인 질과 甥의 순으로 확대되고 있었다.98)

단 친족관계를 성립시키는 계보관계가 성별로 한정되지 않는 양측적인 것이었다는 사실과 그 사회의 성별 사회적 역할의 문제가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sup>98)</sup> 위의 범음서조에서 弟는 현종 5년 敎에서만 포함되었고, 그 후의 자료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壻와 收養子도 들어가 있었으나 이들은 촌수로 나타낼 대상 은 아니다. 또한 양자제는 고려에서는 실제로는 극히 적게 행해진 것이어서 敎 숙이나 判文에 수양자가 음서의 대상으로 들어가 있다 해도 그 실제성은 적다.





\* ▲;托蔭親屬 △;承蔭親屬

자와 여는 자녀 균분상속제에 의해 재산상속에서는 대등하게 일차적인 상속자가 되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속이지만, 女는 관직을 가질 수 없으므로음서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 다음의 2혼간에 해당하는 계보에서도 마찬가지로 내외손녀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내・외손이 함께 들어가었다. 妹가 해당되지 않고 弟가 들어간 경우도 그렇다. 3촌간에서도 내외의친속들을 아우르는 범위가 되며, 단지 음서 대상이 아닌 여성들만이 빠진다.여기서 여성이 관직의 대상이 아니라는 당시의 성별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면, 계보관계는 성별이 한정되지 않았음이 잘 나타나며, 또한 동시에 촌수의원리가 작용하는 면도 잘 드러난다.

그러한 촌수의 원리가 작용하는 면은 위와 같은 3촌 이내의 범위보다 확대된 경우에도 나타난다. 《고려사》의 凡敍功臣子孫條와 凡敍祖宗苗裔條의 보다 확대된 범위의 음서가 그 예이다. 이에서도 계보를 성별로 한정하지 않는 내외의 후손들을 음서의 대상으로 하되, 가까운 후손을 우선으로 하고 음서범위가 확대될 경우 보다 먼 후손에까지 음서가 시행되었다. 앞에서 본 고종 40년(1253) 공신자손음서에서도 代代配享功臣, 三韓後壁上功臣, 祖代六功臣과 삼한공신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그 음서대상 내외자손들을 한 세대씩 확대시키고 있다. 음서제도의 바탕에 존재하는 「나」를 기준으로 「나」와의 친족관계상의 친소의 등급이 정해지는 촌수제도의 원리는 친속으로서의 양태를 잘 보여

준다.

「나」를 기준으로 성립되는 친속으로서의 친족관계는 다른 여러 제도들에서도 나타난다. 인종 12년(1134)의 사심관제도에서는%) 그 임명 연고지가 관직의 고하에 따라 보다 다양한 계보의 확대된 연고지를 대상으로 사심관을 맡도록 하되, 그 확대는 사심관인「나」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친속관계를 1차적 대상으로 하고 점차 다음 등급의 가까운 친속관계로 확대되고 있다. 즉 선택의 범위가 가장 적은 參外員에서는 내・외향 중 1향을, 4품 이하 참상 이상은 내・외향・祖妻鄉 중 1향을, 상장군 이하 3품 이상은 내・외향・조처향・증조처향 중 2향을, 재추는 내・외향・조처향・증조처향・처향 중 3향을 선정하여 사심관을 맡도록 하였다.

이 사심관제도에서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내향(부의 향)과 외향(모의 향)이 일차적인 연고지로 열거되고, 그 다음은 조처향(조모의 향), 증조처향(중조모의 향), 처향의 순으로 가까운 연고지가 열거되었다. 이러한 내·외향 등의향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나」를 기준으로 한친속으로서의 양해를 잘 보여준다.

무신집권기의 관제운영에서조차 준수되고 있었던 상피제의 경우도 「나」를 기준으로 한 양측적 친속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100) 고려의 상피제는 당·송의 제도를 참고한 것이었으나, 부계친족에 일방적으로 편중된 중국의 제도로부터 대대적인 변화를 가하여 부변과 모변의 친속에 대등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또한 처변의 친속도 확대되어 대등한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피제의 대상 친속범위도 각 개인들마다 달라지는 것이어서 역시 「나」를 기준으로 한 친속의 전형적인 것이며, 부변과 모변에 대등한 범위가되고 있는 것을 양측적 친속적인 양태를 반영해 준다.

한 가지 더 언급해 둘 것은 사심관제나 상피제에서도 보이는 고려시대의 처족과의 관계이다. 음서제·전정연립·공음전 상속에서도 壻가 들어가 있는데, 처족과의 관계도 부변과 모변의 친속에 버금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자녀 균분상속제나 딸에 의한 노부모봉양에서 볼 수 있듯이 딸이 아들과 대등한 친

<sup>99)《</sup>高麗史》 권 75, 志 29, 選擧 3, 事審官.

<sup>100)</sup> 盧明鎬, 앞의 글(1981).

金東洙, 〈高麗時代의 相避制〉(《歷史學報》102, 1984).

속으로서의 비중을 가졌던 만큼, 姻親으로서의 壻와 처족 사이는 긴밀했던 것이다.

#### (4) 양측적 친속의 특성과 기능상태

고려시대의 친족제도와 관련된 법제 중에는 중국 당·송의 법제를 참고한 것들이 많다. 그러나 당·송의 친족제도와 고려의 친족계도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까닭에 중국의 친족제도와 관련된 법제가 고려 에 들어올 때는 근본적인 큰 변개가 가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나」를 기준으로 성립되는 친속(kindred)은 그에 포함되는 계보관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 하나는 계보가 성별로 한정되거나 크게 편중되는 單系的 친속(unilineal kindred) 또는 비대칭적 친속(skewed kindred)이라 하는 것으로 중국 당·송의 제도에서 나타나는 친속은 이에 해당한다. 중국의 친속은 부계친족들에 일방적으로 편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당·송의 친속이 당시에 중국에서 강력한 기능을 하고 있었던 조상을 기준으로 성립되는 친족집단인 부계의 리니지나 씨족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

친속의 또 다른 형태는 그 계보가 성별로 한정되지 않는 양측적 친속 (bilateral kindred)으로 부변과 모변에 대등한 친속범위들을 갖는 고려의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조상을 기준으로 한 친족조직인 씨족이나 리니지가 존재하지 않았던 까닭에 친속의 기능은 친족관계의 전반에 걸치고 있었다.

당·송과 고려의 친족제도가 이처럼 크게 달랐던 까닭에 중국의 제도들이 고려에 도입될 때 그대로 고려사회에 부합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런 까닭에 중국의 제도가 고려에 도입될 때 그 제도를 구성하는 원리들 중의 일부만을 수용하거나 제도를 개편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했으니, 그 시행 상태는 대체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 한 가지는 성씨(姓質)제도에서처럼 부분적인 원리만을 수용하여 그 원리를 대체로 유지한 경우이다. 고려의 성씨제도는 그와 결합되어 있는 종법제적 친족원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부계적인 출신 계보의 선대를 표시하는 원리만을 수용한 경우로, 그 부계적인 원리는 대체로 유지되었다. 고려시대에 공식적으 로 출신 혈연관계를 표시하고 확인하는 방법인 8조호구식·4조호구식·성씨 등이 존재하는 속에서 성씨는 대략의 출신 계보를 가장 간략하게 나타내고 파악하는 수단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혈연적 계보관념만큼은 중국과 근본적으로 달라서 당시에 「~씨의 族」・「~씨의 宗」으로 지칭되는 것이 같은 성씨의 부계친족만이 아니라, 성별로 한정되지 않는 모든 다양한 계보의 타성외손들까지를 포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보관념과 성씨의 부계적 전승원리 사이의 괴리 때문에 성씨의 부계전승에 적지 않은 예외들이 나타나기도하였다. 이 극히 간략하고 단순한 성씨의 전승원리는 그만큼 변형시키기도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그 부계적인 원칙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그 대신 때때로 양측적 계보관계에 따른 성씨제도의 예외적인 시행이 정부차원이나 개인적 차원 모두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났던 것이다.

둘째로는 유교적 예법과 관련된 중국의 제도로서, 이 제도는 고려의 양측적 친속관계에 맞추어 일부 중요한 변형이 되기도 했지만 예제적인 중국식제도의 골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였다. 그 좋은 예가 특히 당제를 크게 참고한 五服親制이다. 중국에서도 오복친은 「나」를 기준으로 한 친속이었으나 그 구성은 종법적 친족제도가 존재하는 속에 부계에 일방적으로 편중되었다. 고려의 오복친제는 외조부의 正服을 親祖父母의 정복과 같은 등급으로 하는 등 외족복의 등급을 크게 높이고, 역대 중국의 제도에서는 有服親에들어간 적이 없는 堂舅와 堂姨를 유복친에 넣는 등 외족 유복친 범위까지확장시켰지만, 전체의 테두리는 당의 유복친 및 袒免親[단문친]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셋째는 예법과는 달리 사회생활에 실질적 중요성을 갖는 제도로서, 이러한 경우는 고려의 양측적 친속관계에 맞추어 중국의 제도로부터 근본적으로 개편된 제도를 만들었다. 상피제의 경우 송제를 본보기로 성립되었으나, 송제에서 오복친이 근간이 되었던 것과는 달리, 고려에서는 本族은 大功親 이내로 크게 축소시키고 外族은 그와 반대로 無服親까지 확대시켜 대등한 범위로 만들었다. 또한 처족도 처의 대공친 범위까지 대폭 확대시켜 대등한 범위로 설정되었다. 상피제는 情實에 의한 관제 운영상의 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오복제와 대조되는 좋은 보기라 할 것이다.

음서제의 경우도 송의 법제에서는 부계적인 친족인 본족 유복친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고려에서 승음친속 범위는 가까운 친속으로부터 광범한 내외후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들이 나타나지만 모두 양측적 친속이 토대가되었다.101)

금혼범위도 당·송의 법제에서는 동성혼 특히 同姓有服親婚이 엄금되고 외족의 경우 4촌간의 혼인도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던 반면, 고려에서는 동성 유복친혼도 문제되지 않는 속에 내외의 친속과 대등하게 근친을 대상으로 혼인이 금지되었고, 양측적 친속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금혼 범위는 후대로 올수록 점차 6촌·8촌 범위까지 확대되었다.102)

중국식 제도의 수용을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곧 중국식 친족 제도의 수용 또는 그의 성립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다. 중국의 법제를 수용하는 데 나타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제반 현상들은 고려사회의 친족제도에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들이었다.

고려의 친족제도는 법제의 비교에서도 나타나는 바처럼 그 구성이 중국의 친족제도와 근본적으로 달랐으니, 그러한 고려 친족제도의 구성상의 특징은 부계만이 아닌 부변·모변의 모든 계보를 포괄하는 계보에서 우선 중요한 특성을 가졌다. 즉 그것은 부계나 모계만으로 구성되는 단계적 혈족구성과도 판이하게 다른 것이고, 부모의 혈족의 어느 한쪽에 선택적으로 구성되는 선계적(ambilineal) 혈족구성과도 다른 것이다. 또한 이는 계보상에 남녀가 혼재되어 있는 계보(〈그림 2〉에서 보면 ①~⑤)의 혈족관계와 같은 모든 계보(〈그림 2〉의 ①〉만의 혈족과 모계(〈그림 2〉의 ⑥〉만의 혈족과 모계(〈그림 2〉의 ⑥〉만의 혈족, 두 가지에 개인이 동시에 귀속되는 二重出系(double descent)의 친족조직과도 다른 것이다. 이러한 이중출계와 양측적 친속의 차이를 나타내면〈그림 2〉와 같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친족제도에서 본족과 외족을 아버지쪽·어머니쪽 각각의 부계친족집단으로 이해하는 것은〈그림 2〉에서본다면 본족의 경우 ①의 계보, 외족의 경우 ⑨와 같은 계보범위에만 한정하여 이해하는 것이 되고, 나머지 계보의 친속들과의 관계를 누락시키는 것이

<sup>101)</sup> 慮明鎬, 앞의 글(1983).

<sup>102)</sup> 盧明鎬, 앞의 글(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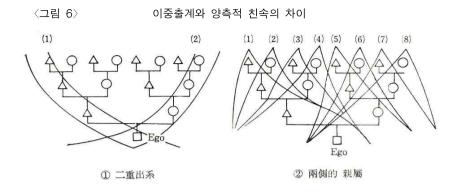
된다.

단〈그림 1〉에 나타낸 8조호구식에서 ①의 부계만의 계보가 다른 ②~⑩의 세계추심보다 1~2세대 많은 것과,〈그림 3〉에서 내손들(〈그림 3〉의 ①)이 외손들(〈그림 3〉의 ②~⑥)보다 한 세대 더 큰 범위까지 음직수혜의 대상이 되고,〈그림 3〉의 ⑥4가 ②~⑥보다 계보상에 개재되는 여가 1명 더 많아제외되는 것 같이 남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계보에 약간의 혈연적 계보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약간의 혈연적 강조의 편중은 양측적 친속형태의 혈연관계에서 흔히 있는 일로 알려지고 있다.

고려시대 친족제도인 양측적 친속의 또 다른 특성은 지속적인 단위집단으로서의 기능을 갖기 어렵고, 씨족이나 리니지처럼 집단의 성인으로서가 아니라 개별적인 친속과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 작용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양측적 친속의 그러한 특성은 친속범위들의 심한 중첩성, 친속간에도 서로다른 친속범위, 개인별로 규정되는 친속관계에 의한 것이었다.

친속범위들의 중첩성이란「나」의 친속범위들이 또한 동시에 다른 다수의 개인들을 「나」로 하는 친속들과 중복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씨족이나 리니지 등과 달리 양측적 친속이 그 자체만으로서는 단위집단으로 지속적인 기능을 갖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를 앞에서 본 계보에서 살펴보면, 〈그림 3〉에는 하나의 조상에서 비롯된 남과 여 모두를 통한 후예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보범위는 스톡 (stock)이라 불린다. 양측적 친속에서 「나」는 이러한 스톡형태의 계보범위들에 중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예를 들면, 앞에서 본 「~씨의 족」등으로 지칭된 계보기록이 그러한 스톡형태의 계보범위였음을 언급하였는데, 〈해주오씨족도〉・《안동권씨성화보》・《문화유씨가정보》등에는 한 개인이 셋 중의둘 이상에 중복해 기록되고 있는 경우들이 다수 나타난다. 이것은 제한된 계보기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러한 계보기록과는 별도로 그러한 계보의식이 존재하는 속에서 한 개인은 자신의 선대와 관련된 여러 스톡형태의 계보범위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도형화한 것에서 살펴보면,〈그림 6〉의②는 4세대 범위에서 「나」를 포함하고 있는 스톡범위들을 (1)~(8)의「^」표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는 친속범위들 중「나」로부터 소급되는 직계의 인물



들만을 표시해 놓은 것으로 실은 이들 계보상의 인물들 모두로부터의 남과 여 모두를 통한 후예들의 표시를 생략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범위는 나와의 촌수가 멀어질수록 나와의 관계도 줄어들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친속 관 게가 잘 드러나지 안는 친속들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중첩성 때문에 「~씨의 족」등으로 지칭된 스톡형태의 범위는 그성원들만의 독자적인 단위집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조선 후기에 발달한 문중조직이 그 전대에는 외족으로 관계를 갖던 계보들의 다른 성씨들을 배제시키며 동성동본만의 부계적인 집단을 형성하고 기능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태이다. 스톡범위의 중첩성을 개인 차원에서보면, 「나」는 동시에「~씨의 족」으로 지칭되는 여러 스톡범위들에 속하여, 어떠한 특정 범위만에 속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개인들로 구성된 스톡범위들이 독자적인 단위집단을 이루어 기능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고려시대에는 문중 조직과 같은 것이 없었음은 물론, 時祭(時享)와 같은 공동의 조상에 대한 친족 집단 단위의 정기적 제사도 없었고, 선산과 같은 친족집단 공동의 묘역도 없었다.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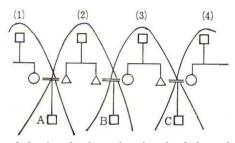
이러한 스톡범위의 중첩되는 혈연관계는 부모가 같은 형제간이 아니면 개인마다 달라지게 된다. 2세대를 소급하는 범위에 한하여 4촌간에서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7〉과 같다. 여기서 보면 A는 스톡 1·2, B는 스톡

<sup>103)</sup> 崔在錫、〈高麗時代의 喪・祭〉(《鄭在覺古稀記念東洋學論叢》, 고려원, 1984). 金龍善、〈高麗 支配層의 埋葬地에 대한 고찰〉(《東亞研究》17, 1989).

2·3에 포함되어 각각 포함되는 스톡들이 반만 같고 반은 다르게 된다. 이를 다시 6촌형제간에서 보면 1/4만이 같고 3/4은 다르게 된다. 또한 사료 A 등에서도 처족의 비중을 볼 수 있으니, 率壻婚이나 女壻相續 등 당시의 사위와 처족과의 강한 혈연적 유대는 형제간에도 각기 다른 혈연관계망을 갖게하였다. 이처럼 각 개인마다 서로 다른 친족관계망을 갖는 것은 원초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나」를 기준으로 한 개인 대 개인의 친족관계라는 구조에서비롯된 것이고, 이는 양측적 계보관계에 의해 더욱 현저해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양측적 친속은 그 범위가 중첩되고 친속간에도 서로다른 친속범위를 갖기 때문에 친족집단으로서가 아니라 개인대 개인의 관계로 작용하였다. 그러한 양측적 친속의 작용 형태는 「촌수」제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림 7〉 개인별 친속범위의 차이



촌수제도로 나타낼 수 있는 계보상의 원근에 따른 친소정도의 차이는 친속 관계의 실제 작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 개인의 친속들이라도 친소 정도의 차이에 따라「나」와 그들 각각의 친속으로서의 유대가 각기 달랐고, 나와 그들 친속들과의 친속 관계가 사회생활에 작용하는 빈도도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본 사심관제에서 연고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각 친속들과의 관계는 그 좋은 보기의 하나이다. 고려시대에 음직이 일차적으로 근친들에게 수여되고 점차 원친에까지 확대되는 것도 친소관계의 차이에 따라 각 친속들과의 유대정도의 차이나 그들 각각과의 관계가「나」의 사회생활에 작용하는 빈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촌수로 표시되는 것처럼 「나」를 기준으로 파악되는 계보상의 원근에 의거한 양측적 친속의 친소의 등급별 범위는 각 개인을 중심으로 하여 동심원 형태로 구별되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려진 원의 안에 있는 다른 각 개인들(갑의 친속들)에게는 각자마다 그를 중심으로 설정되는 또 다른 동심원들(갑의 친속인 乙, 丙, 丁 등 각 개인의 친속범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원들은 서로 일부가 겹쳐지며 계속 연결되어

나가는 양상을 이루게 된다. 이는 개인이 포함되는 스톡범위들이 여럿이 중 복되며, 근친간에도 각 개인마다 그렇게 중첩되는 스톡범위들이 다른 데서 오는 현상이다.

개인별로 서로 다른 양측적 천속범위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개인의 천속들이라 해도 그 개인「나」에 대한 친소의 정도가「나」를 기준으로한 계보관계의 원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양측적 친속은 하나의 단위 집단으로 기능을 하기가 어려웠고 자연히 개인간의 개별적 관계로 작용하였다. 간혹 한 개인의 일로 그의 양측적 친속들이 결집된 집단적 행동을 하는 수도 있지만, 그 결속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결속의 계기가 된 상황이 종료되면 해체되기 마련이었다. 또한 지속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결속의 기본 구조나 토대도 리니지나 씨족 등과는 달랐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집단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유사하게 보일지라도, 리니지나 씨족에서의 집단행동은 동일집단 성원으로서의 관계를 토대로 한 것임에 비해,「나」의 친속들 사이에는 서로 친척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니 모두「나」와의 개인적 유대관계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양측적 친속관계가 주로 개인간의 개별적 관계로 작용되지만,「나」의 일로 집단적 결속을 하더라도 지속성을 갖기 어려웠던 것은 그러한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나말여초 이후에는 그처럼 「나」를 기준으로 성립되어 개인간의 개별적 관계로 작용하는 친족관계인 양측적 친속이 발달해 있었던 반면, 조상을 기준으로 성립되는 집단적인 친족관계인 씨족이나 리니지같은 친족집단들이 분해·소멸되고 있었기 때문에,104) 여말의 각 개인들은 친족집단의 배타성과 폐쇄성의 제약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개인적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

예컨대 그러한 친족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상황은 정치세력의 결집 양태에서도 잘 나타난다. 고구려의 桂婁部 왕족과 絶奴部 왕비족의 결속이나 신라의 김씨왕족과 박씨왕비족의 결속 등에서 보듯이 앞 시대에서는 단일 친족집단이나 그 몇몇의 제휴로 정치세력이 결성되고 있었고, 이러한 친족단위의 집단적행동에서 벗어난 개인들의 개별적 행동은 극히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도 정치세력의 구성에 本族・外族・妻族 등으로 지칭되기도 한 친속

<sup>104)</sup> 盧明鎬, 앞의 글(1988a).

관계가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었으니, 단순하게 생각하면 古代의 현상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본족·외족·처족이 父의 부계친족집 단·母의 부계친족집단·妻의 부계친족집단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부측·모측·처측 친속으로서 개인적인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선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고려시대의 정치적 세력집단은 종래의 이해처럼 성씨별 부계의 친족집단이 단위가 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개 한 명 또는 소수의 유력자를 중심으로 유력자와의 개인적 관계에 의해 결성되고 있었다. 각 개인은 친속관계가 없는 자와 이해관계나 입장의 합치만으로 결속될 수도 있었고, 양측적 친속들도 친속관계 그 자체만으로 정치세력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합치된 자들만이 동일세력으로 결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사》등의 기록에서는 후자를「族黨」(때로는「親黨」)이라 하고, 전자를「黨與」라 함으로써, 한 정치세력의 구성부분을 두 부류로구분하여 서술한 경우가 많다.105)

「당여」로 지칭되고 있는 인물들은 유력자와의 친속적인 유대관계가 없이 이해관계나 입장의 합치에 의해 개별적으로 유력자를 추종하거나 그와 결탁하고 있었던 자들이다. 여대에 결집된 정치세력의 구성부분으로 일반화된「당여」적인 존재는 유력자와의 개별적인 입장이나 이해관계의 합치에 의해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친족집단별 사회편제가 해체된 단계에서의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씨별 부계의 친족집단이 여말 이래의 호족세력이나여대의 정치적 세력들에 토대가 되었다고 보는 기존 이해에서는 그 의미를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정치세력 일파를 구성한 자들 중에서 「당여」들에 비해 「족당」으로 지칭되고 있는 부류들은 정치세력 일파의 핵심적인 위치를 이루고 있었던 부류들이다. 이들은 중심적 인물의 본족·외족·인족 등 양측적 친속관계의 다양한 계보들에 대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그 중에서 촌수가 가까운 쪽에 밀집되어 있었

<sup>105)</sup> 고려시대의 정치세력의 결집에 친속관계가 작용한 양태에 대해서는 盧明鎬,〈李 資謙一派와 韓安仁一派의 族黨勢力-高麗 中期 親屬들의 政治勢力化 樣態-〉 (《韓國史論》17, 서울大 國史學科, 1987) 참고.

다. 그러나 가까운 근친일수록 동일 족당세력으로 결집되는 경향이 컸지만, 근친 이라도 반드시 동일세력으로 결집되는 것은 아니었으니, 3촌 내지 4촌 간은 물론 형제간에도 동일세력을 이루지 않을 수도 있었다. 양측적 친속들 중에 서 족당세력으로 결집된 자들은 이해관계나 입장이 합치된 자들이었다.

당시 양측적 친속관계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친속으로서의 개인적 유대관계였다. 이러한 개인적유대로 작용하는 양측적 친속은 집단적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관계나입장의 합치라는 부가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족당세력이 결집될 수 있었다. 이렇게 결성된 족당세력은 집단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었지만 그 토대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것이었다. 각자는 그의 양측적 친속들 중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입장이 합치되는 자와 결속될 수도 있었고, 또한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그 결속에서 이탈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상으로 고려시대의 친족조직이 양측적 친속의 형태였음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종래에 고려시대의 친족조직으로 간주되던 부계친족집단과는 여러가지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 것이었다. 후자가 남성으로만 연결되는 부계적인 계보만으로 성립됨에 비해, 전자는 남성과 여성이 다양한 형태로 개재되는 모든 계보들을 포괄하였다. 또한 후자가 조상을 기준으로 성립되고 집단으로 기능함에 비해, 전자는 「나」를 기준으로 성립되어 친속 개인간의 개인적인 관계로 기능하였다.

단 고려시대의 법제를 보여주는 자료들 중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전형적인 양측적 친속과는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중국 당·송의 제도 내지는 유교적 禮制의 영향을 받은 것 중에서 일부실제의 사회생활과 관련이 적은 경우들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고려시대 친속제도의 기능 양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언급해 둘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양측적 친속조직이 계급내혼과 결합되어 사회 속에서의 친족관계망을 이루고 기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왕경의 지배층으로부터 향혼사회의 주민에 이르기까지 고려사회에는 계급내혼적 단위들이 중층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한 계급내혼적 단위는 고려시대의 전·중·후기 별로 특징을 가지며 점차 변하였지만, 계급내혼적 계층들 사이에는 서로 친족관계망

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사회의 편성에 기초적인 요소로서도 작용하였으며, 당시의 많은 사회 현상들의 토대가 되고 있었다.

### 4) 향촌사회의 친족관계망

#### (1) 생활권과 친족관계망

고려시대 향촌사회와 친족관계망에 대해서는 호적대장 등과 같은 전반적 양상을 전해주는 자료들이 없어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한 가운데 고려시대에 들어와 성립한 각 지방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인 토성과 관련하여 부계친족 집단으로서의 성씨집단이 향촌사회의 구성에 기본단위가 되는 것으로 보는 이해가 제기되었다.106) 그러한 이해는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도출된 결론이라기 보다는 조선 후기의 동족촌의 양상을 소급시켜 연결시킨 것이었으며, 그에 따라 고려시대의 향촌사회도 동족촌의 형태로 파악하였다.

고려시대의 동족촌에 대해서는 현종대의 若木郡 지역의〈淨兜寺五層石塔 造成形止記〉(이하〈形止記〉로 약함) 자료를 통해서 추구되어, 약목군이 토성 의 성씨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연구가 제기되기도 하였다.107)

이〈형지기〉의 연구에서는 표기된 인명의 앞 글자가 姓字일 가능성에 대해, 〈형지기〉에서 나타나는 빈도와 후대에 성자로 알려진 것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李·金,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成·柳·文·元·廉·洪 그리고 이상의 8가지 이외는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지리지에 기록된 약목현의 토성들이 성씨집단을 이루었을 것이라는 가정에 의거함으로써 그 결론은〈형지기〉의 기록상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되고 말았다. 즉《世宗實錄地理志》에는 약목현의 토성으로 李·柳·韓, 그리고 촌성으로 슢이 기록된 것에 의거하여 당시 약목군이이들 성씨의 동족촌적인 집단들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sup>106)</sup> 旗田巍, 앞의 글(1960). 武田幸男, 앞의 글(1962). 姜晋哲, 앞의 글(1975).

<sup>107)</sup> 武田幸男, 위의 글.

이러한 주장이〈형지기〉의 기록을 통해 근거를 가지려면, 적어도 앞의 이씨·유씨·한씨 및 김씨가〈형지기〉에 열거된 인명 중에서 다수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토성은〈형지기〉의 성씨일 가능성을 갖는 세부류들과도 잘 부합되지 않으며, 전체 71명의 인명 중에서 약목군 성인 季가4명, 柳가 1명, 韓은 없고, 촌성인 金이 6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토성'韓'에 맞추기 위해〈형지기〉의'漢'이 후에'韓'으로 쓰게 되었을 것이라고도 하였는데, 그렇다 해도'漢'은 1명에 불과하다.108)

이는 토성에 해당하는 성씨를 갖는 자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음을 반영해 주는 것일 수는 있지만, 그 성씨를 갖는 자들이 주민의 주류를 이루고 동족촌과 같은 집단을 이루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 또한 만일 인명의 앞 글자들이 위와 같이 토성을 갖는 자들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토성 이외의 다른 성씨의 존재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고려 초에도 그 지역 토성이 아닌 성씨를 갖는 인물들이 존재하는 사례들이 확인되므로,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그렇다면 성씨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분류한 것 중에 토성 이외의 成・文・元・康・洪 등도 토성에 해당하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성씨일 가능성이 있다고하겠다. 다만 원씨의 경우는 주변지역의 토성에서 뿐만 아니라 경상도 지역전체의 토성에서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가능성이 그만큼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지리지들의 성씨조의 기록이 서로 출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109 지리지에서 누락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다. 그리고 〈형지기〉에서보이는 吉이나 明도 경상도지역의 성씨조에서 나타나는 것으로110) 이들도성씨일 가능성이 없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sup>108)</sup> 武田幸男, 위의 글에서〈形止記〉의 人名 첫 글자에서 '漢'을 '韓'으로 보는 한편, '■'을 '漢'으로 보아 '韓'성의 사례가 2명 더 추가될 가능성을 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 자신도 「妄說」의 범위를 벗어나기 힘든 추측이라 하였다.

<sup>109)</sup> 金東洙、〈世宗實錄地理志 姓氏條의 검토〉(《東亞研究》6, 1985).

<sup>110)《</sup>世宗實錄地理志》에서 보면 '吉'은 南界部曲姓(淸河縣)과 加恩縣姓(聞慶縣) '明'은 청하현 토성에서 나타난다. 다른 성씨들의 경우 '成'은 迎日縣과 鎭海縣의 토성, '文'은 蔚山縣·玄風縣·靈山縣·開寧縣의 토성, '康'은 安康縣(慶州)토성· '洪'은 豊山縣(安東大都護府)·缶溪(義興縣)·加利(星州牧)·開寧縣 토성에서 나타 난다.

이렇게 보면, 〈형지기〉에서 결코 성씨집단·동족촌의 존재가 검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인명을 통한 검토만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내용에서도 당시 약목군 내부의 친족집단의 기능을 반영해 주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조선시대 지리지에 보이는 약목군 토성 중의 일부가 소수의 인명 중에서 존재했을 가능성은 인정되고, 토성 이외의 다른 성씨들이 소수의 인명 중에서 역시 존재할 가능성도 있어 오히려 토성들과 함께 이성들도 섞여서 사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다 분명한 것은 〈형지기〉의 대다수 인명은 성씨를 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漢字式 성씨제도가 대다수의 약목군주민들에게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일기록에서 성씨를 사용하는 소수의 부류와 사용하지 않은 대다수가 나뉘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들 사이의 이질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향촌사회의 친족관계망의 구성은 통혼의 지역적 범위 그리고 혼인에 따른 거주지역의 변동을 결정하는 방식이나 이주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호적대장과 같은 향촌사회의 전반적인 친족관계망을 보여주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혼인에 따른 거주지의 결정 방식이나 이주 등 의 양태를 통해 친족관계망의 구성을 추정해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 고 단편적인 사료일지라도 향촌의 친족관계망의 일면을 보여주는 자료를 통 해 그렇게 추정된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통혼과 이주의 지역적 범위는 당시의 지역적 생활권의 범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출생과 사망이 거듭되는 것과 함께 진행된 통혼이나 이주는 그 지역 향촌사회의 친족관계망을 형성시키는 요인이었다.

고려시대의 혼인은 앞 절에서 본 바처럼 率壻婚으로서, 결혼 초기의 일정기간을 처가에서 지낸 후 夫家쪽 지역에서 살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妻家쪽 지역에서 사는 경우들도 있었다. 실제로 처부모와 동거하거나그의 부양을 책임지는 가족들이 적지 않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혼인제는 혼례 후 신부가 夫家쪽으로 즉시 들어가는 중국식의 親迎制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촌락내의 혈연관계망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혼인제가 보다 여러 지역 단위를 포괄하는 통혼권 속에서 빈번히 행해진다고 할

때, 그 결과는 동성촌과 같은 부계적인 촌락내의 혈연관계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태를 만들게 된다.

고려시대의 통혼의 지역적 범위는 동일 군현의 한 촌락내의 통혼도 있고 동일 군현내에서도 다른 촌락들간에서의 혼인이 많았겠으나, 인근 군현 등과의 지역간의 혼인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의 군현 중에서 1,000정 이상의 규모가 되는 것도 있었지만 20정 이하의 작은 것들도 있었으니 1111) 이러한 소규모 군현들은 그 자체만으로서는 지역적 생활권이 되기도 어렵고 폐쇄적인 통혼의 단위가 되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이러한 소규모 군현에서는 인근 군현 등과의 지역간의 혼인이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군현간의 혼인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큰 군현의 주민이 다른 지역주민과 혼인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다른 군현주민간 혼인의 실례는 이미 신라 말기의 촌락문서에서도 나타나는 데, 沙害漸村의「他郡中妻」를 따라 이주해 나간 烟의 夫妻는112) 서로 다른 군현 출신간의 혼인사례이다. 고려시대로 들어와서 각 지방출신 중앙관인의 개경 진출 후 통혼사례를 제외하면, 중앙 중심으로 기록된 자료들에서 지방민간의 통혼사례를 찾을 수는 어렵겠지만, 당시의 자료에서 소수나마 그실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광종 23년(972)에 29세의 나이로 鄕貢 급제한 柳邦憲의 부모는 고려초의 혼인사례이다. 유방헌의 부는 전주인으로서 檢務 租藏과 大監을 역임한 지방세력이었고, 유방헌의 모는 潭陽郡人이었다.113) 또 고려 중기의 인물인 李喬의 부모도 본관을 달리한 지방사람간의 혼인사례였다. 黃驪(驪州)가 본관인 이교의 부는「戶長 軍尹」을 지냈고, 그 모는 慶州가 본관으로「戶長 中尹」을 지낸 사람의 딸이었다.

공민왕 21년(1372)에 작성된 朴得賢의 准戶口에서는 지방에서의 혼인사례가 여럿 발견된다. 당시 호주의 나이는 81세였으므로 그 출생년대는 충렬왕 17년(1291) 경이다. 호주에서 4세대로 올라가는 「호주의 祖妻의 父의 부모」의

<sup>111) 《</sup>高麗史》 권 78. 志 32. 食貨 1. 公廨田柴 성종 2년 6월.

이 자료에서의 丁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200정 미만의 작은 규 모가 다시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은 고려시대에 소규모의 군현들 이 많았던 때문으로 보인다.

<sup>112)</sup> 李基白, 앞의 책(1980), 29쪽.

<sup>113) 〈</sup>柳邦憲墓誌〉(《朝鮮金石總覽》上, 1919), 265쪽.

혼인은 상층 향리 집안간의 혼인이였다. 夫妻의 본관은 羽溪와 同村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촌」이 바로 앞에 나오는 우계를 의미한다면 동일 본관 안에서의 혼인이 되고, 호주의 본관과 같은 登州를 의미한다면 다른 본관간의 혼인이 된다. 이 혼인의 시점은 12세기 말부터 13세기 초 무렵이다.

같은 무렵에「호주의 증조의 父」毛善은 본관이 密陽인 호장으로서 嵐谷이 본관인 倉正 朴先의 딸과 혼인하였다. 이 경우는 다른 본관과의 혼인이 명확하다. 역시 같은 시기에「호주의 曾祖妻(증조모)의 父」는 그 선대가 호장・倉正 등 상층 향리출신인 朴奉吉로, 權知戶長인 李仁의 딸과 혼인하였다. 이들부처의 본관은 모두「동촌」으로 표기되어 있어 동일 본관간의 혼인이었다.

「호주의 外租妻의 父의 父」인 沈沖玄은 부호장으로, 兵正인 金呂의 딸과 혼인하였다. 이들 부처의 본관은 각각 三陟과 「동촌」으로 기록되어 있어, 동촌이 지칭하는 바에 따라 동일 본관간의 혼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본관간의 혼인이 될 수도 있다.

고려말 우왕 10년(1384)에 작성된 단편적인 豊山柳氏의 계보기록에서도 지방에서의 혼인사례로 호장 柳得公과 부호장 柳實의 딸의 혼인사례가 발견된다. 이들의 본관은 같은 豊山이었다. 공민왕 3년(1391)에 작성된 金得雨의 호구단자에서도 지방에서의 혼인사례를 볼 수 있다. 증조의 부모와 증조모의부모의 혼인이 그것으로, 이들은 모두 본관이 안동이었고 대대로 호장을 역임하는 층이었다.

이상의 사례는 주로 지방의 상층인 향리층의 혼인사례였지만, 신라촌락문 서에서 보이는 사례에서와 같이 일반 평민층의 경우에도 동일 군현내에서의 혼인만이 아니라 인근 군현간에 혼인이 있었다.

군현인과 津·驛·部曲人의 交嫁所生은 모두 진·역·부곡에 속하게 하고, 진·역·부곡인과 雜尺의 교가 소생은 반씩 나누되 남는 수는 모쪽에 따른다 (《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戶婚).

부곡 등의 특수구역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었던 고려 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규정에서는 특수구역민의 확보를 위해 군현인과의 혼인에 의한 소생을 이들 특수구역민으로 소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의 주된 적용 대상은 일반 하층 군현인들임이 분명한데, 이러한 규정은 군현인들이 거주 군현 밖에서 배우자를 구하기도 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군 현인이 특수구역민과 혼인하는 경우에는 위에서와 같은 불이익이 따르는 것 이지만, 일반 인근 군현인과의 혼인에는 그러한 계약도 존재하지 않았다.

고려시대에 이처럼 군현간에 이루어진 혼인은 솔서혼과 결합하여 군현간의 인구 및 호의 이동을 수반하게 된다. 솔서혼에 의해 壻의 처가쪽으로의이동, 처가에서 살던 호 중에 夫家쪽으로 돌아오는 경우 등이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소생 자녀들 중에는 李承休의 사례처럼 자녀 균분상속에 의해 외가쪽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호들도 있게 된다.

그런데 고려시대의 생활권 및 이주와 관련하여서는 거주지가 본관지역으로 통제되었다고 보는 이해와 유망 등이 아닌 한 합법적인 이주에 제약이 없었다고 보는 이해가 제기되고 있다. 고려시대의 군현의 규모가 작은 것이 많았음을 감안한다면, 향·소·부곡 등의 특수구역 민이 아닌한 단일 군현단위에 거주가 통제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의 혼속인 솔서혼에 의한인구와 호의 이동을 고려한다면 동일 군현내에 거주가 긴박되어 있다는 것은 더욱 성립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주가 가능하다고 해서 원거리 지역으로 이주해 가는 경우는 당시의 교통이나 그에 따른 전통적인 생활권의 제약을 감안하면 비교적 특수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적 단위와 관련해서 본다면 소규모의 군현들이 많은 상황에서 군현 단위보다는 주속현으로 구성되는 몇 개의 인근 군현이나 인근 임내의 향·부곡·소 등을 포함하는 범위가 대체적인 생활권이 되고, 이러한 지역범위 속에서통혼이나 이주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군현의 평균규모가 작고, 100정 이하가 다시 60정·30정·20정을 경계로 세분될 정도로 소규모 군현이 많았음을 고려한다면, 이들 소규모의 개별 지역집단들이 인구 규모의 전체적 변동이나 연령별·성별 인구의 균형을 자체만으로서는 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가 남는 지역과 부족한 지역간의 부단한 인구이동은 필연적인데, 그러한 이동을 제도화하여 인구상의 문제를 조정하는 대처방식을 가족단위에서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중국과 같은 부계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養子制도 그러한 대처방식의 한 가지였다. 고려시대의 범제에서도 양자제는 있었으나, 이미 밝혔듯이 실제로는 양자제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양자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아들들만의 부계친족에 의존하는 양자제는 대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기가 쉽다.

고려시대에는 이러한 인구문제를 양자제가 아닌 양측적 친속관계에 의한 거주와 자녀간의 균분상속 등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솔서혼과 분가 후의 다양한 거주는 딸(사위와 외손)과 아들 모두를 이용함으로써 그러한 인구문제에 대한 극히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였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그러한 인구이동의 결과는 촌락내의 혈연관계망을 다양한 계보관계로 얽혀지게 하였다.

혼인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이주와 이주 후의 통혼도 혈연관계망의 변화요인이 되고 있었다. 그 예를 보면, 무인집권 말기의 인물인 林衍의열전에는 그 父에 대해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鎭州에 옮겨와 살며 州吏의 딸에게 장가들어 衍을 낳고는 마침내 진주로 貫을삼았다"114)고 하였다.

이 임연의 아버지는 진주로 이주해 와 그 곳에서 혼인을 하고, 임연을 출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되는 것은 때로 이러한 처가지역에서의 정착이 처가쪽의 본관 등을 따르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임연의 아버지가 「妻貫」을 따라 鎭州(鎭川)林氏가 되었다고 보면서 당시에 同姓同本婚이 일반적이었음을 들어 그 부계도 진천 임씨일가능성이 크다는 해석도 있고,115) 임연은 고려 전기의 진천 임씨와 부계로 연결되지 않으며 貫鄕과 함께 성도 鎭川의 모의 것을 따른 것으로 보는 입장도있다.116) 여기서 임연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성관을 포함한 출신이 알려지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아버지대에 진천에 이주해 온 점을 보면, 후자의 해석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

<sup>114) 《</sup>高麗史》 권 130, 列傳 43, 叛逆 4, 林衍.

<sup>115)</sup> 李樹健, 앞의 책(1984), 290쪽.

<sup>116)</sup> 蔡雄錫, 앞의 글(1986).

된다. 적어도 임연의 아버지대에 진천을 본관으로 했다는 사실은 그 전에는 진천이 본관이 아니었음을 뜻하므로, 만일 임연의 가계가 본래 진천 임씨였다면 중간에 다른 어떤 본관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진천을 본관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임연의 경우는 성관 모두나 또는 적어도 實을 모쪽으로 따른 사례라 하겠다.

임연의 부와 비슷한 경우로는 金希禪의 선대를 볼 수 있다. 고종대에 활동한 김희제의 열전에는 "金希禪는 본래 群山島 사람이다. 그 선조가 상인을 따라 배편으로 개성에 도래하여 머물러 살며, 마침내 籍으로 삼았다"117)고하였다. 김희제의 선대도 군산도에서 개성으로 이주하였는데, 그 후로는 개성을 적으로 하면서 그 곳에서 통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경우도 성관모두, 적어도 貫을 바꾼 경우로서 여기에는 임연의 아버지처럼 외족관계나인착관계의 연고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촌락의 혈연양상이 성별에 의해 계고를 한정하는 등, 어떤 일정한 기준의 사람을 중심으로 결집될 경우,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은 그 촌락에 머물러두고, 그 기준에 벗어나는 사람은 촌락에서 내보내는 행태로 人의 이동이 진행되게 된다. 예컨대 아들들을 머물게 하고 결혼 등을 계기로 딸들을 다른곳으로 보내는 형태의 人의 이동이 계속되면, 각 촌락은 부계적인 친족들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반대로 모계적인 혈족들을 머물게 하거나 받아들이고부계적인 혈족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형태의 人의 이동이 계속되면, 각 촌락은 모계적인 혈족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형태의 人의 이동이 계속되면, 각 촌락은 모계적인 혈족들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예컨대 부계 친족집단으로서의동성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父處制이자 夫處制인 거주에 의해 남성들은 그지역에 남고 여성들을 내보내는 한편 혼인을 통해 다른 집단으로부터 여성들을 받아들이는 제도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솔서혼이나 처부모와의 동거 등 처가쪽에서의 거주, 자녀 균분상속 등에 의해 유발되는 다양한 연고지에서의 거주는 그러한 부처제적인 거주와 는 근본적인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양측적 친속관계에 의한 다양한 연고지에서의 거주에 의해서는 촌락내의 친족관계망도 동성촌 형태의 부계친족집단 형태가 아닌 양측적 친속관계 형태를 갖게 된다. 그러한 다양한 연고지에서의

<sup>117)《</sup>高麗史》 권 103, 列傳 16, 金希磾.

거주는 같은 군현 안에서 이루어진 혼인이라도 촌락을 달리 하면 촌락의 혈 연 관계망을 다양한 계보로 연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것을 성씨와 관련해서 본다면, '一姓一村'이라는 식의118) 단일 성씨집단 또는 몇 개의 성씨별 집단들이 촌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씨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가 된다. 고려말의 경우 촌락구성이 소가족형태를 갖는여러 성씨의 집합체였던 사례를 제시한 연구가 있었다.119) 고려초에도 승려들의 俗籍과 土姓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음은120) 토성으로 파악된 것이외에도 다른 성씨들이 섞여 있었음을 보여준다. 본가쪽에서의 거주에 못지않게 처가쪽에서의 거주가 있었던 상황에서 여러 성씨들이 섞여 촌락을 이루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 것이다.121)

앞 절에서 고려시대의 「~씨의 족」,「~씨의 종」으로 지칭되는 계보관계가 부계적인 계보만이 아니라 성별로 계보를 한정하지 않는 스톡형태의 계보였음을 보면, 촌락사회의 혈연관계망도 성씨별 단위집단이 아니라 스톡형태의 계보관념이 존재하는 속에서 여러 성씨들을 포함한 양측적 친속관계로 얽혀 있는 것임을 예상하게 된다. 居平部曲의 경우 여러 성씨들이 섞여 살고 있는 상태가 확인된 것은 그 한 예가 될 것이다.122)

그리고 촌락사회의 혈연관계망의 실제를 확인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는 소략하지만 우선 다음과 같은 水州의 한 촌락의 노파와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다.

왕이 水州 廷谷村에 나이가 104세나 되는 老驅가 있는데 자손 95명이 모두 요역에 이바지한다는 말을 듣고, 그 할머니에게 곡식 30석을 내려 주었다(《高麗史節要》권 13, 명종 25년 정월).

<sup>118)</sup> 武田幸男, 앞의 글(1962). 姜晋哲, 앞의 글(1975).

<sup>119)</sup> 李佑成, 앞의 글(1966).

<sup>120)</sup> 李樹健, 앞의 책, 121~124쪽. 蔡雄錫, 앞의 글, 367~368쪽.

<sup>121)</sup> 이러한 거주 상태에 따른 촌락의 혈연관계망이 다양한 계보 관계로 얽히고 여러 성씨들이 섞여 살게 되는 양상을 후대에서 찾아 보면, 17세기 초 산음현 의 촌락들의 예를 볼 수 있다(鷹明鎬, 앞의 글, 1979).

<sup>122)</sup> 李佑成, 앞의 글(1966).

위에서는 정곡촌에 사는 104세의 할머니에게 요역 정발대상이 되는 자손이 무려 95명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 요역 정발대상이 되고 있는 95명은 사망한 자손이 제외되고, 생존자 중에서도 16세 미만의 어린아이들과 60세이상을 제외하고,123) 다시 그 중에서도 여성들은 제외된 숫자이다. 따라서이 95명이 딸이 개재되는 계보들의 후손들을 제외한 부계적인 계보 한 가지만의 후손 중에서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다. 104세라는 노파의 나이로 보아 당시 그 자손은 대체로 5~6세손 이내의 범위까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들과 딸이 다양하게 개재되는 모든 계보들과 5·6 세손 이내라 할지라도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들이 95명임은 많은 숫자로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그 95명의 자손은 그 노파를 租先으로 하는 스톡형태 계보범위의 후손들 중에서 요역을 부담한 자들이었다고하겠다. 즉 위의 자료는 향촌사회의 하층 지방민 속에서도 스톡형태의 계보관념이 존재했음을 보여 주는 실례라고 하겠다.

그런데 스톡형태의 계보관념은 친족관계를 인지하는 범주일 뿐 그 자체가 집단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95명의 몇 배에 달했을 것으로 보이는 노파의 전체 후손은 가족적인 생활단위를 이루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앞절에서 가족제도와 관련하여 검토한 黃守의 형제·자매들과 그 자손은 부모의 나이로 보면 3~4세대 범위의 모든 내외 후손범위인데, 그 정도의 범위가 동거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었던 것이다. 위에서 파악되고 있는 것도 정곡촌이라는 촌 단위의 파악이라기 보다는 노파가 살고 있는 정곡촌을 중심으로 그 주변촌락들에도 살고 있었을 노파의 전체 후손 중 요역대상자를 파악한 것이라고 하겠다.

夫家쪽 또는 妻家쪽에서의 거주나 기타 양측적 친속들과의 연고지에서의 거주가 행해질 때, 촌락내의 친족관계망은 단일 스톡형태의 계보범위로 유지될 수 없게 된다. 촌락내에는 보통 몇 개의 스톡범위—직계의 내외 선대계보가 함께 모아지는 범위—들이 있게 되고, 그 범위들 간에는 서로 일부가 겹쳐지는 경향이 있게 된다.124) 특히 인근 촌락들로 구성되는 지역생활권 내에서는

<sup>123)《</sup>高麗史》 권 79, 志 33, 食貨 2, 戶口.

<sup>124)</sup> 후대의 상황이지만 스톡형태의 계보가 촌락의 구성에서 나타나는 실례는 盧 明鎬, 앞의 글(1979) 참조.

스톡범위들은 더 확대되고 서로 겹쳐지는 정도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한 상태에서 스톡범위가 배타적인 폐쇄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

앞에서 스톡형태의 계보인식이 양측적 친속관계와 결합되어 있었음을 보았는데, 실제의 친족유대는 각 개인을 중심으로 존재하며 촌수에 따른 친소의 차를 갖는 양측적 친속관계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한 실체를 다음과 같은 李義旼의 친속과 관련된 사건에서 볼 수 있다.

경주 부유수 房應喬를 면직시키고, 郎中 魏敦謙으로 그를 대신케 했다. 처음에 최충헌이 李義旼의 族을 멸함에 경주 별장 崔茂가 州官의 命을 받아 이의민의 족인 思敬 등 여러 사람을 잡아 죄주었다. 이에 思敬의 族 伯瑜・直材 등이그를 원망하여 방응교에게 참소하여 이르기를 '최무가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하였다. 방응교가 그것을 믿고 최무를 잡아 가두니, 백유・직재가 밤에 옥에들어가 최무를 죽였다. 방응교는 擅殺之罪를 묻지 않고 도리어 최무의 족인 用雄・大義 등을 잡아죽이려 하니, 州人들이 분하고 원통하게 여겼다. 그리하여용응・대의는 백유・직재를 죽이고, 용응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이에 이르러 대의 등은 州中의 무뢰배들을 모아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니방응교가 또한 제어할 수가 없었다. 조정에서 그것을 들은 까닭에 이 命이 있게 된 것이다(《高麗史》권 21, 世家 21, 신종 3년 12월 정미).

위에서 보면, 이의민의 族인 思敬 등이 崔茂에게 잡혀 처형되자, 사경의 족인 伯瑜·直才 등이 그에 원한을 품고 최무를 죽였다. 그리고 다시 최무의 족인 用雄·大義 등이 백유·직재를 죽이고, 다시 용웅은 백유 등의 편으로 보이는 자에게 살해되는 꼬리를 문 사건이 일어났다.

「이의민의 족」이라 함에서 「족」의 의미는 이의민의 양측적 친속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高麗史節要》나 李義旼傳에는 위의 「족」이 본족·외족·인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3족」이라고도 되어 있다. 당시 다른 무신집권자들의 족당세력들을 보아도 역시 본족·외족·인족으로 된 양측적 친속들이었다. 125) 이러한 친속조직은 각자를 중심으로 존재하는 범주이기 때문에 이의민을 중심으로 설정되는 「이의민의 족」에 포함된 사경에게는 「이의민의 족」과는 일부는 겹치나 나머지는 겹치지 않는 각자 나름의 친속 범주가 존재하는 것이

<sup>125)</sup> 무인집권자들의 족당세력에 대해서는 盧明鎬,〈高麗後期의 族黨勢力〉(《李載 葉博士還曆紀念史學論叢》, 1990) 참고.

고「사경의 족」은 바로 사경 나름의 친속 범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백유·직재 등은「이의민의 족」이 아닌「사경의 족」으로서 이의민에 연루되지는 않았으나 사경이 처형되자 그를 처형한 최무에게 복수하였다. 「최무의 족」도 최무의 친속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향촌사회의 친족관계망이 어떤 출계집단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계보관계들이 뒤얽혀 있는 속에서 양측적 친속관계가 작용하고 있는 면을 보여준다.

한 개인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계보의 친족관계망은 때로는 비교적 큰 범위를 갖게 되는 것이니, 다음의 金州 사람 大文의 사례는 그 한 예이다.

金州民인 大文이라는 자는 族黨이 백 명 정도였는데, 李英柱가 세력을 믿고 억눌러 奴로 삼으려 하였다. 都官佐郎 李舜臣은 성품이 아부를 잘하여, 이영주의 뜻에 아부하려고 거짓으로 문서를 꾸며 이들을 賤으로 만들었다. 대문이 王府斷事官 趙仁規에게 호소하니, 조인규가 그 案을 살펴보고 왕에게 이영주의 간사함과 거짓됨을 모두 아뢰었다. 이에 왕이 이순신을 가두고 이영주의 관직을 파직시켰다(《高麗史》권 123, 列傳 36, 嬖幸 1, 李英柱).

위「大文의 族黨」도 고려에서의「~의 族黨」이라고 하는 일반적 용례에서처럼 본족·외족·인족 등 한 개인의 다양한 계보의 친속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126) 그러한 대문의 족당들은 대체로 金州 일대에 살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백 명에 가까운 그 수는 한 개인의 친속들이 때로는 비교적많은 수가 되기도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문은「壓良爲賤」의 대상이 되고 있었으니, 이 자료는 특히 평민층의 사례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 (2) 계급내혼에 의한 구성

향촌사회의 친족관계망이 양측적 친속관계의 다양한 계보관계들로 얽혀져 있었지만, 그 내부는 階級內婚에 의해 계층별로 분리되는 경향이 있었다.

향촌사회의 계층구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시대 별 또는 지역별 차이도 있을 것이나, 문종년간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은 향리층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다.

문종 5년 10월에 判하기를 諸州縣吏들은 @ 初職에 後壇史, 2轉에 兵倉史, 3

<sup>126)</sup> 族黨의 용례에 대해서는 盧明鎬, 앞의 글(1987) 참조.

轉에 州府郡縣史, 4轉에 副兵倉正, 5轉에 副戶正, 6轉에 戶正, 7轉에 兵倉正, 8轉에 副戶長, 9轉에 戶長이 된다. ⑤그 公須・食祿의 正은 戶正에 준하고, 그의 副正은 副兵倉正에 준한다. 客舍・藥店司・獄의 正은 副戶正에 준하고, 그의 副正은 州府郡縣史에 준하는데, 가풍이 戶正・副兵倉正에 미치지 못하는 자로 차출한다. ⓒ 累世에 가풍이 있는 자식이면 兵倉史를 初授한다. ⓓ그 다음은 後壇 史를 初授한다(《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鄕職).

고려시대의 향리를 조선시대의 향리처럼 하나의 신분층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위의 자료만 보아도 고려시대의 향리를 단순히 하나의 계층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127) 위 문종 5년의 판문에서는 향촌사회의 향리들이 상하의 3계층으로 나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그 최고의 계층은 ⓒ에 보이는 「누세에 가풍이 있는」계층이다. 이 계층 출신들은 @에 보이는 9단계의 승진과정 가운데 제2단계부터 출발하는 특권이 부여되고 있다. 이들은 제술업과 명경업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한 문종 2년 판문에서 가장 큰 기회가 주어진 최고의 향리층인 호장이나 부호장을 배출하고 있었던 부류들이다.128) 나말여초에 대두한 지방호족세력들의 상층의 직제가 고려초부터 성종대를 거치며 堂大等・大等으로 되고 다시 戶長・副戶長으로 전환되는데, 이들 최상층 향리직을 역임하는 「누세의 가풍이 있는」층은 나말여초에 대두한 지방호족들의 후예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나말여초 호족세력 예하의 부류들에 연결되는하위의 향리층과 동일한 계층적 존재로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들이「누세의 가풍」을 갖는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의 계급내혼적 단위를 이루면서 세습적으로 고위의 향리직인 호장·부호장을 역임한 것을 지칭한 것이었다. 《고려사》에서는 溟州의 상층 향리인 金遷의 부모에서 戶長 집안간의 결혼 사례를 볼 수도 있다. [29] 이러한 사례는 보다 많이 찾을 수 있는데, 특히 고려대의 호적자료에서는 이들의 강한 계급내혼 경향이 확인된다. [130] 호적

<sup>127)</sup> 盧明鎬, 앞의 글(1986).

<sup>128) &</sup>quot;문종 2년 10월에 옑하기를 ⓐ각 州縣의 副戶長 이상의 孫과 副戶正 이상의 子로 製述業과 明經業에 응시하려는 자는 (중략) ⓑ醫業의 경우에는 모름지 기 널리 익힌 것을 요할 것이요, 戶正 이상의 子에 한하지 않을 것이니, 비록 庶人이라도 樂工·雜類에 관계되지 않으면 함께 응시하도록 한다."(《高麗 史》권 73, 志 27, 選舉 1, 科目 1).

<sup>129) 《</sup>高麗史》 권 121, 列傳 34, 孝友 金遷.

<sup>130)</sup> 고려시대의 호적자료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는 許興植, 앞의 책

자료들의 戶主나 戶主妻의 선대 계보들에서는 중앙의 관직에 진출하기 전에는 대부분 같은 군현 또는 인근 군현의 본관을 갖는 호장층 출신간에 혼인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나타난다.[31] 이는 하나의 군현 또는 몇 개의 군현을 단위로 하는 지역범위내에서의 계급내혼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지역범위는 당시의 지역적 생활권, 즉 향촌사회의 단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되거니와, 호장층 아래의 계급들에서도 대체로 생활권을 이루는 그러한 지역범위내에서 계급내혼을 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호장층은 과거나 군공 등을 통해 중앙의 품관으로 진출하는 지방의주된 官人 공급원이었으며, 하층의 품관 배출층과의 빈번한 통혼사례들이 나타난다. 적어도 고려 전기에는 호장층과 하위의 품관 배출층과의 사이에는 통혼 상의 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확대된 지역적 범위에서의 계급내혼적 단위를 검토한다면, 이들 호장층과 하위의 품관배출층을 포괄하는 계급내혼적 단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2의 계층은 위의 문종 5년 판문의 ⑤에서 둘로 나누어 언급된 자들 중 상층의 부류들로, 이들은 제1계층의 호장층과도 구분되는, 4轉하여 도달하는 副兵倉正~6轉의 戶正을 역임하는 「가풍」을 갖는 자들이다. 앞에서 언급한 문종 2년의 과거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판문에서 보면 호장층에 주어지는 기회보다 축소된 것이나, 이 계층의 출신에게도 제술업과 명경업의 응시 기회가 주어지고 있었다. 또한 이 계층의 출신은 원칙적으로 위 문종 5년 판문의 ⑥에 열거된 藥店司나 獄의 正・副正 등의 직에 차출되지 않고, 문司의 중심을 이루는 ⑧에 열거된 직을 대체로 戶正~副兵倉正의 등급까지역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계층에 대한 자료는 극히 적은데, 吳闡猷의 묘지명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132)</sup> 오천유는 사망시의 연령이 71세로 기록되고 있 어, 묘지명에 밝힌 그의 부나 외조의 향리직은 최종으로 역임한 직이 분명하 다. 그런데 그것이 副戶正으로 보이는 副司戶나 權(?)戶正으로 보이는<sup>133)</sup> 權

<sup>(1981)</sup> 참조.

<sup>131)</sup> 호장층의 계급내혼 사례는 《慶州府戶長先生案》에서도 다수 나타난다.

<sup>132)</sup> 李奎報,《東國李相國集》後集 권 12, 吳闡猷墓誌銘.

<sup>133)</sup> 司戶는 戶正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密陽 朴氏 壬子年 准戶口〉에서 '權

司戶에 불과했음을 보면, 이들이 호장·부호장을 역임하는 家風을 못 가진, 호정~부병창정의 직에 그치는 제2계층 출신들이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호장층 출신도 비록 특혜가 있지만 밑에서 두번째인 병·창사에서부터 향리직을 시작하여 승진해 가는 것이므로, 부호장 이상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천유 부모의 혼인은 그 당사자들이 한쪽만이 아니라 양가 모두가 副司戶나 權司戶로 되어 있어, 이들의「가풍」이 제2신분층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누대에 호정~부병창정을 배출하는 이 제2신분층으로서는 상위의 호장층 과의 통혼을 희망할 수 있겠고 그것이 명문의 법제로 금지된 바는 아니었으나, 호장층내의 계급내혼 경향이 강하므로 격이 떨어지는 그러한 통혼은 호장층으로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회피될 혼인이었다. 제1의 신분층인 호장층과 제2의 신분층 사이에 계급내혼적인 분리가 형성되는 것은 그러한 면에서 명문화된 법제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실제이고 관습적인 것이었던 셈이다.

다음 제3의 계층은 문종 5년 판문의 ⑤에 언급된「가풍」이 호정~부병창정에 미치지 못하는 부류들이다. 그 판문에 의하면, 이들 출신은「가풍」의 제약으로 격이 가장 낮은 藥店司나 獄의 正·副正 등의 직에 차출되고, @의 직들 중에서는 史의 등급까지만 역임할 수 있었다.

위의 문종 5년 판문에서 보는 바와 같은 향리의 세 계층이 모든 주·군·현들에서 동일하게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종 5년 판문이국가적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에 언급되고 있는 계층은 적어도 대부분의 주·군·현들의 실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134)

이상의 세 계층은 향리로서 수조지인 전정을 국가로부터 받아 보유하고, 전

知戶長'이라는 직명이 나타남을 보면(李基白, 앞의 책, 1987), 권사호는 權知 戶正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sup>134)</sup> 향촌사회의 계층구성 속에서 鄕吏의 위치가 고려 문종대와는 크게 달라졌으므로 조선시대의 향리층과 직접적인 비교는 하기 어려우나,《安東鄕孫錄》·《晋陽志》·《完山志》에서 나타나는 조선시대의 향리층이 3등급으로 나뉘어져 승진이나 通婚이 규제되었던 점을 고려시대 향리층의 구성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李樹健, 앞의 책, 1984, 416~417쪽).

정연립에 의해 그를 세습해 나가는 부류들이었다. 전정을 보유하는 또다른 류로는 군반에 속한 군인 등의 직역자들도 있었으나, 위의 세 계층 밑에 있는 대부분의 지방민들은 전정을 보유하지 못한 백정 신분인 자들이고<sup>135)</sup> 이들은 조세부담과 함께 요역의 부담을 지고 있었다. 이들은 과거 응시자격에 대한 문종 2년 판문에서는 庶人에 해당하는 부류들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들보다 아래의 최하의 계층으로는 노비층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일반 군현민과 노비층의 사이에는 향·부곡 등의 특수구역민층이 존재하였는데, 이들 특수구역이 법제대로 통제되는 상황하에서는 향촌 사회의 친족관계망의 구성에서 이들은 지역단위로 분리되는 경향이 강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관련된 법제로 앞 절에서 본 군현인과 진·역·부곡인의 交嫁所生에 대한 규정이 주목된다. 이러한 법제가 적용되는 속에서는 특수구역민들의 소생은 같은 특수구역민 사이의 혼인에 의한 소생이든 군현민과의 혼인에의한 소생이든 모두 특수구역내의 주민이 되도록 제한받게 된다. 또한 특정의 從과 관련된 이러한 특수구역민들이 지는 국가로부터의 제부담은 일반 군현민에 비해 가혹하리만큼 컸기 때문에,136) 이같은 불리한 조건은 군현민과의 통혼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 군현민들이 때로는 외부의 특수구역민과 혼인을 할 수 있었음을 보면 그같은 불리한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인근 군현민과의 혼인은 보다 많았을 것이다. 인근 군현민 사이의 혼인은 지역적 생활권이 主屬縣 단위와 같은 복수의 군현들을 포괄하는 경우에 보다 활발했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수구역민에 대한 법제가 시행되는 속에서는 향촌사회의 친족관계망은 일반 군현민과 특수구역민 사이에서 지역적으로 분리되는 경향을 가질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인 백정층인 일반 군현민들도 계급내혼적 단위를 이루고 있었다. 앞에서 본 水州지역의 104세 老驅의 5~6세손 범위 전체가 요역 정발의 대상이 된 것은 그 후손에서 양인 군현민 간의 계급내혼적인 혼인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金州民인 大文의 양측적 친속들로 보이는「族黨」백 명이 모두 압량위천의 대

<sup>135)《</sup>高麗史》 권82, 志36, 兵2, 站驛.

<sup>136)</sup> 朴宗基, 《高麗時代 部曲制研究》(서울大 出版部, 1990), 142~161쪽.

상이 되었음은 이들이 모두 동일한 계층적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은 이들 역시 양인 군현민간의 계급내혼적 혼인을 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일반 군현민인 양인의 혈연관계망은 노비층과는 보다 현격히 구분되고 있었다. 양천간의 교혼은 다음 예와 같이 그 소생 모두가 노비로 되었다.[37]

우리 나라의 법은 그 8世戶籍이 賤類에 간여하지 않아야 벼슬을 할 수 있다. 무릇 천류가 됨에는 부모 중 하나만 賤이어도 천이 되는 것이다(《高麗史》권 85, 志 39, 刑法 2, 奴婢 충렬왕 26년 10월).

이러한 불리한 규제는 양인층이 노비와의 혼인을 가능한 한 회피하게 하는 큰 압력이 되었다.

향촌사회내의 계급내혼이 법제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그 것은 법제적인 것이 아니라 하층과의 혼인을 회피하는 사회적 경향이었고, 따라서 소수이나마 때로는 상하의 계층간에도 혼인이 있었다. 그러나 상하계층간의 혼인은 계층적 편제질서에서 당사자들의 상승이나 하락을 유발할수도 있는 것이니, 향촌사회의 계층적 질서에 큰 변동이 없는 한 억제됨으로써 계급 내혼적인 혼인이 향촌사회의 구성에 기초가 되고 있었다. 앞에서 본계층간에 「누세의 가풍」의 차가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향촌사회의 친족관계망은 양측적 친속관계로 얽혀 있었지만 계급내혼 경향에 의해 상하의 계급간에는 거의 연결되지 않고 별도의 혈연적 群으로 나뉘어지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金州의 雜族人이 무리를 이루어 변란을 모의하고 豪族人을 죽였다. 호족이도망하여 성 밖으로 피하니, 무기를 들고 副使衙를 포위하였다. 부사 李迪儒가지붕위에 올라가 首謀者를 쏘니, 활시위 소리에 따라 쓰러졌다. 그 무리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나서 돌아와 고하기를 '우리들은 강포하고 탐오한 자를 제거하여 우리 邑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쏘는 것이요'라고하였다. 이적유는 거짓으로 놀란 체하며 이르기를 '나는 그런 줄 모르고 外敵인줄 알았오'라 하고, 몰래 성 밖의 호족에게 연락하여 협격하여 모두 죽였다(《高麗史》권 21, 世家 21, 신종 3년 8월).

<sup>137)</sup> 一賤則賤에 대해서는 洪承基, 앞의 책(1983), 21~23쪽 참조.

위에서는 금주의 호족인과 잡족인의 싸움이 언급되었는데 호족인과 잡족인이 앞에서 본 여러 계층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지칭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호족인은 금주지방의 토착세력 중에서 「강폭하고 탐오한 자들」이라고 지탄을 받고 있음을 보면 향혼사회의 최고 세력인 호장층이 아닐까 생각되고, 제2계층도 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잡족인은 그 아래의 어떤계층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그러한 계층적 구분이 「族」・「雜族」이라 하였듯이 출신 혈통별로도 구분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각 계층들이계급내혼에 의해 혈통상으로도 서로 구분되는 경향이 강했음을 의미한다.

향촌사회의 친족관계망이 이처럼 계층별로 나뉘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계급내혼 단위별로 대체로 그에 포함되는 성씨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성씨들로서는 일종의 신분 내지는 계층의 격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데, 다음은 그러한 예이다.

(鎭州)토성은 三韓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넷이니, 河·鄭·蘇·姜이요, 立州之後에 또 세 성이 있으니 柳·康·仟이다. 기타 雜姓은 庶人이다(《晋陽志》권 3. 姓氏).

위의 진주의 성씨에 대한 지리지의 기록에서는 土姓·立州之後姓을 雜姓과 구분하고, 잡성은 庶人이라 하였다. 여기서 잡성이 서인의 성씨라 함은 토성이나 입주후성은 非庶人의 성씨, 즉 官人 또는 그에 준하는 신분의 성씨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지역, 즉 본관에 따라서도 성씨의 격이 내세워질 수 있는 면도 있으나, 위에서 구분되고 있는 것은 그와는 달리 동일지역 내에서 성씨의 계급적 출신을 나타내는 면을 보여준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성씨의 계급적 관련성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토성 또는 人吏性과 구분하여 次吏姓·次姓·百姓姓 등으로 지칭되고 있는 姓種들도 토성이 속한 계급보다 아래 계급의 성씨들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38]

<sup>138)</sup> 土姓・人吏姓・次吏姓・百姓姓 등 姓種의 개념은 그에 대한 현재 기록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조선 전기의 地理志類에서도 분명하지 못하고 일부 혼동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난다. 土姓의 경우《世宗實錄地理志》에서 보면, 南原府에서는 토성이 인리성과 백성성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기록되는 한편, 平海郡에서는 토성과 백성성이 구분되어 기록되고 있다. 위에서의 '土姓'은 평해군 성씨와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백성성의 경우는 村姓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李樹健, 앞의 책, 1984, 52쪽). 고려사회에서 성씨는 그를 지역적으로 구분하는 본관의 격에 따라 성씨 자체의 격도 규정되는 면이 있었고,

토성 등의 성씨는 고려초 내지 고려 전기에는 邑司를 구성한 부류들의 성씨 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139) 앞에서 햣리가 세 계층으로 분 류되고 있는 자료를 보았는데 이들 성종의 구분은 향리직 내부의 계층적 구분 과 관련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성종에 대한 이해를 확대함에 문제 가 되는 것은 지리지 등에서 차리성ㆍ차성ㆍ백성성 등이 기록되고 있는 군현 들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애초부터 이러 한 성종의 구분이 없었던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종의 구분은 같은 조선시대의 지리지인 《世宗實錄地理志》나 《慶尙道地理志》 · 《東國輿地勝 覽》등에서도 구분되지 않고 토성으로 합쳐지거나 누락되거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140) 이를 보면. 고려초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는 장기간의 사회적 변동을 거치는 동안 그러한 성종의 구분이 이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라 점차로 토성 등에 통합되거나 기록에서 누락됨으로써 조선시대의 지리지에서 는 그 흔적만을 겨우 남기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설사 이러한 보다 세분된 성 종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진양지》의 기록은 토성이 향촌사회의 지배적 계급의 성씨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은 토성을 읍사의 구성원들의 성씨와 연계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기존 해석과도 부합된다.

물론 이러한 성씨에 의해 나타내지는 출신계급은 개연적인 것이다. 그리고 고려초에서 조신시대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변동과정에서 각 계층들 의 분화적 변화도 적지 않았던 만큼 개연적이나마 성씨에 의해 출신 계급이 파악되는 면은 후대에 올수록 오차가 커지고, 때로는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邑治內의 성씨를 갖는 자들과 달리 村姓을 갖는 세력이 대개 人吏層이 되지 못하고 백성성이 됨으로써 촌성이 백성성과 연결되는 면이 있었던 것이 아닌 가 한다. 그러나 용어 본래의 의미로는 村姓이 성의 소속 지역을 밝히는 용어 임에 대하여, 백성성은 의성 소속 계층을 밝히는 용어로서 구분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sup>139)</sup> 토성 등의 姓種이 고려 이래의 邑司 구성에 참여한 부류들의 성이라는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참고된다.

武田幸男, 〈高麗時代의 百姓〉(《朝鮮學報》28, 1963).

<sup>---- ,〈</sup>新羅の滅亡と高麗の展開〉(《岩波講座 世界歴史》9, 岩波書店, 1970).

李樹健, 위의 책, 7~8쪽.

金東洙, 앞의 글.

<sup>140)</sup> 李樹健, 위의 책, 52쪽. 金東洙, 위의 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姓貫이 생성되고 있었던 초기에는 향촌사회 내에서 계급내혼이 행해지는 속에 어떤 성관을 갖는 자들이 동일 계층에 속할 확률이 컸고, 그 때문에 토성 또는 인리성·잡성·차리성 또는 차성·백성 등 동일 향촌사회내에서의 계층적 격에 따라 성을 분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씨에 의해 개연적이나마 이처럼 출신 신분 또는 계층이 파악될 수 있었던 것은 계급내혼의 경향 속에서 향촌사회 내의 친족관계망이 계층간에 분리되고 있었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향촌사회의각 계층들 내에서 폐쇄적인 혼인이 거듭될 때, 그것은 같은 계층에 속한 자들의 성씨들, 즉 일정 성씨들간에서만 양측적 친속관계에 의한 친족관계망을 형성시키게 된다. 따라서 동일 성관을 갖는 자들은 대체로 동일 계층에 속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盧明鎬〉

# 3. 사회정책과 사회시설

# 1) 사회정책

고려 전기에 시행된 여러 가지 사회정책과 그에 따른 사회시설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미 태조 때부터 입안되었고, 이후 역대 국왕과 행정을 담당한 관료들에 의해 시행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크게 賑恤 政策과 醫療政策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진휼정책과 의료정책은 모두 백성을 재해·기아·질병 등의 고통에서 구하고자 시행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진휼정책은 주로 자연현상의 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거나 또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지배층을 구호하기 위해 재해가 발생할 때에만 피해를 당한 백성에 대해서 시행한 정책인데 비해, 의료정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의 혜택을 베풀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이에 이 두

가지 정책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진휼정책

인류는 지구상에 등장한 이후 항상 자연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 왔다. 인지가 발달하고 농경이 시작된 이후에는 특히 기상의 이변이 농업에 미치 는 영향력 때문에, 그러한 현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국가의 기반인 농업이 천재지변에 의해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그로 인해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농업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여 식량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던 상황에서 재해나 전쟁으로 식량부족이 가중되고 전염병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혼란은 국가의 존립까지도 위협하게 되는 것이 다. 따라서 국가 경영의 필수 요건으로 농민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의무였다.

이러한 국가적 보호는 농업구조의 파괴로 인해 미치게 될 농민의 생활뿐만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형성된 국가의 경제적 기반의 보호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의 진휼제도는 국가체제가 정비된 삼국시대부터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고구려 고국천왕 때에는 賑貸法이 제도적으로 성립되기도 하였다.1) 고려시대에도 재해를 당하거나 의지할 데 없는 백성을 구제하고 불교의 大慈大悲思想을 구현하기 위해 역대의 국왕은 궁민을 구휼하고,2) 한재가 들었을 때 기우제를 지내는 등3)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佛事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비와 보시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天體 사상이나 불교사상 외에 오행설과 도참사상도 진휼정책에 영향을 주었다.4)

이러한 진휼정책은 정치·도덕적 측면에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주로 피해를 입었던 농민에게 베풀어 준 구빈책이었다. 왜냐하면 농민은 국가 사회경제의 기초인 노동생산과 수세의 주원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지배자는 재해를 입

<sup>1) 《</sup>三國史記》권 16, 高句麗本紀 4, 고국천왕 16년 10월.

<sup>2) 《</sup>高麗史》 권 11, 世家 11, 숙종 7년 6월 정해.

<sup>3) 《</sup>高麗史》권 7, 世家 7, 문종 6년 6월 을해·권 9, 世家 9, 문종 29년 5월 신유·권 10, 世家 10, 선종 4년 4월 을사 및 권 11, 世家 11, 숙종 원년 5월 무신.

<sup>4)</sup> 李熙德,〈高麗時代 五行說에 대한 연구〉(《歷史學報》79, 1978). 崔柄憲,〈高麗時代의 五行的 歷史觀〉(《韓國學報》13, 1978). 金玎坤,〈高麗前期의 救恤政策에 관한 研究〉(《論文集》19, 晋州教育大學, 1979).

은 농민에 대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여 진휼하였다.

재해는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진휼의 대상이 된 것은 주로 자연재해였다. 그 중에서는 旱災・水災・蝗災・霜災・雹災가 빈번히 발생하여 그때마다 식량이 부족하게 되어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하고, 곡가가 앙등하여 流民이 발생하는 등, 다소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예종 때에는 '十室九空'의 현상까지 있었다5)고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했고 그 결과 재해의 예방과 사후 조치를 위한 제도가 성립되었다.

즉 태조 때 설치한 黑倉과 이를 개편·확충한 성종 때의 義倉, 그리고 常平倉이 그것인데, 이러한 의창과 상평창은 상설기구로 설치되어 재해나 경제적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적절히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들 기구들만으로는 진휼의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해의 종류와 피해상황에 따라 정책적인 조치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재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米·布·粟·豆·鹽·衣服·醬·鹽豉·柴 炭 등 의식주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거나 빌려주는 한편 醮祭·道場 등을 통한 기도의식과 조세감면·사면·罷役 등을 시행함으로써(6) 이재민과 스스 로 살 수 없는 궁민을 구휼하는 것이었다. 그 대상은 주로 농민이었지만, 향·소·부곡과 역·진·원·관에 거주하는 천민도 진휼의 대상이었다.

이재민에 대한 조세의 감면은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고려시대에 오면 더욱 구체화되어 피해 정도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 주되, 이를 戶部에 보고하도록 법제화하였다.7) 또한 문종 4년(1050)에는 田 1결에 대하여 손실이 4/10이면 租를, 6/10이면 租布를 면제하고, 7/10이면 조·포·역 모두를 면제하도록 하였다.8) 또 倉이나 庫를 통해 貸穀해 간 농민들이 재해로 인해 제때에 갚지 못한 경우 이를 탕감해 주거나 연기해 주기도 하였다.9)

또한 이미 성종 때에 고아를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고 현종 때에는 홀아비· 과부·고아·무의탁 노인 등에게 옷과 양식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10) 수재와

<sup>5) 《</sup>高麗史》 권 12, 世家 12, 예종 즉위년 12월 갑신.

<sup>6)</sup> 朴杰淳, 〈高麗前期의 賑恤政策(Ⅱ)〉(《湖西史學》13, 1985), 46~54쪽.

<sup>7) 《</sup>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踏驗損實 성종 7년 2월.

<sup>8) 《</sup>高麗史》 권 78, 志 32, 食貸 1, 田制 踏驗損實 문종 4년 11월.

<sup>9) 《</sup>高麗史》 권 80, 志 34, 食貨 3, 災免之制 선종 7년 6월 및 숙종 6년 11월.

<sup>10)《</sup>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鰥寡孤獨賑貸之制 성종 10년 7월 · 13년 3월

한재를 당한 이재민에 대해 쌀·소금 등 생활필수품을 지급하고, 濟危寶· 東西大悲院 등을 통해 환자를 치료케 하는 등<sup>11)</sup> 진휼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진휼정책 이외에 재해가 자신의 부덕의 소치 때문이라 생각하고 사면이라는 형식을 통해 冤獄을 다스리기도 하였다. 사면이 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왕을 비롯한 지배층에게 위안 을 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면의 대상은 주로 가벼운 죄수가 대부분이었으 나, 간혹 사형수가 풀려나는 경우도 있었다.

왕실에서 재해(주로 早害)를 물리치기 위해 행한 기도행사는 대부분이 祈雨祭었는데, 특히 불교적 행사가 성행하였다. 기우제는 대개의 경우 消災道場을 설치하여 행하였는데, 그 근본 경전은 《消除一切災難陀羅尼經》으로서 여러 도량 중 밀교적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이었다.12)

유교의식은 圓丘祭가 중심을 이루었으며, 도교에서도 초제를 통해 기우행사를 하였고, 무당을 모아 전통적 의식으로 기우제를 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재해가 발생한 후에 행한 진급과 진대, 의식적 은전인 사면이나기도 행사 등은 삼국시대보다 구체화·다양화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근본적인 재해대비책이 요구되었는 바 이것이「勸農政策」이었다.

권농정책의 내용은 개간의 장려·제방 수축·농기구의 개량 및 생산·부업의 권장·농경방법의 개선 등으로, 가장 기본적이고도 광범위한 상설 재해 대비책이라 하겠다. 농업이 경제의 기본이었던 당시에 있어서 권농정책은 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시된 정책이었다.

태조는 즉위후 진제를 바로잡고 조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什一制를 시행하였고, 농업을 장려하여 증산에 힘썼다. 특히 유교주의적 왕도정치를 지향한 성종은 祈穀(年豊祈禱)・籍田(君主親耕)의 예를 행하여 농업을 권장하고, 지방관으로 하여금 농번기에는 일체의 잡무를 정지하고 농사에 힘쓰도록 하였다. 심지어 성종 6년(987)에는 병기를 거두어서 농구를 만들기까지 하도록 명하였

및 현종 2년 12월.

<sup>11)《</sup>高麗史》 권80, 志34, 食貨3, 水旱疫癘賑貸之制.

<sup>12)</sup> 徐閏吉、〈高麗의 護國法會와 道場〉(《佛教學報》14, 1977), 25쪽.

다.<sup>13)</sup> 이와 같이 병기로 농기구를 만들도록 지시한 것은, 그것이 아직도 지방에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던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농사도 권장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종은 지방의 丁戶와 白丁에게 뽕나무를 심어 양잠을 돕게 하였으며,14) 문종 20년(1060)에는 외방의 장관은 勸農使의 직무를 겸하여 농사에 힘쓰도록 지시하는 등15) 적극적인 귄농정책을 실시하였다. 한편 농사와 밀접한관계를 지니고 있는 天文에 대한 연구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天文術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발달해 왔는데, 고려는 이를 계승하여 天文學을 더욱 발달시켰다.

고려시대의 천문연구는 주로 恒星의 위치 관측, 일식·월식·혜성·객성 및 태양의 흑점 관측 등에 대한 것이었다. 그 목적은 점성술 때문이기도 했 지만,16) 이를 통해「時變」을 살피려고 했던 것이다.17) 그것은 하늘의 변화가 농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천문에 대한 연구는 권농정책을 추 진하는 데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다.

이상의 여러 진휼정책은 고려 전기에는 지배층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며 시행되었으나, 무신의 집권과 몽고의 침입 후에는 사회의 제 반 제도가 해이해져서 전과 같은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 (2) 의료정책

의학 또는 의술은 그것이 인간의 생명과 관계가 깊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체제가 점차 정비되면서 정책적으로 의학을 장려하고, 의원을 양성하여 민중의 질병을 퇴치하고자 노력하였다.

삼국시대에는 의료기구가 모두 설치되어 있었을 것이나, 고구려의 경우는 병자에게 賑給하였다는 기록<sup>18)</sup>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백제는 일찍부터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의료제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藥部를 설치하여 民疾을

<sup>13) 《</sup>高麗史節要》 권 2, 성종 6년 6월.

<sup>14) 《</sup>高麗史》권 79, 志 33, 食貨 2, 農桑 현종 19년 정월.

<sup>15) 《</sup>高麗史節要》권 5. 문종 20년 4월.

<sup>16)</sup> 全相運, 〈科學과 技術〉(《한국사》8, 국사편찬위원회, 1974), 237~242쪽.

<sup>17) 《</sup>高麗史》권 3. 世家 3. 성종 14년 2월 을묘.

<sup>18) 《</sup>三國史記》권 18, 高句麗本紀 6, 고국원왕 2년 2월

치료함은 물론 의학을 교육하였고, 의료관계자를 일본에까지 파견하여 일본 의 고대의학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백제의 의료제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보이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신라의 제도는 통일 이전은 알 수 없지만, 법흥왕 때를 전후하여 藥典이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9] 통일 후 여기에는 의사가 속해 있으면서 궁중에서 치료를 담당하고 의료정책의 입안·실시에 간여했을 것이다. 그 후 효소왕 6년(692) 의학을 설치, 博士 2명으로 하여금 의학교육을 실시하게 하였다. 20) 이렇듯 신라는 법흥왕 이후 점차 중국식 의료제도를 도입하여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특히 통일 후에는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함으로써 전통적의료제도에서 탈피,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통일신라의 진휼정책은 고려에까지 이어져 고려시대 의료제도의 체계를 수립하고, 의료정책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의료정책은 본래 백성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국초부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수립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의료기구의 설치나 의전의 양성은 黑倉의 설치보다 더 필요하였다. 더욱이 신라의 직제 중에는 藥典·醫博士·供奉醫師 등 의학교육과 치료에 종사하던 관직과 기관의 명칭이 보이고 있으며, 또 태조 때에는 신라의 제도를 많이 답습하였다고 한 기록 등으로 미루어 보아, 치료와 교육을 전담하던 기구가 이미 태조 때 설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태조 때 어떠한 기구가 수도인 개경에 있었는지 알 수는 없다. 대신 태조 13년(930) 西京에 醫學院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sup>21)</sup> 개경에는 이보다 먼저 이러한 기구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개국과 동시에 의료 기구를 설치한 것은 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한 때문이었다. 광종 9년(958) 과거 제도 실시 이후 의업 급제자가 광종과 성종 때에 배출되고 있는 것은<sup>22)</sup> 태조때의 의료정책에 의해 의원을 양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광종 14년 濟危寶(鋪)를 설치하여 貧民·行旅의 구호와 질병의 치료를 맡아

<sup>19)</sup> 孫弘烈.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修書院, 1988), 55쪽.

<sup>20)《</sup>三國史記》 권39, 志8, 職官中, 醫學.

<sup>21) 《</sup>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sup>22)《</sup>高麗史》 권 73, 志 27, 選舉 1, 科目.

보게 한 것도,<sup>23)</sup> 이러한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고려의 중앙의료기구는 성종 2년(983)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관제를 정비할 때 그 하나로 설치되었다.<sup>24)</sup> 이 때 설치한 기구는 궁중의 御藥 및 왕실의 치료를 관장하던 尙藥局과 의료정책의 수립과 관리의 치료를 맡아보던 太醫監이었다.

태의감에서는 양반관료와 전염성 질환에 대한 치료·약품제조·土産藥品의 채취 및 의학교육과 의원에 대한 과거 등을 관장하였다.<sup>25)</sup> 또한 태의감소속의 의관 중에는 醫學博士·助敎·呪噤博士 등 교육에 종사하는 의관이 있어서 의생에 대한 교육도 실시함으로써, 국가 전반에 대한 의료업무를 주관하였다. 이외에도 왕실 소속의 의관으로 東宮醫官과 翰林院醫官·茶房醫官이 있고, 軍醫와 獸醫가 있었다.

동궁의관은 태자의 의료를 전담하는 의관으로, 藥藏郎과 藥藏丞이 있었으며, 한림원의관은 상약국 의관을 겸직시켜 어약을 관장하게 하고, 衆疾의 치료와 의생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다방은 송나라의 都茶房의 명칭을 모방한 것이었지만 직제나 운영은 독자적인 것이었다.26) 즉 송의 도다방에는 환관이 직무를 맡았지만, 고려에서는 의관이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藥 方文을 가지고 있었다. 崔宗峻이 편찬한《新集御醫攝要方》2권도 다방에서 수집한 藥方이 그 토대가 되어 완성된 것이다.27)

고려시대에는 군의도 있었다. 이는 문종 29년(1075) 변방의 군인이 병이 나면 그곳 의원의 치료를 받도록 정한 것에서 알 수 있다.<sup>28)</sup> 또 인종 23년 (1145)에는 각 군의 軍侯가 사용할 수 있는「藥員」을 5명으로 정하였는데,<sup>29)</sup> 이것이 군의였다.

전근대 사회에 있어서 獸醫의 존재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었다. 우리 나라

<sup>23) 《</sup>高麗史》 권 77, 志 31, 百官 2, 諸司都監各色 濟危寶.

<sup>24) 《</sup>高麗史》에는 尙藥局·太醫監 등의 醫療機構가 목종 때에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성종 8년 2월에 의관 즉 侍御醫·直長·醫正 등을 파견해 병든 관리를 치료했다고 되어 있다(《高麗史》권 3, 世家 3, 성종 8년 2월 경진).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尙藥局과 太醫監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sup>25)</sup> 孫弘烈, 앞의 책, 93~94쪽 참조.

<sup>26)</sup> 孫弘烈, 위의 책, 89~92쪽 참조.

<sup>27)</sup> 李奎報,《東國李相國集》 권21, 說序 新集御醫攝要方序.

<sup>28) 《</sup>高麗史》 권81. 志35, 兵1, 五軍.

<sup>29)</sup> 위와 같음.

는 농업국이므로 農牛의 관리와 사육 및 질병치료를 위해 수의는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 말의 이용은 더욱 다양하여 驛馬·乘用·賞賜用·擊球用으로 사용되었고, 그 수도 많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수의의 양성도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료정책은 국가체제가 점차 정비되면서 지방에까지 확대 실시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서경에는 이미 태조 때 의학원이 설치되었고, 약점이 설치되어 백성의 질병을 치료하였으며, 이어 동경과 남경에도 의사가 배치되었다. 문종 때부터는 大都護府와 大都督府에는 醫師를, 防禦鎭에는 醫學을 파견하여 치료를 맡게 하는 등30) 전국의 군현에 의사를 배치, 백성의 질병을 치료하였다.31)

이처럼 중앙에 의료기구를 설치하고 지방에까지 의원을 파견하였으나, 이러한 시설만으로는 백성의 병을 모두 치료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서경을 비롯하여 주·부·군·현에 약점을, 개경에 제위보·東西大悲院·惠民局 등을설치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임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이렇듯 중앙과 지방에 의료기관을 설치하였으므로 이에 필요한 의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초부터 의학교육을 실시하였다. 의학교육은 삼국시대부터 실시한 것이지만, 고려는 태조 때부터 서경에 의학원을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니, 개경에서는 이보다 먼저 실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지방에까지 확대 실시된 것은 성종 6년(987)에 이르러서였다.

성종이 의학교육을 정책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은, "신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병 치료를 우선해야 할 것"이며, 또 "백성들의 難危를 막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술을 널리 보급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sup>32)</sup>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종 2년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한 이후 향리의 자제를 뽑아 개경에 올라와 習業케 하였으나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sup>33)</sup> 이에 經學博士와 醫學博士 각 1명씩을 12목에 파견, 지방자제를 교육시킴으로써 의학교육을 확대하였다.

<sup>30) 《</sup>高麗史》 권 77. 志 31. 百官 2. 外職.

<sup>31) 《</sup>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賑恤 水旱疫癘賑貸之制 공민왕 20년 12월.

<sup>32) 《</sup>高麗史》권 3, 世家 3, 성종 6년 6월.

<sup>33) 《</sup>高麗史節要》 권 2, 성종 5년 7월.

이러한 적극적인 의료정책은 백성을 질병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위민정책이 소산이었다. 광종 때 과거를 실시하면서 의업을 함께 실시한 것도 이러한 정책적 배려에서였다. 의과는 잡과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응시자격은 상당히 개방되어 있었으나,<sup>34)</sup> 시험이 어려워 급제자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성종초부터 지방관이 의술에 밝은 자를 천거하는 것을 恒式으로 삼게 하였다.<sup>35)</sup>

고려시대에는 중앙에 여러 의료기구를 설치하고, 지방에 의원과 약점을 설치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힘썼으며, 이를 위해 경향 각 지에서 의학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료정책은 국가의 항구적인 정책으로 시행되었다. 고려시대 사회정책으로서의 진휼정책과 의료정책은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고, 백성의 재난과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된 정책이었으나,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가의 재정 부족과 잦은 전란으로 말미암아 소기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였다.

### 2) 사회시설

고려시대 백성을 진휼하기 위한 사회시설은 태조 때 설치한 흑창을 시작으로 광종 때의 제위보, 성종 때 흑창을 개편·확대한 의창, 지방에 설치한 약점, 그후 차례로 설치한 대비원·혜민국·제위도감 등 다양한 기구가 있었다. 이외에도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임시로 설치한 기구나 민간에서 운영한 의료시설 등이 있어 재난과 질병에 대비하였다. 이러한 진휼·의료시설의 내용과 운영 실태, 직제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의 창

우리 나라의 진휼제도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존재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고구려 고국천왕 때의 진대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고려시대에이르러 더욱 확충·보완되었다.

진휼기구의 설치는 재난이나 질병을 당한 사람들에게 쌀·종자·소금·의 복·간장 등의 생활필수품과 약품을 진대 혹은 진급하여 재난을 극복하게

<sup>34)</sup> 孫弘烈, 앞의 책, 122~126쪽 참조.

<sup>35) 《</sup>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성종 6년 8월.

하는 실질적인 기능과 함께 정치·도덕적인 애민·휼민의 의지를 실천한다는 정책적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적 기능이 왕을 비롯한 지배자로 하 여금 사면을 행하게 하고, 기우제 등 각종 기도행사를 베풀게 하였던 것이다.

이와 아울러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이러한 기구를 설치하기도 했는데, 태조의 흑창 설치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곧 태조는 즉위후 즉시 흑창을 설치했는데,<sup>36)</sup> 이것은 백성을 구휼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후삼국의 혼란기에 민심을 수습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강한 것이 아니었나 한다. 어떻든 처음 흑창을 설치할 때의 진의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이것은 고려시대 진휼기구의 효시가 되었고, 의창으로 개칭하여 고려는 물론 조선시대까지 존속하면서 궁민을 진휼하였다.

의창은 본래 중국의 제도로서 그 기원은 周나라에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37) 隋·唐시대에 완성을 본 진휼기관이다.38) 즉 隋文帝 開皇 5년(585) 長孫平의 건의로 각 州에 의창을 설치하였으며, 당은 太宗 貞觀 2년(628)에 戴胄의 건의에 의해 주·현에 의창을 설립하여 빈민을 진휼하도록 하였다.39)

고려는 태조가 즉위하면서 바로 의창을 설립하였으나 그 규모나 설치지역, 진휼한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그후 성종은 5년(986) 7월에 흑창에 쌀 1만 석을 더 보태고 그 이름을 의창이라 고침으로써 이것을 확충ㆍ정비하였다. 이어 성종은 주ㆍ부에도 이를 설치하기 위하여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주ㆍ부의 人戶의 다소와 창곡의 數目을 조사ㆍ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40) 이때 주ㆍ부에 설치한 의창의 수와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인호와 창곡을 조사케한 것으로 보아, 지방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설치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의창은 성종대에서부터 현종 때까지 점차 정비되었다. 이 기간은 고려 초 기 중앙과 지방의 제도가 정비되던 시기였고, 특히 성종은 崔承老를 비롯한 여

<sup>36)</sup> 태조는 918년 6월에 즉위했는데 (《高麗史》권 1, 世家 1, 태조 원년 6월 병진), 이 해 8월에 호랑이가 흑창 담 안에 들어와 이를 쏘아 잡았다(《高麗史》 권 54, 志 8, 五行 2, 태조 원년 8월 무진)고 한 것으로 보아 즉위하면서 즉시 흑창을 설치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sup>37)《</sup>十三經注疏》周禮 16, 地官 司徒 下.

<sup>38) 《</sup>隋書》 권 24, 志 19, 食貨, 開皇 5년 5월.

<sup>39) 《</sup>舊唐書》 권 49, 志 29, 食貨 下, 貞觀 2년 4월.

<sup>40) 《</sup>高麗史》 권 80. 志 34. 食貨 3. 常平義倉 성종 5년 7월.

러 문신들의 건의에 따라 유교적 이상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던 때였으므로, 의창·상평창과 같은 진휼제도가 정비되고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이다.41)

특히 현종 14년(1023) 9월에는 〈義倉租收取規程〉을 마련하였는데, 이것은 公田을 3등급으로 나누어 田丁 수에 따라 의창곡을 징수·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1科公田은 結당 租 3斗, 2科公田과 궁·사·원 및 兩班田은 결당 조 2두, 3科公田과 軍人戶丁 및 其人戶丁은 결당 조 1두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42)

이렇게 의창곡을 징수하게 된 것은 태조 때에는 개경에, 성종 때에는 주·부에 의창을 설치하였으나, 현종 때에는 현에까지 확대되어 일반 조세 수입 만으로는 이를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의창곡을 징수했다고는 하지만, 뒤에는 이것이 규정대로 징수되지 않았던 것 같다. 즉 인종 때에 이르면 의창에 미곡의 축적이 적어 官穀을 비축하도록 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43)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의창에는 주로 곡식을 저장하였지만, 이외에 포·소금·간장·된장 등도 저장하여 기근에 대비하였다. 이러한 물품으로 진휼하는 데는 진대와 진급의 두 가지가 있었다. 진급은 무상으로 분급하는 것이고, 진대는 양식과 종자를 나누어주고 이를 가을에 환납토록 하는 유상분급을 말한다. 그러나 《高麗史》에 보이는 대부분의 진휼 사례에서는 이를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양자를 엄격히 구분해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진대의 경우 환납할 때 利息을 취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진휼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폐단이 발생하여 고리대로 전략하였다는 견해도 있으나,44) 고려 전기 의창곡은 환납할 때 이식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45)

<sup>41)</sup> 朴鍾進,〈高麗前期 義倉制度의 構造와 性格〉(《高麗史의 諸問題》,三英社, 1986),428等.

<sup>42) 《</sup>高麗史》 권 80, 志 34, 食貨 3, 常平義倉 현종 14년 9월.

<sup>43) 《</sup>高麗史》 권 80, 志 34, 食貨 3, 常平義倉 인종 5년 3월.

<sup>44)</sup> 白南雲,《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改造社, 1937), 573쪽.

<sup>45)</sup> 林基形、〈義倉攷〉(《歷史學研究》Ⅱ, 全南大 史學會, 1964), 78~79等. 朴鍾進, 앞의 글, 431~432等.

도 소금·간장·포·된장 등도 분급하였다. 곡물의 경우 분급한 양은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춘궁기에 양식과 종자로 주어졌는데, 무상으로 지급된 것 이외에는 가을에 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러한 진휼방법은 기근을 면하게해줄 뿐만 아니라 농업의 재생산 수단을 제공해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진휼지역은 지난해에 수재나 한재를 당하거나 兵亂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역이 그 대상이 되었으며, 시기는 대체로 춘궁기였다.46)

의창은 고려 전기에는 그런대로 잘 운영되었으나, 인종 때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그리고 의종 때의 무신의 집권 등 국내의 정치적 혼란과 이어 벌 어진 몽고와의 전쟁은 이러한 진휼기관의 운영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더욱이 1/3의 이식이 인정되는 고려의 公私借貸는 관리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농민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도록 해주어 무이식의 의창제는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종 5년(1127)에 내린 칙서에서 "관곡의 저축에 힘써 백성의 구휼에 대비하라", "濟危寶·大悲院은 축적을 많이하여 질병을 구하라", "관고의 썩은 곡식을 강제로 나누어 주고 이식을 취하지 말라"는 등의 기록으로도 알 수 있다.47)

결국 관곡을 비축해서 빈민을 구하라 한 것은 백성을 구휼할 의창미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었고, 이후 무신의 난과 몽고의 침입으로 국가의 재정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의창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충렬왕 22년 (1296) 洪子藩이 의창의 재설치를 건의한 것으로 보아<sup>48)</sup> 이 때 이미 의창이 없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국가의 재정상태는 의창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 곧 충선왕은 有備倉과 典農司 등의 구휼기관을 설치하였으나,<sup>49)</sup> 이것도 제구실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후 공민왕 때에서 우왕에 이르기까지 지방관에 의해 의창 이 일부 지역에 설치되었고, 공양왕 때에 전국에 다시 의창이 설치되어,<sup>50)</sup> 조

<sup>46)</sup> 朴鍾進, 위의 글, 430~431쪽.

<sup>47) 《</sup>高麗史》 권 15, 世家 15, 인종 5년 3월 무오.

<sup>48)《</sup>高麗史》 권80. 志34. 食貨3. 常平義倉.

<sup>49)</sup> 朴鍾進,〈忠宣王代의 財政改革策과 ユ 性格〉(《韓國史論》11, 서울大 國史學 科, 1983), 85~90等。

<sup>50) 《</sup>高麗史》 권 80, 志 34, 食貨 3, 常平義倉 공양왕 원년 12월 · 3년 4월.

선시대 의창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고려초 흑창으로 시작한 의창은 구휼기관으로서 빈민을 구휼하는 실질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지배계층의 정치적 명분을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의창은 고려 전기에는 재해를 당하거나 스스로 존립할 능력이 없는 궁민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물품을 진급 또는 진대하는 기본적 기능을 유지하였지만, 중기 이후 점차 붕괴되어 충렬왕 이전에 붕괴되고 말았다. 그러나 의창은 다시 고려 말기 지배계층에 의해 부활되어 조선시대까지 존속하였다.

### (2) 상평창

常平倉은 곡가가 떨어지면 국가에서 시가보다 비싸게 미곡을 구입하여 저장하였다가 흉년이 들어 곡가가 오르면 시가보다 싸게 방출함으로써 백성의생활을 안정시키고자 설치한 물가조절 기구였다. 이것은 漢宣帝 五鳳 4년 (B.C. 54) 大司農 中丞 耿壽昌의 건의에 의해 처음 실시된 것이었다.51) 이 제도는 중국의 경우 농촌경제의 원활한 유통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으나 운영방법에 각종 폐해가 발생하여 실시한 지 10년 후에는 폐지되고 말았다.52)

이러한 상평창 제도가 고려시대에 처음 실시된 것은 성종 12년(993) 2월에 개경과 서경 및 12목에 倉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 제도 역시 중국 한나라의 상평창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풍년에 백성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하고, 흉년에는 농민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한 진휼책이었다.53)

성종은 상평창을 설치하면서 여기에 米 6만 4천 석을 주어 그 중 5천 석은 개경의 상평창에, 나머지 5만 9천 석은 서경과 12목 등 모두 15개의 상평창에 분급하였다.54) 상평창의 관리는 개경의 경우, 市■을 관리·감독하던

<sup>51) 《</sup>漢書》 권 8, 紀 8, 五鳳 4년 춘정월.

<sup>52)</sup> 徐吉洙、〈高麗時代 常平倉에 관한 研究〉(《論文集》6, 淑明女大 韓國政治經濟 研究所, 1977), 154等.

<sup>53) 《</sup>高麗史》 권80. 志34. 食貨3. 常平義倉.

<sup>54)</sup> 위와 같음.

이 때 보급한 米穀의 양에 대하여는 몇 가지 설이 있다. 즉 첫째, 千金에 해당하는 布 64만필 중 반은 米穀 6만 4천석으로 바꾸어 의창에 주고, 나머지 布 32만 필은 상평창에 주어 운영케 하였다는 것이며 (朝鮮總督府 中樞院 編,《社還米制度》, 1933, 69쪽), 둘째는 천금을 포로 바꾸면 64만필이 되고 米로 바꾸면 12만 8천석이 되기 때문에, 반은 포 32만필로, 나머지 반은 미 6만 4천석으로 하여 각지의 상평창에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다(村上四男, 〈高麗時代の常平倉), 《學藝

京市署로 하여금 穀·布의 가격 변동에 따라 이를 관리·조절하게 하는 한편, 大府寺와 司憲臺가 출납을 공동 관리하게 하였으며, 서경은 分司司憲臺에 위임 하였다. 한편 기타 州郡倉은 당해 지역의 관원이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양경의 사헌대에서 이를 관리하게 한 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막아 보려는 데 그 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상평 창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 실태를 알려주는 자료가 거의 없다. 다만 인종 원년(1123) 고려에 다녀간 송의 徐兢이 편찬한《高麗圖經》에 의해 상평창이 존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55)

그러나 이보다 먼저 현종 3년(1012)에 서경이 지난해의 수재와 한재로 인하여 곡가가 등귀하여 백성들이 곤란하게 되었다며 소관 관청으로 하여금 창고를 열어 진휼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는데,56)이 때의 소관 관청이 상평창이었는지 또는 의창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곡가가 등귀하여 창고의 곡식을 풀었던 것으로 보아, 그것은 상평창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상평창이 처음에는 물가조절 기구로 출발하였지만 뒤에는 진대의 역할도 담당하였기57)때문이다.

또 현종 5년 6월에는 풍년이 들어 쌀값이 떨어져 거친베(麤布) 1필이 쌀 12말이나 되므로 그 값을 조절하도록 삼사에서 건의하므로 이에 따랐다고한 것으로 보아,58) 상평창이 물가조절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또한 삼사에서 이를 건의한 것은, 삼사가 중외 전곡의 출납과 회계를 맡던 기구였으므로 경제의 안정과 농민의 손해를 덜어주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상평창은 그 실재가 확인된 인종 때까지는 그 기능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발생한 내우외환으로 국가적 혼란기를 맞아 의창과 같이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고 보여진다. 상평창이 다시 설치된 것은 충선왕 즉위

硏究》Ⅱ, 和歌山大學, 1951, 207~118쪽 및 徐吉洙, 앞의 글, 156~159쪽), 셋째는 당시 실정으로 보아 千金額에 상당한 穀布를 염출하기 어려워 우선 그 반인 6만 4천석을 내어 자본으로 하였다는 것인데(李丙燾,《韓國史》中世篇, 震檀學會, 1961, 166쪽), 이 글에서는 셋째의 의견을 취하였다.

<sup>55)</sup> 徐兢、《高麗圖經》 권 16. 官府 倉廩.

<sup>56) 《</sup>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水旱疫癘賑貸之制 현종 3년 5월.

<sup>57)</sup> 李丙燾, 앞의 책, 167쪽.

<sup>58) 《</sup>高麗史》 권 79, 志 33, 食貨 2, 市估 현종 5년 6월.

년(1308)이었다. 정치적 개혁을 시도했던 충선왕은 여러 도의 務農使 李厚・陸希贄・崔伯倫 등을 불러 "典農司를 설치한 것은 常平倉을 설치하여 백성에게 糶糴을 실시, 그 급한 것을 구하는 데에 있다"59)고 한 것으로 보아, 이때 상평창이 다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충선왕은 얼마 후 아들인 충숙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원나라로 갔고, 그 뒤 계속된 원의 수탈과 權門世族의 횡포, 충정왕 이후 창궐한 왜구의 침입은 이러한 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했다. 이 때문에 상평창은 그기능이 다시 정지되었고 공민왕 20년(1371) 復置되었으나,60) 전국적으로 다시설치된 것은 공양왕 원년(1339) 대사헌 趙浚 등의 건의에 의해서였다.61)

이와 같이 상평창은 고려 전기에는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 존속하였으나, 후기에는 치폐를 거듭하였기 때문에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상평창은 본래 물가조절이 목적이었지만, 고려 475년간 수재와 한재가 평균 2년에 한 번씩 일어났기 때문에<sup>62)</sup> 물가조절과 함께 의창과 같이 진대의 기능도 가졌던 것이다. 상평창이 물가조절을 위한 좋은 제도였음에는 틀림없지만, 고려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이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지는 못하였다.

### (3) 제위보

고려시대에는 중앙의 의료기구로서 尙藥局과 太醫監이 있었지만, 이것은 주로 왕실과 관리의 치료, 의료정책의 수립, 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책과 치료 등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일반 백성의 질병치료를 위한 국립의료 기구가 별도로 중앙과 지방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최초의 기구가 바로 광종 14년 (963)에 설치된 濟危實였다.63)

제위보는 빈민·행려의 구호와 질병의 치료를 맡아보던 기관이었다. 처음의 직제는 알 수 없으나, 문종대에 이르러 직제를 정비하여 副使 1명(7품 이상)·

<sup>59) 《</sup>高麗史》권 32. 世家 32. 충선왕 즉위년 10월 경자.

<sup>60) 《</sup>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常平義倉 공민왕 20년 12월.

<sup>61) 《</sup>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常平義倉 공양왕 원년 12월.

<sup>62)</sup> 徐吉洙, 앞의 글, 164~165쪽 참조.

<sup>63) 《</sup>高麗史》 권 77, 志 31, 百官 2, 諸司都監各色 濟危寶.

錄事 1명(병과권무)을 두었고, 뒤에 使 1명을 다시 설치하였다. 제위보에서는 질병의 치료도 담당하였기 때문에 동서대비원·혜민국과 같이 의원이 있었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죄를 진 여인으로 하여금 그 대가로 徒役을 시키기도하였다.64)

제위보는 질병치료가 주임무였으나, 숙종 6년(1101) 4월에는 제위보로 하여금 빈민을 진휼하도록 하였고, 이듬해 4월에도 기민에게 施食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65) 빈민 구료사업도 겸하였던 듯하다. 인종 때 제위보는 대비원과함께 운영을 위한 양곡을 지급받았고, 때때로 수리하여 환경을 정비하기도하였다. 그러나 의종 이후로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여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몽고의 침구 후에는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그후 충숙왕 12년(1325)에 수리하여 공양왕 3년(1391) 폐치될 때까지 다시 민질을 치료하였으나, 과연 소임을 다할 수 있었는가는 의문이다.

#### (4) 동서대비원

음 〈표 1〉과 같다.

대비원이라는 명칭은 불교의 大慈大悲思想의 구현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불교국가였던 고려의 의료기구로서 역대 임금들의 관심 아래 병자의치료를 담당하였다. 대비원은 개경의 경우 동·서에, 서경에는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그것은 설치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정종 2년(1036) 11월에 그것을 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66) 그 이전에 설치되었다고 여겨진다. 대비원의 직제는 문종 때에 이르러서 정비되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

이 〈표 1〉에 의하면 동서대비원의 사·부사·녹사와 서경 대비원의 부사·판관은 모두 권무관으로 임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과거에 합격한 문관이었으며, 記事 2명은 醫吏를 임명, 치료를 전담케 하였다.67) 본래 대비원의 주임무가 치료였기 때문에 전속 의관이 배치되어 있었고, 이것은 서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sup>64) 《</sup>高麗史》 권 71. 志 25. 樂 2. 濟危寶.

<sup>65) 《</sup>高麗史節要》 권 6, 숙종 6년 4월.

<sup>66) 《</sup>高麗史》 권 80. 志 34. 食貨 3. 水旱疫癘賑貸之制 정종 2년 11월.

<sup>67) 《</sup>高麗史》 권 77, 志 31, 百官 2, 東西大悲院.

〈丑 1〉

직	명	인 :	원 수	刊	卫
使		1	인	權務官	
副使		1	인	"	
錄 事		1	인	丙科權務	
記事		2	인	吏屬(醫吏로 差)	之)
書者		2	인	吏 屬	
(大悲院)副使	į.	(1	인)	西京權務官	
(大悲院)判官		(1	인)	"	

대비원의 또 다른 임무는 飢寒者와 환과고독을 돌보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비원은 운영을 위하여 축적을 많이 하도록 하였고, 때로 이를 수리하여 환경을 정비하였다. 이러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따로 田·民을 속하게 하였다.68) 의종도 이러한 救療機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동서대비원과 제위보에 적임자를 임명하여 백성을 구휼하도록 하였고, 그 관리는 사헌부에서能否를 규찰하여 권징토록 하였다.69) 이와 아울러 무신의 집권기인 명종 때에도 의관의 活人業績에 따라 포펌하도록 하는 등 병자의 구료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몽고의 침구를 거치는 동안 이러한 기관은 거의 폐치되다시피 되었다.

그러나 충렬왕 말기부터는 점차 구료기관으로서의 기능도 회복되어 동서 대비원으로 하여금 80세 이상된 노인으로 병들고 보호할 사람이 없는 자를 安集하여 식량을 지급하고 치료하도록 하였다. 이와 아울러 충선왕도 동서대비원의 녹사로 하여금 有備倉 米를 지급받아 질병을 치료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구료기관은 국가로부터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적은 매우 저조하였다. 따라서 충숙왕 12년(1325) 이를 다시 수리하여 병자를 진휼하도록 하였고, 충혜왕은 4년(1343) 3월 僧 潛仙의 권유로 習射場을 파하여 동서대비원에 속하게 하고 또 성 밖에 院을 세워 성 안의

<sup>68) 《</sup>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赈恤 水旱疫癘賑貸之制의 공민왕 20년 12월 下教條에 都評議使司와 사헌부로 하여금 원래 속해 있던 田・民을 도로 찾아서 醫藥과 粥飯의 資로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아 創院 당시부터 田・民을 속하게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sup>69) 《</sup>高麗史》 권 18, 世家 18, 의종 22년 3월 무자.

병자를 모아 옷과 음식을 지급하고 치료하도록 하였다.70) 이것으로 고려 말기에는 동서대비원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정종 이후에 설치 운영된 대비원은 전국적인 규모로 운영된 것은 아니었지만, 몽고의 침입기를 제외하고는 춥고 배고픈 사람과 병자를 돌보는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다. 이후 대비원은 조선시대에 活人院(위에는 活人署)으로 개칭되어 진휼업무를 계속하였다.

### (5) 혜민국 · 기타 기구

惠民局은 백성의 질병을 치료하고, 약을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官藥局으로서 예종 7년(1118)에 설치되었다. 여기에는 판관 4명을 두었는데, 本業(醫官)과 散官 중에서 서로 差任하도록 하되, 乙科權務로서 하였다.71) 고려는 문종대 이래 예종대까지 특히 대송관계에 있어서 의원·약품·의서 등의 교류가 빈번하여 고려 의학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 결국 혜민국의설치는 이와 같은 의학의 발달과 위정자의 관심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고려도경》에 보면, "普濟寺 동쪽에 藥局이 있었다"고 했는데,72) 이것이 바로 혜민국이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太醫・醫學・局生 등이 있어서 날마다 그 직에 임했는데, 이는 의관으로 임명된 판관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다른 물건은 모두 물물교환이었으나, 약은 간혹 錢寶로 교역했다는 것으로 보아, 국내외의 약재와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약을 조제하여 판매했던 것으로 보인다. 쉽게 의원과 약품을 접할 수 없었던 당시에 혜민국의 신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후에 고종이 예종의 혜민국 설치를 그의 중요한 업적으로 여긴 것만 보더라도,73) 이것이 당시에 얼마나 큰 역할을 담당했는지 알 수 있다.

혜민국 역시 이후로는 다른 구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 뒤에 충선왕은 이를 司醫署의 관할 아래 두고 활용했으나, 충숙왕 12년(1325)에 이것도 동서대비원 등과 같이 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sup>70) 《</sup>高麗史節要》권 25. 충혜왕 4년 3월.

<sup>71)《</sup>高麗史》 권 77, 志 31, 百官 2, 惠民局.

<sup>72)</sup> 徐兢,《高麗圖經》 권 16, 官府 藥局.

<sup>73) 《</sup>高麗史》 권 22, 世家 22, 고종 2년 10월 을미.

그 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 혜민국은 공민왕 3년(1354) 惠民典藥局으로 개칭되었고, 조선시대에는 惠民署로 되었다가 고종 때 폐치될 때까지 민질의 치료를 담당하였다.

이외에 기민과 병자를 구제하기 위해 전술한 기구와는 별도로 설치한 것도 있었다. 즉 救濟都監은 예종 4년(1109) 5월 개경에 역질이 유행하여 사망자가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시체를 거리에 버리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설치한 것이다.74) 그러므로 이 역시 병자의 치료와 빈민의 구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유행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구제도감은 상설기구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설치되었던 것으로서 충목왕 4년(1348) 3월에는 같은 목적으로 賑濟都監이, 공민왕 3년 6월에는 賑濟色이 설치되어 기민을 구제하였다. 또한 예종 원년에는 東西濟危都監이 있어서 빈민과 병자를 구휼하기도 하였다.75) 이것은 이미 동·서 두 곳에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빈민과 병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기구였고, 예종 때에만 있었던 임시기구로 보인다.

위의 여러 기관은 때로는 설치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한 경우도 있으나, 그 것이 본래 기민의 구휼과 민질의 치료가 주된 임무였기 때문에 역대의 국왕과 뜻있는 관원들의 관심과 노력의 결과 고려 전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특히 예종은 애민정책의 실현자로서 상설기구인 혜민국을, 또 때에 따라서는 구제도감·동서제위도감 등을 설치하여 빈민과 병자를 구휼하였다.

# (6) 지방의 의료기구

지방에도 민질과 군인·관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구가 설치되어 있었다. 개경 이외의 지역에 의료기구가 처음 설치된 곳은 서경이었다. 즉 태조 13년(930) 서경에 醫學院을 설치하였는데, 의학원의 교수는 생도의 교육뿐만 아니라 관리나 백성의 치료도 담당하였다. 또한 성종 때 설치한 동경과문종 때 설치한 남경에도 의사가 배치되어 지방의 의료업무를 담당하였다.

서경의 의학원은 예종 11년(1116) 分司太醫監으로 그 관호가 개칭되었는데,

<sup>74) 《</sup>高麗史》 권 80, 志 34, 食貨 3, 賑恤 水旱疫癘賑貸之制 예종 4년 5월.

<sup>75) 《</sup>高麗史節要》 권 7, 예종 원년 3월.

관원으로는 判監과 知監을 두되 정원은 정하지 않고 본직의 고하로 이를 겸임케 하였으며 8품과 9품의 參外를 각 1명씩 두었다. 그후 명종 8년(1178) 관제를 개정할 때, 서경의 약점에는 부사·판사와 의사 1명, 기사 2명, 의생 5명을 두었다.76) 이 분사태의감의 의관, 약점의 의사·의생 등은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였을 것이다.

서경 이외의 지역에 언제부터 의관을 파견하였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성종 6년(987) 經學博士와 醫學博士를 12목에 파견해 쓸만한 자를 골라가르치게 하였고, 또 州縣官으로 하여금 의관 후보자를 천거하도록 한 바 있다.77) 이 때 파견된 의사 역시 의학교육과 함께 치료를 담당하였기 때문에지방의 의료시설은 성종 6년 의학박사의 파견을 계기로 확충되기 시작하였고 현종과 문종을 거치는 동안 더욱 확대되었다고 하겠다.

즉 문종 때부터는 동경과 남경은 물론 大都護府와 大都督府에는 의사 1명씩을, 防禦鎭에는 醫學 1명씩을 파견해 치료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또한 국 초부터 각 군현에는 의사가 배치되어 민질의 치료를 담당하였다. 78) 그러나인구에 비해 의사의 수가 적어 귀하게 되니 거만해져 이들 악덕 의관에 대해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상소가 있을 정도였다. 이에 고려 말기에 이르면가난한 자는 치료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니 법으로 다스리게 하였다. 즉의관은 관아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자의 집에서 요청하면 즉시 가야하는데도 불구하고 富豪가 아니면 불응하는 사례까지 있었던 것이다. 79) 따라서 대부분이 가난한 농민이었던 당시에 있어서 의료의 혜택은 고루 미치지못하였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노비와 같은 천민은 치료도 받아 보지 못하고 죽어 길에 내다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이러한 지방의 의관과는 별도로 경향 각지에 설치된 것으로 藥店이 있었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었다. 주・부・군・현에 설치되어 있던 약점의 기능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개경의 혜민국과 같은 업무를수행했을 것이다. 약점의 설치연대는 분명치 않으나, 지방에는 현종 때에, 서

<sup>76) 《</sup>高麗史》 권 77. 志 31. 百官 2. 外職 西京沿革.

<sup>77) 《</sup>高麗史》 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성종 6년 8월.

<sup>78) 《</sup>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賑恤 水旱疫癘賑貸之制 공민왕 20년 12월.

<sup>79) 《</sup>高麗史》 권 85. 志 39. 刑法 2. 禁令 공민왕 4년 3월 憲司上疏.

경에는 문종 때에, 그리고 개경에는 예종 때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80) 이와 같이 지방에 먼저 약점이 설치된 이유는 개경과 서경에는 이미 대비원·제위보 등의 의료기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의료의 혜택을 제대로받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므로 이곳부터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서경의 약점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부사·판관·의사·기사·의생 등이 있었고, 기타 지방의 약점에는 인구에 비례하여 藥店司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 약점사는 鄕吏職 중의 의직으로서 현종 9년(1018) 주·부·군·현의 이직을 개정할 때 새로 설치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1,000정 이상의 지역에는 4명씩, 500정과 300정 이상의 지역에는 2명씩, 그리고 100정 이하의 지역에는 1명씩 배치하였고, 동·서의 諸防禦使와 鎭將 및 縣令官의 관할 지역에는 1,000정 이상에서 100정 이하에 이르기까지 모두 2명씩 배치하였다.81)

문종 때에 이르면 약점사의 상위적으로 藥店正과 藥店副正이 나타나는데, 약점정은 副戶正에 준하고, 副正은 州府郡縣史에 준하는 것으로서, 약점사와함께 지방의료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약점의 정·부정·사 등은 같은 鄕職이라 하더라도 호장·부호장·병정 등의 행정직과는 다른 특수직이었다. 그것은 약점사가 인간의 생명과 관계되는 직책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점사는 의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선발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들이 지방의료의 일부를 담당하였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약점에는 공해전을 두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게 하였는데, 서경의 약점에 7결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82) 개경의 혜민국을 비롯한 각지의 약점에도 공해전이 지급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전국에 설치되었던 약점이 국민 보건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는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대중의 질병치료와 더불어 藥材의 채취와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약점의 향리와 지방 의관 과의 관계도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다 같이 지방 의료에 간여한 것은 사실이므로 서로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었을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

<sup>80)</sup> 孫弘烈, 앞의 책, 115쪽 참조.

<sup>81) 《</sup>高麗史》 권 75, 志 29, 選擧 3, 鄕職 현종 9년.

<sup>82) 《</sup>高麗史》 권 78, 志 32, 食貨 1, 公廨田 명종 8년.

에는 지방에 審藥이 파견되어 있었지만, 향리직 중에 이러한 의직이 있었던 때는 고려시대뿐이었다.

#### (7) 민간의 의료사업

고려시대에는 제위보·동서대비원·혜민국 등 국립 의료기관이 상설되어 있어 백성들의 질환을 치료하였다고는 하나, 이 기구들이 모든 병자를 다 치료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왕족이나 민간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었다.

먼저 국왕으로서 개인적으로 민질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비축한 왕은 의종이었다. 의종의 경우 국사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정권의 수립을 초래케 한 인물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심약한 사람이어서 궁중의 별실 중 하나를 善救寶라 이름 짓고, 그곳에 약을 비축하여 衆疾을 널리 구하려 하였다.83) 그의 이러한 사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점차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던 의료기관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의종의 부마인 王沔은 왕족으로서 성품이 순박하고 침착했으며 글씨도 잘 쓰고 재능도 많았다. 특히 의술에 정통하여 약을 저축하여 活人하기를 일삼 았다고 한다. 더욱이 많은 병자들이 그의 집에 몰려들어도 조금도 꺼리지 않 고 치료해 주어 모두 탄복하였을 정도였다.84) 그의 이러한 사업은 현대의 자 선사업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당시에 병자가 많이 몰려온 것은 그때가 무신집권기로서 국가의 의료기구가 제기능을 발휘하치 못하고 있었 기 때문이라 하겠다.

또 蔡洪哲은 충렬왕 때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를 지낸 후 충선왕 때 司醫 副正이 되고, 뒤에 順川君에 봉해진 인물이다. 그는 재물을 좋아하여 관직에 있는 동안 거부가 되었으나, 사람됨이 문장에 능하고 의술을 비롯한 技藝에 재주가 있었다. 또 불교를 매우 좋아하여 일찍이 자기집 북쪽에 栴檀園을 지어항상 승려를 대접하였으며, 또 약을 시혜하니 많은 사람이 이에 힘입어 이를

<sup>83) 《</sup>高麗史》 권 18, 世家 18, 의종 10년 10월.

<sup>84) 《</sup>高麗史》 권 90. 列傳 3. 宗室 1. 朝鮮公燾 附 沔.

活人堂이라 하였다. 충선왕도 일찍이 이곳에 행차하여 白金 30근을 시사하여 그의 구료사업을 격려하였다.85) 충선왕의 부마인 許悰도 원나라에서 돌아온후 의술로 많은 병자를 구했던 사람이다.86)

이상 예로 든 세 사람의 활동은 모두 가난한 병자에 대한 구료사업이었다. 이들은 사회적 지위도 비슷하였고, 시대도 왕면이 약간 앞서기는 했지만, 대체로 무신의 집권 혹은 원의 지배로 국가가 혼란한 때였다. 이러한 혼란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민간의 活人事業이 그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이러한 민간에 의한 구료사업은 시설이나 능력에 한계가 있어 극히 일부인에게만 혜택이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는 것이었다.

고려 전기에 설치되어 형식적이나마 후기까지 운영된 의창·상평창 등의 진휼기관과 제위보·대비원·혜민국·약점 등의 의료기관은 이재민과 질역 자에게 식량과 약품을 진급 혹은 진대하는 본래의 기능을 비교적 충실히 수 행하였다. 그러나 의종 때를 고비로 그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고 말았다. 그 가운데 몇몇 기관은 충선왕 이후 다시 설치되었으나 전기와 같이 활발한 역 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후기에 와서 활동이 중지된 것은 고려 중기의 무신란을 고비로 하여 되이은 고종 때의 몽고의 침입, 여말의 왜구 등의 내우외환과 원의 수탈, 권문세가의 농장 확대 등으로 국가 재정수입이 감소된 데에 기인한다. 이로인해 사실상 진휼・의료기관의 운영이 마비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농민의 보호와 국가경제의 기반인 농업의 재생산수단을 제공한다는 실질적인 기능과 애민・휼민을 목표로 하는 王道政治의 실현이라는 형식적 기능의 달성을 위해 이러한 사회시설이 운영되었지만, 고려사회가 안고 있던 여러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효과를 보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孫弘烈〉

<sup>85)《</sup>高麗史》 권 108, 列傳 21, 蔡洪哲.

<sup>86) 《</sup>高麗史》 권 105, 列傳 18, 許珙 附 悰.

# 4. 형률제도

### 1) 율령의 내용

### (1)《고려사》형법지에 대한 검토

지금까지 고려시대에 시행된 刑法인 고려율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가 진척되었다.1) 그러나 그 연구영역의 대부분은 법제사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다고해도 과언은 아니다.

고려시대에 시행된 형법과 刑政에 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는 《高麗史》刑法志(이하 형법지로 약칭함)를 꼽을 수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에 시행된 고려율과 행형제도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는 먼저 형법지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와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선 다음과 같은 형법지의 序文 을 통해 검토의 실마리를 풀어보자.

- ① 刑은 지나간 일을 징계하고, 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방하는 것이니, 이미 일어난 일을 징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게 하는 것은 일을 未然에 방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피할 줄 알게 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나 형이 없으면 법이 시행될 수 없다. 이것이 先王이 병용하면서 어느 한 가지도 없애지 못한 까닭이다.
- ② 고려시대의 제도는 대개 唐制를 모방하였고, 형법에 이르러서도 唐律을 채록하여 時宜를 참작하여 사용하였다. 獄官令 2條・名例 12조・衛禁 4조 職制 14조・戶婚 4조・廐庫 3조・擅與 3조・盜賊 6조・鬪訟 7조・詐僞 2조・雜律 2조・補亡 8조・斷獄 4조 등 모두 71조인데, 번잡한 것은 삭제하고 간결한 것은 취하여 한 시대에 시행하였으니 또한 근거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 ③ 그러나 그 폐단은 법망을 펴지 못하고 형벌은 완화되고 사면이 잦아서 姦兇의 무리들이 법망을 벗어나서 제멋대로 하여도 제지하지 못하였고, 말기에 가서는 그 폐단이 극에 달하였다. 이렇게 되어 元나라의 議刑易覽과 明의 大明律을 섞어서 쓰자는 의견도 나왔고, 또 至正條格・言行事宜를 겸해서 채용하자고 책을 만들어 바친 자도 있었다. 이것은 비록 시대의 폐단을 시정하는 데 절

高麗律에 관한 자세한 연구현황에 대하여는 辛虎雄,《高麗法制史研究》(國學 資料院, 1995), 9~12쪽 참조.

실한 것이었으나 이미 국가의 大綱이 무너지고 국세가 기울어진 바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위의 사료에서 보듯이 형법지의 서문은 대략 세 단락으로 나누어 생각할수 있다. ①은 서문 중의 서문이라 할 수 있는 일반론으로 刑과 法意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즉 형법의 예방적·응보적 성격을 밝히면서2) 후자의 기능을 전자보다 하위의 개념에 놓고 보려는 것이 형법지 찬자(이하 찬자)의 형법 관이라 할 수 있다. 형법지에는 가혹한 형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用刑에 있어서는 매우 인도적이었고, 또 개별화시켜 적응함으로써 형벌을 완화한 寬刑主義・省刑主義를 채용하였던 것이다.

②에서 보듯이 고려의 형법은 당률을 채용하면서도 시의를 참작하여 獄官 숙 2조 등 12편목으로 모두 71조의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형법지의 실 제 내용은 名例·公式・職制・奸非・戶婚・大惡・殺傷・禁令・盜賊・軍律・恤 刑・訴訟・奴婢 등 1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크게 다르다.

③에 의하면, 고려의 법률은「刪削取簡」하여 한때 잘 시행되었으나 고려 말기에 이르러 법망이 해이해져 간흉의 무리가 마음대로 빠져 나와도 이를 禁制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폐단이 극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대책으로 원의《議刑易覽》과 명의《大明律》을 혼용하여 당시의 폐단을 바로잡으려 하였지만 이미 국세는 기울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서문을 종합해 보면, 찬자들은 고려의 형법이 당률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전통적인 관습법을 참작하여 썼고, 또 형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말기에 올수록 문란해 졌다는 부정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려사》 찬자가 갖는 흥망사관이라 할 것이며, 그 목표는 조선의 건국에 대한 당위성과 합리성을 부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3)

《고려사》형법지는 두 가지 형식으로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하나는 年· 月이 없는 일반적 기사 내지 科條的 기사이며, 다른 하나는 년·월이 있는 編 年的 기사이다.4) 가령 형법지「職制」항목을 보면, 앞에는 과조적 기사에 해당

<sup>2)</sup> 延正悅, 《韓國法制史》(學文社, 1984), 49\.

<sup>3)</sup> 邊太燮, 《「高麗史」의 研究》(三英社, 1982), 216~217\.

<sup>4)</sup> 辛虎雄, 앞의 책, 307쪽.

되는 일반적인 법률(주로 형법)이, 뒤에는 연월이 있는 구체적 사실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보여진다.

형법지의 기사 중에서 주목되는 점은 고려의 독자적인 율문이 많다는 점이다. 찬자가 서문에서「시의를 참작」하였다고 한 것은 관습법을 뜻할 수도 있지만, 형법지 각 항목에 산견되는 국왕의 制・判・敎도 그것에 포함될 것이다. 대체로 과조적 기사가 당률을 형식적으로 채록한 것이 많은데 비해, 제・판・교 등은 그때그때의 時法으로 고려의 현실에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판・교 등의 사례를 보면 연월이 없는 경우도 다소 있지만, 대부분은 연월이 부기된 편년적 기사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고려율의 체계는 과조적 기사와 詔勅類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제 형법지에 수록되어 있는 각 항목에 대해 과조적 기사를 중심으로 고려율의 法意와 法源을 분석해 보자.

### (2) 고려율의 내용

### 가. 명 례

형법지 찬자는 오늘날의 형법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을 名例 항목에 수록하고 있다. 명례에서 名이란 5형의 刑名(형벌규정)이며, 例는 5형을 적용하는 법례를 뜻한다.5) 이것이 바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6) 형법지에는 당률의 예에 따라 名例律을 그 첫머리에 수록하고 있다. 다음 〈표 1〉은 그 구체적인 법원을 규명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것을 보면, 5형제도의 법원은 당률임을 알 수 있지만, 고려율의 5형체계는 당률과는 달리 折杖法이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아 宋刑律도 참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7) 그리나 贖銅制는 당률을 모방하였다.8) 이로써 고려율의 절장법은 《宋刑統》을, 속동제는 당률을 따랐던 것이라 하겠다.

《송형통》을 법원으로 하는 절장법의 내용을 보면, 당률의 경우 태형에서는 그 형량이 10~50이지만, 절장법에서는 臀杖(볼기를 치는 매) 7~10을 과하는

<sup>5)</sup> 宋斗用, 〈高麗律條의 研究〉(《行政學報》1·2. 建國大, 1968·1969).

<sup>6)</sup> 辛虎雄, 《高麗時代 刑法史 研究》(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86), 14쪽.

<sup>7)</sup> 仁井田陞、〈唐宋の法と高麗法〉(《東方學》30, 1965), 12쪽.

<sup>8)</sup> 戴炎輝, 〈唐律における除免當贖法〉(《法史學研究》13, 1962), 55~59쪽.

〈丑 1〉

구 분	高 麗 律	唐 律	宋 律
① 答 刑 (5종류)	苔 10=折杖 7・贖銅 1근	苔 10=贖銅 1근	苔 10=決臀杖 7
	苔 20=折杖 7・贖銅 2근	苔 20=贖銅 2근	苔 20=決臀杖 7
	苔 30=折杖 8・贖銅 3근	苔 30=贖銅 3근	苔 30=決臀杖 8
	苔 40=折杖 9・贖銅 4근	苔 40=贖銅 4근	苔 40=決臀杖 8
	苔 50=折杖 10・贖銅 5근	苔 50=贖銅 5근	苔 50=決臀杖 10
② 杖 刑 (5종류)	苔 60=折杖 13・贖銅 6근	杖 60=贖銅 6근	杖 60=決臀杖 13
	苔 70=折杖 15・贖銅 7근	杖 70=贖銅 7근	杖 70=決臀杖 15
	苔 80=折杖 17・贖銅 8근	杖 80=贖銅 8근	杖 80=決臀杖 17
	苔 90=折杖 18・贖銅 9근	杖 90=贖銅 9근	杖 90=決臀杖 18
	苔 100=折杖 20・贖銅 10근	杖 100=贖銅 10근	杖 100=決臀杖 20
③ 徒 刑 (5종류)	1년 =折杖 13・贖銅 20근	1년 =贖銅 20근	1년 =決脊杖 13
	1년반 =折杖 15・贖銅 30근	1년반 =贖銅 30근	1년반 =決脊杖 15
	2년 =折杖 17・贖銅 40근	1년 =贖銅 40근	2년 =決脊杖 17
	2년반 =折杖 18・贖銅 50근	1년반 =贖銅 50근	2년반 =決脊杖 18
	3년 =折杖 20・贖銅 60근	1년 =贖銅 60근	3년 =決脊杖 20
	2천 리=折杖 17・配役 1년・	2천 리=贖銅 80근	2천 리=決脊杖 17
	贖銅 80근		・配役 1년
④ 流 刑	2천 5백 리=折杖 18·配役	2천 5백 리=贖銅	2천 5백 리 =決脊杖
(3종류)	1년・贖銅 90근	90근	18・配役 1년
	3천 리=折杖 18・配役 1년・	3천 리=贖銅 100근	3천 리=決脊杖 18
	贖銅 100근		・放配役 1년
⑤ 死 刑	絞=贖銅 120근	校=贖銅 120근	絞=贖銅 120근
(2종류)	斬=贖銅 120근	斬=贖銅 120근	斬=贖銅 120근

데 그치고 있으며,<sup>9)</sup> 장형에서는 그 형량이 60~100이지만 이를 절장법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둔장 13~20을 과하게 된다. 또 徒刑은 獄舍 내에서 작업을 행하는 일종의 役刑인 自由刑으로 그 기간은 1~3년이다. 그러나 절장법에서는 徒를 과하지 않고 脊杖(잔등을 치는 매) 13~20을 과하고 있다. 그런데 고려울에서는 이와 같은 절장에 속동형이 수반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이 밖에 고려 나름의 특색을 보이고 있는 형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먼 저 笞杖・臀杖・脊杖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刑具의 모양을 나타낸 법식인

<sup>9) 《</sup>宋刑統》에서는 笞 40에 해당되는 것으로 折杖 8을 과하고 석방시키나, 고려율에서는 折杖 9를 과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刑 式을 살펴보면, 이 규정은 唐律수에 연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당률이나 당령 그리고 송형통 등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형장식에서 "尺은 金나라 척을 쓴다"고 한 것을 보면 형장식의 법원은 金律이라 생각된다.<sup>10)</sup>

다음으로 舉限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이는 결과적 加重犯의 제도를 규정한 《唐律疏議》(이하 唐으로 표기) 鬪訟律 6, 保辜條를 그 법원으로 하고 있다. 손과 발로 사람을 때려 다치게 했을 때는 10일, 다른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 다치게 했을 때는 20일, 칼이나 끓는 물 또는 불로써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40일, 팔다리를 꺾거나 뼈를 부러뜨렸을 때는 50일 등으로 하고, 이상의 각 유죄기간 내에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살인죄로 다스린다. 따라서 이 제도는 살의의 유무를 묻지 않고 가해의 일정한 결과를 가지고 그 형을 가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려율은 '칼이나 끓는 물 또는 불'로 사람을 상하게 했을 경우 당률에 비해 기간을 10일 더 늘리고 있다.

또 형벌을 집행할 수 없는 날이 별도로 정해져 있었다. 국가의 忌日, 十直, 俗節, 愼日 등은 禁刑日로 규정되었다.<sup>11)</sup> 그 법원은 唐 斷獄律 27, 立春後不決死刑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약간 다른 점도 있다.

그 밖에 유배형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률은 유배죄인이 배소에서 1년 내지 3년간의 居作을 마치면 이미 죄인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으로 인정되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六載」이후에는 서용을 허락하였으며 관작이 없는 자는 放歸되었다.12) 그러나 고려율에서는 유배자가 유배되고 있는한 죄인이었으며, 사면 또는 소환이 없는 한 종신토록 그 배소에서 거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13)

<sup>10)</sup> 형장식에 金尺을 쓰게 된 시기는 金이 건국된 해인 예종 10년(1115) 이후로 유추해 볼 수 있다.

<sup>11) 10</sup>亩은 초하루·8일·14일·15일·18일·23일 24일·28일 29일·30일을 말하며, 俗節은 정월 초하루·정월 보름·한식·삼짇날·단오·추석·9월 9일·동지·팔관을, 愼日은 정초의 子日과 午日 및 2월 초하루를 각각 지칭한다.

<sup>12)</sup> 浜中昇、〈高麗律における唐律の繼受と歸郷刑・充常戶刑〉(《歷史學研究》483, 1980), 40等.

<sup>13)</sup> 고려의 版圖는 개경으로부터 2천리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이 거의 없었으므로 行刑에 있어서는 그 경중에 따라 有人島 또는 無人島, 그 밖에 遠惡地를 택한 경우가 많다.

#### 나. 직제율

職制律이란 관리의 직무상 책임사항과 그 비위에 대한 벌칙사항을 말한다. 14) 형법지 내용 가운데 禁令 항목과 아울러 가장 많은 분량의 기사가 실려 있는 이 직제율의 조목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① 감찰하는 관리 자신이 도적질하거나 감찰할 때에 재물을 받고 법을 어긴 자는 徒刑과 杖刑으로 논하지 말고 職田을 회수한 다음 귀향시킨다.
  - ② 僧人으로 사원의 미곡을 훔친 자는 귀향시켜 編戶에 충당한다.
- ③ 관가의 물품을 무역한 자는 귀향형을 제외하고는 법에 따라 科罪한다 (《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職制).

위의 사료는 고려의 독자적인 형률체계이며 고려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법제이다. 특히 歸鄉刑은 고려율에서만 설정되어 있는 독특한 형벌적 기능이다. 이러한 형벌제도는 고려 초기에 새로운 통치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당·송의 형법제도를 수용하였지만 외래적 제도의 수용만으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설정한 제도로 보인다.

귀향형은 本質에 유배되는 형벌로서 당률에 규정된 除名과 관련되어 있다. 관인이 죄를 범하면 제명이 부가되지만 死刑 및 加役流 등 특수한 유배형에 해당되는 죄가 아니라면 제명처분에다 귀향형이 부가되어 본관에 유배되었다. 15) 이 귀향형은 관인만이 아니고 관인의 가족, 승려, 군인에 대해서도 과해졌다. 귀향형에 대한 최초의 기사는 현종 7년(1016)에 나타나고 있어<sup>16)</sup> 법제의 성립시기도 현종 7년 이전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관리가 직무와 관련하여 관물을 횡령하거나 뇌물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형은 다음과 같은데 그 法意는 당률과 거의 일치하지만 고려율에서는 피 해법익과 형벌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①(관리가) 감찰하면서 금품을 훔친 경우(監臨臟); 베 1尺을 숨겼을 때에는 答 40에…8匹을 숨겼을 때에는 徒 1년에…40필에는 徒 3년에, 50필에는 流 1 천리에 처한다. (監臨官에게) 물품을 준 자는 죄를 5등 감해 주고 매는 杖 1백에

<sup>14) 《</sup>唐律疏議》 권 9, 職制 序文.

<sup>15)</sup> 浜中昇, 앞의 글, 33쪽.

<sup>16) 《</sup>高麗史》 권 84, 志 38, 刑法 1, 職制 현종 7년 5월.

그친다. 만약 監臨官이 부서에서 물품을 요구하여 취한 자는 1등을 더하고, 만약 위력으로서 강제로 취한 자는 枉法贓에 準하여 논한다(《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職制).

②법을 어기고 뇌물을 받는 경우(枉法贓); 1척에는 장 1백에, 1필에는 도 1년에…5필에는 3년, 6필에는 流 2천리…8필에는 3천리, 15필에는 絞刑에 처한다. 관품이 있는 자가 범하였을 때는 官當收贖하되 베 1필 이상인 경우에는 除名하고, 無蘇者이면 減 1등하고, 20필에 (달하면) 교형에 처한다(위와 같음).

③법을 어기지 않고 뇌물을 받은 경우(不枉法贓); 1척에는 장 90에, 2필에는 杖 1백대, 4필에는 도 1년에…12필에는 도 3년에, 14필에는 流 2천리, 30필에는 귀양을 보내는 외에 요역을 더 시킨다. 관품이 있는 자가 범한 경우에는 官當 收贖하되 4필 이상은 제명하고 무록자는 죄를 1등 감하고 40필에는 귀양을 보내는 외에 요역을 더 시킨다(위와 같음).

①은 관물횡령에 해당하는「受所監臨」의 贓을 규정한 것으로 재물수수의 경우에는 양자를 모두 처벌하였고, 장물은 몰수하였다. ①의 법원은 唐 職制律受所監臨財物條인데, 고려율에서는 50필에 대한 장의 형량을 달리하고 있다. ②와 ③은 柱法贓과 不枉法贓에 대한 규정인데, 이 율문은 당 직제율 48, 監主受財枉法을 법원으로 하여 당률 1개조문을 2개조문으로 분리・설정하고, 거기에다 당 名例律 22, 以官當徒不盡條에 나오는 官當收贖을 결합시켜 조문화한 것이다. 그리고 관인의 형벌에 대한 閏刑 체계인 관당수속법17을 교묘하게 접합시킨 것을 보면 당률의 법의를 고려 실정에 맞도록 포괄적으로 수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려율은 坐贓의 경우 당 雜律 1, 坐贓治罪條를 법원으로 하여 당률의 규정을 그대로 채입하고 있다. 좌장이란 일의 책임자가 아닌 자로서 재물을 받은 경우로 일반적으로 强盜贓・竊盜贓・枉法贓・不枉法贓・受所監臨 贓과 아울러 이른바 6贓을 구성하는데, 그 중에서 좌장치죄에 대한 科罪가 가장 가볍다.18)

고려사 형법지에는 관리가 위세를 이용하여 타인의 私田이나 재물을 침탈한

<sup>17)</sup> 이에 대해서는 辛虎雄、(高麗律에 있어서 官當收贖法의 施行問題)(《關東大論 文集》15, 1987) 补조.

<sup>18)</sup> 贓에 대한 唐律의 각 조문을 비교해 보면 强盜贓 1척은 徒 3년, 竊盜贓은 杖 60, 枉法贓은 杖 100, 不枉法贓은 杖 90, 受所監臨贓은 笞 40, 坐贓은 笞 20으로 되어 있다.

죄에 대해서도 과죄하고 있다.19) 사전 침탈의 과형은 당 戶婚律 18, 在官侵奪私田條의 법의를 취하였으나, 피해법익과 과형의 숫자에 있어서는 약간 다르다. 田地와 園圃를 침탈한 경우에는 죄명이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법으로서 가벼운 법을 倂滿해서 처벌하였다.20) 그리고 관리가 위세를 이용하여 백성의 재산을 취했을 때 이를 처벌하는 조문은 당 직제율 58, 挾勢乞索條 의 법의를 취하고 있다.

#### 다. 간 비

이 奸非의 항목21)은 당률의 편목에는 없다. 그것은 고려율이 형식적인 내용에 있어서 당률을 모델로 했지만, 형법지의 항목 설정은 《元史》에 준했기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 항목에 수록된 과조적 기사는 적고, 율문의 내용을 당률의 분류에 따른다면 잡률에 속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같이 네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감찰하는 우두머리(監臨主守)가 자기 관할 내에서 간음하였을 경우, 和奸이면 徒(징역) 2년에, 남편이 있는 자를 화간했을 경우에는 도 2년 반에, 强姦이면 도 3년에 처하였다. 그리고 화간일 경우 婦女는 남자보다 죄 1등급을 경감하였다. 이는 당 잡률 28, 監臨於監守內姦條의 법의를 따랐다고 생각되는데, 당률에서는 감임주수의 감찰기간 내의 간음은 凡姦에 죄 1등을 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部曲人 및 奴가 주인 및 주인의 周親尊長을 간하였을 때에는 화간은 교형에, 강간은 참형에 처하였다. 그리고 화간한 부녀는 (남자보다) 죄를 1등 감하며, 노가 주인의 總麻 이상의 친척을 간하였을 때는 1등급을 감하고 있다. 이는 당 잡률 26, 奴姦良人條의 법의를 따르고 있는데 노가 주인의 시마이상의 친척을 간하였을 때 죄 1등을 감하는 규정은 당률과 같이 화간은 유형에, 강간은 교형에 처한다는 뜻이 된다.

셋째, 父祖의 妾, 伯叔母·姑母·姉妹·子孫의 婦, 兄弟의 女를 간한 경우 그것이 화간이면 교형에 처하고, 부조의 幸婢를 간한 경우는 죄 2등을 감한

<sup>19) 《</sup>高麗史》 권84, 志38, 刑法1, 職制.

<sup>20)《</sup>唐律疏議》名例律 45, 二重從重罪.

<sup>21) 《</sup>高麗史》 권 84, 志 38, 刑法 1, 奸非.

다. 이는 당 잡률 25, 姦父祖妾條의 법의를 취한 것이다. 당률의 해당 조문에는 화간에 동의한 부녀는 모두 똑같이 벌을 받게 되어 있다. 즉 부조의 첩이나 행비 자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부조의 행비이기 때문에 이를 간하였을 때는 규정대로 처벌하였다. 그러나 일찍이 부조와 동거할 때 자식을 낳은 첩이나 행비일지라도 부친이 사망한 후 일단 타인에게 개가한 후에 간하였을 때에는 간부조첩죄로 처벌하지 않았다.

넷째, 일반인이 비구니와 女冠을 간한 경우 화간이면 도 1년 반, 강간이면 도 2년, 화간한 비구니와 여관은 도 2년 반의 도형에 각각 처하는데, 강간의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 라. 호 혼

일반적으로 戶는 戶籍을, 婚은 婚姻을 뜻한다. 이 戶婚律은 漢나라 이전에는 아직 형률에 편입되지 않았으나, 北齊 때에 이르러 호·혼의 두 요소를 갖추게 되었고, 그후 隋의 開皇律에서 戶婚律로 바뀌어 당률에 이르러 이를 답습하였다. 그리고 고려율은 당률을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대체로 戶律은 脫稅・戶籍・耕作 등에 관한 사항을, 婚律은 혼인과 가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먼저 편호와 부역문제를 살펴보면, 고려는 인정의 다과에 따라 9등급으로 편호하여 부역을 과하고 있으며, 피역행위에 대해 형법지 호혼조에는 매우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 즉 고려시대는 16세 이상부터 59세까지의 장정이 국역을 지도록 되어 있었는데,<sup>22)</sup> 家長으로서 연령을 증감시키거나식구 수를 줄인 경우에 대하여 처벌하였다. 한 사람을 줄인 경우는 도 1년, 2명에는 1년반, 5명에는 2년, 7명에는 2년반, 9명에는 3년의 징역에 각각 처하게 하였다. 그리고 里正이 부주의로 漏口・탈세・연령의 증감을 잘 파악하지 않아 과역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는 당 호혼률 2, 里正不覺脫漏條에 그 법원을 두고 있으나. 당률에 비해 고려율은 보다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차출된 丁夫나 雜匠이 부역을 지체한 경우, 당사자들을 대형과 장형 등으로 처벌하였을 뿐 아니

<sup>22)《</sup>高麗史》 권 79, 志 33, 食貨 2, 戶口.

라 그의 主司와 將領에게도 加 1등한다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이 조문의 경우 당 擅興律 23, 丁夫雜匠稽留條의 법의를 계수하였으나, 그 과형은 달리하고 있다. 즉 당률에서 정한 것보다 죄 1등을 무겁게 하고, 태형에 있어서도「1日 加 1等」, 장형의 경우「3日 加 1等」으로 하여 그 처벌을 도형으로까지 연장하고 있다.

형법지 호혼조는 또 隣保와 관련하여, 隣里에서 강도를 당하고 있는데 그정황을 알면서도 구조하지 않는 행위, 이른바「不作爲犯」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율문은 당 捕亡律 6, 隣里被强盜條를 법원으로 하여 설정된 율문인데, 전반적으로 당률의 과형보다 1등을 감하고 있다. 또 五保내에서 죄를 규명하지 않고 덮어두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당 鬪訟律 59, 監 臨知犯法條의 법의를 취하였으나, 율문 자체는 고려 나름대로 간략하게 하였다.23)

고려율 호혼조는 가족과 혼인문제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바 당률과 비교하며 살펴보기로 하자.

- ①성씨가 다른 남아를 기르도록 준 자는 答 50에, 기르는 자는 徒 1년에, 자식이 없으면서 (양자를) 버린 자는 2년의 도형에 처한다. 여아를 기르는 자는 坐罪되지 않으며, 그 버린 아이가 3세 이하이면 성씨가 다르더라도 기르는 것을 허용한다(《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戶婚).
- ② 조부모와 부모가 있는데 자손이 호적과 재산을 달리하여 공양을 하지 않으면 徒 2년에, 服喪 중에 別籍을 하면 도 1년에 처한다(위와 같음).
- ④ 관노비나 사노비가 양민의 子를 꾀어내 매매하는 자가 여자인 경우 초범이면 율에 따라 처벌하고, 재범이면 귀향형에 처한다. 남자인 경우 초범이면 歸鄉刑에

<sup>23)</sup> 당률에는 徒罪不糾 때에 杖 70으로 하였으나 고려율에는 이를 장 60으로 경 감하였고, 당률에서는 女世帶의 婦女와 15세 이하의 남자는 죄를 묻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비해 고려율에는 이 규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처하고, 재범이면 充常戶刑에 처한다(위와 같음).

- ⑤ 처가 함부로 떠나가면 도 2년에, 개가하면 流 2천 리에 처한다. 첩이 함부로 떠나가면 도 1년반에, 개가하면 도 2년반에 처한다. 취한 자도 같은 죄를 주되 유부녀인줄 알지 못하였으면 죄에 처하지 않는다(위와 같음).
- ⑥ 군현인과 津・驛・部曲人이 결혼하여 낳은 자녀는 모두 진・역・부곡에 속하게 하고, 진・역・부곡인과 雜尺이 결혼하여 사이에 낳은 자녀는 반을 나누되 남는 수는 母에 종속시킨다(위와 같음).
- ①은 양자문제와 관련된 조항으로, 이 조문은 당 호혼률 8, 養子捨去法의법의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조문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았던 것으로, 문종 22년(1068)의 制<sup>24)</sup>에서는 자식이 있거나 또는 형이나 동생에게 자식이 있는 경우와 항렬이 같지 않는 경우에는 입양이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보완되었다.
- ② 는 조부모와 부모의 생존시에 자손으로서「別籍異財」하여 공양을 하지 않는 자와 服喪 기간 중에 분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이 조문은 당 호혼률 6, 子孫不得別籍條와 동률 居父母喪生者條의 율문과 법의를 취하였고,「供養有闕徒2年」의 한 구절은 당 鬪訟律 46, 子孫違犯敎令條에서 채입한 것이다.
- ③은 당 賊盜律 47, 略賣期親卑幼條를 법원으로 하고 율문의 일부는 동률 48, 知略和誘和同相賣條에서 취하여 성립한 조문이다. ①항은 자손을 和賣・略賣・故賣하여 노비로 하였을 때 과해진 처벌규정인데, 이 경우 행위의 객체는 자손이다. 약매하는 경우는 도 1년반에, 화매하는 경우는 도 1년에, 고매하는 자는 1등을 더하여 과죄하였다. ①항의 객체는 친동생이나 조카, 외손자이다. 약매하는 경우는 도 3년에, 화매하는 행위는 도 2년반에, 고매하는 행위는 죄를 1등 감하였다. ②항의 객체는 종제와 종형제의 자손인데, 화매할 때는 流 2천 리에, 약매할 때는 유 3천 리에, 「화이고매」하는 행위는 1등을 감한다는 내용이다. 당률에서는 期親 이하의 尊長이 卑幼를 파는 행위와 타인이 그 사정을 알고 사는 행위를 분리 설정하고 있지만, 고려율에서는 한편으로는 양자를 동일항에 수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위의 객체별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 ④는 歸鄕刑과 充常戶刑을 설정한 고려 독자적인 율이다. 이 법률은 중국의

<sup>24) 《</sup>高麗史》 권 84, 志 38, 刑法 1, 戶婚 문종 22년.

율과는 전혀 무관한 累犯加重制度의 시행을 상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sup>25)</sup> 입법시기도 귀향형과 충상호형의 제정과 더불어 성종 14년(995)~현종 7년 (1016)간에 설정되었다고 짐작된다.<sup>26)</sup>

⑤는 군현인과 진·역·부곡인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모두 진·역 부곡에 속하게 하고, 진·역·부곡인과 잡척이 결혼하여 낳은 자식은 나누고, 남는 수는 母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당률의 正條는 아니고 고려의 독특한 율로 보여진다. 군현인과 진·역·부곡인과의 혼인으로 낳은 자의 귀속에는 쌍방의 신분적 차별을 기초로 한 명료한 구분이 설정되어 있지만, 양자사이에 혼인 규제가 없었다는 점은 주목된다.

#### 마. 대 악

형법지 大惡 항목에 수록되어 있는 고려율은 가족윤리를 주요 내용으로하고 있다. 가족윤리를 저해한 범죄행위에 대해 이를 규제하는 형벌적 제재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법제는 고려가 유교적 윤리관을 상민층에까지 침윤시킴으로써 친족적 유대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질서의 토대 위에서 사회적안정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27)

형법지에는 모두 10여 개 조문이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周親尊長・外祖父母로부터 시작하여 小功 總麻의 친인척을 殺傷한 경우, 욕한 경우, 또 그들의 죄를 고발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다.28) 그 가운데 몇 가지 사례를 보기로 하자.

① 周親尊長·外祖父母·夫婦의 부모를 죽이려고 했을 때는 비록 상처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참형에 처하고, 道士·女冠·僧尼가 師主를 죽이려고 했을 때는 伯叔父母를 죽이려 한 것과 같다(《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大惡).

②조부모나 부모를 구타하였을 때는 참형에, 고발하거나 욕하였을 때는 교형에,

<sup>25)</sup> 仁井田陞, 앞의 글, 5쪽.

<sup>26)</sup> 蔡雄錫、〈高麗時代의 歸郷刑과 充常戶刑〉(《韓國史論》9, 서울大 國史學科, 1983), 40等 참조.

<sup>27)</sup> 鄭用淑,〈高麗時代 儒教 倫理思想의 性格〉(《院友論叢》1, 淑明女大 大學院, 1983), 3等.

<sup>28) 《</sup>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大惡條 11항목 전체에 대한 法規와 法意·法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辛虎雄. 앞의 책(1995), 120~129쪽 참조.

잘못하다 상처를 내거나 과실로 욕하였을 때는 도 3년에, 과실로 구타하였을 때는 유 3친 리에 처한다(위와 같음).

③ 백숙부모나 외 조부모에게 욕하였을 때는 도 1년에, 구타하였을 때는 도 3년에, 상처를 냈을 때는 유 2천리에 처한다. 뼈를 부러뜨린 상처를 냈을 때는 교형에, 죽었을 때는 참형에 처한다. 과실로 상처를 냈을 때는 본래의 傷罪에서 2등을 감한다(위와 같음).

④ ① 주친존장·외조부모·부부의 조부모를 고발하면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도 2년에, 流罪에 처해질 때에는 도 3년에, 死罪에 처해질 때는 유 3천 리에처한다. 誣告한 자는 무고한 죄에다 加 2등하며, 周親卑幼의 죄를 고발한 자는장 60에 처한다. ②大功尊長의 죄를 고발하면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徒 1년반에, 유죄에 처해질 때에는 도 2년반에, 死罪에 처해질 때에는 도 3년에 처한다. 무고한 자는 무고한 죄에다 2등을 더한다. ②小功과 總麻의 존장을 고발하면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도 1년에, 유죄에 처해질 때는 도 2년에, 사죄에 처해질 때는 2년 반의 도형에 처한다(위와 같음).

①을 검토해 보면 고려율도 당률과 마찬가지고 동종의 범죄에 있어서는 그 犯意와 범죄의 상황에 따라 종류를 나누고 科刑에도 단계를 붙이고 있으며, 범죄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豫謀(단독계획 또는 합의통보)·未遂·旣遂의 구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율은 주친존장·외조부모·부부의 부모를 죽이려고 모의했을 때 미수에 그쳐 未傷의 단계에서도 참형을 과하고 있다. 따라서 살상단계에는 미수와 기수를 불문하고 참하며, 또 백숙부모에 대한 미상의 단계에서 이미 최고형을 과한다면 부모에 대한 경우에는 적용법규가 없더라도 최고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①은 당 적도율 6, 謀殺期親尊長條와 名例律 57, 稱道士女冠條의 법의를 취하여 한 조문으로 설정한 것이라 생각된다.

- ②는 조부모나 부모에 대한 歐詈罪를 규정한 것인데, 이는 당 鬪訟律 27, 歐 물祖父母父母條를 법원으로 하여 같은 조문의 순서를 약간 바꾸었을 뿐이다.
- ③은 백숙부모나 외조부모에 대해 책임차별에 따른 과형을 설정한 것이다. 이는 당 투송률 26, 歐詈總麻兄姉條의 법의를 취하였고, 백숙부모에 대한 규정은 당률에서 그 일부를 취하여 과형의 내용만 약간 달리했을 뿐이다.
- ④는 ① 주친존장·외조부모·부부의 조부모, ⑥ 대공(복)존장, ⑥ 소공(복)과 시마(복)존장 등 친속범죄자를 고발한 경우에 대응하는 형량이 설정되어 있다. 이 율을 설정한 당이나 고려에서는 부모의 범죄뿐만 아니라 그 밖에 친족 에

대한 범죄를 인지하더라도 국가안위에 관한 것 이외에는 절대로 고발해서는 안된다는 입법정신을 천명하고 있다. 형법지 대악조에서 구현하려는 입법 취지의 기본골격을 보면 항렬이 낮거나 어린 자(卑幼)에 대한 가해자는 촌수가 멀어질수록 형량이 무거워지는 데 비해 존속에 대한 범법행위는 이와 반대로 촌수가 가까울수록 형량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존비속, 근원친에 따른 형률의 차이는 가족구성원을 개성을 가진 인격체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 복종과 순종이 요구되는 상하 질서체계로 이해하려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sup>29)</sup> 이것은 가족질서의 확대로 이해되는 고려사회가 곧 엄격한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에 질서유지의 명분을 주고, 한편으로는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통치권 행사에확실한 설득력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바. 금 령

이 禁令 항목도 당률 체계에는 없지만 《원사》의 체제를 모델로 한 고려율에서는 이를 설정하여 많은 과조적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30)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그 법의와 법원을 찾아보기로 하자.

①부모의 喪이나 남편의 상을 듣고도 슬픔을 잊고 잡된 놀이를 한 자는 도 1년에, 상복을 벗고 길복을 입는 자는 도 3년에, 거짓으로 조부모나 부모가 사망하였다고 휴가를 구하거나 직무를 회피하는 자는 도 3년에 처한다(《高麗史》권 85, 志 39, 刑法 2, 禁令).

②조부모나 부모가 죄수가 되었는데 시집·장가를 간 자는 徒罪에는 장 1백에, 死罪에는 도 1년에 처하되, 조부모나 부모가 이를 명한 경우에는 논죄하지 않는다. 첩은 3등을 감한다(위와 같음).

③ ① 사사로이 저울과 말을 만들어서 저자에서 증감이 있게 한 자는 1尺에는 장 60에, 1匹에는 장 70에…5필에는 도 1년에…30필에는 流 2천 리에…40필에는 유 3천 리에 처한다. ① 秤斗尺度를 써서 관물을 출납할 때에 공평치 않게 출납하여 사복을 채운 자는 1尺에는 장 60에…5필에는 도 1년에…40필에는 유 2천 리에…35필에는 加役流하며, 증감이 있는 자는 贓罪로써 논한다(위와 같음).

④ 모든 실화자로서 2월 1일 이후 10월 3일 이전에 野田을 태운 자는 장 50

<sup>29)</sup> 鄭用淑, 앞의 글, 3쪽.

<sup>30) 《</sup>高麗史》권 85, 志 39, 刑法 2, 禁令條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辛虎雄, 앞의 책(1995), 129~144쪽 참조.

에, 타인의 택사와 재물을 태웠을 때는 장 80에, 불이 난 틈을 타서 물품을 훔친자는 장죄로 논하여 3등을 감한다. 고의로 관부나 종묘·사직 및 사가의 주택이나 재물을 태운 자는 (화재를 입은) 옥사의 대소와 재물의 다과를 막론하고 도 3년에 처하며, (화재를 이용하여 훔친) 물품이 5필이면 유 2천 리에, 10필이면 絞刑에 처한다. 타인을 실상하였을 때는 고의로 살상한 죄로 논한다(위와 같음).

⑤ 돈이나 물건을 걸고 도박한 자는 장 100에 처하며, 그 유숙시킨 주인 및일을 꾸미고 사람들을 모아 도박을 시킨 자도 또한 장 100에 처한다. 음식을 걸고 궁사로서 무예를 익히는 자는 비록 돈이나 물건을 걸었다 하더라도 죄가되지 않는다(위와 같음).

①은 喪중의 불효에 대한 처벌규정인데, 당 직제율 30, 匿父母夫喪條를 모법으로 하여 입법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체로 이 형률은 부모상에 대한 謹愼守則을 나타낸 것으로서 당률에서는 期親尊長・大功 이하의 친척 어른과 아이에 이르기까지 형량을 체감 적용하고 있으나 고려율에서는 이를 설정하지 않았다.

②는 직계존속의 被囚 중 嫁娶에 대한 처벌규정인데, 이는 당 호혼률 31, 父母囚禁嫁娶條를 모법으로 하고 있다. 고려율에서는 피수된 존속의 해당죄목이 死罪 또는 徒罪 때의 과형이 설정되어 있으나 流罪의 경우에는 삭제되어 있다. 이것은 당률에서의 유죄는 일정기간이 설정되어 있어「6載」이후에는 서용될 수 있었지만, 고려율에서는 유배자가 유배되고 있는 한 죄인이며 또 유배자의 복역기간은 無期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③은 사사로이 저울을 만들어 시중에서 쓰는 경우와 秤·尺을 써서 관물을 출납할 때 이득을 남겨 이를 자기소유로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이율문은 당 잡률 32, 私作斛斗秤度條를 모범으로 하였으나, 고려율에서는 당률 1개조를 '私作秤斗條'와 '用秤斗尺度 出入官物條'로 분리 설정하고 있다. ①과 ①의 율문을 비교해 보면 피해법익과 과형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특히 이율은 실정법으로서 고려사회에서 운용된 것으로 보인다. 가령 매년 춘추 2회로 나누어 도량형의 검사를 한다던가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있는 것31)에서 알 수 있다.

④는 화재와 관련된 처벌규정인데 이 율문은 당 잡률 42, 非時燒田野條와 잡률 44, 燒官府私家舍宅條를 결합하여 1개 조문의 고려율로 설정한 것이다.

<sup>31) 《</sup>高麗史》 권 84, 志 38, 刑法 1, 職制 정종 12년 및 권 85, 志 39, 刑法 2, 禁令.

따라서 이 율은 전반은 失火에 대하여 후반은 放火에 대한 처벌규정임을 알수 있다. 이 율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실화죄와 방화죄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백성에게 널리 주지시키려는 노력은 국왕의「敎」라는 형식을 띠고 표출되기도 하였다.32)

⑤는 博戱에 돈이나 물건을 거는 도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인데, 이는 당 잡률 14. 博戱賭財物條를 모법으로 하였다.

이외에도 公私의 밭을 몰래 경작하는 행위, 남의 땅에 몰래 묘를 쓰는 행위, 공갈로 협박하여 물건을 빼앗는 행위, 장물인 줄 알면서 매매 또는 보관하는 경우, 分財가 공평하지 못한 경우, 의원으로 기본 처방을 위배하여 과다진료를 하여 재물을 취하는 경우, 관리가 불법정세를 하여 그 일부를 착복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계 형률과 무관한 고려의 독자적인 금령으로 향·부곡· 진·역·兩界州鎭의 編戶人이 승려가 되는 것을 금하였으며 소를 도살한 자 는 良賤을 막론하고 鈒面해서 형이 끝난 뒤에 遠地의 주현에 充入시켰다. 특 히 부가형의 성격을 띤 이 鈒面刑은 고려의 독자적인 행형의 하나였다. 가령 인종 14년(1136) 詔에 "이제 法官이 소를 죽인 자를 논하기를 살인죄에 준하 여 삽면하여 섬으로 유배하는데, 이는 율문의 본의가 아니므로 이제부터는 本罪로써 죄를 주라"33)고 한 것을 또면 殺牛者를 처벌하는 율문이 고려율의 체계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현이나 주·진의 경계를 함부로 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未遂와 旣遂를 구별하여 과형을 달리하고 있다. 이 율문은 당 衛禁律 24, 越州鎭戍等城坦條의 법의를 취하여 그 순서만 바꾼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지 금령 항목에 수록된 고려율은 그 법원에서는 당률이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때로는 송률계통과 고려 독자적인 것도 있다. 고려율이 법의를 취한 당률은 호혼률·잡률·직도율을 비롯하여 거의 전 편목에 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려율의 모델이 당률이지만 형법지의 분류기준이 《원사》를 따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겠다.

<sup>32) 《</sup>高麗史》 권 84, 志 38, 刑法 2, 禁令 성종 6년 정월 敎.

<sup>33) 《</sup>高麗史》 권85, 志39, 刑法2, 恤刑.

### 사. 도 적

형법지 盜賊 항목의 내용들은 당률의 적도율에 대응하는 것들이다. 고려는 당률을 계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도적이라 개칭하였다.

- ①절도를 범하여 5貫에 달하면 사형에 처하고, 5관에 차지 않으면 春杖 20에다 流 3년에, 3관에 차지 않으면 척장 20에다 유 3년에, 2관에 차지 않으면 척장 18에다 유 1년에 처한다. 1관 이하는 죄를 헤아려 처결하고 여자는 유배를 보내지 않는다(《高麗史》권 85, 志 39, 刑法 2, 盜賊).
- ② 1匹을 절도하면 장 60에, 2필은 80에…5필은 도 1년에…30필은 유 2천리에 처한다(위와 같음).
- ③동거하는 卑幼가 남을 시켜 자기집의 가재를 훔치게 한 것은 사사로이 재물을 함부로 쓴 죄로써 논하여 2등급을 더하여 과죄하고 무릇 타인은 도의 상례에서 1등급을 감한다(위와 같음).
- ④ 總麻·小功親의 재물을 훔치면 1등급을 감하고, 大功親(의 재물을 훔치면) 2등급을 감하고, 周親의 재물을 훔치면 3등급을 감한다(위와 같음).
- ⑤ 盜를 범하여 유배한 곳에서 도망한 자는 鈒面하고 형기가 끝난 뒤에는 遠陸와 주현으로 유배한다(위와 같음).
- ⑥ 投化人이 盜를 범하면 南界의 수로에 유배하여 주현과 통하지 못하게 한다(위와 같음).
- ①은 절도죄에 대한 규정으로 이 율문은 《宋刑統》 建隆 3년(962; 고려 광종 13) 2월 21일 勅과 일치하고 있다. 장물액에 대응하는 형벌도 宋制를 그대로 모방하여 결척장이 부가된 配役刑이 과해지고 있다. 그런데 고려율에서 장물액으로 보이는 「貫」에 대한 해석을 「累犯」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송형통》 建隆勅에 나오는 「貫文」은 화폐단위이므로 고려에서의 「관」도 누범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화폐단위로 보아야 한다. ①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행형에 있어서 남녀를 구분한 점이다. 이 역시 당률에서는 볼 수 없는 법제라 하겠다.
- ②는 절도범에 대한 규정으로 절도장의 액수에 대응하여 형량이 정해져 있다. 이 율문은 당 적도율 35, 竊盜條를 모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 ③ 은 동거하는 손아랫사람이 타인을 시켜 자기집 가재를 훔치게 했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고「私輒用財物罪」로써 논하였고, 손아랫사람에게는 그 죄의 2등을 더하고, 凡人에게는 常盜罪에서 죄 1등을 감하였다. 고려

율의 법의는 손아랫사람을 벌하는 데 있어 徒罪보다 가벼운 「사첩용재물 죄」로써 논한 것은 아마 고려의 가족제도가 당의 그것과 같은 家族共産制였 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④는 시마 이상의 親이 별거한 상태에서 존장이 卑幼家에서 절도 또는 강도를 한 경우와 비유가 尊長家에서 절도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이 때 시마·소공친이면 보통 도죄에다 죄 1등을 간하고, 대공친이면 2등을 감하며, 주친이면 3등을 감하게 되는 것이다. 이 율문은 당 적도율 40, 盜總麻小功財物條의 법의를 취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율문이 당률의 법의를 취했다 하더라도 용어 선택에 있어 송률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당률에서는 1년복에 해당되는 근친을「期親」으로, 송률에서는 「周親」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에 송률의 영향인 것을 알 수 있다.

⑤는 盜를 범하여 배소에 복역 중인 자가 도망친 경우에 적용되는 형률로서 고려 독자적인 율이며, ⑥은 투화인에 대한 고려의 특수한 행형체계를 뒷받침하는 고려 독자적인 율이라 짐작된다. 만약 투화인에 대해 屬人法主義를 그대로 고수했다면 당연히 ②의 고려율을 적용했을 것이다. 당률에서는 가해 자와 피해자가 모두 외국인이거나 국적이 같은 경우에는 그 本俗法(本國法)에 의거하였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국적을 달리할 때는 속인법주의를 채택하였다. 이 원칙은 고려에도 그대로 계수되었다. ⑥의 투화인은 여진인 또는 거란인을 지칭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들의 도범행위에 대해 "南界의 水路에 유배하여 주현과 통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 것은 고려사회와 완전히 격리시키려 한 법의로서 그들을 야만시하는34) 고려인의 선입견이 깔려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 아, 옥관령

고려율이 당률을「刪削取簡」하여 13편목 71조를 만들어 이를 참작하여 시의에 맞게 운용하였다는 것은 전술한 바 있다. 그런데 71조 가운데는 獄官令 2조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 항목이 형법지에는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형법지의 일부 항목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산견되고 있다. 《고려사》에 옥관령이

<sup>34) 《</sup>高麗史》 권 84, 志 38, 刑法 1, 殺傷.

라고 명시된 조문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사가 있다.

門下侍中 劉晉 등이 奏하기를 … '또 獄官令을 상고하면 立春부터 秋分까지는 死刑을 奏決하지 못하며, 만약에 惡逆을 범하면 이 숙에 구애되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나 法吏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살피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엎드려 청하옵건대이제부터는 내외의 해당 기관 모두 月숙에 의하여 시행토록 하게 하소서'하니(임금이)이에 따랐다(《高麗史》권 85, 志 39, 刑法 2, 恤刑 현종 9년 윤4월).

이 기사는 《당률소의》나 《송형통》에 인용되어 있는 옥관령과 일치하고 있다.35) 그런데 《고려사》에는 옥관령이라고 명시된 규정은 보이지 않지만, 당·송의 옥관령과 관련될 듯한 규정이 형법지의 여러 조항에서 산견된다. 따라서 사료의 인멸을 감안한다면 고려에서 시행된 옥관령은 형법지 찬자가말한 2개조 보다는 많았을 것이다. 당의 옥관령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이는 형법지와 과조적 기사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옥을 살피는 관원은 먼저 다섯 가지 사항을 청취하고 또한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에 사실에 의심나는 것이 있는 데도 본인이 사실을 자백하지 않는 연후에야 고문을 가한다. 訊問은 매번 20일을 간격으로 한다. 만약 신문을 마치지 못하고 범인을 다른 부서로 옮긴다면 국문한 자가 본안을 連寫하여 이송하여야하며 신문 횟수는 앞서 행한 신문과 합하여 세 차례 한다. 만약 의심할 바가없으면 꼭 3번을 채울 필요는 없으며, 만약 신문으로 인하여 죽게 된 자는 모두 전말을 갖추어 신첩하며 해당 기관의 장관이 糾彈官과 더불어 입회하여 이것을 확인한다(《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職制).

- ②流移하는 사람이 유배지에 도달하기 전에 고향에 있는 조부모나 부모가 상을 당하였을 때는 휴가 7일을 주어 發哀를 하고 장례를 주선케 한다. 承重喪도 마찬가지이다(《高麗史》권 85. 志 39. 刑法 2. 恤刑).
- ③ 구금 중에 있는 婦人이 産月에 가까워졌을 때는 保人을 세워 출옥을 들어 주되 死罪는 産後 만 20일로 하고, 流罪 이하는 만 30일로 한다(위와 같음).
- ④사죄를 범해 감금 중에 있는 자로서 惡逆 이상이 아닐 때에는 부모상・夫喪・조부모상을 당한 承重者는 휴가 7일을 주어 發哀케 하고, 流罪와 徒罪는 30일로 하되 보인을 세운 뒤에 나가게 한다(위와 같음).
- ⑤流移하는 적수가 (유배지로 가는) 도중에서 부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의 가족과 함께 휴가 20일을 주며, 家女와 노비에게는 휴가 7일을 준다. 만약 자신과 가족이 환란 혹은 적을 만났거나 건널목에 물이 불어 갈 수 없을 때에는 부근 관청에서 매일 알아보고 갈만 하면 즉시 보낸다. 만약에 조부모나 부모의 상을

<sup>35)</sup> 仁井田陞,《唐令拾遺》(東京;東方文化院, 1933), 765\.

당한 자는 휴가 15일을 주고, 가족 중에 사망자가 있으면 휴가 7일을 준다(위 와 같음).

위에 예시한 옥관령을 조목별로 살펴보면, ①은 당 斷獄律 8, 迅囚察辭理條의 법의를 취하여 주로 형사사건의 심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②는 流罪人이 배소에 도달하기 전에 조부모나 부모상을 당했을 때 휴가 7일을 주어상을 치르게 하고 있다. ③은 여죄수의 출산에 보증인을 세우고 출옥을 허용하는 규정이고, ④는 수인이 형기 중에 당한 상으로 인한 급가규정이다. 또⑤는 流移囚가 배소로 가는 도중에 遇患・逢賊・水漲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때 그에 대응하여 내리는 급가규정이다. 그런데 ①~⑤는 당옥관령과의 관련을 유추할 수 있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다행히 이를 복원할 수 있는 자료가 일본《養老令》중의 獄令에서 찾아진다.36)《고려사》의 관련기사와 이《양로령》의 율문을 비교·검토하면 법의는 물론 문장의 구성까지 일치하고 있다.37) 형법지의 규정에는《양로 령》의 주로서 기술된 것을 본문으로 나타냈다든지 숫자나 기타 일부 자구가 고쳐져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일부에 불과하다. 고려시대의 형사사건의 심리 를 비롯하여 재판 및 행형의 여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옥관령의 실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사료는 위의 사례뿐만 아니라 편년적 기사에서도 더러 산견된다.

### 2) 사법제도

### (1) 고려율의 적용문제

高麗律의 적용문제에 있어 우선 검토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첫째는 형법의 적용에 있어 對人的 효력에 관한 문제이고, 둘째는 형벌법규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문제이며, 셋째는 형벌 적용에 있어서 객관주의적 입장의 해석이라 하겠다.

먼저 형법의 대인적 효력에 대해 살펴보자. 唐 名例律 48, 化外人相犯條에는 "모든 化外人에 있어서 同類 간에 발생한 범죄는 本俗法에 따르고, 異類간

<sup>36)</sup> 曾我部靜雄,《日中律令論》(吉川弘文館, 1963), 167~168쪽 참조.

<sup>37)</sup> 仁井田陞, 앞의 글(1965), 17~18쪽.

에 발생한 범죄는 法律로서 논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화외인의「동류」 간에 발생한 범죄란 가해자 및 피해자가 국적을 같이 하는 외국인을 뜻하며, 이경우에 발생한 범죄는 그 화외인의 자국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한편「이류」간의 범죄란 양자 간에 국적이 다른 경우로써 가령 고구려인과 백제인사이에 발생한 범죄행위는 당률을 적용하여「斷之」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당률에서의 형법의 대인적 효력에는「동류」간에 발생한 범죄는 속인법주의를 취하고, 이류간에 발생한 범죄는 속지법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려율에도 다음의 기사를 살펴볼 때 속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東界兵馬使가 보고하기를 '威州·雞洲에 사는 女眞人 仇屯과 高刃化 두 사람이 그 곳의 都領將軍인 開老와 재물을 다투다가 개로가 술에 취한 때를 이용하여 때려 죽였습니다'라고 하니, 侍中 徐訥 등은 아뢰기를 '여진인이 비록 종족은 다르나 이미 귀화하여 이름이 版籍에 실려 있어 일반 백성과 같으니 당연히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재 재물을 다투다가 그 長을 때려 죽였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법대로 논죄하십시요'라고 하였다. 內史侍郎 黃周亮 등이 의논하기를 '그들이 비록 귀화하여 우리의 울타리가 되었다고 하나 사람의 얼굴을 하였고 짐승의 마음을 가져 事理를 알지 못하고 風敎에 익숙하지 못하니 형을 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 律文에 이르기를 '모든 화외인으로서 자기들끼리 서로 범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들의 本俗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하물며 그 이웃의 老長이 이미 (그들의) 본속법에 따라 범인두 사람의 가산을 개로의 집으로 실어감으로써 속죄를 하였으니 어찌 다시 논 죄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왕이 周亮 등의 의견에 따랐다(《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殺傷 정중 4년 5월).

위의 기사는 고려에 귀화한 여진인들 사이에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의처벌 사례이다. 당시 시중 서눌 등은 여진인도 귀화한 이상 고려율에 의해 구속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비해, 황주량 등은 여진인이 설사귀화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고려의 風敎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여진인끼리의 사건은 고려율에 따르지 말고 여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정종은 황주량의 의견을 따르고 있다. 여기서 투화외인에 대한 율문의 적용에 있어서눌은 속지법주의를, 황주량은 속인법주의를 각각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이 판례는 여진법에 따라 賠償制를 적용하여 일단락된다.38) 하지만 일반적으로 투화인의 「異類相犯」에 대하여 고려에서는 속지법주

<sup>38)</sup> 이 사건을 屬地法主義를 적용할 경우 고려율에 따라「鬪殺論」으로 단죄되어야 한다.

의가 적용되었다. 그 예로 투화인이 고려인에 대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고려울에 따라 南界로 유배보낸 경우가 그것이다.39)

다음은 형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시간적 효력에 대해 살펴보자. 널리 알려져 있는「刑法不遡及」의 원칙이라 하는 점은 罪刑法定主義의 귀결이며, 오늘날 서구를 비롯한 자유주의 국가의 근대적 형법도 이 원칙에 따르고 있다. 40)「형법불소급」이란 범죄가 발생한 시기와 재판할 때의 법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재판시의 법률에 따르지 않고 범죄시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犯罪時法主義). 마찬가지로 당률에서도 범죄시와 재판시의 법률이 다를 때에는 범죄시의 법률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재판시의 법률이 가벼울 때에는 양자 중에서 輕法에 따르게 하였다.41)

그런데 고려율이 당률을 모법으로 하여 제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형법불소급」의 원칙을 설정한 법률 조항은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형법의 기본정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가벼운 형벌을 택한다"42)는 당률의 취지에 준거한 덕종 3년(1034)의 敎旨 내용43)은 당률의 기본정신에 의거한 것이라 생각된다.

고려율의 객관주의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는 형법지 대약조의 각 조문을 들 수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2〉와 같다.

다음의 〈표 2〉에서 보듯이 동질의 범죄에도 범의·범죄의 정황, 범죄의 방법,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 범죄의 목적물의 여하에 따라서 그 처벌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즉 같은 살인죄에도 고의로 죽인 것과 과실치사의 여부가 구분되며, 거기에다 謀殺・鬪殺・戴殺・誤殺 간에는 법률의 적용이 각각다르게 적용된다.

또 범죄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尊長인가 卑幼인가에 따라 법률의 적용이 각 각 다르다. 가령 존장 중에는 부모·조부모·주친존장·외조부모·백숙부모

<sup>39) &</sup>quot;諸投化人犯盜 配南界水路 不通州縣"(《高麗史》 권 85, 志 39, 刑法 2, 盗賊)이 란 科條的 記事이다.

<sup>40)</sup> 仁井田陞.《中國法制史研究》(東京大出版部, 1959), 247~256\,

<sup>41)</sup> 仁井田陞, 앞의 책(1933), 776쪽.

<sup>42)《</sup>唐律疏議》斷獄律 33, 疑罪條.

<sup>43) 《</sup>高麗史》 권 85, 志 39, 刑法 2, 恤刑 덕종 3년 7월 敎.

⟨₩ 2⟩

#### 고려율의 적용 일례

	_	형	량	死	刑	流	刑		徒		刑	
관	계 `	_	_	斬	絞	3천리	2천리	3년	2년 반	2년	1년반	1년
父	母•祖	父	母	毆	詈	過失毆		誤傷				
外	旭	父	母	謀殺	折傷	告死罪		告流罪	毆	告得罪		豊
伯	叔	父	母	至死	折傷		傷	毆				詈
大	功	奪	長	已殺	己傷		謀殺	告死罪	告流罪		告得實	
親	兄		弟	至死	折支		折傷	傷	毆			
堂	兄		弟		二事		折筋	折齒			歐	
小	功	兄	弟	至死		二事		折筋	二齒	折齒		毆
周	親	卑	幼			己殺		己傷	謀殺			
堂	弟	;	妹		故殺		歐殺					
弟			妹				故殺	毆殺				
	妻	:		故殺	至死			二事		折支		絶筋

<sup>\*《</sup>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大惡條에 의거하여 작성함.

등으로, 비유 중에서는 형제·당자매·생질·형제의 자손 등으로 구분해서 적용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夫와 妻, 처와 첩, 관리와 서민의 구별, 특히 서민 중에서도 양민과 천민 간에는 법률 적용과 그 처벌내용이 다르다. 또한 가해방법이 단순구타인가 흉기를 사용했는가 또는 끓는 물이나 불을 사용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재판상의 구별이 있었음은 전술한 바 있다.

객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고려율은 생명과 신체에 관한 범죄뿐만 아니라 재산에 관한 범죄에도 여러 종류의 贓을 설정하여 그 종류와 장물액을 기준으로 하여 형량을 정하고 있다.44) 형법 적용에 있어서 객관주의적 경향은 당률을 모법으로 하여 설정된 고려율이지만 당 이후 중국의 여러 왕조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이다.45)

### (2) 고려물의 형벌체계

지금까지 판결의 준거가 되는 고려율의 적용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sup>44)</sup> 贓은 범죄행위 또는 부당이익에 대해 불법적이며 비합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①强盜贓, ②竊盜贓, ③收路罪에 있어서 賄賂 즉 枉法贓, ④賄賂를 취해도 법을 어기지 않는 不枉法贓, ⑤ 官物橫領에 해당하는 受所監臨의 贓, ⑥ 부당이득에 의한 坐贓(《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職制・盜賊).

<sup>45)</sup> 仁田井陞, 앞의 책(1959), 253쪽 참조.

바탕으로 하여 고려시대에 시행된 형벌의 체계를 검토해 보자. 형벌의 체계 란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형벌의 종류」라 할 수 있다. 대개 그 분류기 준에 따라 公刑과 私刑, 正刑과 閏刑, 主刑과 附加刑, 本刑과 換刑, 眞刑과 贖刑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46)

### 가, 공형과 사형

국가의 공권력이 확립되어 가는 것과 비례하여 형벌의 체계도 公刑罰主義로 그 체계가 확립되어 갔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私刑罰主義도 허용되고 있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야 하나 私刑이 용인되는 경우는 대략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조부모·부모가 살해되었을 때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직계자손의 보복, 둘째는 직계비속인 자손이나 처에 대한 조부모·부모 또는 夫의 징계, 셋째는 노비 등에 대한 주인의 징계가 그것이다. 고려시대 사형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 ①執政 王詵을 외방으로 내쫓았다. 처음에 왕이 선조의 참소를 입은 사람의 자손에게 복수하는 것을 허용하였더니 마침내 사람들이 서로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서 다시 원통함을 부르짖게 되었다. 이 때에 왕선이 복수한다고 핑계대고임금의 명령을 거짓으로 꾸며서 태조의 아들 天安府院君을 죽였으므로 이에 왕선을 내쫓고, 이어 제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 복수하는 것을 금지하였다(《高麗史節要》권 2. 경종 원년 11월).
- ② 金光中은 벼슬이 여러 번 올라 諫議大夫 秘書監에 이르렀다. 김광중이 일찍이 驅使 朴光升을 애호하여 어떤 사람에게 청을 넣어 隊校를 시켰다. 鄭仲夫亂 때 박광승이 김광중을 유인하여 민가에 숨겨 놓고 한편으로는 밀고하여 그를 죽게 만들었다. 그 후 김광중의 아들 金帶가 順安縣수이 되었다. …그 때 박광승이 祭告使가 되어 그곳으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먼저 사람을 蔚州로 보내어 박광승의 아비를 잡아오고 또 박광승도 체포하여 모두 순안으로 데려 왔다. 부자를 대면시킨 후 먼저 그의 아비를 죽이고 박광승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비의 죽음이 서러운가'라고 물으니 박광승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金帶가 또 문기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 것이다. 너는 어째서 은혜를 배반하고 나의 아버지를 죽였는가'라고 하니 박광승이 대답을 못하였다. 드디어 그의 팔을 잘라 軍中에 두었다가 몇고을을 巡歷한 후에 죽였다(《高麗史》권 101, 列傳 14, 金光中).
- ①은 선대의 복수를 허용하고 있는 私刑에 관한 자료이다. 내용인 즉 경종

<sup>46)</sup> 戴炎輝, 《唐律通論》(正中書局, 1964), 182~186\.

이 즉위함에 이르러 광종 연간에 발생한 被讖人의 자손에게 복수를 허용한 결과 그 피해가 늘어나자 복수를 빙자한 살인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다.

②는 정중부의 난 때 박광승이 은혜를 배반하고 김광중을 밀고하여 살해되었는데, 그후 광중의 아들 帶가 順安縣수이 되어 부친의 복수를 위해 광승과 그의 父를 私刑으로 死刑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일종의 私刑이라 할 수 있는「爲親殺人」을 범한 경우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移鄕」 또는 사면된 사실이 산견된다.47) 당률에서의 이향제도는 타인을 살해하였을 때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졌지만, 사면을 거쳐 죄를 면한 자가 피해자 가족과 가까이 있을 때에 그 근친에 의한 복수를 피하기 위해 타향에 이주케 하는 제도이다.48)

### 나. 정형과 유형

正刑이란 刑法總則에 해당되는 名例律 중에 설정되어 있는 答·杖·徒·流·死 등의 5형체계를 말한다. 이 가운데 태와 장은 身體刑, 도와 유는 自由刑, 사는 生命刑이다. 이른바 5형은 고려 형벌의 핵심이며, 고려율 본조에 규정되어 있는 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려율에서는 비록 5형체계 만을 정형이라 하지만, 신라 이래 시행되었던 형벌도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고려 초기에는 신라 이래의 형벌체계가 지배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성종 이래 당률을 繼受한 고려율체계가 정비되면서 정형으로서 5형체계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신라 이래의 형벌도 때로는 主刑으로서 이용되기도 했다. 가령《三國史記》에 산견되는 棄市刑・支解刑・環刑・梟首刑・夷一族刑・伏誅刑 따위의 형벌체계가 고려에서도 시행되고 있었다.49) 이들 형벌은 모두 생명형이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위화적 전시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보통 시행되는 사형보다도 매우 잔인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정형은 5형체계가 그 주류라 할 수 있지만, 경

<sup>47) 《</sup>高麗史》권 85, 志 39, 刑法 2, 恤刑 인종 원년 및 권 84, 志 38, 刑法 1, 殺 傷 공양왕 원년.

<sup>48)《</sup>唐律疏議》 賊盜律 18, 殺人移鄉.

<sup>49)</sup> 辛虎雄, 앞의 책(1986), 162~163쪽 참조.

우에 따라 기시형 등의 형벌도 정형의 일부로서 시행되었다고 생각된다.

5형이 통상의 형이라면 閏刑은 특수한 형벌이다. 官人이 죄를 범하면 형의조건부 면제규정으로, 윤형은 官當과 행정처분적 制裁의 성격을 띠고 있는 除免에 의해 5형의 賞刑을 면제하는 형벌이다. 대개 전자의 경우는 관등을 깎아서 형에 代當하거나 대당하고도 남을 때에는 贖을 받고, 후자의 경우에는 관인의 名譽刑에 해당하는 除名・免官・免所居官에 처해졌다. 이 점을 감안해 볼때 윤형은 명예형과 재산형의 2중적 구조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50)

이와 같이 당률의 형벌체계는 이중구조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려율에서도 윤형체계인 당률의 官當收贖法을 계수하여 枉法贓과 不枉法贓 을 선정하여 관인 중에서도「有官品人犯者」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였다.

### 다. 주형과 부가형

主刑은 5형과 같이 독립하여 과해지는 형이고, 附加刑은 주형에 부가적으로 과해지는 형으로, 여기에는 沒官, 반역인 재산의 몰수, 除免, 官當 등이 있다. 5형에 부가되는 몰관이란 당률에 의하면 "모반 및 대역자는 모두 斬하고 父子의 나이 16세 이상은 모두 絞하고, 15세 이하의 母女・妻妾・祖孫・兄弟・姉妹 그리고 부곡・노예・資材・전택은 모두 몰관한다"고 하여 범죄인의 가족과 재산은 관에서 몰수하였고, 몰관된 가족은 관노비가 되거나 또는 工樂・雜戶 등이 되었다. 단 연좌되어 몰관된 가족에 대해서는 죄인이 사면을 받으면 형이 경감되어 방면되는 경우도 있었다.

고려율에 있어서 몰관은 籍沒이라고도 칭했는데, 이에 대한 사례는 적지 않게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 사안이 확실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御史臺에서 아뢰기를 '姦臣 李資義 등이 사사로이 미곡을 축적하여 수량이 鉅萬입니다. 이것은 모두 착취하여 모은 것이니 관에서 몰수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왕이 허락하였다(《高麗史節要》권 6, 숙종 원년 3월).
- ②大司憲 禹玄寶 등이 ■成事 睦仁吉을 모함하여 가만히 다른 뜻을 품는다고 탄핵하니 관직을 삭탈하고 집을 籍沒하여 유배보냈다(《高麗史節要》권 31, 신우 6년 2월).
  - ③ 金師幸의 처음 이름은 廣大이다. 공민왕의 총애를 받고 여러 관직을 거쳐 判

<sup>50)</sup> 이것은 "禮는 庶人에게 내려가지 않고, 刑은 大夫에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유교 이념에 따른 사회규범을 반영하고 있는 제도라 보여진다.

內府事 벼슬을 하였다. 성품이 간교하였으며 왕의 뜻을 잘 맞추어 正陵과 影殿의 공사를 크게 일으켜서 지극히 사치하고 화려하게 지었다. 이로 인해 재력이고 갈되고 백성들이 편히 살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왕이 죽은 후에 공민왕을 미혹하게 하여 공사를 일으켰다는 것으로 論罪되어 益州의 官奴로 편입시키고 그집을 몰수하였다(《高麗史》권 122, 列傳 35, 宦者 金師幸).

④ 瑞興條琠・王惟紹・宋邦英・韓愼・宋璘・宋均・金忠義・崔涓이 처형되었다. 前王은 琠을 용서하고자 하였으나 丞相이 불가하다 하여, 형부로 하여금 8명을 文明門 밖에서 斬하였다. 전왕이 王惟紹 등 7명의 집을 籍沒하라고 명하고, 부자・형제를 모두 沒入하여 노비로 삼았으며, 한신의 아들을 驛戶로 충당하였다(《高麗史節要》권 23. 충렬왕 33년 4월).

①·②는 몰관의 내용으로 범죄인의 노비·재산·전택 등을 몰수한 경우이며, ③·④는 범죄인 본인을 몰관하여 노비로 삼거나 범인의 부자·조손·처첩·형제자매 등 동거가솔을 노비로 삼는 경우라 하겠다. ①·②의 경우 삭탈관직된 뒤 주형으로서 유배를 부가형으로서 재산을 몰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려에서는 주형과 아울러 부가형이 보편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이다.

주형에 부가되어 죄인의 가족과 재산이 몰관되는 것이 부가형의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剃髮刑도 고려에서 자주 나타나는 부가형이었다. 가령 "黃州牧使李緝의 처 藩氏는 金南俊과 私通하여 마침내 남편을 살해했는데, 헌부에서 이를 극형에 처하려 했으나 上王(충선왕)으로부터 명령이 있었고, 또 그 사이에 사면이 있어 死刑은 면했지만, 사헌부에서 이들의 머리를 깎고 淨業院에 放했다"51)는 내용이 있다. 이 경우에 주형인 사형은 면제되었고, 체발형이부가형으로 집행되고 있다. 또 공민왕 때 辛吨을 비방한 죄를 물어 金貴・朴椿 등에게 주형을 사하고, 부가형인 체발형을 집행한 사례가 있다.52)

## 라. 본형과 환형

本刑이란 고려율의 각 本條에서 규정하는 형으로서 5형이 바로 그것이며, 官人・僧侶・鎭人 등에게 과해지는 歸鄉刑과 充當戶刑도 본형이 된다. 換刑이 란 본형에 대치되어 과해지는 형인데, 당률에서는 주로 名例律에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술한 윤형 중에 官當과 贖銅・還俗・苦役 외에 樂工・雜戶・

<sup>51) 《</sup>高麗史節要》 권 24, 충숙왕 3년 5월.

<sup>52) 《</sup>高麗史》 권 132, 列傳 45, 叛逆 6, 辛吨.

太常音樂人·官戶部曲·官私奴婢·單丁·婦人 등이 徒·流罪를 범했을 때 留 住決杖 혹은 加杖에 환형된다. 따라서 환형 중에 윤형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당률에서는 명례율에서 환형될 수 있는 경우를 첫째, 범죄를 한 경우라도 그 내용이 十惡이 아니고, 더구나 조부모·부모가 노환으로 집에 근친의 丁男이 없을 때는 특별조치를 上請하고, 流罪를 범했을 때는 유배시키지 않고 우선 정남을 부모와 함께 있도록 한 뒤 부모가 사망하면 곧바로 유배하도록 하였으며, 配所에서 복역하는 居作者라 할지라도 부모가 사망한 때는 喪期를 마치고 다시 배소에서 거작토록 한다. 둘째, 徒罪를 범해 복역해야 하는데 집에 2인 이상의 정남(또는 처 21세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가족의 생활을 고려하여 도형을 바꾸어 杖刑을 과하도록 하였다. 셋째, 악공·잡호와 같이 관에 속하는 천민이 유죄를 범한 경우에도 배소에 거작하는 것보다 관의 쓰임에 더 유용할 경우 유죄에서 환형할 수 있으며, 부인이 유죄를 범했을 때도 장형을 바꾸어 贖을 징수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당률을 모델로 한 고려율에도 환형을 설정한 여러 규정이 형법지에 수록되어 있다. 有官品人犯者가 徑法贓·不枉法贓을 범할 경우에는 환형으로서官當收贖을 허용하고 있다.

형법지 이외《고려사》世家 또는《고려사절요》등에서도 제명·면관 등의환형에 처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다.53) 그리고 流刑에 처한 환형으로서 移鄉·放歸田里·放還田里·放還鄉里 등을 시행한 경우도 많이 보인다. 이향의경우는 앞에서 예로 들었듯이 인종 때「救父殺人」죄를 범한 자에게 유배의환형으로서 이향시킨 판례가 있으며 방귀전리 등의 여러 제도는 귀향형과유사한 것으로서 모두 同意異音的인 표현이며, 이는 유형의 감형 내지 보안처분적 성격을 지니는 환형이라고 생각된다.54)형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귀향된 상태와 방귀전리된 상태는 별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귀향형에 비해 방귀전리는 비록 實職은 아니지만 檢校者 등의 散職과 功臣錄卷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처벌된다는 점에서55) 그것은 현직에서 배제되는 일종의 환형이라 볼 수 있다.

<sup>53) 《</sup>高麗史》 권 4, 世家 4, 현종 2년 7월 및 권 9, 世家 9, 문종 27년 6월.

<sup>54)</sup> 徐壹教,《朝鮮王朝 刑事制度의 研究》(博英社, 1968), 155~156\,

<sup>55)</sup> 蔡雄錫, 앞의 글, 33쪽 참조.

### 마. 진형과 속형

眞刑이란 勞役(流徒)·苦身(笞杖)을 하는 형이며, 贖刑이란 官 혹은 銅으로써 贖하는 것을 말한다. 당률의 경우 관리의 범죄에 대해서는 관리가 保持한현재 및 과거의 관으로써 代當하여 끊어질 때에는 贖銅을 징수하지 않지만, 대당하여 끊어지지 않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동으로 속하게 된다. 고려율에서는 官當收贖法의 일환에서 과해진 것이 아니고 독립된 財産刑으로서과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① 갑오일에 公徒와 私徒 이하의 죄수 및 벌금을 바친 모든 죄수들을 모두용서하게 하였다(《高麗史》권 6, 世家 6, 정종 2년 정월 갑오).
- ② 制하기를 '…8월 을유일 이후로 그릇된 법을 범하여 有司에게 탄핵당한 사람이나 구리를 바치고 기와를 바쳐서 속죄할 사람은 모두 면제하라'고 하였 다(《高麗史節要》권 8, 예종 15년 9월).
- ③ 元에서 宗正府斷事官 哈兒章・兵部郎中 剛升 등을 보내어 鄭天起・高忠節・廉伯顏帖木兒・郭允正・李君常・李龜龍 등을 목베고 그 집을 몰수하였다. 또 그 徒黨朴西 등 14명을 목베고 曹用權 등 17명에게 곤장을 때렸다. 政堂文學 安震・密直提學 李濟는 나이가 늙었으므로 곤장을 면하고 대신 銅을 바치게 했다(《高麗史節要》권 26, 공민왕 2년 3월).
- ①・②는 고려에서도 진형과 아울러 속형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③은 鄭天起 등이 奇氏일족을 제거하려 한 사건에 대해 원에서 파견된 관리에 의해 정천기의 黨與가 모두 처형되고, 정당문학 안진과 밀직제학 이제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속동에 처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고려의 경우 말기까지 독립된 재산형으로서의 속형이 시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당률에서는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 및 廢疾者가 流罪를 범했거나 9품 이상 관인의 조부모·부모·처·자손이 유죄 이하를 범했을 때에는 실형을 대신하여 속형으로 동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속동은 원칙적으로 관에 돌아가지만, 무고 및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贖은 정해진 기한 내에 받도록 되어 있다. 死刑의 속은 80일을 한도로 하며, 이하 체감되어 태형의 경우에는 30일로 되어 있다.56)

이와 같은 당률의 法意는 고려의 행형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자

<sup>56)</sup> 仁井田陞, 앞의 책(1933), 788쪽.

료가 형법지 등에 산견된다. 가령「歐人折齒者」에게 동을 정수하여 피해자에 지급한다거나57) 80세 이상 및 篤疾者에 대한 특례 등에서「收贖之例」를 시사하는 내용58)을 찾아볼 수 있다.

#### (3) 고려물의 행형체계

가. 자유형 중심의 행형체계

고려의 行刑은 형법지 名例 항목에 수록되어 있는 것처럼 5刑制를 중심으로 한 것이지만, 그 중 실제 운용에 있어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자유형인 流 케이다. 그것은 사료에 수록되어 있는 행형기사 가운데서 그 양에 있어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제반 사회의 변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당대의 사회상을 표출하고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자유형이란 受刑者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으로는 流刑과 徒刑이 있다.

- ① 流刑에는 세 가지가 있다. 2천 리의 유형은 折杖 17대를 치고 징역 1년에 처하며 贖銅 80근을 받는다. 2천 5백 리의 유형은 절장 18대를 치고 징역 1년에 처하여 속동 90근을 받는다. 3천 리의 유형은 절장 20대를 치고 징역 1년에 처하고 속동 100근은 받는다(《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名例).
- ② 徒刑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도형 1년은 절장 13대를 치고 속동 6근을 받는다. 도형 1년반은 절장 15대를 치고 속동 30근을 받는다. 도형 2년은 절장 17대를 치고 속동 40근을 받는다. 도형 2년 반은 절장 18대를 치고 속동 50근을 받는다. 도형 3년은 절장 20대를 치고 속동 60근을 받는다(위와 같음).

①에서 보듯이 유형에는 2천 리·2천 5백 리·3천 리의 3종류가 있다. 그밖에 加役流가 있어<sup>59)</sup> 고려시대에는 모두 4종류가 시행되었다. 자유형에 있어서 속동형은 당률을 계수한 것이며, 절장형은 송률을 수용하였다는 것은 전술한 바 있다. 이는 고려의 영토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실행될수 없었기 때문에 고려의 실정에 맞추어 당률과 송률을 수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거리를 환산하여 적용하지 않고 수형자가 복역할 배소를 지정하여 판

<sup>57) 《</sup>高麗史》 권84, 志38, 刑法1, 殺傷.

<sup>58) 《</sup>高麗史》 권 85, 志 39, 刑法 2, 恤刑.

<sup>59) 《</sup>高麗史》 권84, 志38, 刑法1, 職制 不枉法贓.

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가령 歸鄉‧流本貫‧流田里‧流州縣‧流有人島‧ 流無人島‧流海島 등과 같은 형식으로 시행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 은 배소의 차이는 수형자의 죄질 또는 형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왕도를 기준으로 하여 멀어질수록 또는 생활환경이 열악 한 곳일수록 죄질이 중형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하겠다.

한편 유배형은 징계의 효과와 아울러 생명형을 赦宥하는 인도주의적 행형 사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다른 형벌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수형자의 기록이 남아있지만, 행형의 정치적 의미 또한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런데 ②에 대한 행형자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60) 따라서 자유형하면 바로 유배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도형과 同意異音的인 표현으로써 넓은 의미의 유형체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는 配・謫・放・遷・徒・鼠 등이 있다.61) 이외에도 充軍과 烽卒 또는 水軍에 편입시켜 특정한 지역에 복무케 하는 것도 자유형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 나. 귀향형과 충상호형의 행형체계

고려의 행형체계는 당률체계의 5형인 태·장·도·유·사가 기본이었고, 그 중에서도 유배형 중심의 자유형이 가장 중요한 행형체계였다. 유배형만 하더라도 유 2천리~3천리 형은 중국에 비해 훨씬 좁은 국토를 가진 고려에서는 규정대로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려 나름의 독특한 방법이 설정되었음은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경향은 관인의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행형체계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에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당의 관인과 고려의 관인과는 그 존재 양상과 권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국가와 관인과의 관계, 국왕과 관인과의 관계가각각 다른 것이었다 따라서 당률에서 관인에 대한 행형체계의 기본이라 할 수있는 官當收贖法의 내용이 고려에 그대로 수용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死刑과 加役流 등 일부 유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실형에 처하지 않는

<sup>60)</sup> 徒刑에 관한 자료는 《高麗史節要》권 8, 숙종 17년 12월 및 권 29, 공민왕 20 년 6월 기사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자료가 빈약한 것은 사건의 내용이 史書에 남을 정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sup>61)</sup> 辛虎雄, 앞의 책(1986), 172~174쪽.

당률의 법의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고려 실정에 맞춘 형벌체계가 바로 歸鄕刑과 充常戶刑이라 할 수 있다.62)

형벌적 기능과 고려율의 운용에 있어서 귀향형과 충상호형이 갖는 행형체계는 어떠하였는가. 다음의 사료는 유배형과 그 실상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 ① 官吏가 監臨하면서 관물을 훔친 자(監臨自盜)와 감렴하면서 재물을 받고 법을 어긴 자(受財枉法者)는 職田을 회수한 다음 귀향시킨다(《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職制).
  - ② 僧人이 寺院의 미곡을 훔친 자는 귀향시켜 常戶에 충당한다(위와 같음).
  - ③ 官物을 무역한 자는 귀향형을 제외하고는 법에 따라 科罪한다(위와 같음).
- ④ 鎭人으로 귀향죄를 범한 자는 그대로 本處에 머무르게 하고 만약에 田丁을 받은 자는 그 田을 회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준다. 流罪를 범한 자가 東界의 鎭人이면 北界에 移配하고, 북계의 鎭人이면 동계로 이배하되, 남계로 이배하지 못하게 하였다(이와 같음).
- ⑤ (현종 7년 5월) 刑部에서 奏하기를 '관리가 감렴하면서 관물을 훔친 자는 贓物의 多少를 헤아리지 않고 모두 除名하여 本貫으로 유배하소서'하니 왕이이에 따랐다(위와 같음).

위의 사료는 귀향형의 대상과 수형자의 복역장소를 시사해 주고 있다.

첫째, 귀향형의 대상이 되는 부류는 관리·승려·진인63) 등이다. 이들은 전시과체제 내에서 功蔭田·科田·閑人田·軍人田 등을 지급받는 계층으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지 못한 白丁보다는 한 단계 높은 계층이다.64)

文炯萬.〈麗代歸鄉考〉(《歷史學報》23, 1964).

北村秀人、〈高麗時代の歸鄉刑・充常戶刑について〉(《朝鮮學報》81, 1976).

浜中昇, 앞의 글.

蔡雄錫. 앞의 글.

- 63) 鎭人에 대해서는 '命州鎭入居軍人 例給本貫養戶人'이라 하여 本貫지역에 田 丁과 養戶를 지급받고 兩界州鎭에 入居한 군인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高麗史》권 81, 志 35, 兵 1, 五軍 문종 27년 3월 命).
- 64) 한편 노비의 귀향죄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두 가지 견해가 상충되어 있다. 우선 귀향형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서도 노비의 本貫所有를 인정하는 견해는 귀향을 流本貫으로(文炯萬, 앞의 글, 30쪽), 노비의 본관소유를 부정하는 견해는 천민집단의 거주지인 鄕으로 유배되었다고(北村秀人, 앞의 글, 449쪽)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비는 귀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는 浜中昇(앞의 글) 및 蔡雄錫(앞의 글) 등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필자는 후자의견해가 더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sup>62)</sup> 이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의 글들이 있다.

둘째, 수형자의 귀향장소에 관한 문제이다. 위의 사료들을 검토해 보면 귀향죄를 범했을 경우 현거주지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귀향형을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①・②・⑤의 귀향지가 본관이라는 것은 짐작하기어렵지 않지만, ④의 경우 진인이 귀향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현재의 거주지가 곧 귀양처가 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또 귀향죄를 범한 관리나 승려의 현거주지가 본관지일 때는 그 본관지가 바로 귀향지가 된다는 사실을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관리의 경우 직전의 회수・제명 등 기존의 특권이박탈되며, 승려의 경우는 환속됨과 아울러 해당지역에 편호되고 있음이 확인된다(②).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귀향형의 본질적인 행형내용은 거주지의 강제이동이라기 보다는 직전의 몰수・제명 등 수형자의 기존의 특권이박탈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귀향형에 처해지는 죄목, 즉 귀향형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문제이다. ①에서 보듯이 관리의 監臨自盜罪(횡령죄)와 收財枉法罪(수뢰죄)가, 그리고 ②의 승려의 절도죄가 귀향형에 처해지는 구체적인 죄목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공사노비를 유인하여 도망시키거나 타인에게 방매한 자는 초범일지라도 귀향형에 처해졌다.65) 따라서 귀향형의 대상은 관리의 횡령죄와 수뢰죄, 승려의 절도죄, 불법인신매매죄 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귀향형의 성격에 대한 문제이다. 귀향형의 성격에 대하여 正刑을 면제하는 대신 과하는 윤형, 즉 환형으로 보기도 하지만,660 윤형에는 환형뿐만아니라 부가형도 있다. 따라서 귀향형이나 환형, 또는 부가형이냐에 따라 행형체계에 있어서 귀향형의 위치는 크게 달라진다.

앞의 사료 ①의「감림자도」·「수재왕법」은 당률에서는 이미 제명에 처하는 죄였다. 원래 제명 그 자체가 부가형이지만, 귀향형은 제명에 부수되는 형벌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⑤는 관인을 제명하여 서인신분으로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본관으로 유배되었다는 것인데, 관인을 대상으로 하는 귀향형이 부가형이라 할 때, ②에서의 승려의 귀향형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즉 승려 특유의 형벌로

<sup>65)《</sup>高麗史》 권85, 志39, 刑法2, 奴婢.

<sup>66)</sup> 北村秀人, 앞의 글.

서 환속을 생각할 수 있다. 승려가 사원의 미곡을 절취한 경우에는 환속되는 것만이 아니고 본관에 유배되는 부가형이 과해졌던 것이다.

臨津縣人 裵行이 왕명을 위조하여 趙京 등 7인에게 관직을 주었다. 법으로는 마땅히 絞刑에 처할 것이나 마침 사면이 내린 때이므로 귀향형에 처하였다 (《高麗史》권 7, 世家 7, 문종 즉위년 9월 정유).

위의 사료에서 배행의 행위는 법대로 하면 교형에 해방되지만 마침 사면을 받아서 귀향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배행은 주형은 사면되고 부가형인 귀향형만 적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주형이 사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귀향형으로 처벌한 것은 귀향형이 제명이나 면관처럼 본형이아니고 징계처분적 성격을 갖는 부가형적 처벌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료를 분석해 볼 때 귀향형의 주된 행형내용이 부가형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볼 때 量移的 성격도 갖고 있다. 그리고 양이에 대한 사료도 자주 보이는데<sup>67)</sup>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二罪(斬刑과 絞刑) 이하의 죄수를 사면하되, 참형·교형에 해당하는 자는 섬으로 유배보내고, 전에 섬으로 유배된 자는 육지로 내보내고, 이미 육지에 나와 있는 자는 귀향형에 처한다. 그리고 귀향형에 처해져 있는 자는 上京하게 하고, 이미 상경해 있는 자는 朝會에 참가하게 하며, 이미 조회에 참가하고 있는 자는 다시 등용하였다(《高麗史》권 11, 世家 11, 숙종 3년 10월 갑신).

일반적으로 量移의 대상자는「流配者」・「配流者」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귀향형에 처해진 자도 섬에 유배된 자들과 마찬가지로 유배자・ 배유자로 일괄되어 있다. 유배자의 양이는 配島→出陸→歸鄉→上京이라는 순서로 행해지고 있다.

다섯째, 앞의 사료 ④에 의하면 귀향죄와 유죄는 구별되고 있으며, 거기에 대응하는 형벌내용을 보면 귀향형보다는 유형이 더 중죄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귀향죄를 범한 자에게는 本處에 유배시키고 田丁을 몰수하여 타인에게 주는 것으로 그치지만, 유죄를 범한 자는 동계와 북계사이에 상호 유배시키고 있다. 이미 鎭人이라는 신분이 담당하고 있는 군사적 기능을 박탈시키지 않으

<sup>67) 《</sup>高麗史》권 12, 世家 12, 예종 3년 4월 계해 및 권 23, 世家 23, 고종 22년 9월 계해.

려는 의도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 초범·재범의 단계와 남녀를 구별하여 가중처벌하는 행형체계를 볼 수 있는데,<sup>68)</sup> 이로써 依律斷之→歸鄉→充常戶刑 순으로 형이 가중되는 일련의 행형체계가 운영되고 있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해명해야 할 부분은 「의율단지」의 「율」이라 할 것이다. 이 용례는 ③에서 貿易官物者에게 과해지는 「依律科罪」의 경우도 같은 성격이라 이해된다. ③에서는 귀향형을 면제하고 「의율과죄」하는 과형과무역관 물죄보다 죄상이 무거운 ①의 관리의 횡령죄와 수뢰죄는 도형과 장형을 물론하고 직전을 회수한 다음 귀향시킨다는 행형체계를 분석해 볼 때,「의율단지」 또는 「의율과죄」에서의 「율」이란 도형이라 생각된다.

결국 귀향형의 형벌적 성격은 도형보다는 무겁고 유형보다는 가벼운 것으로 판단되지만, 당률을 모델로 하는 유형과는 전혀 다른 행형체계임이 주목된다. 만약에 귀향형이 유형의 한 단계에 속하는 것이라면 재범단계에는 유 2천 리·3천 리 또는 配島・配遠惡地 등으로 가중 처벌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의 행형체계는 귀향형→충상호형으로 처벌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형벌체계야말로 당률 또는 송률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고려의 독자적인 행형체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끝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은 귀향형과 충상호형과의 관계라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료가 있다.

- ① 制하기를 '여러 관인으로 귀향형에 처해진 자를 常戶에 충당하는 것과 위협하여 죽게 한 자를 絞刑으로써 논하는 것은 義에 어긋나는 일이니 모두 면제하라'고 하였다(《高麗史》권 85, 志 39, 刑法 2, 恤刑 문종 20년 7월).
- ② 紹하기를 … '그 僧徒가 奸을 범하고 영구히 鄕戶에 충당(永充鄕戶)되어 사면을 거쳐서도 풀려나지 않음은 가혹한 법이라 할 것이니 마땅히 有司로 하여금 검찰하여 모두 軍役에 충당시키라'고 하였다(《高麗史》권 85, 志 39, 刑法 2, 恤刑 예종 원년 7월).
- ③ 왕이 敎書를 내리기를…'전에 유배에 처해진 자 중 반역・불충불효・살인강도・미리 계획하여 고의로 겁탈하여 죽인 자(謀故劫殺)・銀面充常戶者 외 그 나머지 입도자들은 육지로 내보내어 고향에 와 있게 하고, 고향에 있던 자는 왕에게 참알하

<sup>68) 《</sup>高麗史》 권84, 志38, 刑法1, 戶婚.

는 것을 허용하며, 참알하는 것을 허용받은 자는 서용하도록 할 것이다'고 하였다(《高麗史》권 33, 世家 33, 충렬왕 24년 정월 무신).

①은 귀향된 관인을 충상호형에 처하는 것은 위협하여 죽게 한 자69)를 교형으로 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본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사료에서 주목되는 것은 귀향형보다 한 단계 중형에 해당하는 것이 충상호형이며 이는 수형자의 복역장소에서 그대로 집행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복역장소라 함은 유배된 본관을 뜻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 점에 있어서는 역리가 직무태만으로 파면되고,「降爲常戶」가 부가된 경우에도70) 그 수형 장소는 역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②는 충상호형의 성격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사료이다. 여기서 수형자의 신분이 승인이며 죄목도 같다는 점, 그리고 시기도 근접되어 있는 것을 비교해 볼 때「永充常戶」는 충상호형에 대응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③의 사료에서는 전에 유배에 처해진 자 중 반역・불충불효・살인강도・모고겁살・삽면충상호자들은 사면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71) 여기서 삽면충상호가 부가되어 있는 자들은 入島者들이 명백하며, 이들은 徐兢이 《高麗圖經》에서 "죽을 죄라도 용서하여 산골이나 섬으로 유배하고, 사면해주는 것은 세월의 다소와 죄의 경중을 헤아려 용서하여 준다"72)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사형이 면제되어 섬으로 유배된 자들일 것이다. 따라서「減死流配者」중에서 삽면충상호된 자를 제외한「其餘入島者」들은 出陸歸鄉→ 餘鄕者通朝見→朝見者敍用이라는 사면단계를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료를 일별해 보면 충상호형은 본관지·현거주지·유배된 섬 등 특정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집행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얼굴에 入墨이 부가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요컨대 고려 독자적인 행형체계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수형자의 거주지에 대한 강제적 이동이나 賤鄕에 永續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자격

<sup>69)</sup> 고려시대 畏懼致死罪는「脊杖配島」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高麗史》권 95, 列傳 8, 王寵之).

<sup>70) 《</sup>高麗史》 권 82, 志 36, 兵 2, 站驛 숙종 8년.

<sup>71)</sup> 고려시대의 赦免에 대해서는 辛虎雄, 앞의 책(1986), 231~260쪽 참조.

<sup>72)</sup> 徐兢, 《高麗圖經》 권 16, 官府 囹圄.

박탈과 아울러 관인으로서의 재서용을 영원히 배제시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고려 나름의 독자적인 행형체계를 굳이 당률과 결부시켜 본다면 당률에서 제명·면관에 해당하는 죄를 고려에서는 귀향형·충상호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률에 있어서 관인에 대한 처벌법 규인 관당수속법을 고려적인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그것을 고려의 실정에 알맞게 법제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4) 행형의 실태

전술하였듯이 고려시대의 행형은 자유형 중심의 행형체계였으며, 귀향형·충상호형으로 가중되는 고려 독자적인 행형체계로 운용되고 있었다. 고려시대의 행형관계 사료를 보면 유형과 사형기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사는 유형관계의 자료이다. 그 것은 생명형인 死罪를 정치적으로 사면할 때 유배형이 집행된다는 사실에서도 그 사정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에서는 태·장·도·유·사를 그 내용으로 하는 5형체계가 실시되고 있었음은 각종 사면기사에서 확연히 입증되고 있다. 사실 사형과 유형의 집 행기사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輕刑에 속한다 할 수 있는 태·장·도형에 처해진 기록은 史書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 가. 유형의 집행실태

《고려사》·《고려사절요》등에 수록되어 있는 고려 전시기의 유배 관계기사는 모두 500여 건에 달한다. 이를 무신란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기로 구분할 때 전기에 63건에 달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후기에 접전된 유배건수였다.

이처럼 행형기사를 기준하여 볼 때 후기에 올수록 그 수가 증가하는 것은 자료의 인멸이 비교적 적었던 점도 있겠지만, 무신란 이래 사회기강의 해이에 따른 범법행위의 증가와 집권자의 자의에 의한 무분별한 행형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형실태의 분석에 대한 시기를 고려 전기로 제한하였고, 그 전기를 다시 태조~경종 간의 국초와, 성종~의종까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처럼 성종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하려는 것은 전자

는 왕권 확립과정이라는 시대적 특수성과 고려율의 제정<sup>73)</sup> 이전이라는 법제 사적인 분류기준에 그 동기를 찾을 수 있고, 후자는 고려율의 제정 이후에 집행된 행형일 뿐만 아니라 문물제도가 성종 때를 계기로 정비되었다는 데 서 그 구분의 근거를 두고 있다.

대체로 유배형의 행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점이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유배형에 처해진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행형의 실상과 사회적 특징과의 상관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둘째는 수형자의 신분변동에 관한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는 유배지에 관한 문제가개괄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 〈표 3〉과〈표 4〉는 이상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도한 기초작업의 일환이다.

태종~경종년간에 집행된 流刑관계기사는 다음 〈표 3〉에서 보듯이 8건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 정치적인 참소 또는 반역행위로 인해 유형에 처해진 경우가 많다(②・⑤・⑥). 이 시기는 아직 고려의 형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므로 고려율의 적용여부는 생각할 수 없고, 대체로 신라・태봉 이래 계승된 전통적 형률과 관습법에 준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당시에 유배지로 선정된 곳은 海島・遠陸・邊境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지않는 점으로 보아 형의 결정권자가 임의로 선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유배자의 형기는 처음부터 설정되어 있지 않아 왕의 사면이 없는 한74) 영구

⟨₩ 3⟩	태조~경종년간의	流刑 진행실태

항	집 행 시 기	유 배 자	유 형 사 유	유 배 지
1	태조 원년 9월	柳問律・朱瑄劼	班列是非	邊境
2	14년 3월	庾黔弼	被讒	鵠島
3	19년 9월	良劍・龍劍	謀囚君夫	眞州
4	25년 10월	契丹使者 30인	對契丹 强硬策	海島
5	정종 즉위년	朴述熙	被讒	甲串
6	광종 11년 3월	俊弘・王同	被讒	?
7	21년	崔知夢	飲酒失禮	隈傑縣
8	경종 원년 11월	王 詵	<b>矯殺罪</b>	外方

<sup>73)</sup> 高麗律의 제정에 대해서는 辛虎雄, 앞의 책(1995), 19~49쪽 참조.

<sup>74)</sup> 崔知夢은 流配에서 11년 만에 사면되어 경종 5년에 다시 敍任되었다(《高麗史》권 92, 列傳 5, 崔知夢).

### ⟨표 4⟩

# 성종~의종년간의 流刑 집행실태

항	집 행 시 기	유 배 자	유 형 사 유	유 배 지
9	성종 년월 미상	金致陽	千秋太后와 和奸	遠地
10	7년 11월	郁(太祖 제8男)	景宗妃와 奸	泗水縣
11)	목종 10년 7월	韓藺卿・金諾	奴婢受賂	楊州・島
12	12년	庾行簡 등의 가족	縁 坐	海島
13	현종 원년 5월	河拱辰・柳宗	擅發兵	遠島
14)	2년 2월	劉彦卿의 妻子	縁 坐	?
15	2년 8월	趙容謙 등 6인	驚動行宮	?
16	2년 8월	卓思政 등 5인	緣坐	海島
17	5년 11월	皇甫兪義・張延祐	金訓·崔質의 난	?
18	7년 2월	金訓의 子・同産兄弟	金訓의 緣坐	歸本貫
19	11년 5월	崔元信・李守和	奉使汚辱	?
20	16년 정월	皮渭宗 등 6인	犯發兵	?
21)	정종 7년 정월	李洪叔	犯憲章	嶺 表
22	9년 9월	鄭莊・承迪	盗監臨之物	?
23	문종 26년 7월	平壤公 基의 子 등 4인	廢王擁立	南 海
24	36년 8월	東蕃賊 張向 등 14인	外 敵	山南遠地
25	선종 9년 6월	崔士謙	誤 奏	仙山島
26	헌종 원년 7월	李資義의 黨	韓山侯 昀 옹립	南 裔
27)	원년 9월	金德忠	李資義의 黨	遠 地
28	숙종 원년 10월	昀의 兄弟 등 3인	縁 坐	慶源郡
29	4년 11월	夫餘公 (遂+灬)	政 爭	若水郡
30	6년 정월	李景澤의 妻	謀殺夫之繼母	安山縣
31)	6년 3월	孫弼 등 3인	詐造陰陽書	?
32	6년 4월	僧 覺眞	衆人현혹	谷 州
33	8년 8월	高文蓋 등 4인	逆 謀	南 極
34)	예종 7년 8월	僧統 竀 등	圖不軌	巨濟縣
35	7년 8월	金仁錫 등 10여 인	縁 坐	遠地
36	12년 12월	淮安伯 沂	設醮祭于山寺	天安府
37)	인종 원년 12월	帶方公 俌	李資謙의 모함	京山府
38	원년 12월	文公美 등 10여 인	"	忠州 등
39	2년 2월	崔弘宰 등 7인	"	褥地島
40	4년 2월	智祿延・金粲	謀殺 李資謙	遠地
41)	4년 5월	李資謙의 妻子 등	縁 坐	靈 光
42	4년 6월	朴昇中 등	"	蔚 珍
43	5년 3월	拓俊京과 그 黨與	政 爭	嵒墮島
44	5년 5월	崔惟迪・蔡碩	縁 坐	慶州・珍島
45	13년 정월	陰仲寅 등	妙淸에 緣坐	遠島

46	13년	李仲孚	妙淸에 緣坐	清州
47)	의종 2년 7월	宋彦升	殺其妻	有人島
48	2년 7월	楊秀英	殺母弟	海際縣
49	2년 10월	李深 등 3인의 妻	利敵罪에 緣坐	遠島
50	3년 12월	高元仁	監臨自盜	遠島
51)	5년 4월	韓令臣	貿易官物	方還田里
52	5년 5월	鄭壽開・李份 등	反 坐	黑山島
53	5년 5월	暻의 奴 金旵・鄭敍 등	暻과의 交結	懐仁・東萊
54)	9년 12월	李龜禱	圖不軌	仁 州
55	10년 12월	崔淑淸 등	謀殺 鄭諴 등	遠島
56	11년 2월	大寧侯 暻	被讒	天安府
57)	11년 2월	彭夢齡 등 8인	賭博	南州
58	11년 3월	李仲齊 및 家屬	仲齊 妻의 讒言	南島
59	16년 5월	官婢 善花	殺孕婦	紫燕島
60	16년 9월	尹至元	誣 告	無人島
61)	21년 정월	牽龍・巡檢・指諭	流失의 變故	田里
62	24년 9월	毅宗(王)	鄭仲夫의 난	巨濟縣
63	24년 9월	崔偆 등	"	?

히 배소에서 풀려날 수 없었으며, 복역자의 자손도 그 지역의 주민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75)</sup>

위의 〈표 4〉는 성종~의종 간에 집행된 유형기사를 정리해 본 것이다. 성

〈표 5〉 유형 사유의 분석

항목	유배사유	해 당 항 목	계(%)
A	反逆・逆謀	23 · 26 · 33 · 34 · 53 · 54 · 56	7(12.7)
(B)	王室權威의 危害	$(15 \cdot 19 \cdot 21 \cdot 25 \cdot 36 \cdot 61)$	6(10.9)
C	緣 坐	$12 \cdot 14 \cdot 16 \cdot 18 \cdot 28 \cdot 35 \cdot 41 \cdot 42 \cdot 44 \sim 46$	11(20.0)
D	誣告・反坐	52 · 58 · 60	3(5.5)
Œ	政爭	$07 \cdot 29 \cdot 37 \sim 40, 43 \cdot 62 \cdot 63$	9(16.4)
F	瀆職	$0 \cdot 2 \cdot 5 \cdot 5$	4(7.2)
G	反社會秩序	31 · 32 · 57	3(5.5)
$\oplus$	姦通	9 · 10	2(3.6)
1	殺人	30 · 47 · 48 · 55 · 59	5(9.1)
(J)	擅發兵	(13 · 20)	2(3.6)
(K)	利敵・外敵	24 · 27 · 49	3(5.5)

<sup>75) 《</sup>高麗史節要》권 2, 성종 원년 6월.

종~의종년간에 각 왕들의 재위년수를 합치면 170년이 되고 이 기간에 발생한 流刑의 집행건수는 모두 55건에 이르고 있다.

《표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후세의 史家<sup>76)</sup>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는 성종·문종년간에는 유형의 집행건수가 적은 반면, 상대적으로 정치적 불안·반란 또는 외침에 의한 민심의 동요가 심했던<sup>77)</sup> 현종·인종·의종대에는 유형의 집행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유형의 행형기사를 내용별로 정리해 보면 앞의 〈표 5〉와 같다.

《표 5》에서 국가사직 및 왕실에 관련된 사유로 유배된 항목(♠・®・©)은 전체의 43.6%에 해당된다. 사실 ®항도 국가사직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범주에 넣어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무려 49.1%에 달하는 부분이 왕실 및 국가사직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데에서 발생한 유형이라 볼 수 있다. 또 정치적 알력 내지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 즉 정치권에 관련된 항목(⑩・⑥)도 약 21.9%에 상당하고 있다. 따라서 성종∼의종간에 집행된 유형의 내용은 사직・왕실 및 정치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전체의 71.0%에 달하고 있다. 사실 여기에 관련된 사건들을 분류해 보면 이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도 고려율에 준거할 수 없는 내용들이며 피해법익에 따른 형량의 단계적 적용도 거의 불가능한 정치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또 그에 따른 정치적인 행형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우리는 이 점에서 고려시대의 유형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triangle \sim \mathbb{C}$ 로 분류된 국가와 국왕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최종적인 판결자가 행형의 주관부서가 아니라 국왕이라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은 유배죄인은 일정한 죄와 형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행형의 소관부서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최종적인 재가자인 국왕의 결정에 의해 시행된다는 뜻이 될 것이다. 고려율의 운용과정에서 왕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이 유배형의 집행과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 왕권행사와 유형의집행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검토되어야 할 내용은 수형자의 신분변동에 관한 문제이다. 주지

<sup>76)</sup> 예컨대 李双齊賢 등의 論讚을 말한다.

<sup>77)</sup> 현종 때는 거란의 침입, 인종 때는 妙淸의 난, 의종 때는 무신란의 발생 등을 들 수 있다.

하듯이 고려의 유배형은 형기가 없는 終身刑78)이므로 관인이 유배형에 처해지면 우선적으로 신분적·경제적 특권이 박탈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유배죄인에게는 제명과 아울러 직전이 몰수되며, 모든 가산이 적몰될뿐만 아니라 유배인의 가족들도 노비로 몰락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다.79)

한편 관인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들의 범죄행위가 罪籍이나 正案에 기록되었으며, 그 이름이 죄적에서 삭제되지 않는 한 관인으로 기용될 수 없었다.

문종 때 檢校將作少監 庾恭義는 비록 선조가 太祖의 配享功臣일지라도 범법한 일로 죄적에 올라있기 때문에「不可敍用」의 원칙으로 散官의 자리에 있어야 했다.80) 그러나 사면의 혜택에 따라 죄적에서 지워지기만 하면 관인으로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때문에 무신집권기 贓汚행위로 파면된 990여 명의 관리들이 그들의 죄적을 삭제하기 위해 50여 근의 銀을 당대의실력자인 鄭仲夫에게 뇌물로 바친 사례81)가 있다.

유형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배소에 대한 문제이다. 고려시대에 집행된 유형의 장소를 보면, 어느 특정지역에 집단적으로 배속시키지않고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표 3〉과〈표 4〉에는 海島・遠地・南裔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명확하게 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비록 지명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배소로 이용된 곳은 대부분 한두 차례에 불과한 실정이다.82)

고려시대 유배자의 경우 배소가 결정되고 수형생활이 시작되면 가족동반은 물론 면회조차 금지되어 있었지만, 유배형에서 한 단계 量移되어 放歸田里된

<sup>78)</sup> 崔知夢은 11년, 崔惟迪은 12년 6개월, 李份은 1개월, 河拱辰은 7개월, 崔弘宰는 4년 4개월간 복역한 뒤 사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帶方公 俌와 郁은 4년여의 수형생활 도중에 配所에서 사망하였다. 따라서 고려의 유배형은 종신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sup>79)</sup> 公奴婢의 발생은 대체로 정치적인 계기로 인해 이루어지며 그 대상은 귀족신 분층을 포함한 모든 신분층이 된다고 한다(洪承基,《高麗貴族社會와 奴婢》, 一潮閣, 1983, 59~60쪽).

<sup>80) 《</sup>高麗史節要》 권 4, 문종 9년 8월.

<sup>81) 《</sup>高麗史節要》권 12. 명종 11년 9월.

<sup>82) 《</sup>高麗史》에 유배장소로서 명확하게 지명이 확인되는 곳은 80여 곳이다. 그 중 淸州가 7회에 걸쳐 이용되었고, 2회 이상 이용된 곳은 20지역이다. 이 수치는 고려 후기까지 포함한 것이다.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였다.83) 유형보다 한 단계 가벼운 형벌인 귀향죄인은 가족을 동반하여 본관에 安置・編戶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배죄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의 주민으로 인정되는 형편이었으므로 유형에 비하여수형생활이 훨씬 자유로웠다 하겠다.

### 나. 사형의 집행실태

고려시대의 死刑은 교형과 참형의 두 가지 형대로 집행되었다.84) 그런데 같은 행형체계인 생명형이라 하더라도 교형에 비하여 참형이 한 단계 가중된 행형체계라 할 수 있다. 즉 전자는 사체의 보존이 원형과 같이 완전한 양상으로 집행되지만, 후자는 머리와 몸을 단절시킴으로써 사체의 보존이 불완전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형이 다분히 정치적인 행형이라면 사형은 죄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절시킴으로써 위화적 전시효과를 거둘 수 있는 행형체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려의 행형은 유형과 사형 중심으로 운용되었다고할 수 있다. 형법지 서문에 "刑은 이미 일어난 일을 징벌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사형의 행형효과를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 전기 사형의 집행실태는 다음의 〈표 6〉과 같이 모두 24건에 달하고 있다.

국초(태조~경종)에 집행된 사형은 거의 모반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85) ①과 ③~⑧항은 모두 모반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형방법은 棄市 또는 伏誅되고 있는데, 형벌의 동기가 모두 모반이라는 사실은 고려 초기의 왕권강화 또는 집권화 과정의 어려움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실제로 중앙집권체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성종 이후 국가사직 또는 왕실의 권위를 침해한 사건(⑨・⑩・⑮・⑯・⑭)역시 모두 모반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 건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모반 또는 모반죄로서 처형된 것은

<sup>83) 《</sup>高麗史》 권 121. 列傳 34. 孝友 鄭臣祐女.

<sup>84) 《</sup>高麗史》 권84, 志38, 刑法1, 名例死刑.

<sup>85)</sup> 원래 謀叛罪라 함은「謀背國從僞」와「謀爲社稷」을 내용으로 하는 十惡罪에 속한다(《唐律疏議》名例律 6, 十惡 謀叛・謀反).

⟨표 6⟩

고려 전기의 死刑 집행실태

항	집 행	시	기	사 형 수	사 형 사 유	유 형
1	태조 '	원년	6월	馬軍將軍 桓宣吉	謀 叛	伏 誅
2	2	원년	6월	蘇判 宗品 외 1인	讒害良善	"
3	ي .	원년	6월	馬軍大將軍 伊昕巖	謀 叛	棄市
4	2	원년	9월	徇軍吏 林春吉	"	伏 誅
5	2	원년	10월	清州帥 陳瑄	"	"
6	정종 즉	위년	9월	王 規	"	"
7	3	광종	25년	西京居士 緣可	"	"
8	7	경종	5년	王 承	"	"
9	현종	6년	3월	金訓・崔質 등 19인	作 亂	誅
10		7년	5월	龜州軍 橘仙・永夢	謀 叛	斬
11)	덕종 5	원년	8월	大相 主烏	毆 母	棄市
12	정종	6년	정월	李公叶	不 孝	"
13	문종 :	원년	7월	長淵縣民 文漢	弑父母 등 4인	"
14)	1	.0년	12월	東女眞 沙支何 등 2인	劫掠	斬
15	2	26년	7월	校尉 巨身	謀 叛	伏 誅
16	헌종 4	원년	7월	李資義	叛 亂	"
17)	숙종	6년	6월	定州長 今男	監臨自盗・利敵	"
18	인종	7년	6월	忠州人 劉挺	殺 父	棄市?
19	2	22년	9월	旗頭軍 羅信	毆傷父母	棄市
20	의종 4	원년	11월	西京人李淑・柳赫 등	背國利敵罪	伏 誅
21)		2년	10월	張 喆	"	"
22	1	.4년	정월	龍虎軍卒 張彦	殺 母	梟 首
23)	] 1	.6년	9월	主簿同正 金義輔	御床 畵雞사건	斬
24)	2	22년	11월	良守 등 7인	謀叛	"

전체의 62.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려 전기에 집행된 사형의 대부분은 국가사직 및 왕실의 권위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것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범죄는 여타의 범죄와는 달리 그 緣坐의 대상이 매우 넓었다.86)

한편 ①・②・③・⑧・⑨・②항은 殺親・歐母・不孝罪를 범해 棄市刑에 처해진 사례이다. 고려율과 당률에서는 惡逆罪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으로서 부모・조부모에 대한 謀殺 및 구타행위를 들고 있다. 고려율에서는 부모의 모살에 대해서는 조문 그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규정을 설정하지

<sup>86)</sup> 緣坐에 대해서는 辛虎雄, 〈高麗時代의 連坐制에 대하여〉(《明知史論》3, 1990) 참조.

않고 있다. 이러한 반인간적인 범죄는 윤리도덕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조문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가령 周親尊長 (伯叔父母나 兄妹)의 謀殺행위와 조부모나 부모를 구타한 자도 참형에 처해진 것으로 보아,87) 殺弒에 대해서는 비록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유추해석을 적 용하여 참형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中書門下에서 아뢰기를 '忠州人 劉挺이 아비를 죽였는데 그 牧守 및 州吏가능히 백성을 가르치지 못한 까닭이라, 청하옵건대 모두 법관에 회부하고 州는 강등하여 郡으로 만들게 하소서'하였다. 왕이 좌우의 신하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禮記》에 이르기를 邾나라의 婁定公 때에 그 아비를 죽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집을 헐고 그 집터에 못을 파 버렸을 뿐이요, 그가 거주하는 州문을 말하지 않았으니 州를 낮추어 郡으로 만드는 것은 옛 법이 아닙니다'하니이에 좋았다(《高麗史》권 9. 인종 7년 6월).

위의 사료에서는 충주인 유정의 弑父행위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수령과 州 吏의 파직은 물론 주를 군으로 강등하자는 중서문하의 上奏가 있었지만, 결국 고전적인 판례<sup>88)</sup>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 ②항은 타인에 대한 참소행위로, ⑭항은 東女眞人 沙支何 등의 약 탈행위로 처형된 것이며, ⑪항에서 今男의 監臨自盜罪는 贓物을 적에게 처분 하였기 때문으로 엄밀히 따지면「背國從傷」의 모반죄를 구성하는 것이며, ⑩・⑪항의 背國利敵罪도 ⑪항과 같은 맥락으로 처벌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⑫항은 왕의 총애를 받던 궁녀가 媚道로써 화계를 몰래 왕의 요속에 넣 어 두었던 일이 발각되자, 注簿同正 金義輔가 內侍 尹至元과 함께 공모하여 저주한 것이라고 무고함에 따라 의보는 참형에 처해지고, 지인은 무인도로 유배된 사건이었다.

이와 같이 사형은 집행과 동시에 수형자의 생명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그 절차와 특히 판결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행형이었다. 이에 대 해서는 다음의 사료가 주목된다.

<sup>87)</sup> 歐祖父母·父母罪는 斬하고 과실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流 3천 리에 처하도록 했지만, 殺祖父母·父母罪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大惡).

<sup>88) 《</sup>禮記》上, 檀弓 下.

① 尚書刑部가 사형을 복주하니 왕이 말하기를 '인명은 지극히 중요한데 죽은 자는 가히 재생을 못하므로 과인이 매양 사형수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세번 복심함을 기다린다'고 하였다(《高麗史》권 85, 志 39, 刑法 2, 恤刑 문종 원년 8월).

② 典法司가 상소하기를…'大辟(사형)은 장군이 임전한 때를 제외하고는 죄상을 갖추어 都觀察使에게 보고하고, 도관찰사는 다시 典法司에게 보고하여 전법사에서 律에 의거하여 사형에 처함직하다고 한 뒤에 도평의사사에 보고하고, 도평의사사는 상감에게 奏聞하여 상감께서 살피시어 전법사에 명하여 율에 의하여 行移하도록 한 연후에 이를 시행하면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하니 判하여 도평의사사에 부쳐 擬議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다(《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職制 신우 14년 9월).

①은 사형의 판결에는 3심제가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개 2심까지는 형부에서, 3심은 "군신이 같이 의논하여 처결하는 것은 이미 선왕의成憲"이라 한 것을 보면 국왕과 신하의 합의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판결에서 신중을 기하고자 결송 날짜를 小事는 5일, 中事는 10일, 大事는 20일, 徒罪 이상의 옥사는 30일로 제한하고 있다.<sup>89)</sup> 특히 살인죄의 경우처음 단계에는 아홉 가지 단서로써 문초하고, 다시 21일을 지나 둘째 단계에서는 12가지 단서로써 문초하고, 다시 28일을 지나 셋째 단계에서는 15가지 단서로써 문초하였다.

②는 비록 여말의 자료이지만 사형의 판결과 집행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大辟(사형)은 "장군이 임전한 때"를 제외하고는 관할수령이 죄상을 갖추어 都觀察使에게 보고한다. 도관찰사가 다시 전법사에 보고하면 여기에서 율문을 찾아서 이를 적용하여 사죄에 해당하는 것임을 도평의사사에 보고한다. 도평의사사에서 왕에게 奏聞하면 왕이 이를 검토한 뒤에 전법사에 명하여 율에 의하여 행할 것을 재가한 연후에야 사형을 집행하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해 보면 관할수령→도관찰사→전법사→도평의사사→왕→전법사→시행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

그리고 사형이 결정된 죄인이라 하여도 입춘부터 추분까지는 사형을 奏決하지 않았으며90) 사형수라 할지라도 부모상이나 부상 및 조부모상을 당했을 때는 承重者에게 7일의 휴가를 주어 發哀를 허용하였다. 사면한 경우 家主를

<sup>89) 《</sup>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職制 숙종 원년 敎.

<sup>90) 《</sup>高麗史》 권 85, 志 39, 刑法 2, 恤刑 현종 9년 윤4월.

구타한 자 및 살인과 강도를 도모한 자는 무인도로 杖流하고, 비록 살인과 강도를 하여도 杖 이하의 죄는 유인도에 유배하였다.

요컨대 고려 전기에 집행된 사형의 실태를 분석해 보면 왕실의 권위 및 국가질서를 침해한 행위, 그리고 가족질서를 침해한 행위로 처형된 것이 그 대종을 이루고 있었다. 즉 전자는 모반 또는 모반죄를 구성하는 것이며, 후자는 親弑・毆母・불효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라 하겠다. 또 사형의 판결에는 3심제가 운영되었고, 신문과정에는 판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3인이 배석하였다. 또한 사형수가 사면을 받을 경우 참죄는 무인도, 絞罪는 유인도로 유배되었는데 여기에는 척장형이 並加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고려시대의 행형내용을 보면 사형기사에 비해 유형기사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것은 생명형을 사면할 때 일반적으로 유배형을 택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하겠다. 사형의 구성요건을 보면 대부분이 謀反・謀叛・친시이었듯이 그 죄목이 궁극적으로는 사면될 수 없는 惡逆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사형수가 사면의 혜택을 입어 配島되는 것과는 달리 실형인 참형 또는 교형에 처해졌다고 생각된다.

〈辛虎雄〉